1970

총인구및주택조사각종유인물철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통계청도서실
B0048779

조사구번호 _____

가 구 번 호 _____

조사구번호 _____

가 구 번 호 _____

조사구번호 _____

가 구 번 호 _____

조사구번호 _____

가 구 번 호 _____

조사구번호 _____

가 구 번 호 _____

조사구번호 _____

가 구 번 호 _____

조사구번호 _____

가 구 번 호 _____

조사구번호 _____

가 구 번 호 _____

조사구번호 _____

가 구 번 호 _____

조사구번호 _____

가 구 번 호 _____

조사구번호 _____

가 구 번 호 _____

조사구번호 _____

가 구 번 호 _____

조사구번호 _____

가 구 번 호 _____

조사구번호 _____

가 구 번 호 _____

조사구번호 _____

가 구 번 호 _____

조사구번호 _____

가 구 번 호 _____

조사구번호 _____

가 구 번 호 _____

조사구번호 _____

가 구 번 호 _____

조사구번호 _____

가 구 번 호 _____

조사구번호 _____

가 구 번 호 _____

1970년 인구 및 주택 센서스

기본도작성 및 수정보완요강

경 제 기 획 원
조 사 통 계 국

1970년 인구 및 주택 센서스

기본도작성 및 수정보완요강

경 제 기 획 원
조 사 통 계 국

머 릿 말

이번에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에서는 1970년 인구및주택(人口 및 住宅) 센서스를 실시하기 위하여 전국전역에 걸쳐 조사구(調査區)를 설정(設定)하기에 앞서 기본도(基本圖)를 작성하여 이를 수정(修正)및 보완(補完)하게 되었읍니다.

조사구는 조사원의 조사담당구역을 명확히하여 센서스의 정확성을 기하는데 가장 기본이 되므로 이조사구를 합리적으로 설정하는데 있어 무엇보다도 각지역의 지형지물과 인구분포상황을 정확히 파악해야 하므로 현존기본도(現存基本圖)에 (1965년도작성) 그간 변경된 양상(樣相)을 정확, 면밀 하게 수정및보완을 해야한다. 1966년 인구센서스의 경험을 비추어보면 조사통계국에서 기본도를 작성 각동, 읍, 면, 에 배부 보완작업을 의뢰하였던바 가구분포는 쉬운대로 대집단표시(大集團表示)로만 해버린 경향이 많았고 대부분이 지형지물에 대한 수정및보완은 하지않아 조사통계국에서 작성한 기본도 그대로 였으므로 가구수 또는 지리적조건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조사구를 설정하는데에 많은 애로가 있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1970년 인구및주택 센서스 조사구설정을 위한 이번 기본도보완작업에 있어서는 일선통계담당자(一線統計擔當者)들이 조사구(調査區)에 대한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각별한 노력과 성의(誠意)로서 정밀(精密)하고 정확한 수정및 보완을 하여주기 바랍니다.

1969년 2월 일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장

차 례

1. 1970년 인구 및 주택 센서스 조사구설정 기본도 작성 및 수정 보완개요.

(1) 목 적 1
(2) 기본도작성 및 수정보완 기간 1
(3) 기본도작성 및 수정보완 기관 1
(4) 기본도배부 2

2. 기본도 수정 및 보완

(1) 일반적 유의사항 3
(2) 동, 읍, 면 경계선 확인 3
(3) 통, 리, 구, 경계선 확인 4
(4) 지형지물 표시 4
(5) 특수지역의 표시 5

3. 기본도의 전사(轉寫)

(1) 일반적 유의 사항 7
(2) 전사방법 7
(3) 지정기호 및 규격 8

4. 가구분포 보완

(1) 일반적 유의 사항 12
(2) 가구분포 표시 12

1. 1970년 인구 및 주택(人口 및 住宅) 센서스 조사구설정 기본도작성 및 수정보완 개요(調査區設定 基本圖 作成 및 修正補完槪要)

(1) 목 적

1970년 인구 및 주택 센서스를 실시함에 있어서 조사원의 조사담당 구역을 명확히 하고 조사의 중복누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조사구를 설정(設定)하는데 앞서 가장 긴요(緊要)하고 기본적인 자료(資料)이며 그 첫 단계 작업인 기본도(基本圖)를 작성하여 일선통계 담당자들에 조사구(調査區)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시켜 정밀(精密)하고 정확한 수정(修正)및 보완(補完)을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임.

(2) 기본도 작성 및 수정보완 기간(基本圖作成 및 修正補完期間)

기본도작성 및 수정보완은 군부(郡部)에 있어서는 1969년 3월부터 8월내에 완료하고 시부(市部)는 9월부터 12월 말까지 완료한다.

(3) 작성 및 수정보완기관(作成 및 修正補完機關)

가. 작성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은 최근자료(最近資料)에 (국립건설연구소발행최근지도)의거 각 동, 읍, 면(各 洞, 邑, 面)별로 확대 작성한다.

나. 수정 및 보완(修正 및 補完)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및 각도지사는 경제기획원 장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그 관할구역내의 수정 및 보완 업무에 관하여 구, 시, 군, (區, 市, 郡) 동, 읍, 면, (洞, 邑, 面)장을 지휘 감독하며 따라서 구, 시, 군, 동, 읍, 면

장은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및 각도지사의 지휘감독을 받아 그 관할 구역내의 수정 및 보완 업무을관장(管掌)한다.

(4) 기본도 배부(基本圖配付)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은 기본도를 작성정리하여 수정 및 보완 기간전까지 해동, 읍, 면에 필착(必着)토록 발송한다.

2. 기본도수정 및 보완(基本圖修正 및 補完)

(1) 일반적 유의사항

가.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에서 작성 (作成) 송부(送付)한 기본도를 동, 읍, 면, 에서는 면밀(綿密)히 검토하여 착오 또는 애매(曖昧)한 점이 있으면 현지(現地)를 직접(直接) 답사(踏査)확인하고 다음 요령과 예도(例圖)에 각별히 유의 하여 면밀히 수정 및 보완할 것이며 추상적(推想的)인 수정 및 보완을 해서는 절대 아니된다.

나. 기본도의 수정 및 보완에 있어 기본도에 가구분포(家口分布) 표시가 되어 있을경우는 이에대한 수정 및 보완은 필요가 없으며 다만 지형지물(地形地物)만을 수정및보완 작업을 해야 한다.

다. 현 기본도 중에는 과거 수년전 자료(資料)에 의한것도 있으므로 그 후 지역적인 발전에 따라 그 양상(樣相)이 많이 변경되었을 것이므로 특히 이러한 부분에 유의해야 한다. 즉 과거 소로(小路……)가 현재 개수(改修)되어 우마차(牛馬車) 도로(道路)로 되었을때는(— — —)으로, 과거 우마차도로(牛馬車道路)가 개수 및 확장(改修 및 擴張)되어 차도(車道)가 되었을 때는(═══)으로 수정 하여야 한다.

라. 기본도는 조사통계국에서 영구(永久)보관하는 한편 연도별로 변동 상황을 수정할 계획임으로 지도(地圖)가 오손(汚損)되지 않도록 정중히 취급하여야 한다.

(2) 동, 읍, 면, 경계선 확인(洞, 邑, 面, 境界線確認)

기본도의 동, 읍, 면, 경계선이 실지 지형과 상이여부(相異與否)를 확인하고 행정구역변경으로 일부가 편입(編入)되었거나 실지와 부합(符合)되지 않은 경계선(境界線)이 있을때에는 사실대로 수정(修正)해야 한다.

(3) 통, 리, 구, 경계선 확인(統, 里, 區, 境界線確認)

군부(郡部)일부 기본도에는 통, 리, 구, 계(統, 里, 區, 界는 法定統里取扱을 받는 境界)가 표시된 것도 간혹(間或) 있으나 이미표시 되어있는 지역은 재검토(再檢討) 수정할것이며 표시가 안된 지역은 동, 읍, 면, 에서 가장 신빙성(信憑性)있는 자료(600분의 1地圖)에 의해서—○—○—와 같이 검은색으로 선명(鮮明)하게 정확히 그린다음 (조사구의 면적을 측정하게 되므로 정확하게 그어야 한다) 통, 리, 구, 명(統, 里, 區, 名)을 그 중심부(中心部)에 다음 예도의 규격(規格) 대로 사각표(四角標)를 하고 그안에 3 통 또는 청산리 상남 2구 등과 같이 기입한다.

(예도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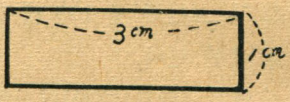

(4) 지형지물표시(地形地物表示)

가. 관내(管內)의 주요(主要)한 목표물(目標物)이나 공공건물(公共建物) 및 특수건물(特殊建物)등을 먼저 빠짐없이 정확한 위치에 직경(直經) 5mm의 흑색원(黑色圓, 붓뚜껑)을 찍고 원내의 기호를 쓴 다음 그 명칭(名稱)을 다음 예시와 같이 기입한다.

(예도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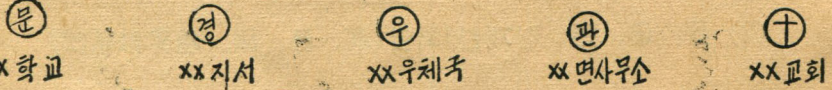

나. 하천(河川) 도로(道路) 철도(鐵道) 교량(橋梁) 고압선(高壓線) 호(湖) 저수지(貯水池) 제방(堤防)등의 증설(增設)또는 변경된 곳을 지정(指定)된 기호(記號)에 의해 수정 및 보완 하여야하며 없어야할 지형지물에는 다음 예시와 같이 적색(赤色)으로 삭표(削標)를 해야 한다.

(예도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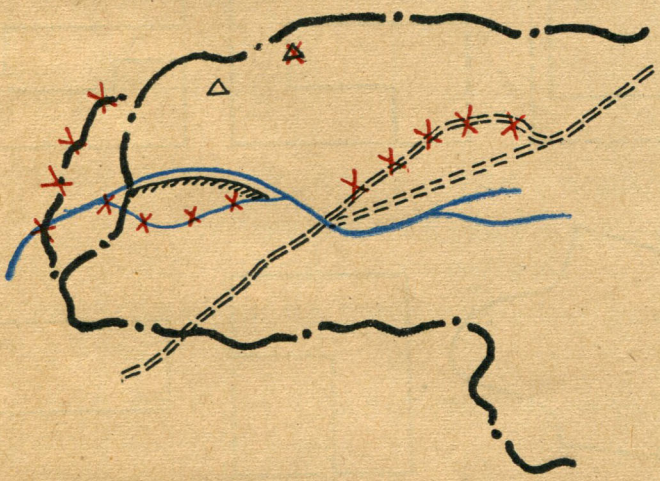

(5) 특수지역의 표시(特殊地域의 表示)

경찰서(警察署) 교도소(矯導所) 소년원(少年院) 군(軍)및 기숙사(寄宿舍) 고아원(孤兒院)등 특수사회시설(特殊社會施設)이 점유(占有)하고 있는 지역은 기본도의 축척(縮尺)을 감안(勘案)하여 점유지형(占有地形)그대로를 흑색(黑色)으로 그리고 그안에 다음 예시와 같이 명칭을 주서(朱書)로 기입한다.

(예도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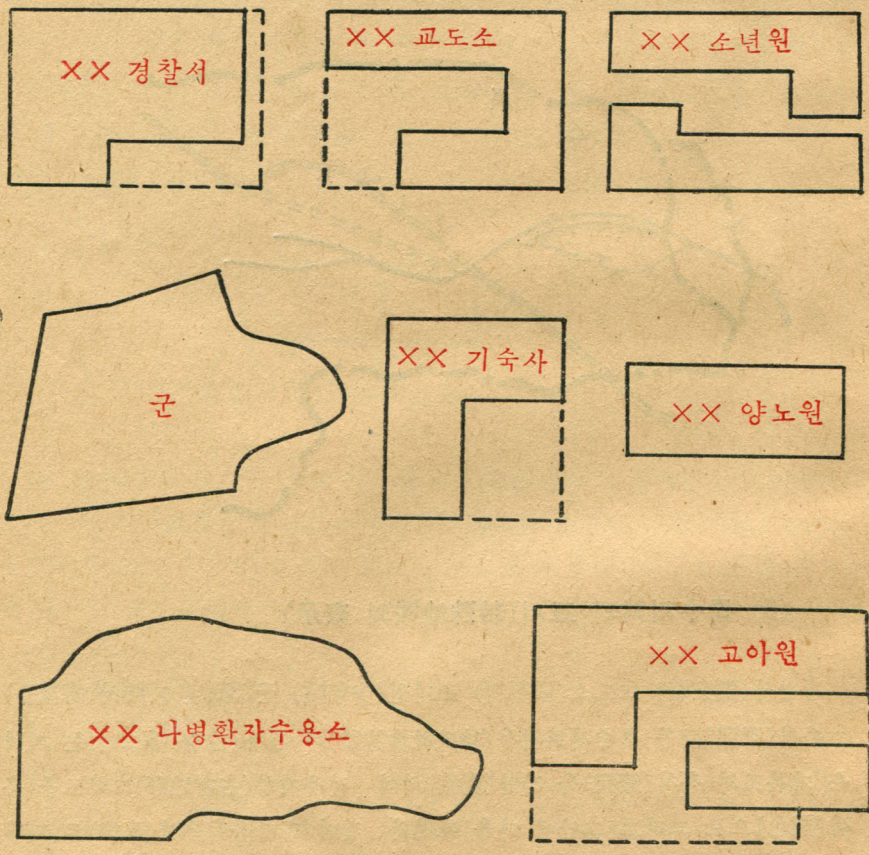

3 기본도의 전사(基本圖의 轉寫)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에서 배부(配付)한 기본도를 완전무결(完全無缺)하게 수정 및 보완이 완료되었으면 별도(別途)로 배부한 투명백지(透明白紙)에 각 동, 읍, 면, 에서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전사(轉寫)한다.

(1) 일반적유의 사항

가. 기본도에 표시되어 있는 행정구역의 경계선 도로(道路) 하천(河川)등의 주요한 지형지물(地形地物)이나 특별한 목표물(目標物)등을 빠짐없이 전사하되 가구의 분포표시(分布表示)는 전사하지 않는다.

나. 특수지역(特殊地域)의 기호(記號)나 명칭등은 특히 유의하여 빠짐없이 표시 해야 한다.

다. 기본도의 축척(縮尺)과 북방표시(北方表示) 및 난외사항(欄外事項)등을 기본도와 같이 빠짐없이 전사한다.

(2) 전사 방법(轉寫方法)

가. 기본도와 전사지(基本圖와 轉寫紙)의 구김살을 펴서 기본도를 밑에 놓고 그 위에 전사지(轉寫紙)를 네귀가 꼭 맞도록 탁상(卓上)위에 밀착(密着)시킨 다음 연필(鉛筆)로 정확히 전사한다.

나. 가구분포(家口分布) 표시와 수정된 지형지물 즉, 적색(赤色)으로 삭표(削標)한 부분은 전사하지 않으며 실지 그대로 지형지물만을 전사 한다.

다. 전사시(轉寫時) 기본도의 기호가 지정 기호와 다를 경우에는 일일히 고쳐서 그려야 한다.

라. 전사가 완전히 끝난 다음 전사지를 떼기전에 투명(透明)이 흐려서 누락(漏落)된 곳이 없는가 확인한 연후에 전사지를 뗀다.

마. 이와 같은 전사가 끝나면 전사도에 채색을하되 기본도와 일일히 대조하면서 소정기호 대로 성의껏 채색(彩色)을 하여야 한다.

(3) 지정기호 및 규격(指定記號 및 規格)

시도(施圖)에는 다음 기호를 사용하되 색채(色彩) 선(線)의 굵기 간격(間隔)모양등도 똑같은 규격(規格)으로 그려야 하며 지정된 기호이외의 표시를 하여서는 절대 아니된다

지정 기호 및 규격

시 도 계

구. 시. 군 계

동. 읍. 면 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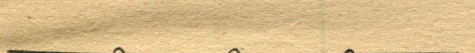

통. 리. 구 계

주요도로(차도)

파 손 도 로

우 마 차 도(牛馬車道)

소 로

철 도

교량(교량의크기에따라)

제 방

고압선또는전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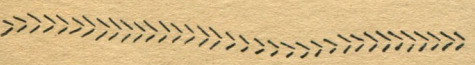

산 맥 (능선)

△ 산 정

傘 독 입 수

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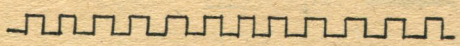

담 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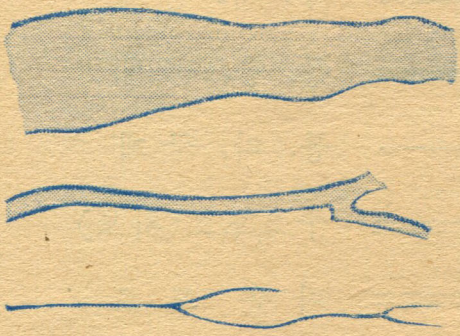

하 천

호(湖)저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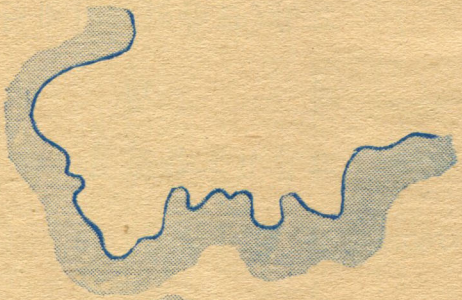

해 안 선

무 인 도

☼	등 대
⑫	가구 표시
㊊	공공 건물
卍	사 찰

4 가구분포 보완(家口分布補完)

가구분포 표시는 조사구획정(調査區劃定)에 있어서 절대적(絕對的)인 요소要素)이므로 새로 전사한 전사도(轉寫圖)에 다음 요령에 의거 가구분포표시를 보완 한다.

(1) 일반적 유의사항

표시된 가구수(家口數)는 후일(後日) 조사구설정(調査區設定)시 가구수에 변동이 있을때에는 가구수를 수정해야 함으로 원내(圓內)의 가구수기입(家口數記入)은 반드시 연필로 기입하여야하며 찍는 주인(朱印)은 다음 규격에 맞도록 만들어서 사용할것. 단 신축중에있는 주택도 한가구로 간주하여 가구수에 포함 기입한다.

(2) 가구분포 표시

가. 전사도(轉寫圖)에 가구분포 표시를 할때는 실지 위치를 고려하여(縮尺槪念을 잊지말것) 주인(朱印)을 찍기전에 연필로 그위치에 엷게 ○표하고 옆에다 가구수를 가기(假記)한다음 그 위치의 정확과 총가구수(總家口數)를 재확인(再確認)한 다음 직경5mm 원 주인(朱印)을 찍고 ○내에 연필로 다시 가구수를 아라비아 숫자(數字)로 다음 예도와 같이 표시한다.

(예도 5)

나. 가구분포 표시는 가구가 점재(點在)하고 있는 그대로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1개 ○내에 30가구 이상을 표시할수 없으며 그 위치는 정확하여야 한다. 여기서 정확한 위치라함은 집단부락중(集團部落中)에서 가장 밀집(密集)한 위치를 말한다.

다. 가구가 조밀(稠密)한 도심지(都心地)에 있어서도 1개 ○내에 30가구 이상 표시할수 없으므로 「부룩Block」별로 지도(地圖)가 작성되었다 할지라도 부룩「Block」내의 가구수가 30가구이상 거주하고 있으면 30가구 이하로 각각 분할할수 있는 지형지물을 표시한다음 지형별로 다음 예도와 같이 가구 표시를 하여야한다.

(예도 6)

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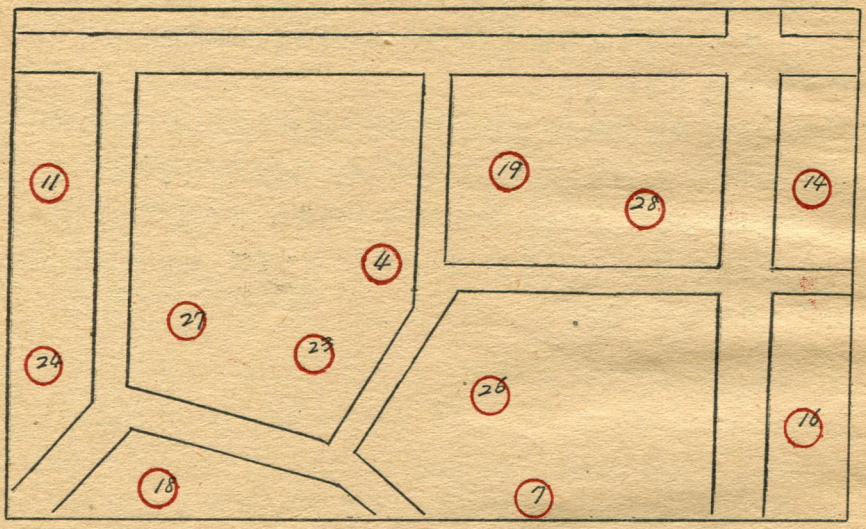

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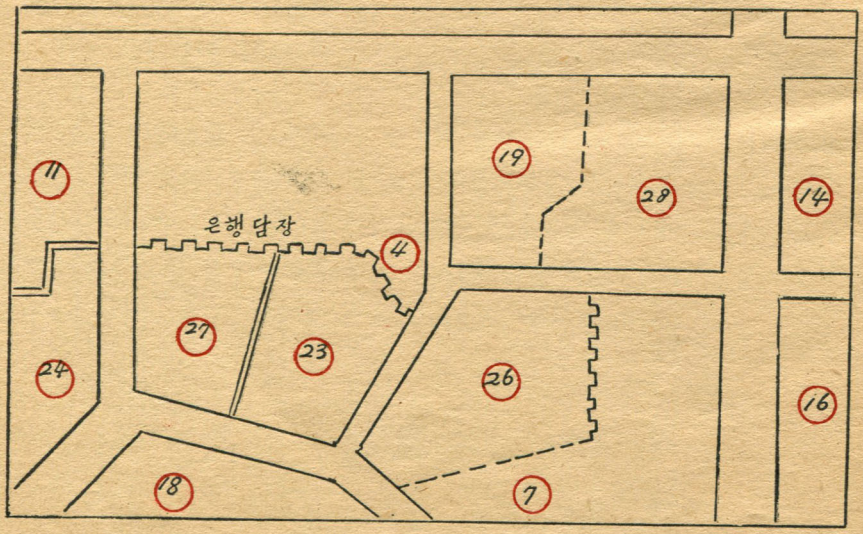

라. 가구가 밀집(密集)하지 않은 지역이라도 지형별(地形別)로 즉 도로(道路)나 하천(河川)을 중심으로 양쪽에 가구가 산재(散在)하고 있을 경우는 가구가 30가구 미만(未滿)이라 할지라도 이를 한곳에 집단표시를 하지말고 각각 지형대로 분리해서 표시해야한다

(예도 7)

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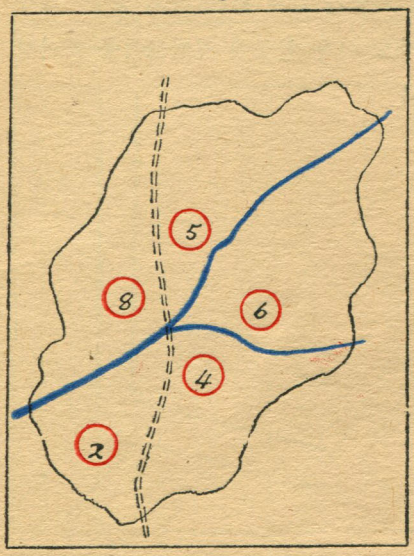

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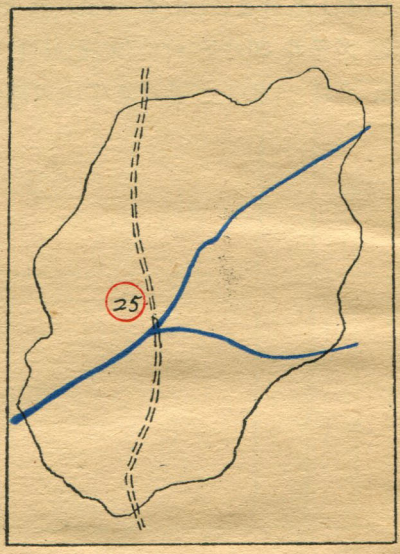

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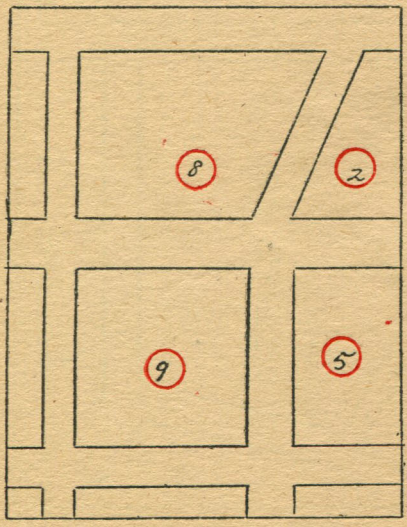

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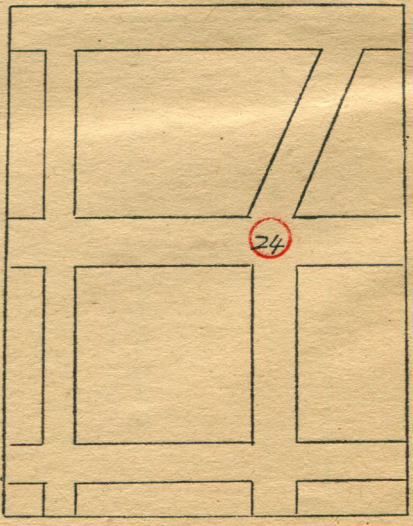

부 도

(부도1) 군 부 기 본 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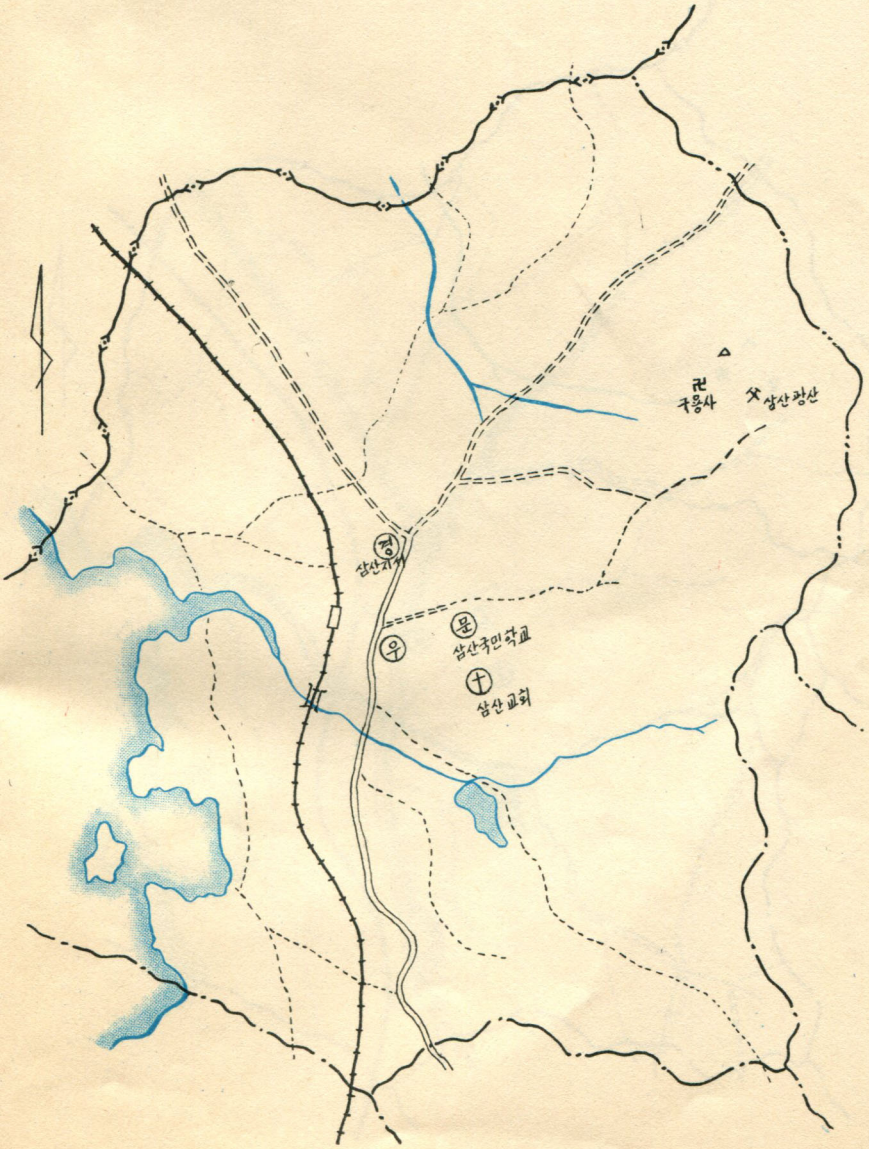

(부도 2) 군부 기본도 수정 및 보완

(부도 3) 군부 전사 및 가구분포 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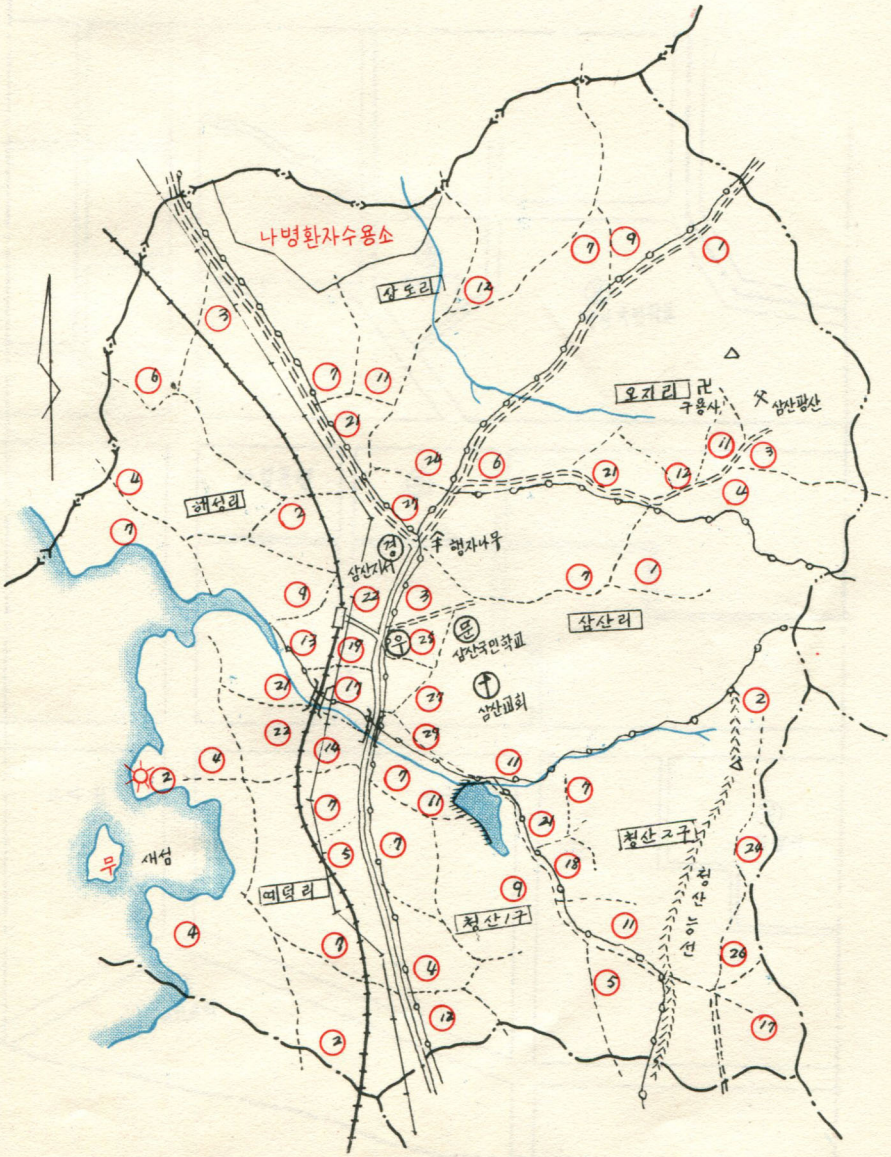

(부도4) 시 부 기 본 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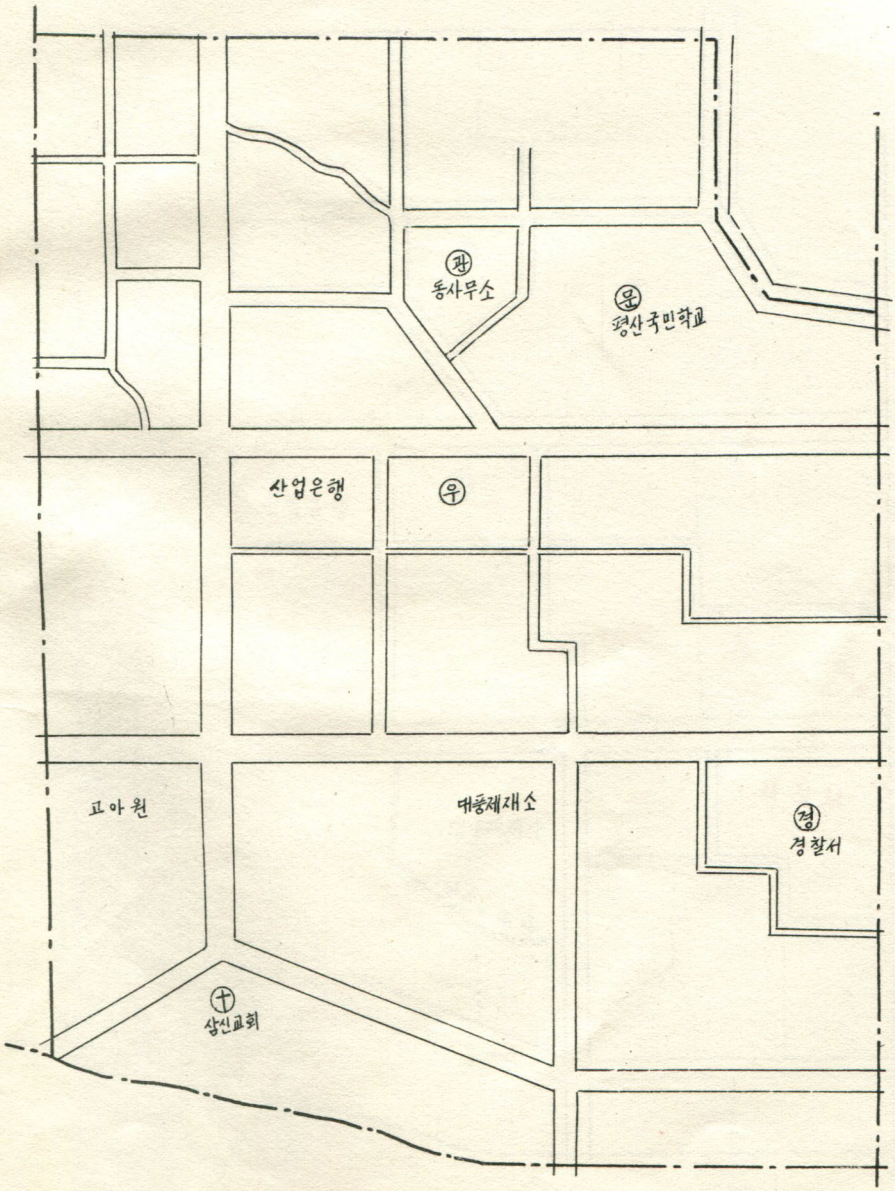

(부도 5) 시부 기본도 수정 및 보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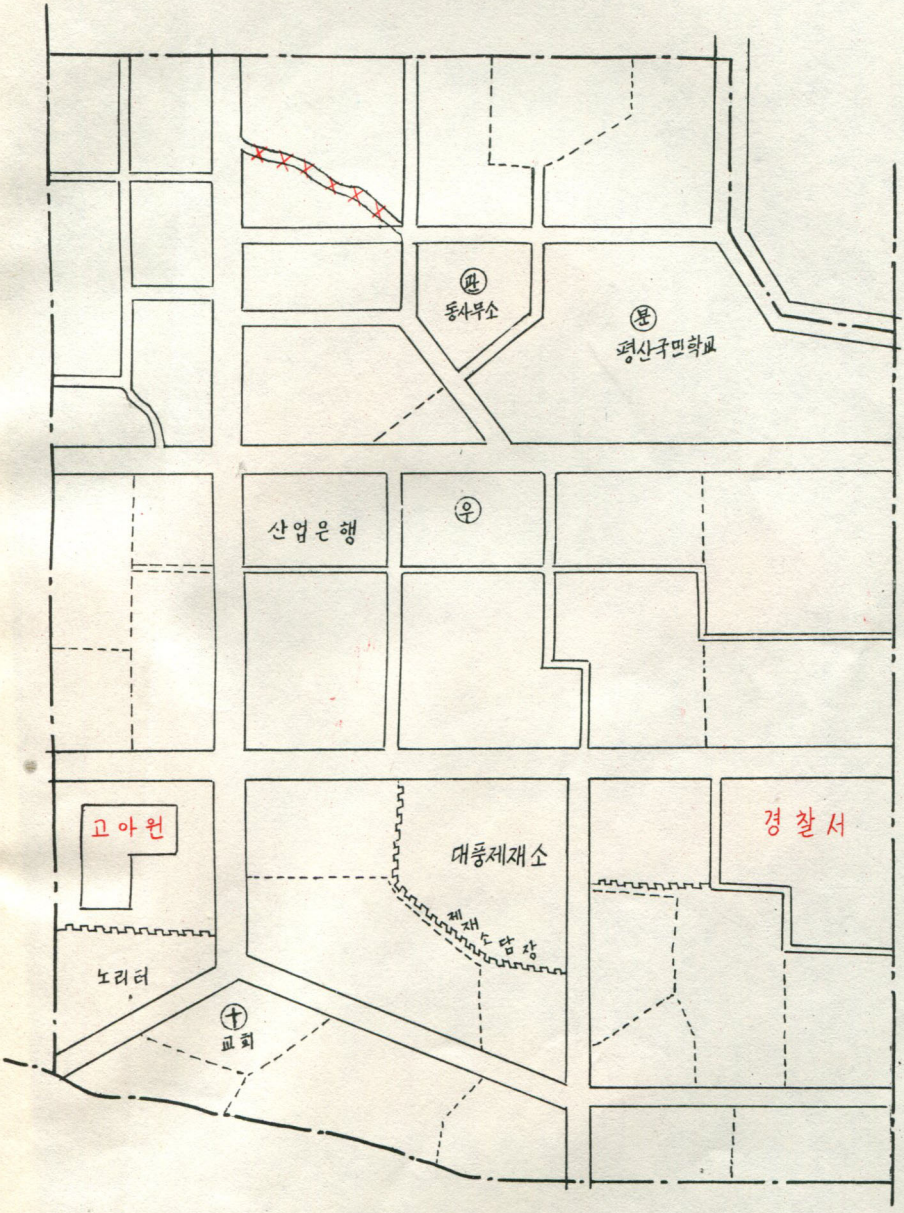

(부도 6) 시부 전사 및 가구분포 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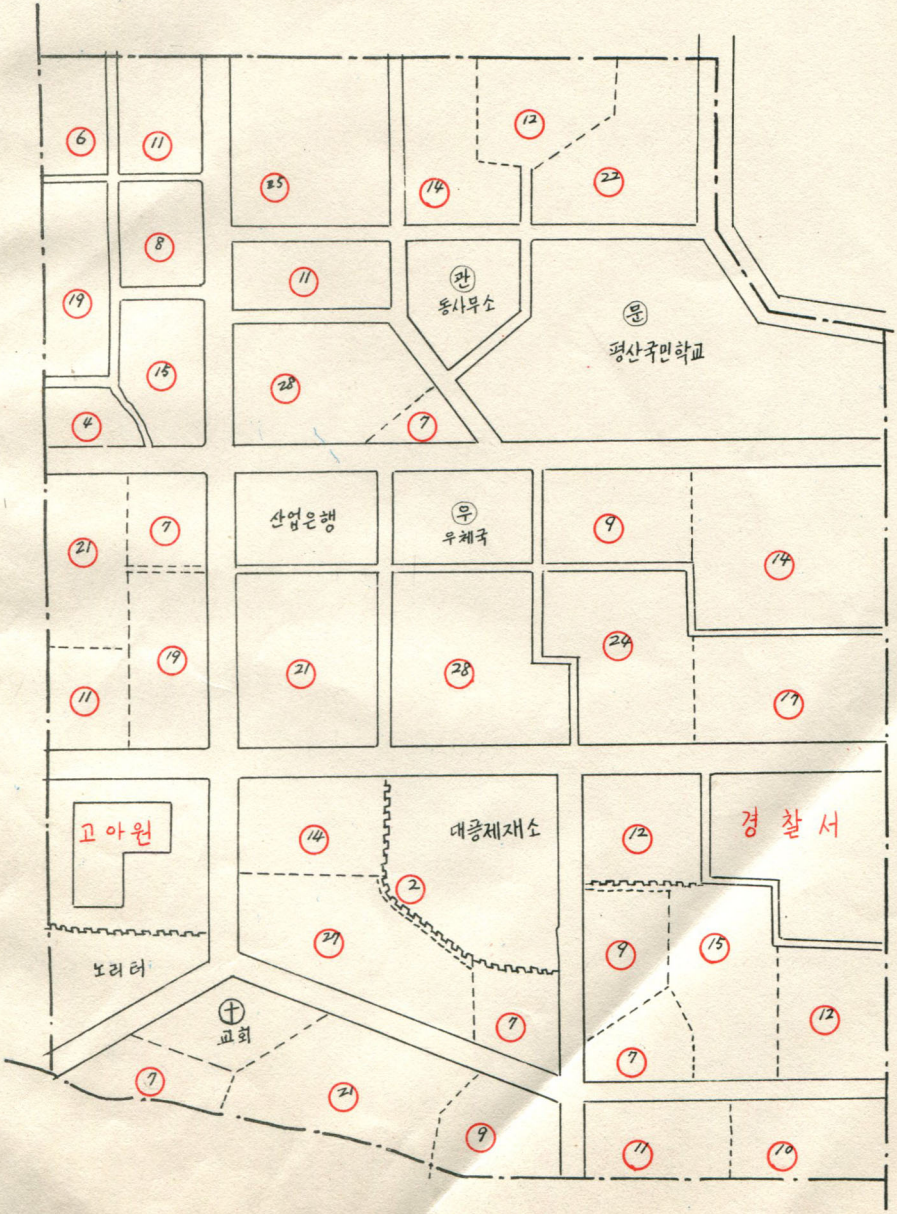

1970년 인구 및 주택센서스

집 행 요 강

경 제 기 획 원

1970년 인구 및 주택센서스

집 행 요 강

머 릿 말

금년은 "세계인구 및 주택센서스의 해"로서 우리나라에서도 10월1일0시를 기준시점으로하여 인구 및 주택센서스(총인구 및 주택조사)를 실시하게 되어있으며 본 센서스는 국가의 경제, 사회, 문화, 보건, 후생등 제 분야에 있어서의 정책수립과 그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 및 국제간의 비교등에 이용할 수 있는 자료를 얻는 중요한 기본통계조사입니다.

그동안 "1970년 인구 및 주택센서스"의 수행을 위한 준비업무는 예정대로 진행되어 왔으며 이제 10월 1일을 기해 실시될 조사를 앞두고 전국 관계 각급 행정기관의 총력을 집중할 단계에 이르렀으며 본 조사의 성공적인 완수에는 조사를 담당하실 각급 행정기관의 조사책임자 및 조사지도원과 일선조사원의 성실과 정확한 조사활동에 의해서만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수행하여야 할 "1970년 인구 및 주택센서스"가 지니는 중요성에 비추어 일선담당자 여러분의 맡은바 그 업무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한번 명심하시고 본 사업의 집행 및 절차를 구체화한 "1970년 인구 및 주택센서스 집행요강"에 의해 본 조사를 성공리에 완수할 수 있도록 보다 많은 노력과 적극참여가 있기를 거듭 부탁드리면서 조사를 담당할 여러분의 건투를 비는 바입니다.

1970년 7월 일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장 최 선 래

차 례

1. 실시근거 7
2. 목 적 7
3. 조사기준시점 7
4. 조사지역 7
5. 조사대상 7
6. 조사사항 8
7. 표본추출방법 9
8. 조사방법 9
9. 조사일정 10
10. 조사구설정 10
가. 개요 10
나. 조사구설정 승인신청 절차 11
11. 책임관·담당관 및 지도원의 지정 12
12. 조사원의 자격 및 추천과 임명 13
가. 조사원의 자격 13
나. 조사원의 추천과 임명 13
13. 감독기관 14
14. 지도원 및 조사원의 직무 14
가. 지도원의 직무 14
나. 조사원의 직무 16
15. 조사원 유고시의 대체 16
16. 조사표류의 인쇄 배부 17
17. 인구 및 주택센서스 취지의 선전계몽 17
18. 지도원 및 조사원의 훈련 18
19. 준비조사 실시 19
20. 실지조사 실시 20
21. 외국인 조사 21
22. 비밀의 엄수 21
23. 조사표류의 검토제출 21

가. 조사원의 검토사항 ……21
(1) 조사구요도의 정확여부 ……22
(2) 종합표의 검토 ……22
(3) 조사표의 검토 ……22
(4) 조사표류의 제출 ……23
나. 지도원의 검토사항 ……23
(1) 조사원 입회하에 검토 ……23
(2) 종합표, 조사구요도의 편철 및 조사표의 포장 ……23
(3) 요계표의 작성제출 ……23
다. 조사표류의 정리 및 제출 ……24

○ 부 록 ……25

○ 1970년 인구 및 주택센서스 업무집행표류일람 ……27
○ 1970년 인구 및 주택센서스 지방사무집행일정표 ……28
○ 1970년 인구 및 주택센서스 집행계획 일람표 ……35
○ 1970년 인구 및 주택센서스관계 조사표류 제출경로 ……37
○ 1970년 인구 및 주택센서스 관계표류 ……39
○ 통계법 ……77
○ 통계법시행령 ……81
○ 지정통계 조사원증 ……83
○ 인구 및 주택센서스 시행규칙 ……85

1. 실시근거

가. 통계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통계 제1호 및 제2호의 법정 기본통계조사로서 1970년은 그 10번째 조사에 해당된다.

나. UN의 「1970년 세계인구 및 주택센서스계획」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매 10년마다의 주기성을 지닌 정기조사임.

2. 목 적

인구 및 주택센서스는 국가의 경제·사회·문화·보건, 후생등 제 분야에 있어서의 장기 정책수립과 그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 및 국제간의 비교등에 이용할 수 있는 기본자료를 얻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조사기준시점

1970년 10월 1일 0시 기준

4. 조사지역

대한민국 영역중 행정권이 미치는 전 영역에 걸쳐 실시한다.

5. 조사대상

조사기준일 현재 조사지역에 상시 거주하는 인구와 주택(공가포함) 및 사람이 살고 있는 모든 거처를 조사대상으로 한다.

단, 다음의 인구 및 건물은 제외한다.

가. 인 구

(1) 외국인중 군인, 군속, 및 그 가족

(2) 외국의 외교관과 국제연합 또는 외국정부의 공무로 체재중인 사람과 그 가족(수행원포함)

(3) 외국인 중 형의 확정여부를 막론하고 교도소나 수용소에 수감 또는 구류중인 자.

나. 건 물

(1) 국군의 병사(兵舍)

(2) 경찰서 유치장

(3) 교도소 또는 소년원

(4) 유엔(UN)군의 병사(兵舍)

(5) 외국공관과 외국정부의 공적기관이 관리하고 있는 건물

「상시거주」라 함은 조사기준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그 장소에서 3개월이상을 살았거나 살려고 하는 기간이 3개월이상인 것을 말한다.

6. 조사사항

조사항목을 전수조사항목과 표본조사항목으로 구분하고 보통 조사구의 80%($\frac{4}{5}$)에 해당하는 조사구와 준 조사구중 특수사회 시설은 전수조사항목만을 조사하고 나머지 20%($\frac{1}{5}$)에 해당하는 보통조사구는 이를 다시 그 중 50%($\frac{1}{2}$)에 해당하는 거처내의 모든가구에 대하여 전수조사항목을, 나머지 50%($\frac{1}{2}$)에 해당하는 거처내의 모든가구에 대해서만 전수조사항목과 표본조사항목을 함께 조사한다.

단, 준조사구중 한지, 낙도, 기숙사는 표본조사항목을 전 가구에 대하여 조사한다.

가. 전수조사항목

(1) 인 구

(가) 이 름
(나) 가구주와의 관계
(다) 성 별
(라) 생년월일
(마) 혼인상태
(바) 취학여부
(사) 학 력
(아) 문맹여부

(2) 주 택

(가) 거처의 종류
(나) 건물의 종류
(다) 건물의 건축 시기
(라) 주택의 소유관계
(마) 주택의 총방수 및 동거가구수
(바) 주택의 총건평수
(사) 가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문화시설 및 가재

나. 표본조사항목

(1) 인　　구

(가) 총출생아수

(나) 출생지

(다) 거주기간

(라) 전거주지

(마) 경제활동상태

(바) 취업여부

(사) 산　　업

(아) 직　　업

(자) 종사상의 지위

(차) 취업기간

(2) 주　　택

(가) 주택의 사용목적별구분

(나) 건물의 외벽에 사용된 주건축재료

(다) 건물의 지붕에 사용된 재료

(라) 주택의 급수시설

(마) 주택의 등화시설

(바) 주택의 변소시설

(사) 가구에서 사용하는 주된 취사연료

7. 표본추출방법

가. 표본추출방법은 2단추출방법(二段抽出方法)을 적용하여 1차추출단위를 조사구로 하여 보통조사구중에서 $\frac{1}{5}$을 계통 추출하고, 거처를 2차추출단위로 하여 다시 추출된 조사구내에서 $\frac{1}{2}$에 해당하는 거처를 계통 추출하여 추출된 거처내에 거주하는 모든 가구를 표본가구로 한다.

단, 준조사구중 한지, 낙도, 기숙사조사구는 전가구를 표본가구로 한다.

나. 표본가구의 선정은 추후 별도 지시되는 방법에 의하여 동읍면 지도원이 선정한다.

8. 조사방법

가. 일반조사구에 있어서는 조사대상자가 상시 거주하는 장소에서 인구조사는 가구를, 주택조사는 거처를 단위로 하여 조사한다.

다만, 상시거주하는 장소가 없는 자에 대하여는 현재의 장소에서 조사한다.

조사는 가구주 또는 가구의 대표자를 면접하여 소정의 조사표에 따라 행하는 타계식 면접조사방법에 의한다.

다만, 공가에 있어서는 주택의 소유주 또는 이를 관리하는 자를 면접하여 조사한다.

나. 특별조사구에 있어서 국군에 대하여는 단위부대 또는 단위함선을, 교도소, 단위소년원, 단위경찰서를 각각 1조사구로 하여 소속 기관장이 조사담당자를 지정하여 조사케 한다.

9. 조사일정

가. 일반조사구

(1) 준비조사……9월27일(일요일)~9월30일(수요일) 4일간

(2) 실지조사

(가) 전수조사구의 조사……10월 1일(목요일)
10월 7일(수요일) } 7일간

(나) 표본조사구의 조사……10월 1일(목요일)
10월 9일(금요일) } 9일간

(3) 조사표류수집

(가) 전수조사구조사표……10월 8일

(나) 표본조사구조사표……10월10일

동, 읍, 면장이 책임수집한다.

나. 특별조사구

(1) 실지조사……10월 1일(목요일)
10월 4일(일요일) } 4일간

(2) 조사표류수집……10월15일까지 내무부장관, 국방부장관, 법무부장관이 책임 수집한다.

10. 조사구설정

가. 개 요

(1) 조사구는 특별조사구와 일반조사구로 구분 설정한다.

특별조사구라 함은 일반인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없는 지역을 말하며 일반조사구는 특별조사구를 제외한 일반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을 말한다.

(2) 조사구의 종류
- 일반조사구
  - 보통조사구
  - 준조사구…육지 한지(閑地) 조사구
    - 낙도(落島) 한지 조사구
    - 기숙사 조사구
    - 특수사회시설조사구
- 특별조사구
  - 내무부조사구……경찰서유치장
  - 국방부조사구……국군부대
  - 법무부조사구……교도소, 소년원

(3) 일반조사구의 설정과정은,

(가) 조사구설정요령서, 기본도 및 분포도배부

(나) 특별시 및 각도 담당자 훈련

1970년 2월 2일~5일

(다) 각 구, 시, 군 담당자 훈련

1970년 2월12일~13일

단, 서울특별시 및 부산시는 4월 15일~16일

(라) 각 동, 읍, 면 담당자 훈련

1970년 2월18일~19일

단, 서울특별시 및 부산시는 4월 하순

(마) 조사구 설정

군부설정……1970년2월20일~4월20일

시부설정……1970년 4월10일~5월10일

(바) 조사구설정 승인신청

(사) 설정된 조사구의 심사 및 수정등의 순서로 승인한다.

(4) 특별조사구에 있어서는 경찰서는 내무부장관이, 교도소, 소년원은 법무부장관이, 국군 및 유엔(UN)군 부대에 있어서는 국방부장관이 각각 소관별로 설정한다.

나. 조사구설정 승인, 신청절차

조사구설정 승인은 다음 절차로 승인 신청을 한다.

(1) 조사구설정이 완료되는 대로 동, 읍, 면장은 조사구설정 승인신청서를 구청장·시장·군수에게 제출한다.

(2) 구청장, 시장, 군수는 동, 읍, 면으로부터 접수한 신청서를 검토하여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및 각 도지사에게 제출한다.

(3)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및 각 도지사는 구·시·군으로부터 제출된 신청서를 사정하여 그 상황을 경제기획원장관에게 1970.5.20까지 보고하고 승인을 얻는다.

11. 책임관, 담당관 및 지도원의 지정

가. 지도원의 지정

(1)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및 각 도지사는 조사통계과장을 시·도 지도책임관으로 담당계장을 시·도 담당관으로 지정하고 소속직원 전원을 시·도 지도원으로 지정한다.

(2) 구청장(광주, 울산, 출장소장도 포함한다) 시장 및 군수는 소속통계담당, 주무계장을 구·시·군 담당관으로 통계담당직원을 구·시·군 지도원으로 지정하고 동·읍·면장은 소속 사무장 또는 부면장을 동·읍·면 담당관으로 통계담당직원을 동·읍·면 지도원으로 지정한다.

나. 책임관 담당관 및 지도원 지정상황의 보고

(1) 동·읍·면장은 동·읍·면 담당관및 지도원 지정 상황을 1970년 2월 15일까지 구청장·시장·군수에게 보고한다.

(2) 구청장·시장·군수는 소관내의 담당관 및 지도원 지정 상황을 일괄하여 1970년 2월 20일까지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및 도지사에게 보고한다

(3)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및 각 도지사는 소관내의 책임관, 담당관 및 지도원 지정 상황을 일괄하여 1970년 2월25일까지 다음의 서식에 의거 경제기획원장관(조사통계국장)에게 보고한다.

책임관, 담당관 및 지도원 지정보고

도·시·구·군 동·읍·면·별	소 속 (과계별)	직명 또는 직 위	센서스 담당 직책 (책임관, 담당관, 지도원)	성 명	비 고

12. 조사원의 자격 및 추천과 임명

가. 조사원의 자격

(1) 면접업무에 적응할 수 있는 응대능력과 표현력이 있는 자로서 성격이 온순하고 언어행동에 예의가 바르며 조사구내에서 신망이 있고 주민에게 본 센서스의 취지를 충분히 납득시킬 수 있는 자라야 한다.

(2) 피조사자의 오해가 없이 국민의 절대적인 협조를 얻기 위하여 과거 징세기관이나 경찰관서 및 정보기관에 재직하였거나 재직중인 자는 제외하여야 한다.

(3) 20세 이상 50세 미만의 남녀로서 고등학교 졸업 또는 동등 이상의 학식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지리, 생활풍습 등 제반 현지사정에 밝은 자라야 한다.

(4) 현재 해당 관할구역내에 거주하는 자로서 과거 센서스에 경험이 있는 자를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나. 조사원의 추천과 임명

조사원의 자격규정에 적합한 자를 다음 절차에 의하여 임명배치한다.

(1) 조사원의 추천

(가) 조사원 임명에 필요한 유인물(추천서, 임명장)을 7월 20일까지 중앙으로부터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및 각 도지사에게 배부한다.

(나)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및 각 도지사는 조사원 추천서 용지를 7월 30일까지 구·시·군을 경유 동·읍·면장에게 배부완료 한다.

(다) 조사원은 일반 조사구 및 준조사구 공히 1개조사구마다 1인씩을 선정 추천하고 조사원 유고시에 대체할 예비조사원을 1개 동·읍·면 마다 1인씩을 선정 추천토록 한다.

(라) 동·읍·면장은 자격요건을 갖춘 적격 조사원을 선정하고 소정의 추천서에 의해 8월 15일까지 구청장, 시장 및 군수에게 제출한다.

(마) 구청장·시장·군수는 동·읍·면장으로 부터 제출된 추천서를 검토하여 8월20일까지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및 도지사에게 제출한다.

(2) 조사원의 임명통지 및 공시

(가) 조사원의 임명은 경제기획원장관의 위임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및 각 도지사가 구청장·시장 및 군수로부터 제출된 조사원 추천서

에 의하여 그 자격적부를 신중히 심사검토하여 9월 5일까지 임명 완료토록 하는 일면 그 결과를 9월 10일까지 경제기획원장관에게 보고하고 관하 구청장, 시장, 군수에게 시달한다.

(나) 구청장·시장·군수는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도지사로부터 전항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관계 동·읍·면장에게 하달하여 9월 15일까지 조사원에게 통지(임명장 수여)하여야 한다.

(다) 구청장, 시장, 군수는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도지사로부터 전항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 관계 동·읍·면장에게 하달하여 조사실시 15일전에 10일 이상 임명된 조사원의 성명 및 담당지역(별지서식 참조 경제기획원 배부) 등을 해당 동·읍·면 게시판과 사람의 왕래가 빈번한 장소 2개처 이상에 공시토록 한다.

13. 감독기관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도지사는 경제기획원장관의, 구청장, 시장, 군수는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도지사의, 동, 읍, 면장은 구청장, 시장, 군수의 지휘감독을 받아 관할 구역내 조사의 집행을 지휘 감독한다.

14. 지도원 및 조사원의 직무

가. 지도원의 직무

서울특별시, 부산시·도·구·시·군·동·읍·면 담당관 및 지도원은 소속기관장의 지휘감독과 소속 상급기관의 지휘감독하에 본센서스 업무의 실사전후를 막론하고 전업무(全業務) 수행의 주간(主幹)이 되며 특히 조사원의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케 하기 위하여 전체 담당관 및 지도원은 혼연일체가 되어 각 하부기관을 지도감독하며 관내 주사구를 수시 순회하면서 조사업무수행상의 의문점과 여러가지 어려운 문제등의 해결을 위하여 조사원을 지도하고 이밖에 조사표류의 수집 및 검사와 이에 부대하는 지도업무를 행한다.

(1) 조사구설정의 직무

조사구의 설정은 조사원의 현지활동을 위한 조사담당구역을 명확히 하고 조사 대상에 대한 조사 누락이나, 중복 조사를 미리 방지하여 조사의 정확을 기하는데 있는 것으로서 각급 행정기관의 담당관 및 지도원 특히 동·읍·면의 담당관 및 지도원은 조사실시의 바탕이 되는 조사구의 적정한 설정을

위해서 별책의 조사구설정 요령서에 의거 충분한 노력이 기울어져야 한다.

(2) 준비조사시의 직무

(가) 각급 담당관 및 지도원은 각급 관할 지도원을 지도감독하며 조사원이 조사업무를 완료할 때 까지 정확한 조사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조사요령서를 항상 휴대 숙독토록 주지시켜야 한다.

(나) 동·읍·면지도원은 관내조사구의 조사구요도, 종합표 및 기타 준비조사에 필요한 표류를 조사원에게 배부하기전에 반드시 매조사구마다 조사구설정 요령서에 의한 조사구의 경계, 지형지물 및 특징사항등을 빠짐없이 기입작성하고 특히 인접한 다른 조사구와의 경계는 가급적이면 조사원을 현지에 대동 답사토록 하여 명확히 지적해 주고 경계상의 착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 동·읍·면지도원은 조사원이 작성한 종합표 조사구요도의 가구분포상태 및 어가구식별 일람표(해당지역에 한함)를 일일히 대조 검토하여 가구의 누락, 중복등이 없는가를 확인하여 의문 또는 착오가 있을 때에는 직접 또는 조사원으로 하여금 반드시 현지를 재차 답사하여 시정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특히 중복과 누락되기 쉬운 일반주택은 물론 교회, 학교, 사찰, 공장등의 비거주용 건물과 고아원, 양로원, 수녀원등의 특수사회시설의 일부에 살고 있는 거처와 선박, 판자집, 천막, 토막, 다리 밑(橋下) 등의 비정상적 주택과 여관, 호텔, 여인숙, 하숙, 상가(商街), 건축중에 있는 공가 등을 샅샅히 살펴 사람의 거주여부를 빠짐없이 답사 확인토록 특별한 지도가 있어야 한다.

(라) 동·읍·면 지도원은 조사원이 작성제출한 어가구 식별일람표에 대해서는 동·읍·면장의 재가를 거쳐 정해진 기일까지에 관할하는 구·시·군을 통해 도에 제출한다,

(3) 실사시의 직무

(가) 각급 지도원 특히 동·읍·면지도원은 관내조사구를 수시 순회하여 관할 지도원 및 조사원의 일일업무진행상황과 그 동태를 항시 파악하여 조사기간중 하등의 사고없이 소정기일 내에 원활히 조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만약 순회지도에 있어 조사상 애로와 이상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동·읍·면장 또는 상급기관에 보고하여 조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

야 한다.

(나) 동·읍·면지도원은 준비조사시 작성된 종합표와 대조하여 준비조사 이후의 누락가구는 말할 것도 없고 가구의 전출입, 인구의 출생 및 사망, 공가에의 입주, 전출로 인한 공가 또는 신축 및 철거등으로 인한 조사대상의 변동유무를 확인하여 중복이나 누락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발견사실에 대하여는 추가 혹은 삭제등으로 시정토록 지도하여야 한다.

(다) 동·읍·면 담당관 및 지도원은 조사완료된 조사표류를 소정기일까지에 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착오의 유무를 철저히 점검하여 수집하여야 하며 시정사항에 대하여는 조사원으로 하여금 반드시 해당조사기구에서 시정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점검완료된 조사표류는 동·읍·면장의 결재를 거쳐 정해진 기일까지에 관할하는 상급행정기관을 통해 경제기획원장관에게 제출한다.

나. 조사원의 직무

(1) 조사원은 각급 지도원의지휘 감독을 받아 담당 조사구내의 준비조사(조사구요도 및 종합표의 작성과 어가구식별일람표의 작성제출)와 실지조사(조사표의 기입작성)를 정해진 기간내에 끝마쳐야 하며 조사에 임함에 있어서는 시종 친절, 성실, 겸손한 태도를 잃지 말것이며 본 조사의 취지를 피조사자에게 충분히 설명하여 적극 협조를 얻도록 하여야 한다.

(2) 조사원은 조사가구를 방문할 때에는 시간의 선택에 각별 유의하여 특히 식사시간과 야간방문을 피하여야 하며 또 관혼상제등으로 조사응답에 적절치 못한 여건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재방문하여 조사토록 한다.

(3) 조사는 반드시 임명된 조사원이 하여야 하며 누락이나 중복 혹은 실제대로 조사하지 않거나 임의로 상식적으로 즉, 주관적 판단에 의한 기입은 절대로 삼가하여 법에 의한 책임을 물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4) 조사원은 조사수행에 있어 의심나는 점과 조사거절등 어려운 문제의 해결은 물론 건강상 기타·피할 수 없는 사유로 조사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독자적으로 해결하지 말고 반드시 관할 담당지도원을 통해 해결하도록 하여야 한다.

15. 조사원 유고시의 대체

이미 임명된 조사원 가운데 조사업무수행전이나 또는 집행도중에 건강상

또는 기타 피치못할 사유로 인하여 조사업무를 수행하기가 곤란한 자를 대체하기 위하여 정원의 조사원 이외에 동·읍·면에 예비조사원 1명씩을 훈련시키어 유고시에 보충 함으로서 조사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16. 조사표류의 인쇄 배부

경제기획원에서는 인구 및 주택센서스의 실시에 소요되는 조사용 유인물 일체를 각급 지도원 및 조사원 훈련실시 이전에 발송하고 각급 행정기관은 다음 각항에 유의하여 소정기일까지 실기(失期)함이 없도록 검수 및 배부하여야 한다.

가. 상급기관으로부터 받은 조사표류는 반드시 개포 검수한 다음 오손 파지 등 사용할 수 없는 것이 있는가를 확인하고 돌발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각급기관의 적의예비량을 확보한 잔여량을 가지고 각 하급기관에의 배포계획을 작성, 검량 완전포장하여 발송한다.

나. 도착된 것이 배포계획수량에 미달되던가 급격한 변동으로 계획 수량에 부족이 예상될 때에는 즉각 상급기관에 보고하여 보충을 받도록 한다.

다. 특히 여유수량의 확보는 각급적 최소 적의량으로 하여 공연한 남용을 피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 인수 인계를 정확히 하고 수령하였을 때에는 즉각 발송기관에 수령내역을 보고하여야 한다.

배 부 일 정

기 관	검 수 월 일	배 부 월 일	비 고
서 울 특 별 시 장 부 산 시 장 각 도 지 사	8월26일까지	8월28일까지	
구청장, 시장, 군수	9월1일까지	9월5일까지	
동 · 읍 · 면 장	9월15일까지	훈련완료후 조사원에게 배부	다만 조사표는 준비조사후 종합표에 의거배부

17. 인구 및 주택센서스취지의 선전계몽

가. 조사규모의 전국적 방대성 및 동시성등에 따라 조사의 성패는 전국민의 적극적인 협조와 사회일반의 적극참여 여부로서 좌우됨에 조사취지의 충

요성에 대한 인식과 협조도의 촉구환기를 위한 계몽선전을 별도 선전계몽요령에 의거 「메스·콤」등 침투력이 강한 보도매체의 활용은 물론 이밖에 조직을 통해 사회단체의 측면협조를 얻어 조사의 원활을 기하도록 한다.

나. 계몽선전활동은 조사기준일인 10월1일을 목표로하여 점진적으로 고조시키는 방향으로 하여 9월에는 각급지도원을 총동원하여 파급적인 선전효과를 거양하도록 한다.

18. 지도원 및 조사원의 훈련

가. 훈 련

(1) 지도원 및 조사원의 훈련은 다음에 의거 실시한다.

책임기관	담당자	피교육자	훈련일자	비고
경제기획원	인구통계과장	특별시·도지도원	8월17일 8월19일 3일간	
각시도	본부직원및시도센서스담당계장	구·시·군지도원	8월25일 8월27일 3일간	
구청장·시장·군수	구·시·군센서스 담당지도원	동·읍·면지도원	9월 7일 9월 9일 3일간	
특별시장·도지사	도·지도원	동·읍·면지도원중 1명씩	9월17일 9월19일 3일간	조사원훈련을 담당할강사진 재훈련
동·읍·면장	동읍면조사원훈련담당지도원	조사원	9월23일 9월26일 4일간	단, 전수조사구 조사원은 3일간

(1) 각급행정단위의 지도원은 물론 직접 조사에 임하게될 조사원의 훈련결과는 곧 본조사(센서스)의 성패(成敗)와 직결되는 것으로서 조사의 요령 기준 및 용어해석 등은 물론 조사실시의의와 그 중요성을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철저히 훈련되어야 한다.

나. 훈련장소

훈련책임기관이 정하되, 강의실은 피훈련인원의 수용과 강의에 지장이 없어야 하고, 의자와 책상, 흑판은 물론 가급적 확성기시설장치를 갖추도록 한다.

다. 강사의 준수사항

(1) 훈련전일까지 훈련준비를 철저히 할 것.

(2) 훈련은 피훈련인원 전원이 완전히 이해하도록 노력할것이며 수시로 문제점의 제시와 실습을 통해 피훈련인원 전원의 완전한 이해를 촉구토록 노력할 것이며,

불충분한 피훈련자에 대하여는 정규훈련 종료후 개별지도로서 보충할것.

(3) 매시간마다 피훈련자의 출석여부를 확인할 것.

(4)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주어진 시간을 완전히 활용할 것.

19. 준비조사 실시

준비조사는 10월1일부터 실시되는 실지조사를 원활히 하기 위한 그 사전 준비조사로서 특히 다음 사항에 만전을 기하도록 각별한 유의가 있어야 한다.

가. 준비조사용 표류의 배부

준비조사실시 전일 9월26일까지 조사구요도, 종합표, 가구일련번호표 보조조사표(시부인 경우) 및 어가구식별 일람표등의 소요표류와 조사용품을 조사원에게 배부 완료토록 한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조사구요도는 조사구 설정요령서 P, 19의 작성요령에 의거 지도원이 작성 완료한 조사구요도를 말하며 어가구식별일람표는 다음의 어업센서스 조사대상연안구시군에 해당하는 조사구에 대하여만 배부토록 한다.

어업센서스 조사대상연안구시군 일람표

시 도 명	시 군 명	구시군수
부 산 시	부산시(6개구)	6
경 기 도	인천시·수원시·평택군·화성군·시흥군·부천군·김포군·강화군·옹진군	9
강 원 도	강릉시·속초시·고성군·양양군·명주군·삼척군	6
충청남도	논산군·부여군·서천군·보령군·홍성군·서산군·당진군·아산군	8
전라북도	군산시·고창군·부안군·김제군·옥구군·익산군	6
전라남도	목포시·여수시·순천시·광양군·여천군·승주군·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해남군·영암군·무안군·신안군·함평군·영광군·진도군·완도군	18
경상북도	포항시·경주시·영덕군·영일군·월성군·울진군·울릉군	7

시 도 명	시 군 명	구시 군수
경상남도	마산시·충무시·진해시·삼천포시·울산시·울주군·동래군·김해군·창원군·통영군·거제군·고성군·사천군·남해군·하동군	15
제 주 도	제주시·북제주군·남제주군	3
계		78

조사원은 준비조사(종합표작성, 조사구요도 작성, 가구일련번호표의 첨부, 어가구식별 일람표 기입(어가구에 한함) 보조조사표배부(시부에 한함)를 9월27일에 일제히 착수하여 9월30일까지 완료한다.

나. 준비조사결과의 확인

동, 읍, 면장(출장소장)은 9월 30일까지 준비조사가 소정의 방법과 지시대로 잘 수행되었나를 확인하고 조사원은 9월 30일까지에는 준비조사를 완료하여야 하며 조사 완료된 종합표, 조사구요도 및 어가구식별일람표를 9월 30일 동·읍·면지도원에게 제출한다.

동 읍 면지도원은 제출된 조사표류를 면밀히 검토한 후 조사원에게 재교부 한다. 다만 작성된 어가구식별일람표만은 조사구순으로 정리하여 관할 구시군 및 시도조사통계과를 거쳐 10월5일까지 시도 수산과에 이관되도록 발송한다.

다. 실지 조사표류의 배부

동·읍 면장(출장소장)은 9월 30일 실지조사에 소용될 조사표류를 조사원에게 배부 완료한다.

배부될 실지조사에 소용될 조사표는 작성제출된 종합표에 의거 파악된 각 조사구내의 가구수에 각각 1할을 가산하여 해당전수 및 표본조사표 표지에 편철한 연후 조사원에게 배부토록 하여야 하며 조사표 표지는 그 기입란중 조사구 번호와 지역만은 동·읍·면 지도원이 기입한다.

20. 실지조사 실시

10월 1일 0시를 기준시점으로 하여 실시될 실지조사는 준비조사시 작성된 종합표에 의하여 조사를 진행할것이며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실시토록 지도하여야 한다.

가. 조사원은 실지조사를 10월 1일에 일제히 착수하여 전수 조사구조사원은 10월 7일까지 표본조사구 조사원은 10월 9일까지 완료토록 하고 완료된 조사표는 완전히 검토 정리하여 종합표(2부) 및 조사구요도(2부)와 함께 동·읍·면 지도원에게 전수 조사구는 10월 8일 표본조사구는 10월10일까지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나. 실사기간중에 준비조사 이후의 누락 및 중복가구와 가구에 대한 변동상황(전출·전입·철거 및 출생 사망등의 인적변동), 그리고 오기등의 착오가 발견되었을 때에는 종합표·조사구요도에 각각 수정 기입하여 실지 조사결과와 일치하도록 정정하여야 한다.

다. 준비조사시 도시해당 조사가구에게 기입의뢰하였든 보조표는 다만 실지조사시에 회수하여 실지조사표의 각란 기입의 참고로 활용하는 것으로서 조사표의 기입이 끝난 후에는 반드시 조사가구에 되돌려 주도록하여 회수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21. 외국인 조사

조사 대상이 되는 일반 외국인에 대한 조사는 중국인, 일본인에 대해서는 외국인 조사표를 사용하되 조사원이 직접 일반조사와 같이 조사(타계식 방법)하고 기타 외국인에 대해서는 조사원이 외국인 조사표를 직접 본인에게 배부하고 조사사항은 본인(피조사자)이 직접기입(자계식방법)하도록 의뢰하여 이를 소정기일에 수집한다. 이때 외국인 가구내에 거주하는 한국인은 일반 조사구내에 거주하는 한국인 조사요령에 준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22. 비밀의 엄수

본 센서스는 통계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해 실시되는 것으로서 특히 조사업무수행 중 또는 완료후에도 업무수행중 알려진 개인이나 기타 단체등의 비밀에 관하여는 절대로 누설하지 못하도록 엄격히 규정되어 있으므로 각급 행정기관의 지도원은 물론 조사원은 비밀을 엄수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통계법 제10조(비밀의 보호), 제11조(통계목적 이외의 사용금지), 제21조(벌칙).

23. 조사표류의 검토제출

가. 조사원의 검사사항

조사원은 준비조사 및 실지조사에서 조사한 조사표류 일체를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내용을 검사하도록 한다.

(1) 조사구요도의 정확여부

(가) 인접한 다른 조사구와의 중복 및 누락된 지역 이밖에 경계상의 잘못이 없는가를 조사구요도에 의하여 현지를 다시한번 순회답사 하여 비교 검사한다.

(나) 담당조사구내를 거처번호순으로 재확인하여 누락된 가구와 이밖에 변동유무가 없는가를 검사한다.

(2) 종합표의 검사

(가) 조사구 요도에 기입된 거처번호와 종합표상의 거처번호와 상호일치하는가를 검사한다.

(나) 종합표의 기재사항이 실지조사이후 변동된 사항이 기재되고 그 사유가 비고란에 기입되었는가를 검사한다.

(다) 조사기입된 가구원수와 남녀 합한 합계란과 상호일치하는가를 검사하고 가구원 총수를 재검산 확인한다.

(3) 조사표의 검사

(가) 종합표와의 대조

종합표의 거처번호, 가구번호와 가구주 및 가구원수와 조사상의 기재내용과 상호 일치 되는가를 검사한다.

(나) 조사표의 내용검사

조사요령서에 의해 정해진 방법과 요령대로 각 조사항목이 조사기입되었는가를 검사하고 또 서로 관련되는 상관항목의 조사에 잘못 기입된 경우가 없는가를 엄밀히 검사한다.

(다) 조사표 표지 작성

조사표 표지의 행정구역명, 조사구번호 성명 등 기타 기재사항이 누락없이 정확히 기재되어 있는가 확인한다.

(라) 조사표류의 편철

조사표는 종합표와는 따로 편철하되 종합표의 거처번호순으로 정리 편철한다.

(마) 불비사항의 유무 재확인

이상과 같이 조사표류의 내용검사 및 편철이 끝난후 표지로부터 끝까지 다시한번 재확인한다.

(4) 조사표류의 제출

조사원은 다음 사항을 정리하여 10월 10일까지(전수조사는 10월 8일까지) 담당지도원에게 제출하여 인계인수한다.

(가) 종합표(2부)

(나) 조사표(표지편철 조사구마다 1권)

(다) 조사구 요도(2부)

나. 지도원의 검사사항

(1) 동·읍·면(출장소) 지도원은 조사원 입회하에 다음 사항을 검사하고 착오 및 불비사항이 있을 경우는 지도원 책임하에 재조사를 명한다.

(가) 조사구 요도

1) 인접된 조사구요도와 대조하여 조사구경계의 상호침범여부 및 누락 중복가구의 유무등을 검사한다.

2) 조사구 요도에 표시된 지형지물과 가구분포가 사실이 어긋남이 없는가를 엄밀히 검사한다.

(나) 종합표

1) 종합표의 거처번호와 조사구요도상의 거처번호와의 비교.

2) 종합표에 기재된 가구주 및 거처번호 가구번호등의 기재사항이 조사표상의 기재내용과의 일치여부

(다) 조사표

1) 조사요령서의 방법과 요령에 의하여 1차적으로 내용검사를 행한다.

2) 조사표에 기입된 매가구원별 조사항목간 상호 불일치 또는 불합리한점 혹은 기입 누락 또는 식별하기 곤란하게 기입된 사항등의 유무를 검사한다.

(라) 기타 불비사항 검사

이상의 검사사항 이외에도 불비점이 없는가를 검사하여 시정조치한다.

(2) 종합표, 조사구요도의 편철 및 조사표의 포장, 종합표, 조사구요도는 조사구 일련번호 순으로 정리한 후 동읍면은 동·읍·면 단위로 구시군은 10개 동·읍면을 1권으로 하여 각각 소정의 표지에 의하여 편철하고 조사표는 조사구 일련번호순으로 정리한 다음 포장토록 한다.

(3) 요계표의 작성제출

(가) 전항의 검사사항에 의하여 완전히 작성된 종합표에 의하여 조사구 일련번호순으로 동·읍·면 요계표(서식 제9호)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동

읍·면에 비치하고 1부는 관할 구·시·군에 제출한다.

(나) 구·시·군은 동·읍·면에서 제출한 동·읍·면 요계표에 의하여 소정의 구·시·군 요계표를 한국표준 행정구역분류(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발행)순으로 2부 작성하여 1부는 동·읍·면 요계표와 같이 도에 관계 조사표류와 함께 제출하고 1부는 구·시·군에 비치한다.

(다) 특별시·부산시 및 각도는 제출된 구·시·군 요계표에 의하여 특별시·부산시 및 도요계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도에 비치하고 1부는 구·시·군·동·읍·면 요계표와 같이 조사관계 표류와 함께 경제기획원장관에게 소정의 기일까지 제출토록 한다.

다. 조사표류의 정리 및 제출

조사원으로부터 조사표류를 수집할 때는 반드시 기입내용을 면밀히 검사하여 오기 누락 등을 사실대로 정정하여야 할 것이며 이관될때 마다 수량을 상호 확인하고(인수증을 받음) 신중히 다루어 분실·파손등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 조사원은 10월10일까지(전수조사는 10월 8일까지) 다음 표류를 동(행정동)·읍·면장에게 제출한다.

(가) 조사표……조사구마다 1권(외국인조사표 포함)

(나) 조사구 요도……조사구마다 2부

(다) 종합표……조사구마다 2부

(2) 동·읍·면장은 다음 표류를 10월 11일부터 12일까지 구청장·시장·군수에게 제출한다.

(가) 조사표……조사구마다 1권

(나) 조사구요도……조사구마다 1부

(다) 종합표……조사구마다 1부

(라) 요계표……1부

(3) 구청장·시장·군수는 10월 14일부터 10월 16일까지 특별시장·도지사에게 다음 표류를 제출한다.

(가) 조사표……조사구마다 1권 (나) 조사구요도…조사구마다 1부

(다) 종합표……조사구마다 1부 (라) 요계표……1부

(마) 기본도……보관중인 해당 관내 기본도전부

(4)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도지사는 10월25일까지 직접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부 록

1970년인구및주택센서스업무집행표류일람

일련번호	표류명	서식제호	작성부수	작성기관
1	1970년 인구 및 주택센서스 지방사무집행일정표	—	—	조사통계국
2	1970년 인구 및 주택센서스 집행계획일정표	—	—	〃
3	1970년 인구 및 주택센서스 관계표류제출경로일람	—	—	〃
4	전수조사표	1		조사원
5	표본조사표	2		〃
6	특별조사구조사표	3		〃
7	외국인조사표	4		피조사자
8	종합표	5	2	조사원
9	조사구분포도	6	2	동·읍·면장
10	조사구요도	7	2	동·읍·면·도지원및조사원
11	가구일련번호표	8	1	조사원
12	일반조사구요계표	9	2	동·읍·면장·구청장·시장·군수및특별시장및도지사
13	특별조사구요계표	10	2	특별조사구담당기관단위
14	조사구일람표(갑)	11	2	동·읍·면장
15	조사구수일람표(구·시·군)	12	2	구청장·시장·군수
16	〃 (특별시·도)	13	2	특별시장·도지사
17	조사구수정보고서	14	2	동·읍·면장
18	전수조사표표지	15	1	조사원
19	표본조사표표지	16	1	〃
20	특별조사표표지	17	1	〃
21	종합표표지	18	2	동·읍·면장
22	조사구요도표지	19	2	〃
23	조사원(추천임명보고/임명통지)	20	2	구청장·시장·군수및동·읍·면장
24	임명장	21		특별시장·도지사
25	조사원증	22		특별시장·도지사
26	조사원공고	23		동·읍·면장
27	보조조사표	24		피조사자
28	선박가구표시기	52		조사원

	특별시 및 도			구·시·군(출장소포함)		
	집행월일		집 행 사 무	집행월일		집 행 사 무
특별시 및 도 관계자 협의회	2	2~5	경제기획원에서 개최하는 인구 및 주택센서스 실시에 따른협의회 참석(특별시·도·책임관 및 담당관			
지도원의지정	2	25	관내 각급 지도원의 지정상황을 일괄하여 경제기획원장관에게보고	2	20	관내의 담당관 및 지도원지정상황을 일괄하여 특별시장 및 도지사에게 보고
조사구 설정	2	10	조사구 설정에 필요한 기본도 조사구 설정 요령서 조사구 분포도 용지, 및 관계소요표류를 구시 군에 배부	2	13	관내의 기본도 조사구분포도 조사구 설정요령서 및 관계소요표류를 접수하여 동 읍 면에 배부
	2	2~5	경제기획원에서 개최하는 조사구설정을 위한훈련에 참석(특별시 및 도 담당관)	2	12~13	도에서개최하는 조사구 설정훈련에 참석(구 시 군 담당자)
	2	12~13	구·시·군 조사구 설정 담당자 훈련의 개최	2	18~19	조사구 설정 읍·면·담당자 훈련을 개최
	2	23	군부 조사구 설정 작업에의 참여지도	2	23	군은 관내 읍·면 조사구 설정작업을 위한 제준비를 갖추고 읍·면·담당자를 소집
	4	13	시부 조사구 설정작업에 참여 지도	4	13	구·시는 관내 각동의 조사구 설정을 위한 준비를 갖추고 동 담당자를 소집
조사구 설정 승인 신	5	20	조사구 승인신청서를 관내구·시·군으로 부			각 구·시·군·은 소정의 조사구 승인 신청

지 방 사 무 집 행 일 정 표

집행월일		동 읍 면 집 행 사 무	집행월일		조 사 원 집 행 사 무
2	15	담당관 및 지도원을 지정하여 구청장, 시장, 군수에게 보고			
2	15~22	관내(동 읍 면) 기본도 조사구 설정 요령서 및 관계 소요 표류를 접수하고 조사구 분포도 작성 (2부)			
2	18~19	구·시·군에서 개최하는 조사구 설정 훈련에 참석(동·읍·면 담당자)			
2	23	군에서 실시하는 조사구 설정 작업에 참가(기본도. 조사구분포도(2부) 지참)			
4	13	구·시에서 실시하는 조사구 설정 작업에 참가(기본도 조사구 분포도 (2부) 지참)			
		각 동은 조사구설정이 완료되는 대로 조사구승인신청을			

	집행월일		특별시 및 도 집행사무	집행월일		구·시·군(출장소포함) 집행사무
			터 접수 검토하여 경제기획원장관에게 일괄 승인 신청			서를 관내 동·읍·면으로부터 접수 검토 일괄하여 특별시장 및 도지사에게 제출
조사용 표류 및 기타 유인물배부	8	26~28	조사표 및 기타 조사관계 유인물을 접수하여 구·시·군에 배부	9	1~5	특별시 및 도로부터 조사표 및 기타 조사관계 유인물을 접수하여 동·읍·면에 배부
조사원 임명	7	20	조사원 임명에 필요한 유인물 접수하여 구·시·군에 배부	7	28	조사원 임명에 필요한 유인물을 서울특별시·도로부터 접수하여 동·읍·면에 배부
	9	10~15	구·시·군으로부터 조사원 선정 추천서를 접수 검토하여 조사원의 임명 조치를 완료하고 조사원 임명상황을 경제계획원장관에게 보고	8	20	동·읍·면으로부터 조사원 선정 추천서를 접수 검토하여 특별시장 및 도지사에게 제출
				9	10	특별시·도로부터 조사원 임명통지를 받아 동·읍·면에 통지
특별시 및 도 관계관 협의회	6	25	경제기획원에서 개최하는 특별시 및 도 관계관회의에 참석(각도 책임관 및 담당관)			
조사구 및 담당조사원의 공고						
각급 지도원 및 조사원 훈련	8	17~19	경제기획원에서 실시하는 특별시 및 각도 지도원 훈련 참석(각도 2인씩)			
	8	25~27	구·시·군 지도원의 훈련(2인씩)	8	75~27	도에서 실시하는 구·시·군 지도원 훈련에

집행월일		동 읍 면 집 행 사 무	집행월일		조 사 원 집 행 사 무
		소정의 일건 신청서와 같이 구청장·시장·군수에게 제출한다			
9	15	구·시·군으로부터 조사표및 기타 조사관계 유인물을 검수			
8	5	조사원 임명에 필요한 유인물을 구·시·군으로부터 접수			
8	15	조사원 선정 추천서를 작성하여 구청장 시장, 군수에게 제출			
9	15	조사원 임명 통지를 받아 조사원에게 통지	9	15	임명통지의 수령
9	9~16	조사구 번호, 조사 담당지역 및 담당조사원의 성명을 공고			
9	7~9	구시군에서 실시하는 동·읍면 지도원 훈련에 참석			

	특별시 및 도			구·시·군(출장소포함)		
	집행월일		집행사무	집행월일		집행사무
	8 9	25~25	관하 각급 지도원 및 조사원 훈련에의 참여 지도			참석 동·읍·면 지도원 훈련을 실시
준비조사	9	29~30	준비조사 실시 기간중 특별시·부산시 및 각도 지도원을 구·시·군에 파견지도 감독	9	27~30	준비조사 기간중 구·시·군 지도원을 동·읍·면에 파견시켜 지도 감독
	10	5	제출된 어가구식별일람표를 점검하여 일괄 정리한 후 수산과에 이관	10	3	동·읍·면으로부터 제출된 어가구식별 일람표를 검사하고 일괄 정리하여 도에 제출
본조사	10	19	본 조사 실시기간 중 특별시·부산시 및 각 지도원을 동·읍·면에 파견 지도 감독	10	1~9	본 조사 실시 기간중 구·시·군 지도원을 동·읍·면에 파견지도 감독
조사표류의 제출	10	25	구·시·군으로부터 제출된 조사표 조사구요도 및 종합표를 검수 내용을 검사하여 도요계표를 작성 경제기획원 장관에게 직접인계(구·시·군 및 동·읍·면요계표 첨부	10	14~16	동·읍·면으로부터 제출된 조사표, 조사구요도 및 종합표를 검수 내용을 검사하여 구·시·군 요계표를 작성 도에 제출(동·읍·면 요계표 첨부)

집행월일		동 읍 면 집 행 사 무	집행월일		조 사 원 집 행 사 무
9	17~19	조사원 훈련을 담당할 강사진 훈련에 참석 (각동, 읍면 1명씩)			
9	23~25	관내 조사원 훈련을 실시	9	23~26	동·읍·면에서 실시하는 조사원 훈련에 참석
9	26	준비조사에 필요한 종합표 조사구 요도·가구번호표 보조표(시부에 한함)어가구식별 일람표 및 조사용품을 조사원에게 배부	9	26	준비조사에 필요한 조사표류의 수령
9	27~30	준비조사 기간중 동·읍·면 지도원을 관내 조사구에 파견하여 조사원을 지도	9	27~30	준비조사 실시 (가구번호표 부착, 조사구요도 및 종합표 어가구식별 일람표 작성) 및 보조표 배부
9	30	준비조사에서 작성한 조사구요도 종합표·어가구식별 일람표를 검인	9	30	준비조사에서 작성할 조사구요도 . 종합표어가구식별 일람표를 동·읍·면 지도원에게 제출
9	30	준비조사 결과에 의하여 본조사에 필요한 조사용표류 일체를 조사원에게 배부완료	9	30	검인된 종합표에 의하여 조사표를 수령
10	1	준비조사에서 작성한 어가구 식별 일람표를 검사하고 조사구단위로 일괄 정리하여 구·시·군에 제출			
10	1~9	본 조사 실시 기간 중 동·읍·면·지도원을 관내 조사구에 파견 조사원을 지도	10 (전수조사구) 10 (표본조사구)	1~7 1~9	본 조사의 실시
10	11~12	조사원으로부터 조사표 조사구 요도 및 종합표를 검수 내용을 검사하여 동·읍·면요계표를 작성하여 구·시·군에 제출	10 (전수조사구) 10 (표본조사구)	8 10	조사원은 본 조사가 끝난 조사표류 일체를 검토 정리하여 담당 지도원에게 제출

1970년 인구 및 주택센서스 관계조사표류의 제출경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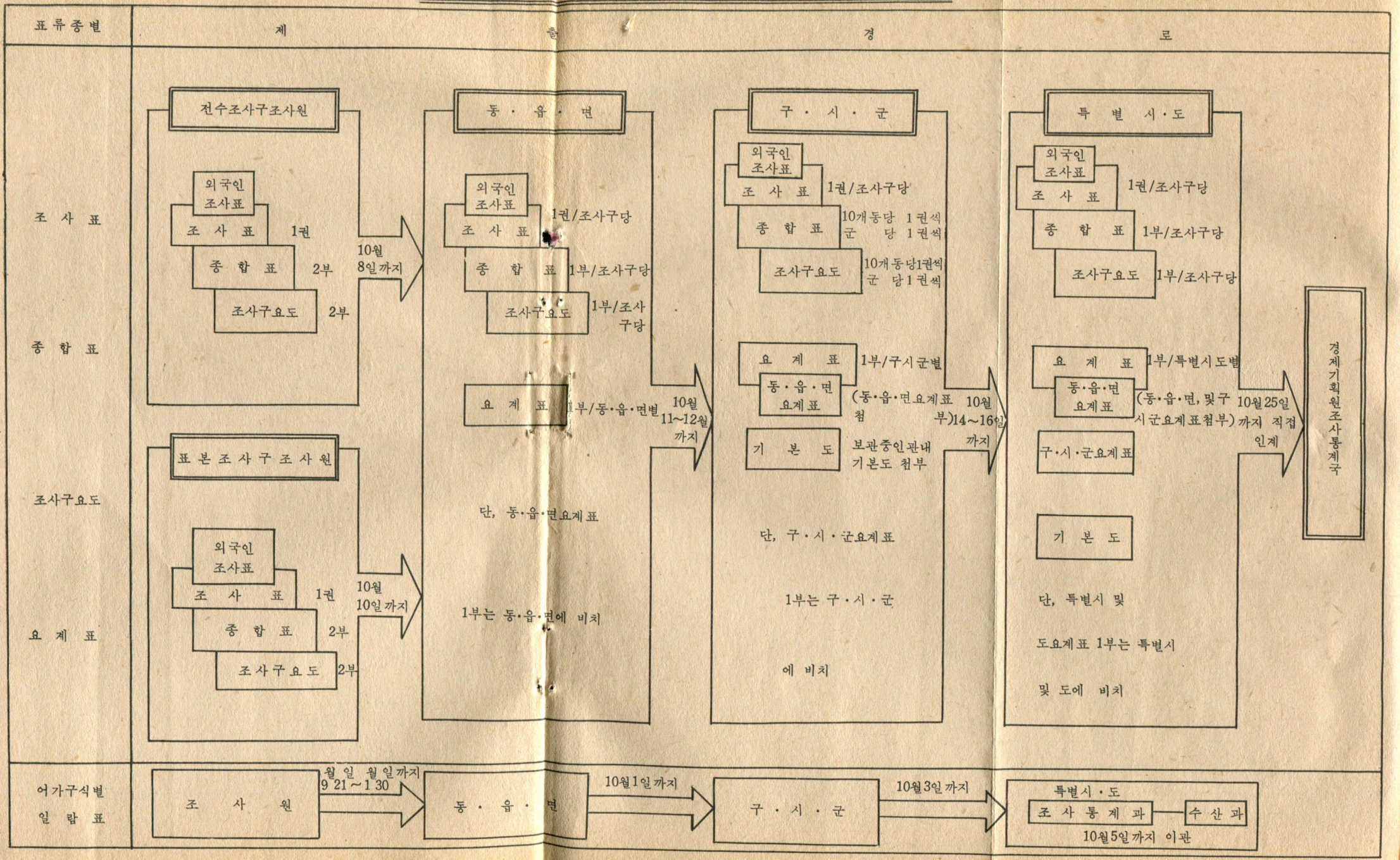

1970년 인구 및 주택센서스 집행계획 일정표

집행일정 / 과정		70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비 고
1.	지방보조금배정및확정													
2.	센세스집행요강작성및배부													
3.	조사구설정요강작성													
4.	조사구설정요강및분포도인쇄													
5.	조사구설정요강및분포도배부													
6.	조사관계관회의													
	가. 시도담당관회의													
	나. 특별조사구관계관회의													
7.	조사구설정													
	가. 중앙지도원훈련													
	나. 특별시및각도지도원훈련													
	다. 구·시·군지도원훈련													
	라. 동·읍·면지도원훈련													
	마. 구·시·군기본도송부													
	바. 군부조사구설정													
	사. 시부조사구설정													
	아. 조사구승인신청													
	자. 조사구수정보완													
8.	인구및주택센서스시행규칙개정													
9.	시험조사													
10.	선전계몽													
11.	조사표류의확정													
12.	조사표류의인쇄및배부계획													
13.	조사표류배부													
14.	조사원추천및임명													
15.	본조사각급요원훈련													
	가. 중앙지도원훈련													
	나. 특별시및각도지도원훈련													
	다. 구시군지도원훈련임석지도													
	라. 동읍면담당자훈련임석지도													
	마. 조사원훈련담당자의훈련													
	바. 조사원훈련지도													
16.	실지조사													
	가. 준비조사													
	나. 실지조사													
17.	조사표류검토및제출													
18.	자료처리													
19.	사후조사													
20.	공표													
	가. 속보													71.3.31이내
	나. 종합보고서													73.6.30이내

1970년

인구 및 주택센서스 관계표류

지정통계 제1호 및 제2호 1970인구 및 주택센서스

조사표 (가구용 전수)

조사원 성명
㉠

응답자 성명
㉠

인구에 관한 사항

(특별) 시 도	구 시 군	로 읍 면	동 리	번지 호 (전화)

이름	가구주와의관계	성별	생년월일		혼인상태	교육 취학여부	교육 학력	문맹여부
가구주와가구원의 이름을 빠짐없이 말씀하여 주십시요	가구주와 어떤 관계가 있읍니까? (예) 가구주 처 장남의 처 차남의 장녀 동거인등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예) 남 ① 1	사실상의 나이와 생년월일을 말씀하여 주십시요		사실상의배우 관계를 말씀하여주십시요	학교에 다니십니까, 아니면 중퇴 또는 졸업하셨읍니까	다음중 어디에 해당됩니까	글을읽고 쓸수 있읍니까
①	②	③	나이 살 띠	④ 생일 년 음 양 월 일	⑤	⑥	⑦	⑧
1		1 남 2 여			1 유배우 2 사별 3 이혼 4 미혼	1 재학 2 졸업 3 중퇴 4 안다녔음 →	1 국민 2 중학 3 고등 4 초대전문 5 대학이상 →	1 안다 2 모른다
2								
3								
4								
5								
6								
7								

경제 기획원

주택에 관한 사항

조사구번호	거처번호	가구번호	매중호	가구원수

모든 주택의 주가구에 대하여 조사할 사항(항목 ①~⑦)

① 거처의 종류
- 1 일반주택
- 2 비거주용 건물내의 주택
- 3 호텔, 여관등 숙박업소
- 4 병원 기숙사, 수녀원 영육아원 양로원등 공공목적을 위한집
- 5 토목공사 현장등 사업목적을 위하여 임시로 세운 집
- 6 기타( )

② 건물의 종류
- 1 독립주택
- 2 연립주택
- 3 공동주택(아파트)
- 4 기 타

③ 건물의 건축시기
- 1 1945년 이전(25년전)
- 2 1950년 이전(20년전)
- 3 1960년 이전(10년전)
- 4 1961년 이후(10년후)

→ 19 년

④ 주택의 소유관계
- 1 자기집
- 2 셋 집
- 3 세없이 빌려든 집

⑤ 주택의 총방수 및 동거가구
1. 총방수…… 개 … 평
2. 주가구사용방수 개 … 평
3. 동거가구의수… 가구
4. 동거가구사용방수 개 … 평

⑥ 주택의 총건평수
총건평 평

⑦ 이 가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문화시설 및 가재
- 1 재봉틀
- 2 라디오
- 3 테레비
- 4 전 축
- 5 전 화
- 6 냉장고
- 7 피아노및올갠

주가구 이외의 모든 동거가구에 대하여 조사할 사항(항목 ⑧~⑩)

⑧ 이 가구는 어느종류의 거처에 살고 있는 동거가구입니까?
- 1 일반주택
- 2 비거주용 건물내의 주택
- 3 호텔 여관등 숙박업소
- 4 병원, 기숙사, 수녀원, 영육아원 양로원등 공공목적을 위한집
- 5 토목공사현장등 사업목적을 위하여 임시로 세운집
- 6 기타( )

⑨ 동거가구의 사용방수
개 … 평

⑩ 가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문화시설 및 가재
- 1 재봉틀
- 2 라디오
- 3 테레비
- 4 전 축
- 5 전 화
- 6 냉장고
- 7 피아노및올갠

※ 조사통계국 기입란

가구원수 계	가구원수 남	가구원수 여	가구구분	가족구성 핵가족	가족구성 세대구성

(서식 제1호)

(인구에 관한 사항)

특별시 도	구 시 군	동 로 읍 면	가 리	번지 호 (전화)

조사구분	거처번호	가구번호	매중 호	가구원수

※조사통계국 기입란

가구원수 계	가구원수 남	가구원수 여	가구구분	가족구성 핵가족	가족구성 세대구성

지정통계 제1호 및 제2호 1970인구 및 주택센서스

조사표 (가구용 표본)

조사원 성명	응답자 성명
㉮	㉮

	이름	가구주와의관계	성별	생년월일	혼인상태	교육 취학여부	교육 학력	문맹여부	출생아수	출생지	출생지	거주기간	전거주지	경제활동 (14세 이상자에 한하여) 활동상태	취업여부	산업	직업	종사상의직위	취업기간
	가구주와 가구원의 이름을 빠짐없이 말씀하여 주십시요	가구주와 어떤 관계가있읍니까 (예)가구주 처 장남의 처 차남의 장녀 동거인 등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예) ① 남	사실상의 나이와 생년월일을 말씀하여 주십시요	사실상의 배우관계를 말씀하여 주십시요	학교에 다니십니까 아니면 중퇴 또는 졸업하셨읍니까	다음중 어디에 해당됩니까	글을 읽고 쓸수 있읍니까	부인께서는 지금까지 몇명의 자녀를 낳았읍니까 그중에 현재 살아있는 자녀의 수는	어디에서 출생하셨읍니까	현주지와 다를 경우에는 출생한 지명을 말씀하여주십시요	언제부터 이곳에서 살았읍니까	현재 살고있는 곳에 오기전에 살던곳은 어디십니까	지난 1주일간(9월 21일~9월 27일)에 주로 무엇을 하셨읍니까	조금이라도 수입을 목적으로 일하신적이 있었읍니까	어느분야에서 일하셨읍니까	무슨 일을 하셨읍니까	하셨던 일에서 다음중 어디에 해당됩니까	지난 1년동안 몇개월 일하셨읍니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⑨	⑨	⑩	⑪	⑫	⑬	⑭	⑮	⑯	⑰	⑱	⑲
1			1 남 2 여	나이 살 띠 생일 년 음 양 월 일	1 유배우 2 사별 3 이혼 4 미혼	1 재학 2 졸업 3 중퇴 4 안다녔음	1 국민 2 중학 3 고등 4 초대전문 5 대학이상	1 안다 2 모른다	명 1. 생존아수 명 2. 총출생아수	현주지와 1 같다 2 다르다	1 시도 군 2 외국	1 1960이전부터 2 1960~1965 3 1966~1969.9 4 1969.10~1970	1 시도 구 시 군 2 외국	1 일하였음 2 일시휴직 3 구직 7 불구 4 가사 8 기타 5 통학 6 연로	1 있다 2 없다			1 단독자영업주 2 고용주 3 가족종사자 4 상용고 5 임시고 6 일고	개월
2																			
3																			
4																			
5																			
6																			
7																			
8																			
9																			
10																			

(주택에 관한 사항)

거처번호	가구번호

주 택	주택외의거처

가 구 원 수		
계	남	여

모든 주택의 주가구에 대하여 조사할 사항 (항목 ①—⑭)

① 거처의 종류
- [1] 일반주택
- [2] 비거주용 건물내의 주택
- [3] 호텔 여관등 숙박업소
- [4] 병원, 기숙사, 수녀원, 영육아원, 양로원 등, 공공목적을 위한 집,
- [5] 토목공사현장등 사업목적을 위하여 임시로 세운 집
- [6] 기타( )

② 건물의 종류
- [1] 독립주택
- [2] 연립주택
- [3] 공동주택(아파트)
- [4] 기 타

③ 건물의 건축시기
- [1] 1945년 이전(25년전)
- [2] 1950년 이전(20년전)
- [3] 1960년 이전(10년전)
- [4] 1961년 이후(10년후)

19 년

④ 주택의 소유관계
- [1] 자 기 집
- [2] 셋 집
- [3] 세 없이 빌려든 집

⑤ 주택의 총방수 및 동거가구수
- [1] 총 방 수 ..... 개… 평
- [2] 주가구사용방수 ..... 개… 평
- [3] 동거가구수 ..... 가구
- [4] 동거가구사용방수 ..... 개… 평

⑥ 주택의 총건평수 총 평

⑦ 가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문화시설 및 가재
- [1] 재 봉 틀
- [2] 라 디 오
- [3] 테 레 비
- [4] 전 축
- [5] 전 화
- [6] 냉 장 고
- [7] 피아노 및 올갠

⑧ 주택의 사용목적별 구분(일반주택)
- [1] 거주전용주택
- [2] 영업병용주택

⑨ 건물의 외벽에 사용된 주건축재료
- [1] 나 무
- [2] 흑 또는 흙벽돌
- [3] 시멘트 부럭
- [4] 벽돌 및 돌
- [5] 철근 콩크리트
- [6] 기 타

⑩ 건물의 지붕에 사용된 재료
- [1] 집, 갈대, 등
- [2] 함석(양철)
- [3] 스레이트
- [4] 기 와
- [5] 스 라 브
- [6] 기 타

⑪ 주택의 급수시설
- [1] 수 도
- [2] 펌 프
- [3] 우 물
- [4] 기 타
- [5] 없 음

⑫ 주택의 등화시설
- [1] 전 기
- [2] 기 타

⑬ 주택의 변소시설
- [1] 재 래 식
- [2] 없 음
- [3] 수 세 식

⑭ 가구에서 사용하는 주된 취사연료
- [1] 연 탄
- [2] 나무, 짚, 기타초목류
- [3] 석 유
- [4] 깨스(프로판깨스)
- [5] 전 기
- [6] 기 타

⑮ 이 가구는 어느종류의 거처에 살고 있는 동거가구입니까?
- [1] 일반주택
- [2] 비거주용 건물내의 주택
- [3] 호텔, 여관 등 숙박업소
- [4] 병원, 기숙사, 수녀원 영육아원 양로원등 공공목적을 위한 집
- [5] 토목공사현장 등 사업목적을 위하여 임시로 세운집
- [6] 기 타

⑯ 동거가구의 사용방수

개 …… 평

⑰ 이 동거가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문화시설 및 가재
- [1] 재 봉 틀
- [2] 라 디 오
- [3] 텔 레 비
- [4] 전 축
- [5] 전 화
- [6] 냉 장 고
- [7] 피아노 및 올갠

⑱ 동거가구가 사용하고 있는 주된 취사연료
- [1] 연 탄
- [2] 나무, 짚, 기타초목류
- [3] 석 유
- [4] 깨스(프로판깨스)
- [5] 전 기
- [6] 기 타

지정통계제 1 호
1970년 인구센서스

특 별 조 사 구 조 사 표

조사구명 (기관명)		구 분		매 중 一 매

경제기획원조사통계국

	인적사항				교육정도			자기본가의 현주지		
	① 이 름	② 성 별	③ 생년월일	④ 혼인상태	⑤ 취학여부	⑥ 학 력	⑦ 문맹여부	특별시 직할시, 도	⑧ 구, 시, 군	동, 읍, 면
	여기 있는 분들의 성명은 무엇입니까?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예) ① 남	사실상의 나이와 생년월일을 말씀하여 주십시요	사실상의 배우 관계를 말씀하여주십시요	학교에 다니십니까 아니면 중퇴 또는 졸업하셨읍니까?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됩니까?	글을 읽고 쓸수 있읍니까?	가족들이 살고있는 집의 소재지를 기입하시요.		
1		1 남 2 여	나이 세 년 월 일 음 양	1 유배우 2 사별 3 이혼 4 미혼	1 재학 2 졸업 → 3 중퇴 4 안다녔음	1 국민 2 중학 3 고등 4 초대전문 → 5 대학이상	1 안다 2 모른다	시도	구시군	동읍면가
2										
3										
4										
14										
15										

조사담당자직성명 ㊞

(서식 제 3 호)

Republic of Korea Census for 1970

(Conducted as of Oct, 1, 1970)

ANSWERS TO THE CENSUS QUESTIONS ARE KEPT AS CONFIDENTIAL IN ACCORDANCE WITH ARTICLE OF THE STATISTICS LAW

Bureau of Research & Statistics
Economic Planning Board

On Population

(人　　口)

Please answer these question for each person

PRESENT ADDRESS　現　住　所

City. Province 市　道	Ku, Shi, Gun 區, 市, 郡	Dong, Eup, Myeon 洞, 邑, 面	# 番地

① What is the name of each person? 姓　名	② Sex 姓　別	③ Age and birthday 年齡及出生年月日	④ Nationality 國　籍	⑤ What is the purpose of your stay in Korea? 滯留目的	⑥ Duration of staying 滯留期間
Please write the name of each person in your household in the following order. 据下列 順序填寫 家族姓名 Head of household(戶長) Wife of head(戶長之妻) Children(戶長之子女) Other person(同居人)	Please mark one of the following. 男女之間以適當的番號用○來記入 Example; 1 Male 男 2 Female 女	Please print. 填寫出生年月日及年齡	Please print the name of the country of your nationality. 記入國籍 Example; Australia	Please mark one of the following 在滯留目的中適當番號以○來記入 1 Permanent immigration (永住) 2 Commercial business (事業目的) 3 Religious mission or educational purpose (宗教活動及教育目的) 4 Sight-seeing or visit to relatives(觀光及親知訪問)	Please write the date of your arrival and intended date of departure. 入國日字及出國豫定日字記入
	1 Male 男 2 Female 女	.....月 Month .....年 Year .....年齡 Age	.....	1　3 2　4	.....入國日字 Date of arrival .....出國豫定日字 Intended date of departure

FOR OFFICIAL USE

Tel. No. 電 話	ED No. (調査區番號)	Living quarter No. (住宅番號)	Household No. (家口番號)

On Housing (住宅)

1. Type of Living Quarter (住宅型態)

In which living quarter are you living? Please mark one of the following?

[1] Housing unit (住宅) [2] Hotel or Inn (旅館)
[3] Domitory, Hospital or Other institution(寄宿舍, 病院, 其他公共建物)
[4] Other premises not intended for human habitation (其他)

2. How many rooms are occupied by your household? (住戶內房數及房間面積)

.....Rms
No. of Rooms 房數

.....m²
Area (總房間面積)

3. Is the living quarter occupied solly by your household, or by two, or more households? (住戶數)

[1] Solly by one household(Please answer to question 4, 5, 6, 7, 8) (單獨住戶)
[2] By two or more household (同居住戶)
If so, one of representative household is kindly asked for replying question 4, 5, 6, 7, 8

For Principal Household Only

4. Type of Building (建物型態)

Which best describes this building

[1] One family house completely detached from other house(獨立住宅)
[2] Tenement house (聯立住宅) [3] Appartment(公寓)

5. About when this building was constructed(建築時期)

[1] Before 1945 年前 [2] Before 1950 年前
[3] Before 1960 年前 [4] After 1961 年後

6. Ownership of living quarter (住宅所有關係)

[1] Owned (自家) [2] Rented (賃家)
[3] Occupied with free of rent (無料賃家)

7. Number of rooms and area (房數 及 面積)

(1) Is this house shared by other household? (此住宅有外人住戶嗎)

[1] Yes (有) [2] No (沒有)

(2) If yes, how many households are there in this unit(假若有的 話能有幾家住戶)

住戶_____ households

How many rooms are occupied by them? _____ Rms(房數) _____m² (面積)
(外人住戶 能佔有幾間房子) No. of rooms Area

(3) What is the total No. of rooms and area? (此住宅總有幾間房屋及總房屋之面積) _____Rms
(總房數) _____m² (總房間面積)

8. What is approximate total floor area of the building? (建物 總面積)_____m²(S.Q meters)

Dear Foreign Citizen

I am glad to inform you that Bureau of Statistics of the Economic Planning Board is conducting 1970 Census of Population and Housing as of October 1, 1970.

The Censuses of this type, as you are very well aware, are conducted in every country of the World in accordance with the recommendation from the United Nations.

The Census will provide the data on the stock of nation which are essential for formulating and implementing socio-economic developm-ent plans and policy making. Therefore, the statistical information supplied by you, will play a basic role in constructing our society You are kindly asked for answering the Census questions to the best of your knowledge. The Census Law provides that all the Census questions are kept as confidencial and will not be disclosed to anyone outside the Bureau but be used only for statistical purposes.

Your kind cooperation toward the success of the Census will be very much appreciated.

Choe, Sun Ray

Director
Bureau of Statistics
Economic Planning Board

PS:

Obligation exempted if you are member of following:

1. Foreign diplomats and
member of United Nations
Organization or mission including
families and persons accompanied

2. United Nations Armed
Forces and attached civilian
with person and families accompanied

1970년 인구 및 주택센서스 **총 합 표**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조사구번호		조사표매수	매	시도 구시군 동읍면 가	농업조사구번호	※

1	2	3	4	5			6		7		8		9	10	11	12
거처번호	가구번호	가구주또는대표자성명	주소	가구원			거처의종류		입주여부		가구구분		농가	농업조사구번호	어가	비고
				계	남	여	주택	주택이외의거처	현주	공가	주가구	동거가구				
			(99란)													
합계																

※ 농업조사원이 기입한다.

(서식제5호)

조사원 (인) 동 읍 면장 (인)

시 구 동 1970년 인구 및 주택센서스 **조사구분포도**
도 시군 읍면 매층 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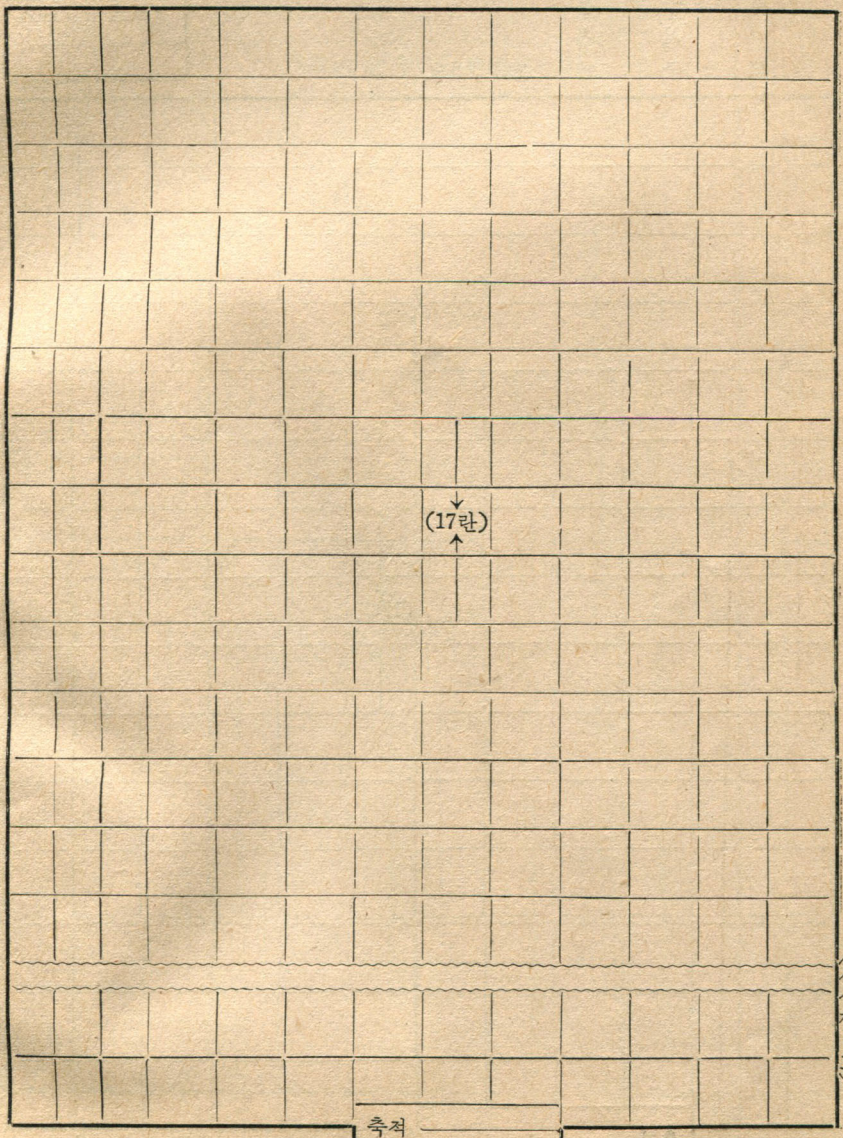

(서식제6호)

축적

경제기획원조사통계국 1970년 월 일

1970년 인구 및 주택센서스 **조사구요도**

시 구 동
시 읍
도 군 면 조사구번호

가구수	인구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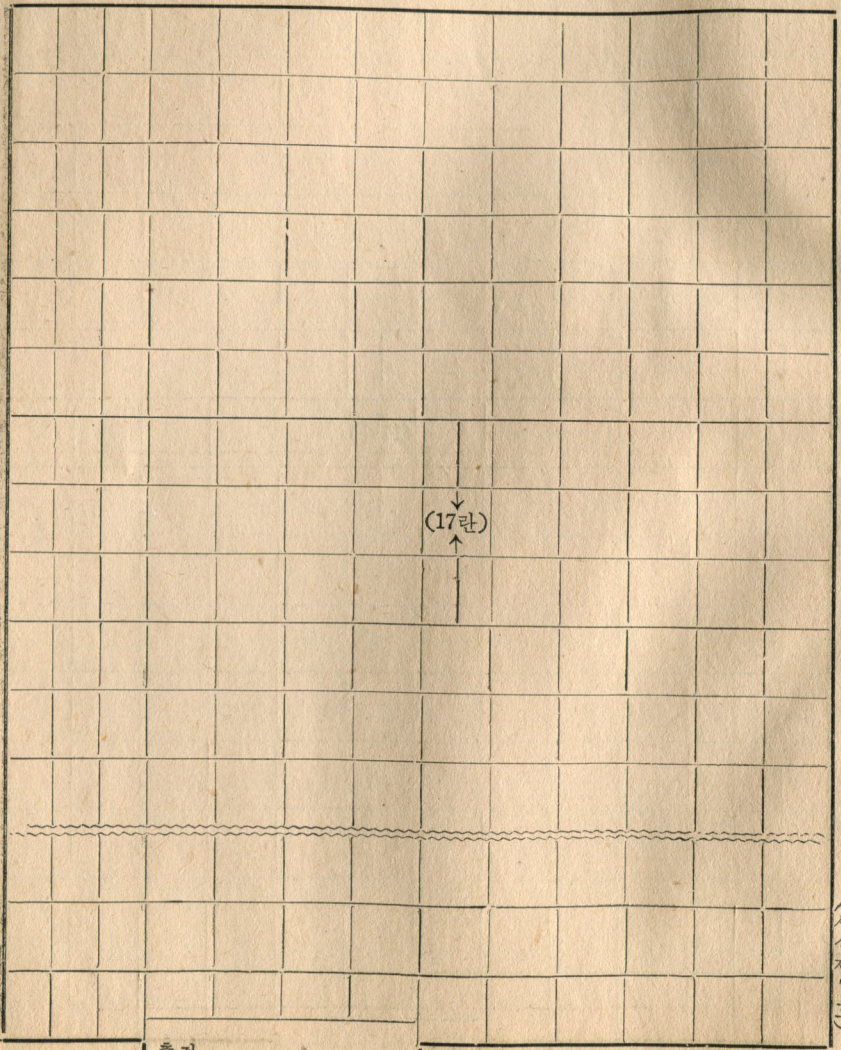

(서식제7호)

축적 ———

지도원성명 ㊞ 동 장

조사원성명 ㊞ 읍면장 인

경제기획원조사통계국

가구 ~~거처~~ 일련번호표

1970년 인구 및 주택센서스

조사구 번호	
거처 번호	
가구 번호	

경제기획원

(서식제 8 호)

행정 구역	

1970년 인구 및 주택센서스 **요 계 표** (일반조사구용)

(매중 호)

행정구역 또는 조사구번호	조사구수	본국인					외국인					거처수	주택수		농가	어가	비고
		가구수	가구원수			조사표매수	가구수	가구원수			조사표매수		현주	공가			
			계	남	여			계	남	여							
															(40란)		
소 계																	
합 계																	

(서식제 9 호)

1970년 월 일

작성기관장 인

1970년 인구 및 주택센서스 **특별조사구요계표**

특별조사구명칭 (통상명칭)	단위소재지 (행정구역부호)	조사표 매수	인원 계	남	여	비고
	~ 20란 ~					
합계						

(서식제10호)

1970년 월 일

조사단위책임자 인

1970년 인구 및 주택센서스 **조사구일람표(갑)** 시 도

조사구수						가구수	지도매수
총수	보통조사구	준조사구					
	①	계(②-⑤)	②	③	④	⑤	

조사구번호	가구수	소재지	비고

(서식제11호)

1970년 월 일 구시군 동읍면장 인

구시군조사구일람표

1970년 인구 및 주택센서스

시도

행정구역명	조사구수							지도매수	비고
	총수	보통조사구 ①	준조사구 계 ②—⑤	②	③	④	⑤		

(서식제12호)

1970년 월 일

구 구청장
시 시장
군 군수

인

시·도 조사구일람표

1970년 인구 및 주택센서스

시
도

행정구역명	조사구수							지도매수	비고
	총수	보통조사구 ①	준조사구						
			계 (2—5)	②	③	④	⑤		

(서식 제13호)

1970년 월 일

시 장
도지사 인

조 사 구 수 정 보 고 서

1970년 인구 및 주택센서스

시
도

구 조사구번호	신 조사구 번호	수 정 사 유 및 내 용	비 고

(서식 제14호)

1970년 월 일

구
시
군

동읍면장 인

(표지)

특별시 도

구시군

동읍면

조사구 번호

지정통계
제1호및제2호

1970년 인구 및 주택센서스

조 사 표

동읍면 기 입 란

행정구역	시 구 / 도 시 군		동읍면			
	조사표매수	거처수	가구수	인구수 계	남	여
계						
본국인						
외국인						
지도원 성명	㊞	조사원 성명		㊞		

※행정구역	조사구번호

조 사 통 계 국 기 입 란

	담당자성명	㊞	책임자성명	㊞
조사표검수				
내용검사				
재검사				
부호기입				
부호검사				
부호재검				
천공				
검공				

(서식제 15~16호)

(표지)

○ ○

1970년 인구 및 주택센서스

특별조사구조사표

특별조사구기입란				
특별조사기관				
조사구명		구분		
조사표매수및인구수	조사표매수	인구수		
		계	남	여
	매			
조사담당관직성명				㊞
조사담당자직성명				㊞

※조사구번호

조사통계국기입란				
	담당자 성명	㊞	책임자 성명	㊞
조사표검수				
내용검사				
재검사				
부호기입				
부호재검				
천공				
검공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서식 제17호)

(표지이면)

1970년 인구 및 주택센서스

종 합 표

(권중 호)

시 도 구 시 군

※ 행정구역순으로 철할것.

※ 각 시부는 10개동분을 1권으로 하고 군부는 관내 전 읍면을 1권으로 철할것

동. 읍. 면. 명	종합표매수		동. 읍. 면. 명	종합표매수	
1			11		
2			12		
3			13		
4			14		
5			15		
6			16		
7			17		
8			18		
9			19		
10			계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서식 제18호)

(표지이면)

1970년 인구 및 주택센서스

조사구요도 (권중 호)

시도			구시군		
동.읍.면.명	요도매수	조견폐지	동.읍.면.명	요도매수	조견폐지

구. 시. 군 담당자 성명 ㊞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서식 제19호)

추 천
임명보고
임명통지

1970년 인구 및 주택센서스 **조 사 원**

특별시 구 동
도 시 읍
군 면

주 소	성 명	성별	연령	학력 및 경력	담당 조사구번호	비 고

(서식 제20호) 경제기획원

임 명 장

성 명

1970년 인구 및 주택센서스 조사원을 명함

기간 1970년 9월 27일부터
10월 10일까지

1970년 9월 일

경제기획원장관 김 학 렬

(서식 제21호)

(전면)

발급번호 제 호

1970년 9월 26일 교부

지정통계조사원증

(직 명)

(성 명)

직무시행기일 자 1970년 9월 27일
지 1970년 10월 10일

지정 통계의 번호와 명칭 지정통계 제1호 인구센서스
제2호 주택센서스

경제기획원장관 인

(서식 제22호)

(이면)

통 계 법 초

제 9 조 (실지조사)
제10조 (비밀의 보호)
제11조 (통계목적 이외의 사용금지)
제20조 (벌 칙)
(생 략)
(생 략)

3.
4.

제21조 (벌 칙) ①

②

(서식제22호이면)

공 고

1970년 인구 및 주택센서스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사구를 설정하고 9월 27일부터 10월 10일 사이에 담당조사원이 주민여러분의 가구를 방문하여 조사할것임을 인구 및 주택센서스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하오니 주민여러분의 협조를 바랍니다.

조사구 번호	담 당 지 역	조 사 원 성 명

(서식 제23호)

1970년 월 일 동장
음장
면장 인

1970 인구 및 주택센서스
지정통계 제1호 및 제2호

보조조사표

(특별)시 도	구 시 군	동 읍 면	가 리	번지 호 (전화)

인구에 관한 사항

	이름	가구주와의 관계	성별	생년월일	혼인상태	교육 취학여부	교육 학력	문맹여부
	가구주와 가구원의 이름을 빠짐없이 기입하여주십시요	가구주와 어떤관계가 있읍니까? (예) 가구주. 처. 장남의처 차남의 장녀. 동거인 등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사실상의 나이와 생년월일을 기입하여 주십시요	사실상의 배우관계를 기입하여주십시요.	학교에 다니십니까 아니면 중퇴 또는 졸업하셨읍니까?	다음중 어디에 해당됩니까?	글을 읽고 쓸수 있읍니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1			1 남 2 여	나이 살 띠 생일 년 음 양 월 일	1 유배우 2 사별 3 이혼 4 미혼	1 재학 2 졸업 3 중퇴 4 안다녔음	1 국민학교 2 중학교 3 고등학교 4 초대전문 5 대학이상	1 안다 2 모른다
2								
3								
4								
5								
6								
7								
8								
9								
10								

경 제 기 획 원

주택에 관한 사항

모든 주택의 주가구가 기입하여야 할 사항(항목 ①~⑤)

① 건물의 건축시기
- 1 1945년 이전 (25년전)
- 2 1950년 이전 (20년전)
- 3 1960년 이전 (10년전)
- 4 1961년 이후 (10년후) ⟶ 19 년후

② 주택의 소유관계
- 1 자기집
- 2 셋 집
- 3 세없이 빌려든집.

③ 주택의 총방수 및 동거가구
1. 총 방 수…… 개…… 평
2. 주가구사용방수…… 개…… 평
3. 동거 가구의 수…… 개
4. 동거가구사용방수… 개…… 평

④ 주택의 총건평수
총건평 평

⑤ 이 가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문화시설 및 가재
- 1 재봉틀
- 2 라디오
- 3 테레비
- 4 전축
- 5 전화
- 6 냉장고
- 7 피아노 및 올갠

주가구이외의 모든 동거가구가 기입하여야 할 사항 (항목 ⑥~⑦)

⑥ 동거가구의 사용방수
개…… 평

⑦ 가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문화시설 및 가재
- 1 재봉틀
- 2 라디오
- 3 테레비
- 4 전축
- 5 전화
- 6 냉장고
- 7 피아노 및 올갠

(서식제24호)

인구 및 주택센서스 보조조사표 기입에 대하여

이번 10월 1일 영시를 기하여 정부에서는 전국 일제히 인구 및 주택센서스를 실시하게 됩니다. 이 조사는 정부의 중요한 시책에 필요한 기본통계 자료를 만들기 위하여 그간 1960년에 이어 두번째로 실시하는 것입니다.

여기 돌려드린 보조표는 시간의 절약과 조사에 정확을 기하기 위하여 조사전에 배부하여 드리는 것으로서 가구주(응답의무자) 되시는 분은 본 보조조사표의 기입사항을 빠짐없이 기입하여 두셨다가 조사당일 조사원이 방문하면, 이 보조표를 제시하여 주십시요. 조사원은 본 보조표를 참고로 하여 조사당일의 여러분들의 바쁜 시간을 최대한으로 단축하여 조사를 끝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끝으로 이 조사는 통계를 작성하기 위하여 조사하는 것이므로 세금이나 병역등 통계이의의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법률은 엄격히 보장하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응답자 되시는 분은 안심하시고 사실대로 정확하게 기입하여 주십시요

기 입 범 위

1. 인구에 대하여

1970. 10. 1.0시 현재 현거주지에 거주하는 가족은 물론 가사사용인 친척, 하숙생, 동거인, 영업사용인등 거주자 전원이 기입대상이 됩니다.

1970년 10. 1. 0시 현재 여행, 행상등 기타의 사유로 부재중이라 할지라도 부재기간이 3개월이상이 되지 않을 때는 평소거주한 곳에서 조사기입되어야 한다.

※ 단, 다음과 같은 특예가 있읍니다.

(가) 자택을 떠나 기숙사 또는 하숙집에서 통학하는 학생은 그 기숙사, 또는 하숙집에서 조사하여야 한다.

(나) 병원 또는 요양소등에 입원한 환자로서 3개월이상이 경과한 환자는 입원한 곳에서 조사하고 3개월 미만인자는 집에서 조사합니다 (일정한 주거가 없는 환자는 병원에서 조사합니다)

(다) 선박 및 항공기의 승무원은 전부 자택에서 조사합니다.

(라) 군인인 경우에는 계급여하를 막론하고 영내에서 거주하는 군인은 일반가구에서 조사하지 않습니다 (군 또는 부대에서 조사합니다)

단. 영외 거주의 군인은 일반가구에서 조사합니다.

(마) 교도소 수감자는 조사하지 않으며 경찰관서 유치중 형이 미확정된자는 수감되기 전의 평소 상태를 일반가구에서 조사합니다.

2. 주택에 대하여

1970. 10. 1 영시 현재의 주택 은 물론 모든 거처가 전부 해당됩니다 (주가구는 물론 셋집, 셋방에 거주하는 가구도 조사대상이 됩니다)

선박가구표시기 (백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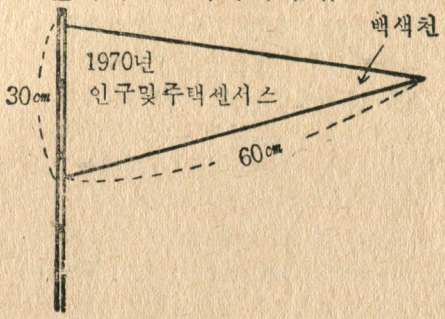

(서식 제25호)

(서식 제24호)

어업센서스조사대상어가구식별일람표

인구 및 주택센서스조사구 번호

시 구 동
도 시 읍 면

인구 및 주택 센서스 가구일련번호	주 소 (리. 번지)	가구주의 성 명	동력선 사 용		무동력선사용 5톤이상		무동력선사용 5톤미만		어선을 사용하지 않고 자영했다		고용살이만 했다 (자기 어업에는종사한일없다
①	②	③	④	일련번호	⑤	일련번호	⑥	일련번호	⑦	일련번호	⑧

주 : 1. 반드시 번호순서에 의해 물어야 한다.
번호순서가 우선 순위이다 ④ ⑤ ⑥ ⑦ ⑧ 번에 모두 해당되더라도 하나에만 ○표 한다

2. 일련번호는 시도에서 수산청의 지도를 받아 기재한다.

인구센서스조사원
성명 ㊞
동·읍·면장
성명 ㊞

관 계 법 령

통 계 법

법률제980호
1962년1월15일공포
법률제1215호
개정
1962년12월12일공포

제1조 (목적) 본법은 통계조사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조정하고 통계의 체계를 정비함으로써 통계의 진실성과 통계제도의 효율성의 확립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본법에서 지정통계라함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하는 통계 또는 기타의 기관에 위임하여 작성하는 통계로서 경제기획원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통계를 말한다.

②본법에서 일반통계라함은 지정통계이외의 각령으로 정하는 통계를 말한다.

제3조 (지정통계조사) ①지정통계를 작성하기 위한 조사(이하지정통계조사라 한다)는 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지정통계조사에 관하여 본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각령의 정하는바에 의한다.

제4조 (일반통계조사) ①일반통계조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조사 실시기관은 그 조사에 관하여 제6조 제1항 제1호의 사항을 미리 경제기획원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타기관(공법인에 한한다) 이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경제기획원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조사의 변경 또는 중지를 요구하거나 명할 수 있다.

제5조 (신고의무) ①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타기관의 장은 지정통계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개인 법인 기타의 단체에 대하여 통계자료의 신고를 명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의 명령을 받은 자가 미성년자나 금치산자인 경우에는 법인, 기타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 이사 기타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기타의 단체를 대표하는 자가 본인을 대리하거나 대표

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제 6 조 (지정통계조사의 승인과 실시) ①지정통계조사를 실시하고자할 때에는 조사실시기관은 그 조사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미리 경제기획원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제12조 단서의 규정에 해당할 때에는 제3호의 사항을 제외한다.

1. 조사목적, 사항, 범위, 기일 및 방법
2. 집계사항과 집계방법
3. 조사결과의 공포방법과 기일
4. 조사관계서류의 보존기간과 보존책임자
5. 조사경비의 개산액
6. 기타 경제기획원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받은 후 조사를 중지하거나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할 때에는 다시 경제기획원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경제기획원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타 기관의 장에 대하여 지정통계조사의 실시변경 또는 중지를 요구하거나 명할 수 있다.

제 7 조 (사무개선의 요구) 경제기획원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타의 기관이 실시하는 통계조사의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제 8 조 (통계조사원) ①지정통계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일선에서 조사하는 통계조사원을 둘 수 있다.

②본 통계조사원은 본법에 특히 규정한 것 이외에는 국가공무원법을 적용한다.

제 9 조 (실지조사) ①통계조사공무원은 지정통계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 들어가서 미리 경제기획원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항에 관하여 검사 또는 검사자료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관계자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다.

②통계조사공무원이 전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할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미리 관계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10조 (비밀의 보호) 통계조사의 결과 알려진 개인, 법인, 기타의 단체의 비밀은 보호되어야 한다.

제11조 (통계목적 이외의 사용금지) 누구든지 지정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통계자료를 통계상의 목적이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 (결과의 공표) 지정통계조사의 결과는 지체없이 그 원본을 경제기

획원장관에게 제출하여 협의한 후 공표하여야 한다.
단, 경제기획원장관의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공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3조 (보고의 조정)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타기관이 민간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일반통계조사를 하기 위하여 사용할 조사표 또는 보고서식은 미리 경제기획원장관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4조 (통계간행물의 조정) 지정 통계조사의 실시기관이 아닌 자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표된 결과를 복제하여 간행물로 발행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경제기획원장관에게 협의하여야 한다.

제15조 (자료등의 제출과 설명의 요구) 경제기획원장관은 본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각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기타의 기관의 장에 대하여 자료와 보고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구할 수있다.

제16조 (지정통계조사의 실시에 대한 협력) 지정통계조사의 실시자가 그 통계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기타의 기관의 장에 대하여 조사보고 기타의 협력을 요구할 수 있다.

제17조 (지정통계조사에 관한 사무위임) 정부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통계조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8조 (삭제)

제19조 (통계위원회) ①정부의 통계조사에 관한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며 건의하게 하기 위하여 경제기획원에 통계위원회를 둔다.
②통계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령으로 정한다.

제20조 (벌칙)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이하의 징역이나 5천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자.
2.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방해한 자.
3.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허위조사자료를 제공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한 자.
4. 지정통계조사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기타의 자로서 통계조사의 결과를 진실과 상반된 것으로 만드는 행위를 한자.

제21조 (벌칙) 통계조사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관하여 지득한 개인 법인 기타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도용한 때에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1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통계조사공무원이외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전항의 행위를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부 칙

① (시행일)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법령) 인구조사법 서기1939년11월 칙령제327호 자원조사법을 조선등에 시행하는 건과 서기1947년6월21일 군정법령제143호 농업통계보고령은 이를 폐지한다.

③ (경과규정) 본법시행후 3개월이내에 행하는 지정통계조사는 경제기획원장관이 승인하는 것에 한하여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받지 않고 이를 실시할 수 있다.

부 칙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통 계 법 시 행 령

각령제512호
1962년3월10일공포
개정 각령제1214호
1963년2월25일공포
개정 대통령령제1763호
1964년4월2일공포
개정 대통령령제2505호
1966년5월2일공포

제1조 (목적) 본 영은 통계법(이하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정통계의 고시) ① 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지정번호
2. 지정통계의 명칭
3. 조사실시기관명

②지정통계를 작성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조사표에는 전항에 고시된 지정번호와 지정통계의 명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3조 (일반통계조사의 신고) ① 일반통계의 조사실시기관은 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일반통계조사를 변경 또는 중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경제기획원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법 제4조 1항과 전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절차에 관하여는 경제기획원장관이 정한다.

제3조의2 (일반통계) 법 제2조2항에서 일반통계라 함은 정부,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대한상공회의소와 기타공법인이 집계제표할 것을 목적으로 신고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통계조사 또는 군이상의 구역에 있어서 집계 제표할 것을 목적으로 신고 보고 또는 자료의제출을 요구하는 다음 각호에 게기한 통계조사를 말한다.

1. 토지에 관한 통계조사
2. 인구, 가구 또는 주택에 관한 통계조사

3. 물가 또는 생계비에 관한 통계조사
4. 공중위생에 관한 통계조사
5. 고용, 실업, 또는 임금에 관한 통계조사
6. 상품의 판매, 납품액 또는 기업의 자금액에 관한 통계조사
7. 생산고, 원료, 동력과 연료의 소비량 또는 재고품의 수량에 관한 통계조사
8. 교육에 관한 통계조사

제4조 (통계조사원의 직무)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통계조사원은 지정통계조사 실시기관의 장과 그 소속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지정통계조사의 조사표배포와 수집 기타 지정통계조사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다.

제5조 (증표의 작성) 법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는 지정 통계조사실시기관의 장이 별지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제6조 (결과의 공표방법) ①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통계조사결과의 공표는 관보기타의 간행물에 게재하여 이를 행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보이외의 간행물로써 공표한 경우에는 조사실시기관은 당해간행물의 명칭과 발행년월일을 경제기획원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 (조사결과의 분류) ① 조사실시기관이 통계조사의 결과를 분류하여 표시할 때에는 경제기획원장관이 고시하는 표준분류의 기준과 기준분류표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실시기관이 사용한 분류 및 분류표의 명칭은 이를 통계조사결과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실시기관이 분류하기 곤란한 때에는 경제기획원장관의 동의를 얻어 이와 다른 분류를 할 수 있다.

제8조 (위임사무의 범위)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사무는 지정통계조사에 관한 선전, 계몽 조사표의 배부, 송부, 보관, 기타 지정통계조사의 실시에 따르는 사무로 한다.

제9조 (세칙) ① 본영에 규정한 것외에 통계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제기획원령으로 정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통계조사중 지정통계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주무부장관이나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또는 도지사가 정할 수 있다.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부장관이나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또는 도지사가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경제기획원장관의 동의

를 얻어야 한다.

부 칙

본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표 면)

별지서식

발급번호 제 호 년 월 일 교부

지정통계조사원증

(직 명)

(성 명)

자 년 월 일

직무시행기일

지 년 월 일

지정통계의 번호와 명칭

조사실시기관의장 인

(이 면)

통계법초

제 9 조 (실지조사) ① 통계조사공무원은 지정통계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 들어가서 미리 경제기획원 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항에 관하여 검사 또는 조사자료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관계자에 대하여 질문할수 있다.

② 통계조사공무원이 전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할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미리 관계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10조 (비밀의 보호) 통계조사의 결과 알려진 개인, 법인, 기타의 단체의 비밀은 보호되어야 한다.

제11조 (통계목적이외의 사용금지) 누구든지 지정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자료를 통계상의 목적이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0조 (벌칙) 다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이하의 징역이나 5천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생략)

3.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허위조사자료를 제공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한 자.
4. 지정통계조사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기타의 자로서 조사의 결과를 진실과 상반된 것으로 만드는 행위를 한 자

제21조 (벌칙) ① 통계조사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관하여 지득한 개인법인 기타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도용한 때에는 1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통계조사공무원 이외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전항의 행위를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인구 및 주택센서스 시행규칙

경제기획원령 제37호
1964년 9월29일공포
개정 경제기획원령 제52호
1970년 6월13일공포

제1조 (목적) 이 영은 통계법제 3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통계조사중 인구 및 주택센서스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이 영에서 "인구 및 주택센서스"라 함은 정부가 어느 특정시점에서 국내의 인구 및 주택의 실태와 가구의 거주실태를 계수적으로 파악하는 조사를 말한다.

② 이 영에서 "가구"라 함은 거주와 가계를 같이 하는 자의 모임을 말한다. 독신으로 독립하여 가계를 영위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이 영에서 "주택"이라 함은 구조면에서 하나의 가구가 독립하여 살 수 있도록 구획되어 있는 거주의 장소를 말한다.

④ 이 영에서 "상시거주"라 함은 거주한 기간 거주하려는 기간 또는 이를 통산한 기간이 3월이상이 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조사대상) ① 인구센서스의 대상은 조사일시를 기준으로 하여 대한민국의 영토내에 상시거주하는 대한민국국민 및 외국인으로 한다. 다만 외국인중 군인, 군속외교관과 국제연합 또는 외국정부의 공무로 체재중인 자와 그 가족은 예외로 한다.

② 주택센서스의 대상은 조사일시를 기준으로 하여 주택(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건물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조사한다. 다만, 외국의공관 기타 외국정부의 공적기관과 국제기관이 관리하고 있는 건물 또는 국군 및 유엔군의 병사, 경찰서, 유치장, 교도소, 소년원은 제외한다.

제4조 (조사년도) ①인구 및 주택센서스(이하 "조사"라 한다)는 끝자리 수가 영이 되는 해에 정기조사를 행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행한 후 5년이 되는 해에 간이 조사를 행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이외에 경제기획원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임시조사를 행할 수 있다.

제5조 (조사기준일시) ① 전조 제1항과 제2항의 조사를 10월1일 오전영시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이를 실시한다. 다만, 경제기획원장관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전항이외의 조사의 일시는 경제기획원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6 조 (조사사항) ①인구센서스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행한다.

1. 가구 및 개인특성에 관한 사항
2. 사회특성에 관한 사항
3. 출산력에 관한 사항
4. 교육에 관한 사항
5. 경제활동에 관한 사항

② 주택센서스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행한다.

1. 가구의 거주실태에 관한 사항
2. 주택의구조, 시설 및 그 특성에 관한 사항

③ 경제기획원장관은 조사 방법에 따라 전 2항의 조사사항을 변경 할 수 있다.

제 7 조 (조사방법) ① 인구센서스는 그 대상자가 상시거주하는 장소에서 가구를 단위로 하여 행한다. 다만, 상시거주하는 장소가 없는 자에 대하여는 현재의 장소에서 행한다.

② 주택센서스는 주택의 소재지 또는 가구의 거주 장소를 단위로 하여 행한다.

③조사는 가구주 또는 그 가구원중에서 조사원이 지정하는 자를 면접하여 조사표에 따라 행한다.

제 8 조 (조사표) ① 조사표는 제6조의 조사사항에 따라 설계작성하여야 한다.

② 인구센서스표는 일반조사구 조사표와 특별조사구 조사표로 구분한다.

제 9 조 (일반조사구의 설정)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및 도지사는 경제기획원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관내에 일반조사구를 설정하고 그 결과를 경제기획원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특별조사구) 국군의 부대와 선박, 교도소, 소년원, 경찰서의 유치장 등은 특별조사구로 한다.

제11조 (조사구의 공고) ① 시, 읍, 면장(이하 구청장을 포함한다)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된 소할 일반조사구에 구역번호를 붙여 조사실시 20일전에 10일이상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한 특별조사구에 대하여 당해 기관의 장은 그 조사구와 조사에 관한 사항을 당해 조사대상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제12조 (조사기간) 경제기획원장관은 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조사기간을 정하여 중앙일간 신문지에 2회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13조 (감독기관)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는 경제기획원장관의, 구청장 시장 또는 군수는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의 읍, 면장(서울특별시 또는 부산시에 있어서는 동장)은 구청장 시장 군수의 명을 받아 관내의 조사를 지휘·감독한다.

제14조 (조사지도원)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도지사 군수와 시, 읍, 면 장 및 동장은 소속직원중에서 조사사무에 종사할 자를 지도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15조 (조사원의 추천) ①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및 도지사는 소할 조사구를 담당할 조사원을 선정하여 경제기획원장관에게 추천한다.

제16조 (조사원의 재직후의 의무) 조사원은 퇴직후에도 재직시에 조사한 조사표의 내용에 관하여 조사사무를 관장하는 관서로부터 설명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에 응답하여야 한다.

제17조 (특별조사구의 조사) ①특별조사구의 조사대상자의 국군에 있어서는 부대와 선박에 상시 거주하는 자 교도소와 소년원에 있어서는 수감된 자, 경찰서에 있어서는 유치장에 유치된 자로 한다. 다만, 일반조사구에서 조사될 자는 예외로 한다.

② 특별조사구의 조사는 국군에 있어서는 국방부장관이, 교도소와 소년원에 있어서는 법무부장관이, 경찰서에 있어서는 내무부장관이 행한다.

③ 특별조사구의 조사단위는 국군에 있어서는 단위부대 또는 단위 함선을 교도소 소년원과 경찰서에 있어서는 단위교도소 단위소년원 단위경찰서를 각각 1조사구로 한다.

④ 특별조사구의 책임자는 그 소속직원중에서 1조사구마다 조사담당자를 선정하여 조사에 종사하게 한다.

⑤ 조사담당자는 조사가 완료된 조사서류를 정리하여 특별조사구의 책임자에게 특별조사구의 책임자는 경제기획원장관에게 소정기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 (조사서류제출)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및 도사지는 관내의 조사가 완료하는 대로 지도원의 조사서류에 대한 검토를 완료한 후 이를 종합하여 소정기일까지 경제기획원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 (조사결과의 공표) 경제기획원장관은 조사완료 후 지체없이 이를 집계·공표하되 인구수속보는 조사일시로부터6월이내에 공표하여야한다.

제20조 (조사서류의 보존) 경제기획원장관은 집계가 완료된 조사표를 다음 조사시까지 보존하고 집계결과보고서는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제21조 (사고의 조치) ①조사원은 천재 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조사기일내에 조사를 할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지체없이 경제기획원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경제기획원장관은 전항의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따로 기일을 정하여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1970년 인구 및 주택 센서스

조 사 구 설 정 요 령 서

경 제 기 획 원
조 사 통 계 국

차 례

1. **1970년 인구 및 주택 센서스 조사구 설정 개요**
   - 가. 목 적 ····· 2
   - 나. 설정 기간 ····· 2
   - 다. 설정 지역 ····· 2
   - 라. 설정 기관 ····· 2
   - 마. 조사구의 종류 ····· 3
   - 바. 설정 방법 ····· 3

2. **조사구 설정의 기준**
   - 가. 조사구 설정의 일반기준 ····· 4
   - 나. 보통조사구의 설정기준 ····· 6
   - 다. 준조사구의 설정기준 ····· 10
   - 라 특별조사구의 설정기준 ····· 11

3. **조사구 설정 요령**
   - 가. 조사구 설정용 기본도의 재수정 보완 ····· 12
   - 나. 조사구 분포도 작성 ····· 13
   - 다. 조사구의 가설정 ····· 14
   - 라. 조사구 설정 ····· 15
   - 마. 조사구 설정 승인 신청 ····· 18
   - 바. 조사구 요도의 작성 ····· 19

4. **검정 및 승인** ····· 21

5. **조사구 설정후의 조사구 수정 요령**
   - 가. 수정 범위 ····· 22
   - 나. 수정 기간 ····· 22
   - 다. 수정 방법 ····· 22

서 언

이번에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에서는 1970년 인구 및 주택센서스를실시 하기 위하여 전국전역에 걸쳐 조사구를 설정하게 되었읍니다.

이 조사구는 조사원 각자의 조사담당 구역을 명확히 하고 조사의 중복이나 누락을 방지하여 조사의 정확을 기함과 동시에 기타 각종 통계조사에 이용하기 위하여 설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조사구는 이번에 실시하는 인구 및 주택센서스 뿐만 아니라 기타 각종 통계조사『표본조사 및 전수 조사의 틀(Frame)을 결정』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대한 바탕이 되는 것이므로 이조사구가 가장 합리적으로 설정되어야 함은 더 말할 나위도 없읍니다.

그리하여 조사구 설정에 기본자료가 되는 기본도를 그간 수차에 걸쳐 수정해 왔으나 아직도 실지와의 지형지물이 충분히 보완 되지않은 감이 없지않아 있으므로 앞으로 더욱 정밀하게 수정보완해서 조사구 경계를 정하는 데에 있어 영구불변하고 누구든지 알수 있는 지형지물을 경계로하여 가장 합리적인 조사구를 설정하도록 이 업무를 담당하신 각 시도 관하 구, 시, 군, 동, 읍, 면에서는 이 요령서에 의거 조사구 설정 업무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70년 월 일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장

1. 1970년 인구 및 주택 센서스 조사구 설정 개요

가. 목 적

1970년 인구 및 주택센서스를 실시함에 있어서 조사원의 조사 담당구역을 명확히 하고 조사의 중복 누락을 방지하여 조사의 정확을 기함과 동시에 앞으로 실시되는 각종 통계 조사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사구를 설정하는 것임.

나. 설정 기간

조사구는 1970년 2월부터 5월 말까지 설정을 완료 하여야 한다. 단 조사구 설정후 현저(顯著)한 변동이 있어 부득이 조사구를 수정해야 할 때에는 9월 30일까지 수정을 완료 한다.

다. 설정 지역

대한민국의 영토 전역과 영해중 항만등에서 수상 생활자가 있는 연해(沿海)에 대하여 설정한다.

단 1970년 센서스 조사구 설정은 휴전선 이북의 북한(北韓) 지역만은 제외 한다.

라. 설정 기관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및 각 도지사는 경제기획원 장관의 지휘 감독을 받아 그 관할 구역내의 조사구 설정 업무에 관하여 구, 시, 군, 동, 읍, 면장을 지휘감독하며 따라서 구, 시, 군, 동, 읍, 면장은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및 각 도지사의 지휘감독을 받아 관할 구역내의 조사구 설정업무를 관장한다. 단 특별조사구인 국군 및 UN군의 부대에 있어서는 국방부장관이 교도소, 소년원 등은 법무부장관이 경찰서는 내무부장관이 각각 관장 설정한다.

마. 조사구의 종류

조사구는 일반조사구와 특별조사구로 나누고 일반조사구는 이를 다시 보통조사구와 준조사구로 나눈다.

(1) 일반 조사구

일반조사구라 함은 일반인이 거주하며 일반조사원의 활동이 자유스러운 육지와 수면지대를 말한다.

(가) 보통 조사구

보통조사구라 함은 일반인이 거주하며 조사원의 활동이 자유스러운 지역으로서 동, 읍, 면단위로 지형지물 또는 행정구역의 경계선 등을 이용하여 1 조사구를 60~80 가구식 분할 설정하는 일반적인 조사구를 말한다.

(나) 준조사구

준조사구라 함은 가구의 분포와 거주의 형태 또는 지역적으로 특수하여 보통조사구로서는 부적당한 육지 및 낙도 한지로서 50 가구 미만으로 설정하는 조사구이며 가구원 50 명 이상이 모여 사는 기숙사, 특수 사회시설등에 대하여 설정하는 조사구를 말한다

(2) 특별 조사구

특별조사구라 함은 거주 형태가 특수하며 일반인이 자유로이 출입 할 수 없는 지역으로서 국군의 부대와 함선(艦船)U. N. 군의 부대, 교도소, 소년원 경찰서에 대하여 설정하는 조사구를 말한다.

바. 설정 방법

(1) 일반조사구 (보통조사구 와 준조사구)는 각 동, 읍, 면 단위로 경제기획원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 및 각 도지사가 설정하고 이를 경제기획원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특별조사구인 국군부대와 U.N군의 부대에 대하여는 국방부장관이, 교도소 소년원은 법무부장관이, 경찰서는 내무부장관이 각각 소관별로 설정하고 이를 경제기획원장관에게 보고한다

(3) 조사구는 지도(基本圖)를 사용하여 설정한다. 단 특별조사구는 지도를 사용하지 않는다.

2. 조사구 설정 기준

가. 조사구 설정의 일반기준

(1) 조사구는 휴전선 이북의 북한지역을 제외한 대한민국 행정권이 미치는 전역에 대하여 동(行政洞) 읍 면별로 설정한다.

(2) 동, 읍, 면의 행정구역중 어떤 조사구에도 속하지 않은 곳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3) 동, 읍, 면의 경계가 명확하지 못한 지역에 대하여는 조사의 편의상 관계 동, 읍, 면장과 상호 협의하여 그 지역을 어느 편으로든지 포함 시키고 추호의 면적도 누락됨이 없도록 조사구를 설정하여야 한다.

(4) 일반조사구의 설정에 있어서는 준조사구인 기숙사 특수사회시설등을 먼저 설정한 다음에 보통조사구를 설정하고 최후에

한지(閑地) 지역을 설정한다.

(5) 조사구는 원칙적으로 지리적 경계가 명확한 지형 지물에 의하여 설정한다. 즉 지리적 경계가 명확한 지형 지물이라 함은 누가 보든간에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고 변화의 우려가 적은 지형지물로서 하천 도로 철도등과 같은 것을 말한다.

단 지리적으로 명확한 지형지물이 없는 지역이나 산악지대 광야 등에 대하여서는 산의 능선 전선 지번계 등을 이용하거나 뚜렷한 목표물에 의한 추상선(推想線) (직선 이라야 함) 등을 조사구의 경계로 하여도 좋으나 조사기간내는 물론 조사기간 후라도 조사구의 정확한 경계를 용이하게 찾아 낼수 있도록 설정 해야한다.

(6) 특별조사구는 그 조사단위의 관할에 준하여 설정한다.

(7) 1개의 조사구는 지속(地續)이어야 한다.

즉 하나의 조사구를 타조사구에 의하여 2 개 지역으로 분리되여서는 안된다.

(예도 1)

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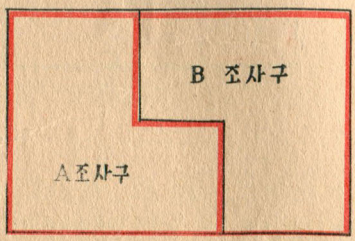

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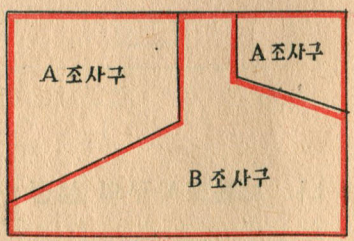

(8) 보통조사구는 타의 조사구내에 설정되어서는 안된다.

그러나 보통조사구내에 다른 특별조사구나 준조사구가 설정되는 것은 무방하다

(예도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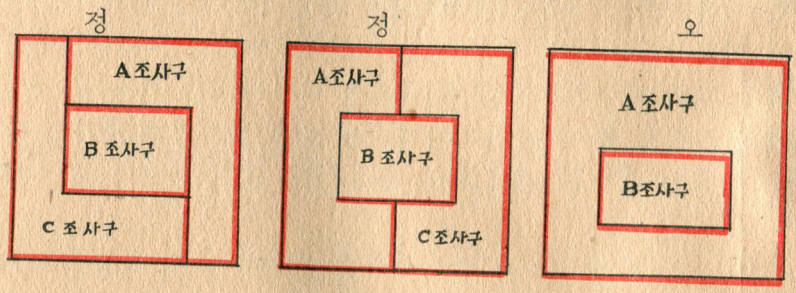

(예도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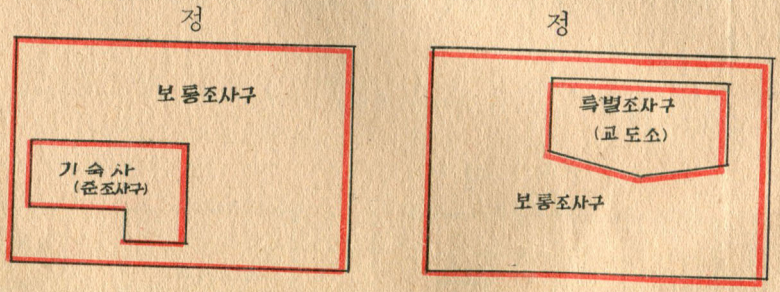

나. 보통조사구의 설정 기준

(1) 보통조사구는 동, 읍, 면단위로 일반인이 거주하는 지역

에 대하여 지형지물 또는 행정구역의 경계선등을 이용하여 정설하는 조사구로서 1 개 조사구의 면적을 $4km^2$ 이내의 범위로 분할 설정한다.

단, 가구가 산재하여 거리가 먼 지역이나 도서지역중 해상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대하여는 50~70 가구의 범위내에서 설정한다.

(2) 일반조사구는 동, 읍면, 단위로 설정해야 하므로 인접타 동, 읍, 면의 행정구역을 포함시켜 설정하여서는 안된다.

단, A 면에 인접한 B 면의 독립가구 또는 집단가구가 행정지시는 A 면에서 받고 있는 경우가 있을 때에는 A 면에 포함시켜 설정하고 B 면에 중복설정 않도록 연락을 취해야 하며 지도상에는 다음과 같이 표시해야 한다.

(예도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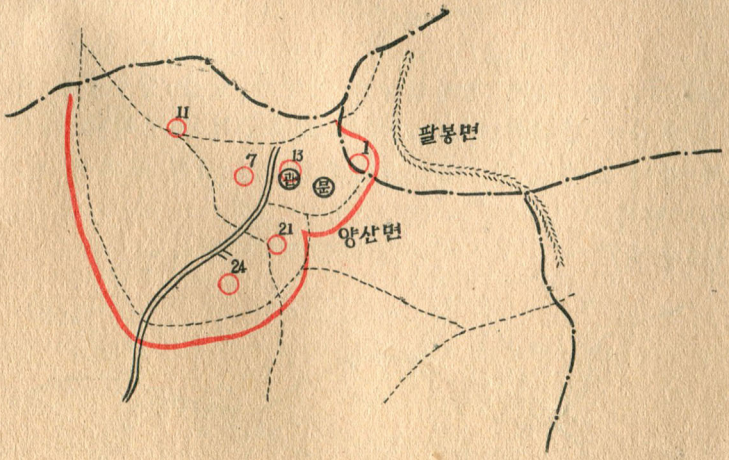

(3) 동일한 동, 읍, 면내의 통, 리등의 경계가 지형지물로서 뚜렷한 경우에는 이를 이용해도 좋으나 분명치 않을 경우에는 도로 하천등의 지형지물을 이용하여 조사구를 설정해야 한다.

(4) 합리적인 조사구를 설정하기 위해서 꼭 분할 해야 할 지점에 뚜렷한 지형지물이 없는 경우에는 지번(地番) 이나 특수한 목표물끼리 서로 마주 보이는 추상선(推想線) 등을 이용하여 설정하되 인접조사구 조사원 상호간에 그 경계를 명확히 알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예도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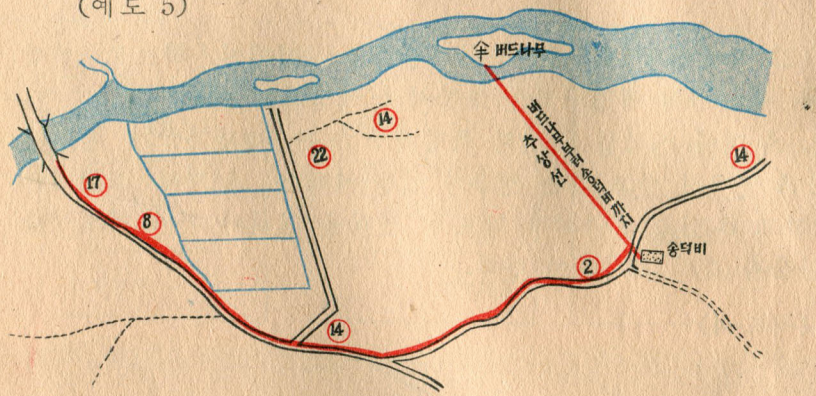

(5) 동, 읍, 면의 경계선상에 가구가 있을 경우에는 동, 읍, 면장 상호간에 협의하여 그 가구의 소속구역을 명확히 하고 다음 예도와 같이 소속된 동, 읍, 면쪽으로 포함시켜 조사구 경계표시를 해야 한다.

(예도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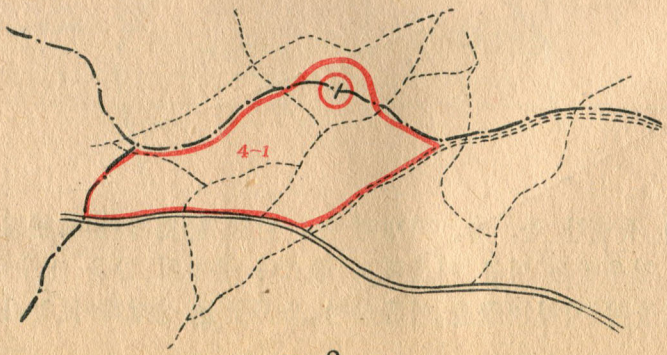

(6) 아파트 조사구는 그 가구수에 따라 동(棟)별 층별 또는 호실번호를 이용하여 설정하고 조사구 경계 표시는 하지 않는다.

단, 단동(單棟)의 아파트로서 70 가구 미만일 때에는 인접 일반 조사구에 포함시켜 설정한다.

(7) 도서중(島嶼中) 상주가구 60 가구 이상인 도서는 보통조사구로 설정하며 60 가구 미만일 경우에는 같은 행정구역의 인접 조사구에 포함시켜 설정한다.

(8) 항만 연해 등의선박 또는 수상건물에서 생활하는 가구는 그 가구에서 가장 가까운 일반조사구에 포함시켜 조사구를 설정하고 지도상에 가구표시는 물론 소속된 구역에 포함시키는 조사구계를 다음 예도와 같이 표시한다.

단 기숙사 특수사회시설에는 포함 시킬 수 없다.

(예도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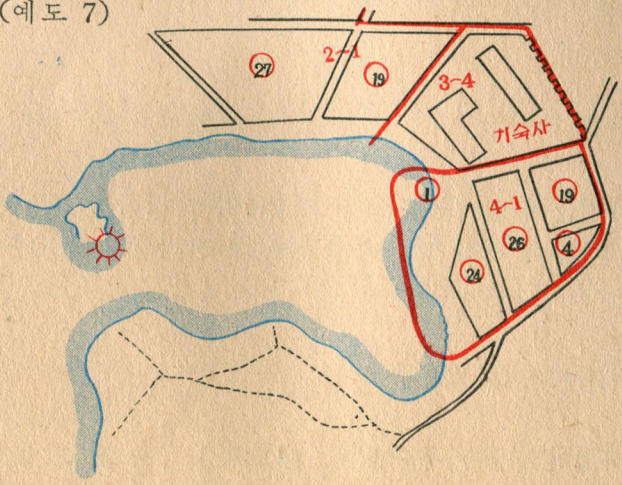

다. 준조사구의 설정 기준

준조사구라함은 일반인이 거주하는 지역중 가구의 분포와 거주의 형태 또는 지역적으로 특수하여 보통조사구로서는 부적당한 한지지역, 낙도, 기숙사, 특수사회시설등에 대하여 설정하는 조사구를 말하며 이를 다음과 같이 구분 설정한다.

(1) 육지 한지(閑地) 조사구

산악 삼림(森林) 광야등의 한지 지역으로서 그 조사구당 면적이 4 km^2 이상이며 상주가구가 극히 드문지역에 대하여 설정한다

(2) 락도 한지 조사구

50 가구미만이 거주하는 유인도중 육지 (濟州道와 鬱陵島는 제외) 로부터 정기선박으로 왕복 5시간 이상 걸리는 도서에 대하여 설정한다.

(3) 기숙사 조사구

학교, 관공서, 회사, 단체 등에서 관리하는 기숙사로서 기숙하는 사람 50 명 이상 집단으로 거주하고 있는 기숙사에 대하여 설정한다.

(4) 특수사회시설 조사구

특수사회시설이라함은 특수병원, 양호시설, 수용소 등으로서 정부에서 법적으로 인정한 다음과 같은 시설이나 이와 유사한 사

회시설들을 말하며 이를 각 시설단위로 설정한다.

(가) 생활보호법에 의한 구호시설 및 갱생시설

예. 양노원, 불구원, 재활원

(나) 아동복리법에 의한 보호시설

예. 보육시설(고아원), 정신박약아시설, 맹롱아 양호시설, 신체허약아 보호시설, 모자보호시설, 불양아보호시설, 소년직업 보도시설, 교호(教護)시설

(다) 병원, 요양소 및 수용소

예. 결핵병원, 나병환자수용소, 결핵환자 요양소

(라) 기 타

예. 윤락여성 직업보도시설, 수녀원, 사법보호회(司法保護會)등

라. 특별조사구의 설정 기준

(1) 거주의 형태가 특수하여 일반이 자유로이 출입할 수 없는 지역으로서 국군의 부대와 함선 주한 UN군의 부대 교도소, 소년원, 경찰서가 있는 지역 및 시설에 대하여 설정한다.

(2) 특별조사구의 구역은 각 조사 단위가 점유한 관할구역으로 하여 설정한다.

(3) 1 개 조사구는 육, 해, 공군의 중대단위 병원, 학교, 함선과 교도소, 소년원, 경찰서의 단위로 설정한다.

(4) UN군의 부대 주둔지역은 국군부대의 설정기준에 준하여 설정한다.

(5) 특별조사구가 있는 동, 읍, 면에서는 조사구, 분포도에 특별조사구가 점유하고있는 경계선에 적선으로 표시만 하고 그 안에 군, 경찰서, 교도소, 소년원 등과 같이 주서로 기입 하여야 한다.

3. 조사구 설정 요령

가. 조사구 설정용 기본도의 재수정 보완

각 동, 읍, 면 에서 수정 보완 작성된 70 년 센시스 조사구 설정용 기본도를 조사통계국에서는 그 내용을 엄밀히 심사하고 다시 70 년 1 월말까지 각 동 읍 면에 배부한다.

동, 읍, 면 에서는 이 기본도를 심사표에 지적된 사항을 다음 요령에 의하여 재수정하고 조사구 설정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

(1) 조사통계국에서 작성된 지도에 보완 수정된 지형지물이 몇군데에 불과하거나 전혀 수정되지 않은 기본도는 그 사실여부가 의심되므로 현지를 재확인하고 충분한 지형지물을 보완할것.

(2) 1 개 ○내에 30 가구 이상 가구를 표시한 지역은 우선 이를 분할 할 수 있는 지형지물을 보완하고 지형별로 각각 30 가구 이하가 되도록 표시 할것.

(3) 5㎜ 적색 ○내에 가구수 기입을 흑색 또는 청색 잉크로 표시된 것은 연필로 기입할것.

(4) 가구수의 증감에 대하여는 그 이유를 확인해 볼 것이며 기본도의 일차 보완이후 가구의 증감 또는 지형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이를 현재대로 수정할것.

(5) 기본도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청사(青寫) 하여 사용하게 되므로 수정된 곳이 많아 정하지 못한 기본도는 다시 정사(淨寫) 작성해야 한다.

나. 조사구 분포도 작성

기본도에 현재 실지대로 가구 및 지형지물의 보완 수정이 완료되면 조사구 분포도 용지에 기본도의 내용을 다음 요령에 의해서 2 부를 전사 작성한다.

(1) 전사 방법

기본도와 조사구분포도 용지의 구김살을 펴서 기본도를 밑에 놓고 그 위에 전사지를 네귀가 꼭 맞도록 탁상위에 밀착 시킨 다음 연필로 정확히 전사 한다. 단, 가구분포 표시와 수정된 부분의 실지 없는 지형지물은 전사 하지 않는다.

(2) 지도의 축척(縮尺)과 북방(北方) 표시등을 기본도와 같이 빠짐없이 표시한다.

(3) 전사가 완전히 끝난 다음 전사지를 떼기 전에 투명이 흐려서 누락된 곳이 없는가 확인한 연후에 전사지를 뗀다.

(4) 이와 같은 전사가 끝나면 전사한 분포도에 채색(彩色)을 하되 기본도와 일일히 대조 하면서 선의 굵기, 색도, 기호등을 기본도와 똑같이 성의껏 그려야 한다.

다. 조사구의 가설정

중앙지도원으로 부터 조사구의 검정을 받기 위하여 각 동읍면에서는 조사구 설정기준에 의거 기본도의 가구분포와 지리적조건을 감안해서 조사구 경계가 될 지형지물 위에 연필로서 다음에 의하여 가설정을 한다.

(1) 기본도에 조사구 가설정을 할 때에는 연필 이외의 색으로 표시해서는 아니 된다.

(2) 조사구는 기준가구수와 지리적 조건에 구애를 받지 않는한 되도록이면 자연부락 단위를 살려서 설정한다.

(3) 조사구계를 추상선으로 이용할때는 읍면에 있어서 부득이한 경우에만 사용하고 각시의 동은 추상선을 이용 해서는 아니 된다.

(4) 특별조사구 및 준조사구중 기숙사, 특수사회 시설등은 그 점유하고 있는 지형 그대로 연필로 가설정하면 된다.

(5) 가설정한 조사구별 가구수를 기록하여 검정을 받을때 제시 해야 한다.

(예도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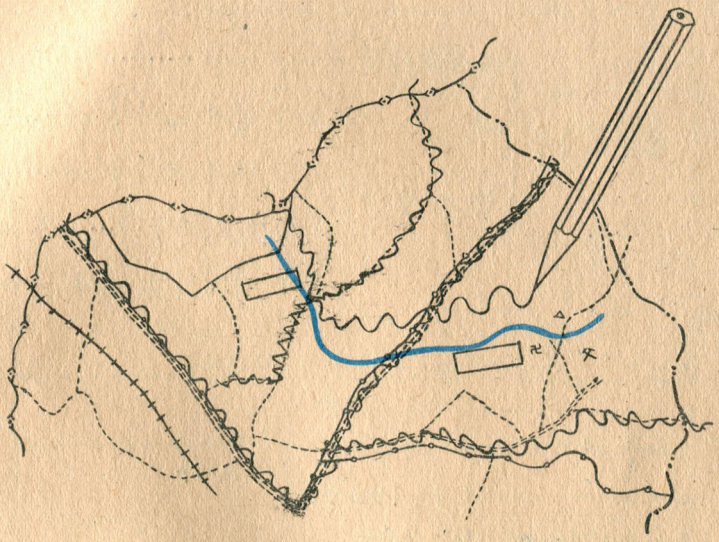

라. 조사구 설정

중앙지도원의 검정이 끝나면 조사구 분포도에 다음 요령에 의하여 조사구를 설정한다.

(1) 조사구 경계

조사구 경계는 검정을 받은 기본도의 가설정선대로 조사구 분포도에 적색 싸인펜으로 지형지물에 따라 조사구경계 표시를 한다.

(2) 조사구 번호의 기입 방법

설정된 일반조사구에 동, 읍, 면별로 제 1 번부터 시작하여 일련번호를 기입하고 일반조사구의 종류별 명칭을 간단히 표기하기 위해서 다음 지정기호를 조사구 일련번호 옆에 부기해야 한다.

- 일반조사구
  - 보통조사구 ……1
  - 준조사구
    - 육지 한지 조사구 ……2
    - 락도 한지 조사구 ……3
    - 기숙사 조사구……4
    - 특수 사회시설 조사구 ……5

예 시

1 — 1……보통조사구
2 — 3……락도 한지 조사구
3 — 2……육지 한지 조사구
4 — 5……특수사회시설조사구
5 — 4……기숙사 조사구
(준 조사구)

(예도 9)

낙 도 ×× 기숙사 ×× 고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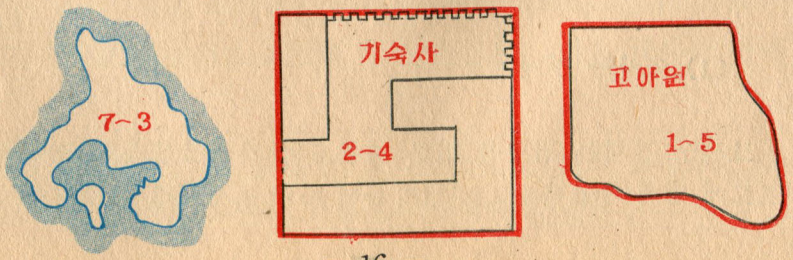

(3) 1 개의 동, 읍, 면이 수매의 조사구 분포도로 그려져 있을지라도 모두 합쳐서 연속적으로 조사구 번호를 부친다.

(예도 10)

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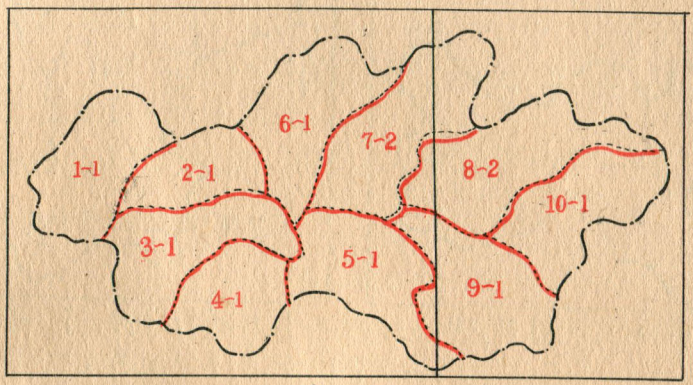

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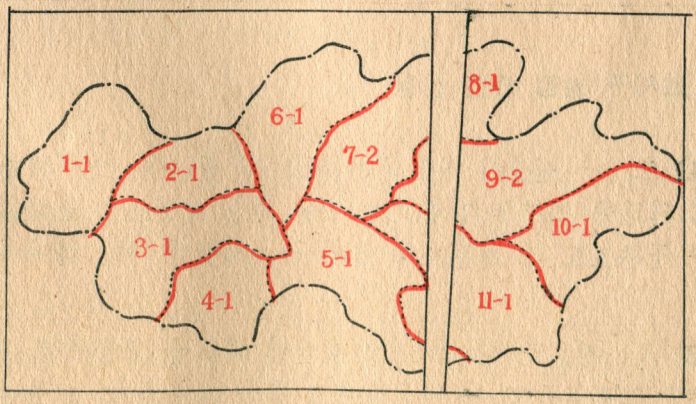

(4) 조사구 번호 기입순서는 다음 예도와 같이 상단 좌측으로 부터 시작하여 Z형 또는 N자형 순으로 기입해 나가야 한다.

(예도 11)

N 자형 순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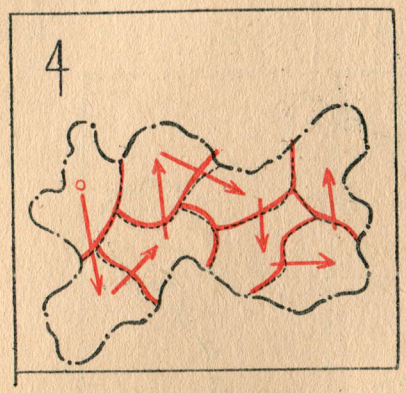

Z 자형 순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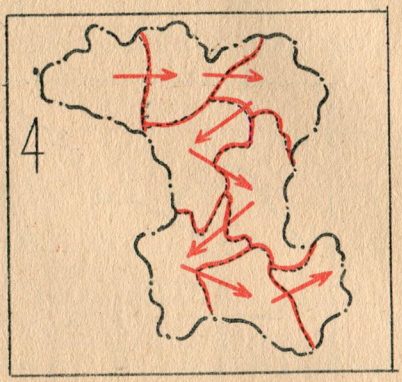

마. 조사구 설정 승인 신청

(1) 조사구 설정이 완료되는 대로 각 동, 읍, 면에서는 소정 서식에 의하여 조사구 일람표 2 부을 작성 일부는 보관하고 일부는 조사구분포도 및 기본도와 함께 구, 시군에 제출 하여야 한다

(2) 구, 시, 군에서는 소정 서식에 의하여 행정구역 순으로 조사구수 일람표를 2 부 작성하여 1 부는 보관하고 1 부는 동, 읍, 면에서 제출된 조사구 일람표 및 조사구 분포도와 함께 시, 도에 제출한다.

단, 조사구 설정 기본도는 조사가 끝날 때 까지 구, 시,군에서 보관하고 실사가 끝난후 조사 서류와 같이 제출한다.

(3) 시, 도에서는 이를 행정구역 순으로 시도 조사구수 일람표 2 부를 작성 1 부는 보관하고 1 부는 구, 시, 군에서 제출된 관계서류와 함께 경제기획원 장관에게 제출과 동시에 조사구 설정 승인 신청을 하여야 한다.

바. 조사구 요도의 작성

각 동, 읍, 면에서는 조사구 설정이 완료되는 대로 다음 요령에 의거 조사구 요도를 2 부 작성하여야 한다.

(1) 동, 읍, 면 지도원이 작성하는 사항

(가) 동, 읍, 면의 센서스 전담지도원은 조사구 설정이 완료되는 대로 조사구 분포도에 설정된 각 조사구별로 조사구 요도를 작성한다.

(나) 이 조사구 요도는 조사구 분포도에 설정된 조사구의 크기가 조사구 요도 용지에 알맞도록 적당한 크기로 확대 또는 축소하되 조사구내의 전가구를 표시할 수 있도록 그려야 한다.

(다) 가구가 밀집되어 전가구표시가 곤란할 때에는 에도와

같이 밀집 지역을 부분확대하고 가구가 전혀 없거나 드문 곳은 축소해서 그리고 양단부분에 축척과 북방표시를 각각 기입해야 하며 분단선을 정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라) 확대 또는 축소하는 방법은 조사구 분포도 및 조사구 요도의 정사각형 눈금에 의하여 작성한다.

(마) 동읍면 지도원이 작성하는 조사구 요도는 조사구계, 지형지물 주요 목표물, 특수건물 등 만을 작성한다.

단 조사구내의 전 가구분포 및 상세한 지형표시는 준비 조사시 조사원이 작성하므로 지도원이 작성하지 않는다.

(예도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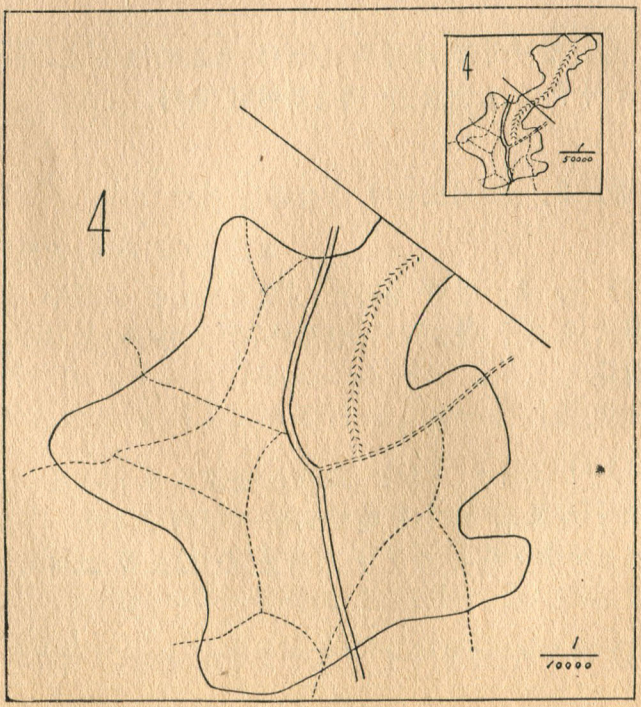

4. 검정 및 승인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및 각도 지사로 부터 제출된 조사구 설정 승인신청 관계서류를 경제기획원장관은 다음 요령에 의거 이를 검정하고 승인 조치한다.

(가) 조사구의 각 종류별 설정이 기준대로 설정 되었는가를 검정하여 불합리한 점이 있으면 이를 수정한다.

(나) 조사구의 각 종류별 번호의 기입 및 기타 기재사항의 정확여부를 검정한다.

(다) 조사구계가 명확한 지형지물에 의하여 설정 되었는가를 검정한다.

(라) 기타 설정요령에 위배되는 점이 없는가를 검정한다.

5. 조사구 설정후의 조사구 수정 요령

조사구 설정후 동, 읍, 면내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미 설정된 조사구의 수정이 필요할 때는 구, 시, 군에서 보관중인 기본도에

의하여 수정한다.

가. 수정 범위

(1) 조사구 설정후 동, 읍, 면 경계의 변경이 있었을 경우.

(2) 구획정리 도로 하천등의 신설 개수(改修) 재해(災害) 등으로 인하여 기정(旣定) 조사구 경계의 지형지물에 변동이 생겼을 경우.

(3) 시설의 신설 또는 폐지로 인하여 조사구의 특성에 변동이 생겼을 경우.

(4) 조사구내의 가구수에 현저한 증감이 생겼을 경우.

나. 수정 기간

조사구 설정 완료후로부터 9 月 30 日까지.

다. 수정 방법

(1) 동, 읍, 면의 경계 변경이 있을 경우.

(가) 타 동, 읍, 면으로부터 편입된 지역은 우선 기본도에 편입 지역을 연결해서 정확히 그리고 가구분포 표시를 한다음 편입지구를 포함한 조사구 분포도를 재작성해야 하며 조사구 설정

기준에 의하여 편입지구만을 재 설정하거나 인접조사구에 병합설정한다.

이때 편입된 지역의 조사구 번호는 인접 조사구에 병합 했을때는 그 조사구 번호 그대로 두고 신설조사구는 그 동, 읍,면의 끝번에 이어서 붙여야 한다.

기본도에 표시 방법은 다음 예도와 같다.

(예도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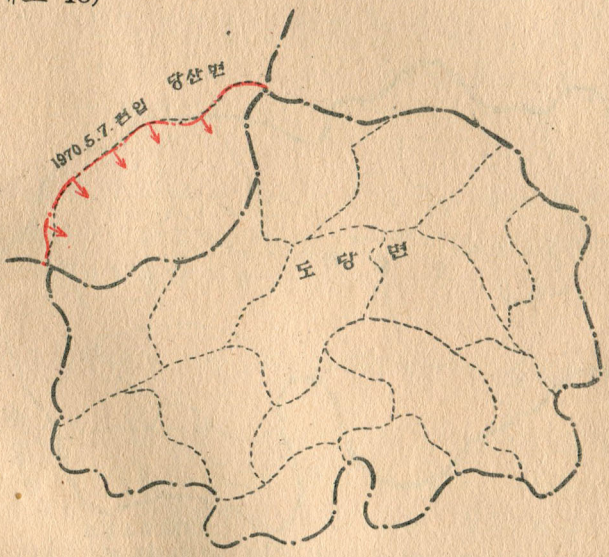

(나)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해서 동, 읍, 면의 일부가 분할되어 나갔을 때는 기본도를 다음 예도와 같이 수정하고 분할부분을 제외한 조사구 분포도를 재작성 한다.

1) 기정조사구의 경계선을 따라서 분할되었을 때는 그 지역의 조사구 번호는 무조건 결번으로 한다.

2) 기정 조사구의 경계를 침범 했을 때는 침범당한 조사구끼리 통합해서 합리적으로 재설정하거나 인접조사구에 편입 설정한다.

3) 조사구 번호는 기정 조사구 번호를 적절히 이용하고 나머지 없어진 조사구 번호는 모두 결번으로 한다.

(예도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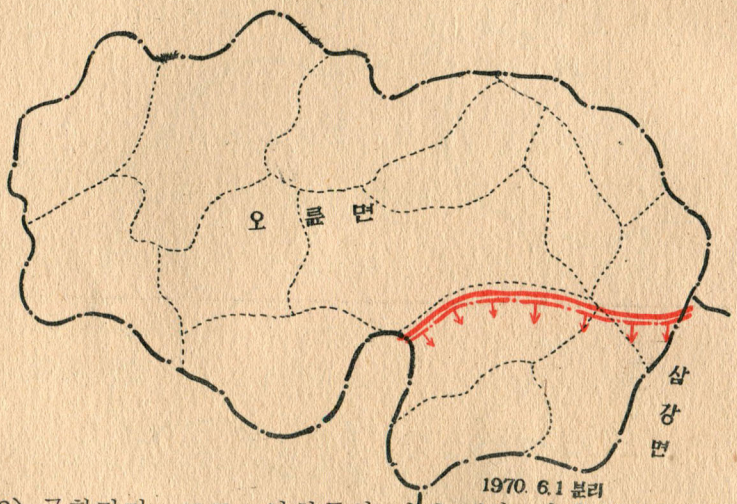

(2) 구획정리, 도로, 하천등의 신설 개수 재해(災害) 등으로 인해서 이미 설정된 조사구 경계의 지형지물에 변동이 생겨 재설정이 필요 할 때는 기본도에 변경된 지형지물과 가구 표시를 수정하고 그 변경지역 조사구만 통합해서 새로 생긴 지형과 변동 가구의 증감을 감안하여 재 설정한다.

조사구를 수정했을 때는 조사구 분포도를 재작성 해야 하며 조사구 번호는 먼저 순서대로 붙여야한다.

이때 조사구가 줄었을 때는 어느 번호 이든간에 결번 조치하고

늘었을 경우는 맨 끝번 다음에 이어서 붙여야 한다.

(3) 시설의 신설 또는 폐지로 인하여 조사구의 특성에 변동이 생겼을 경우

(가) 준조사구에 해당하는 특수 사회시설 또는 기숙사 등이 조사구 설정후 동, 읍, 면내에 신설 되었을 때에는 그 점유지형 그대로 기본도 보완을 한 연후 준 조사구를 설정하고 조사구 분포도는 재작성할 필요없이 이미 작성된 분포도에 표시만 하고 조사구 번호는 맨 끝으로 돌린다.

(나) 또한 이에 반해서 폐지 되었을 때는 기본도와 분포도에 삭표(削標)만 하고 조사구번호는 결번(缺番)으로 한다.
단 폐지(廢止) 지역은 어느 조사구에든지 포함 시켜야 한다.

(4) 조사구내의 가구수에 현저한 증감이 생겼을 경우.

(가) 조사구 설정후 조사구내의 가구수가 급격한 증가로 2 개 조사구 이상으로 증설이 필요 할 때는 기본도상의 가구의 분포를 수정하고 설정기준에 따라 분할 설정 해야 하며 증설된 조사구의 번호는 맨 끝번 다음부터 붙여야 한다.

(나) 이에 반해서 가구수가 감소되어 1 개 조사구로서의 기준가구 미달로 존치(存置) 할 수 없을 때에는 인접 조사구와 병합해서 합리적인 조사구로 조정 설정하고 없어진 조사구 번호는 결번으로 한다.

(다) 수정 조사구에 대한 관계서류 제출
각 동 읍 면에서 이미 설정된 조사구를 수정 또는 재설정 하였을

때는 즉시 다음 서류를 작성하여 경제기획원 장관에게 재승인 신청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조사구 수정 보고서
2) 조사구 일람표
3) 조사구 분포도

(작성예시)

조사구일람표

1970년 인구 및 주택 센서스

시
도

조사구수							가구수	지도매수
총수	보통조사구	준조사구						
	①	계(2~5)	②	③	④	⑤		
12	7	5	2	1	1	1	621	14

조사구번호	가구수	소재지	비고
1 ~ 1	72	문양리 1~192	
2 ~ 1	76	문양리 193~511	
3 ~ 2	42	온성리	산악지대
4 ~ 1	70	귀문리 1구	
5 ~ 1	75	귀문리 2구	
6 ~ 4	1	웅치리	삼산광산기숙사(59명)
7 ~ 2	35	웅치리	산악지대
8 ~ 1	68	도당리	
9 ~ 1	76	인지리	
10 ~ 5	1	인지리	천복고아원(60명)
11 ~ 1	74	설천리	
12 ~ 3	31	조도리	낙도

(서식 제13호)

1970년 월 일

구
시 동읍면장 ㊞
군

(예시)

구, 시, 군조사구수일람표

1970년 인구 및 주택 센서스

시도 _____

행정구역명	조사구수 총수	보통조사구 ①	준조사구 계(2—5)	②	③	④	⑤	지도매수	비고
총 계	134	125	9	4		3	2	12	
산내면	15	11	4	1		2	1	1	
동 면	16	15	1			1		1	
회덕면	17	17						2	
북 면	9	9						1	
구촉면	13	10	3	2			1	1	
탄동면	15	15						1	
유성면	11	11						2	
진잠면	18	18						1	
기성면	10	10	1	1				1	
유천면	9	9						1	

(서식 제15호)

1970년 월 일

구청장
구 시장
시 군수
군 인

(예시)

시, 도조사구수일람표

1970년 인구 및 주택 센서스

시
도

행정 구역명	조사구수 총수	보통조사구 ①	준조사구 (계 2—5)	②	③	④	⑤	지도매수	비고
총 계	2,197	2,167	30	12	4	7	7	215	
전주시	296	291	5			2	3	42	
군산시	155	152	3		1	1	1	15	
이리시	150	146	4			2	2	12	
완주군	155	154	1	1				13	
진안군	151	149	2	2				14	
무주군	133	129	4	4				12	
장수군	118	115	3	3				11	
임실군	168	167	1	1				15	
남원군	183	182	1			1		18	
순창군	141	140	1	1				14	
정읍군	203	201	2			1	1	18	
고창군	132	131	1		1			12	
부안군	212	210	2		2			19	

(서식 제16호)

1970년 월 일

시 장
도지사 인

(작성예시)

조사구 수정 보고서

1970년 인구 및 주택 센서스 ____ 시 도

구조사구 번호	신조사구 번호	수정 사유 및 내용	비 고
1 ~ 1	결 번	행정구역 개편으로 분리	××면에편입
2 ~ 1	〃	〃	〃
3 ~ 2	3 ~ 2		
4 ~ 1	4 ~ 1		
5 ~ 1	5 ~ 1		
6 ~ 1	6 ~ 1		
7 ~ 4	결 번	기숙사 폐지로 인하여 가구원 해산	
증	8 ~ 4	4~1 내에 고아원 신설	원아 70명
증	9 ~ 1	6~1 내에 가구증가로 증설	

(서식 제17호)

1970년 월 일 구 시 군 동읍면장 인

조사구 설정 관계서류의 작성 및 보관 제출 일람표

해당지역	작성서류명	작성자	작성부수	보관자 및 보관부수				제출기일
				조사통계국	시및도	구, 시, 군	동, 읍, 면	
전국	조사구 일람표	동, 읍, 면	2	1			1	1970. 5. 30까지
	구, 시, 군 조사구수 일람표	구, 시, 군	2	1		1		〃
	시, 도 조사구수 일람표	시, 도	2	1	1			〃
	기본도	동, 읍, 면에서 수정보완	1	1		실사시까지보관		조사서류 제출시
	조사구 분포도	동, 읍, 면	2	1			1	1970. 5. 30
	조사구 요도	동, 읍, 면 및 조사원	2	1			1	조사서류 제출시
조사구수정지역	조사구 일람표	동, 읍, 면	2	1			1	수정 즉시
	조사구 수정보고서	〃	2	1			1	〃
	조사구 분포도 (재 작성분)	〃	2	1			1	〃

조사구관계지도의 축척과 면적에 대한 조견표

지도의 축척	調査區關係 地圖用紙上의 正四角形 한칸의 1邊(cm)에 縮小되어있는 實際의 길이(m)	實際面積 1 平方粁의 地域을 正四角形으로 그렸을 때의 1邊의 길이(cm)	實際面積 1 平方粁의 地域을 正四角形으로 그렸을때의 칸(1cm 平方) 의 個數	實際面積0.1平方粁의 地域을 正四角形으로 그렸을 때의 1邊의 길이(cm)	實際面積0.1平方粁의 地域을 正四角形으로 그렸을때의 칸(1cm 平方) 의 個數
(1)	(2)	(3)	(4)	(5)	(6)
1/1,000	10	100.0	10,000	31.6	1,000
1/2,000	20	50.0	2,500	15.8	250
1/3,000	30	33.3	1,111	10.5	111
1/4,000	40	25.0	625	7.9	63
1/5,000	50	20.0	400	6.3	40
1/6,000	60	16.7	278	5.3	28
1/7,000	70	14.3	205	4.5	20
1/8,000	80	12.5	156	4.0	16
1/9,000	90	11.1	123	3.5	12
1/10,000	100	10.0	100	3.2	10
1/12,000	120	8.3	69	2.6	7
1/12,500	125	8.0	64	2.5	6
1/13,000	130	7.7	59	2.4	6
1/15,000	150	6.7	45	2.1	5
1/20,000	200	5.0	25	1.6	3
1/25,000	250	4.0	16	1.3	1.6
1/30,000	300	3.3	11	1.0	1.1
1/50,000	500	2.0	4	0.6	0.4

부도 1 조사구 가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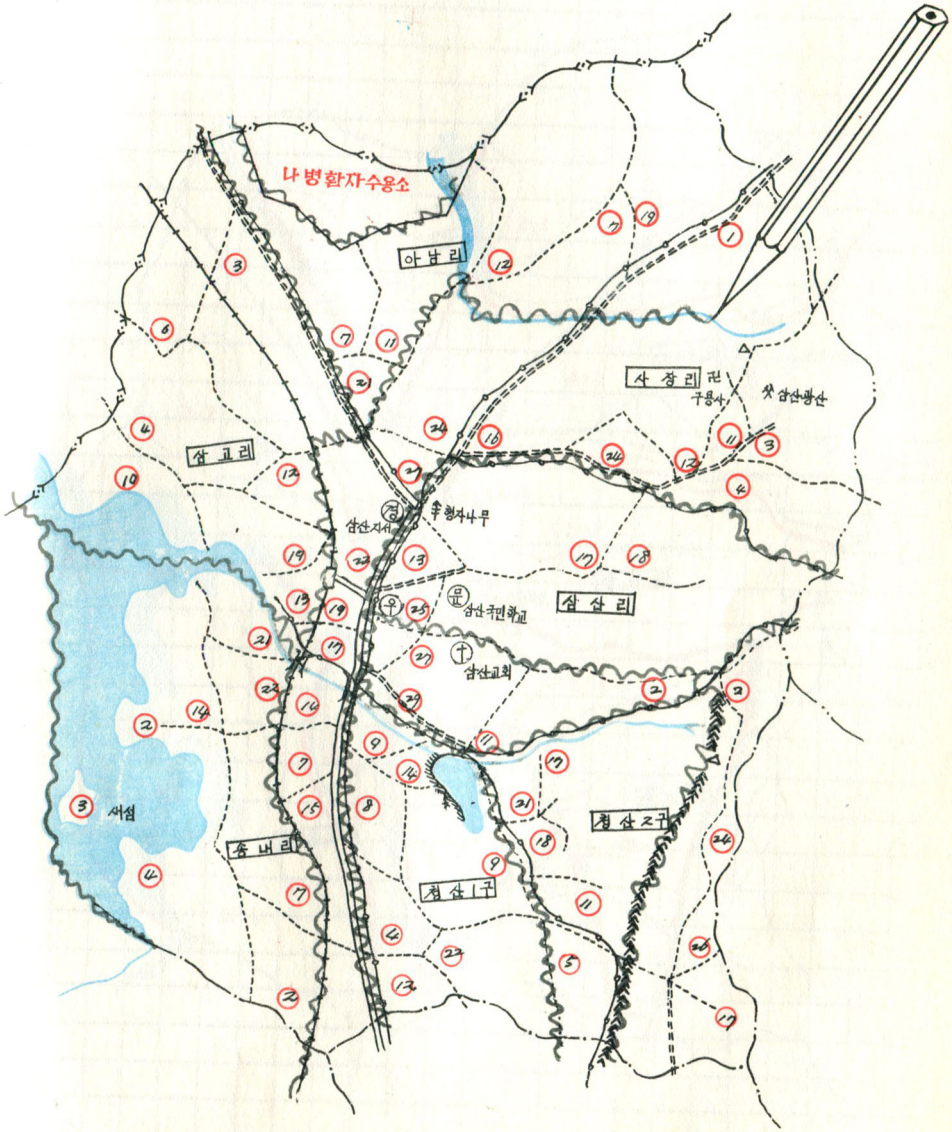
나병환자수용소
아남리
사창리
귀
구용사
삼산광산
삼교리
삼산지서
행자나무
삼삼리
삼산국민학교
삼산교회
서섬
송내리
청산1구
청산2구

부도 2

조사구 분포도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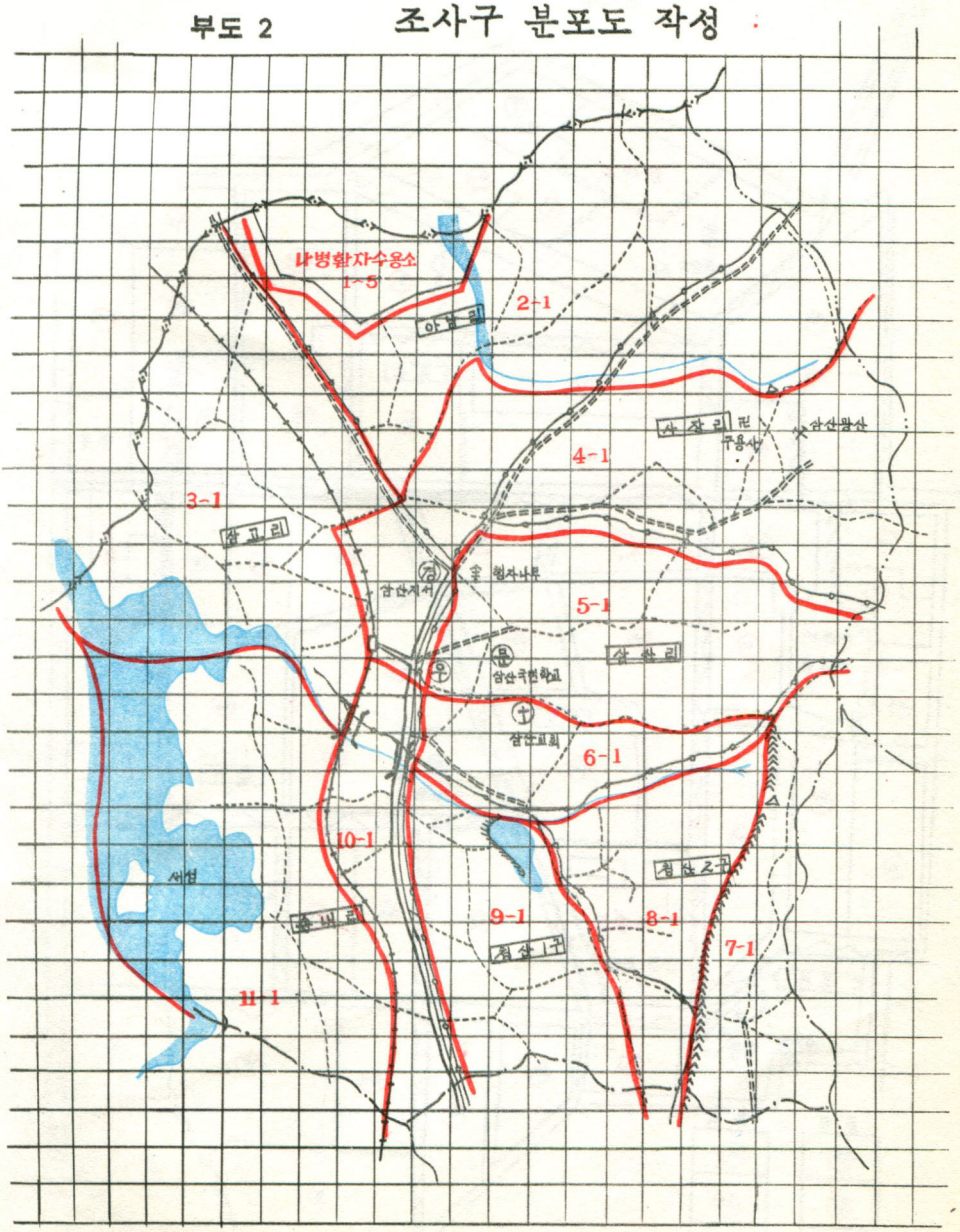

부도 3

조사구 가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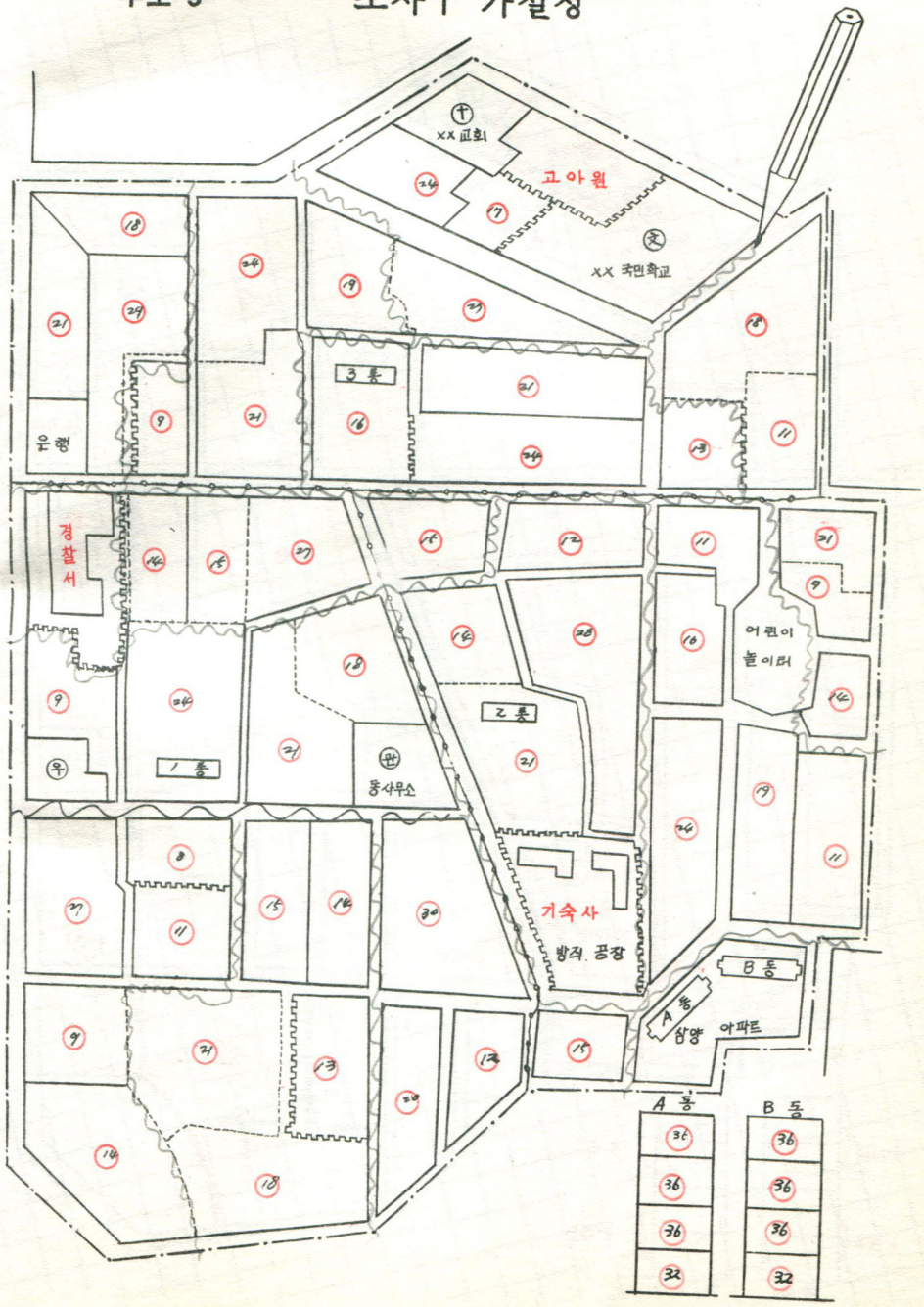

XX 교회
고아원
XX 국민학교
3 통
은행
경찰서
어린이 놀이터
2 통
1 통
동사무소
기숙사
방직 공장
B 통
A 통
삼양 아파트
A 통
B 통

부도 4

조사구 분포도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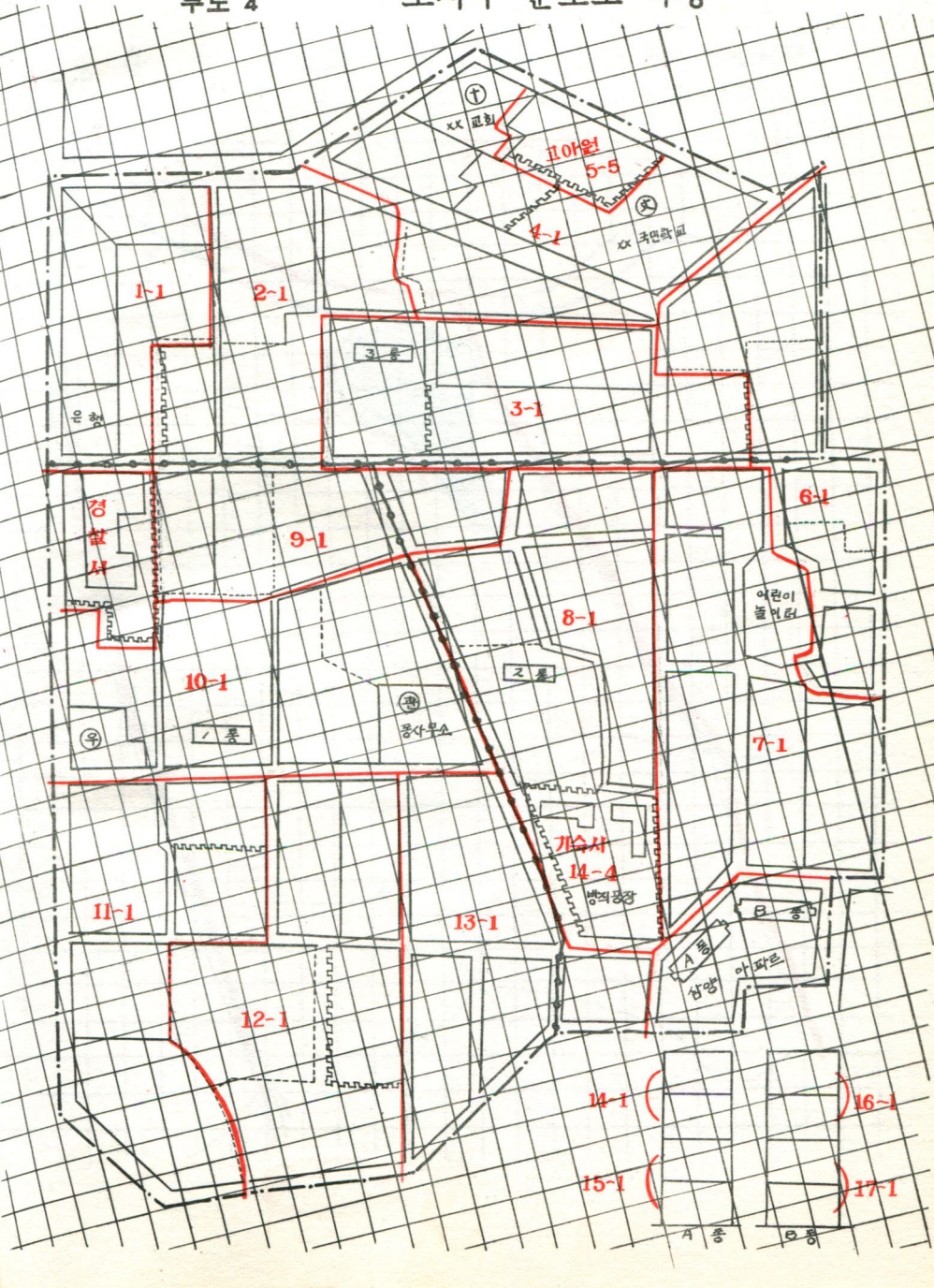

부도 5 읍, 면, 지도원이 작성하는 요도 (9-1 조사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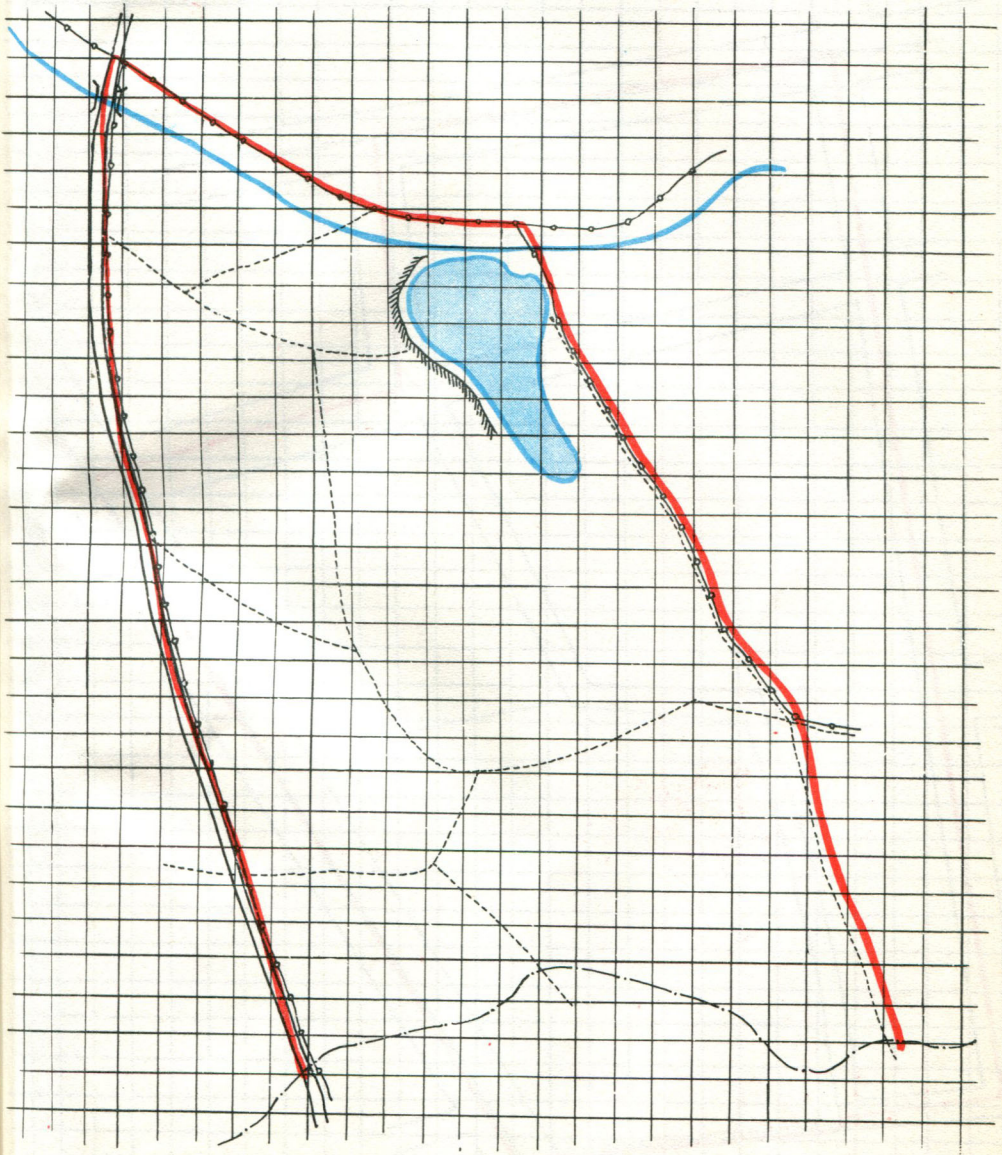

부도 6 동 지도원이 작성하는 요도 (8-1 조사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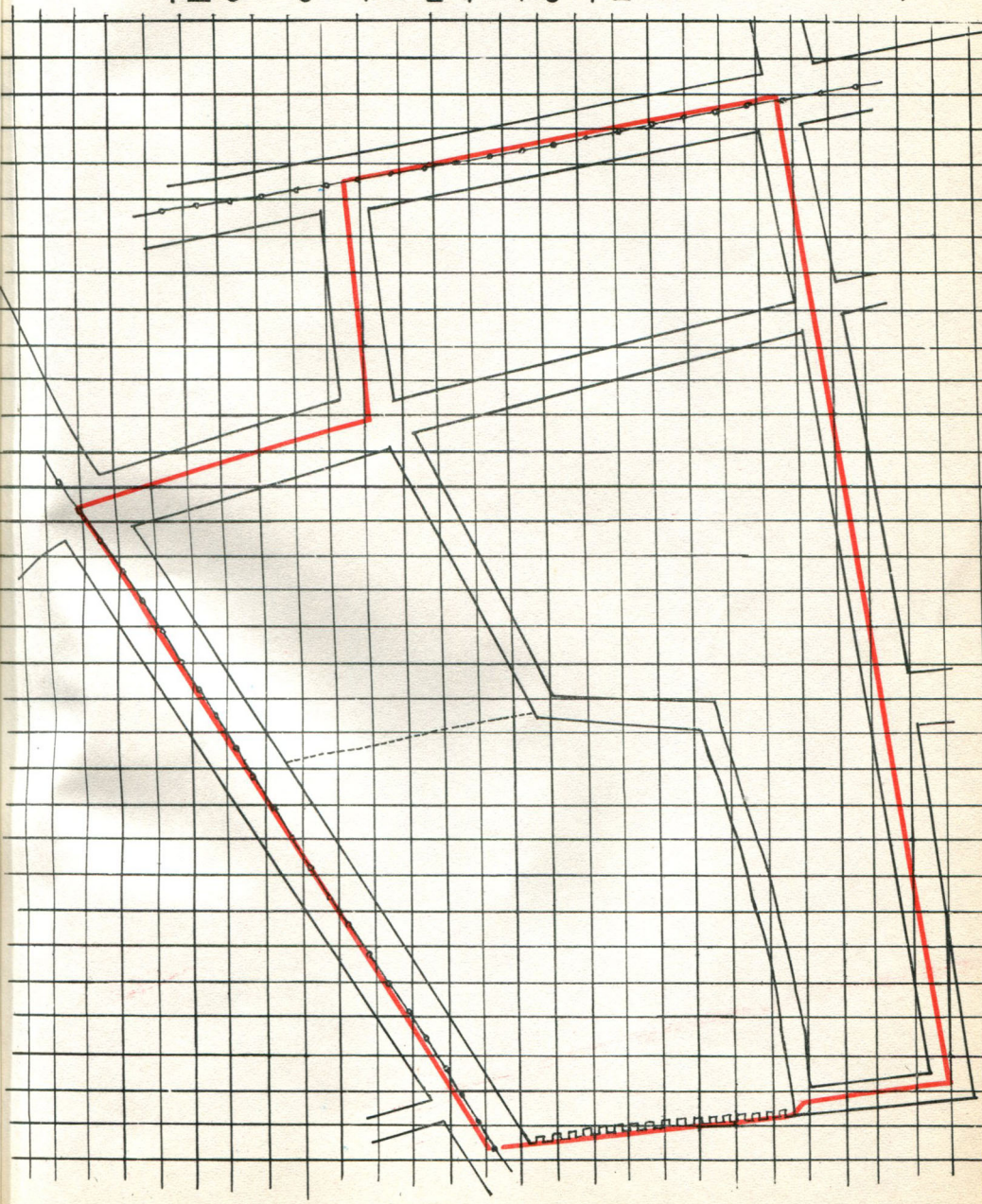

1970년 인구센서스

특별조사구조사요령서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1970년 인구센서스

특별조사구조사요령서

차 례

1. 조사의 기준 ……7
가. 기준시점 및 조사기간 ……7
(1) 기준시점 ……7
(2) 조사기간 ……7
나. 조사구(조사구단위)의 설정 ……7
다. 조사대상 ……7
(1) 국방부의 특별조사구 ……7
(2) 법무부의 특별조사구 ……8
(3) 내무부의 특별조사구 ……9
2. 조사표 작성 ……9
가. 조사방법 ……9
나. 일반적 유의사항 ……10
(1) 조사구명 ……10
(2) 구 분 ……10
(3) □□매중 □□매 ……10
(4) 조사담당자 직, 성명, 인 ……10
다. 조사사항 ……10
(1) 이 름 ……10
(2) 성 별 ……11
(3) 생년월일 ……11
(4) 혼인상태 ……11
(5) 취학여부 ……11

구에서 조사한다.

(마) 전속 이동 중인 군인은 다음과 같이 조사한다.

1) 기준일(10월 1일) 전날까지 (9월 30일까지)에 출발한 사람은 전속되는 부대에서 조사한다. 따라서 조사 최종일까지에 새로 전입된 군인에 대하여는 전 소속특별조사구에서의 출발일자와 조사여부를 본인에게 확인하여 추가조사를 하여야 한다.

2) 기준일(10월 1일) 후에 출발하는 군인은 전 소속특별조사구에서 조사한다.

(바) 제대특명을 받고 10월 1일 후에 소속되었던 조사구를 떠난 사람은 제대전 소속특별조사구에서 조사한다.

(사) 새로 입영하는 사람으로 9월 30일까지에 자기 집을 떠난 사람은 부대에서, 10월 1일 후에 자기집을 떠난 사람은 자기집에서 조사한다. 다만, 새로 입영하여 신체검사 불합격으로 귀가하게 되는 경우, 신체검사 불합격자가 조사당시 특별조사구내에 있으면 그 특별조사구에서 조사한다.

(아) 10월 1일 국군의 날 행사로 차출된 행사요원은 원소속부대에서 조사한다.

(2) 법무부의 특별조사구

(가) 수형자(受刑者) 및 보호소년

1) 9월 30일까지에 형(刑) 또는 보호처분이 확정되어 수용중인 수형자 및 그의 대동 유아와 원생(院生)

2) 호송중인 수형자 또는 원생은 출발된 날이 9월 30일 이전일 때에는 호송목적지 소속특별조사구에서, 10월 1일 이후인 때에는 전소속특별조사구에서 조사한다. 타 기관과의 인계인수도 같다.

3) 9월 30일 전에 석방 또는 퇴원 키로 확정된 사람이라도 10월 1일 현재 수용중인 사람은 그 특별조사구에서 조사한다.

4) 수용중 도망한 사람은 10월 4일 까지에 재수용된 사람만을 조사한다.

5) 형집행정지자, 귀휴자, 외출자, 보석중인 자 등이 10월 4일까지에 복귀하였을 경우 일반조사구에서 조사되었는가를 확인하여 조사를 받치 아니하였을 때에는 추가조사하여야 한다.

(나) 미결수용자 또는 가위탁 소년

미결수용자 또는 가위탁 소년은 10월 1일 0시 현재의 사람만을 전부 조사한다.

(3) 내무부의 특별조사구

(가) 10월 1일 0시 현재 경찰서의 유치인 중 형이 확정된 자 및 일정한 주소가 없는 자를 조사한다.

(나) 이미 형이 확정되어 수용중인 사람을 교도소로 부터 일시 인수중 수용하였거나 대용감방에 수용중인 사람을 조사한다.

(다) 기준 시점 현재 수사를 위하여 이동 또는 연행중의 사람은 이동목적지 연행목적지의 특별조사구에서 조사한다.

2. 조사표 작성

가. 조사방법

이 조사는 담당 조사원이 자기 담당조사구내의 대상자에게 질문하여 기입하는 타계식조사이며 조사표는 1매당 15인씩 조사할 수 있도록 연기식으로 되어있다.

나. 일반적 유의사항

난외사항의 기입

(1) 조사구명

국방부의 특별조사구에 있어서는 지정된 조사구명 또는 조사구 번호를, 법무부와 내무부의 특별조사구에 있어서는 수원교도소, 서울소년원, 공주경찰서 등으로 기입한다.

(2) 구 분

육군, 해군, 공군, 해병, 수형자, 원생, 미결수용자, 가위탁 소년 등으로 기입한다.

(3) □□매중 □□매

각 특별조사구 단위로 총매수 중 몇번째인가를 기입한다. 법무조사구 및 내무조사구에 있어서는 수형자분과 미결수용자분을 구분하여 2권으로 작성한다.

(4) 조사담당자 직, 성명, 인

매 장마다 실지로 조사를 담당한 사람의 직명 및 성명을 기입하고 날인한다.

다. 조사사항

이름, 성별, 생년월일, 혼인상태, 취학여부, 학력, 자기본가의 현주지의 7개항목을 조사한다. 질문의 순서는 먼저 이름, 성별, 나이와 생년월일, 혼인상태, 취학여부, 학력을 물은 다음 마지막으로 자기 본가의 현주지를 묻는다.

(1) 이 름

(가) 성명의 기입은 성(姓)은 한자(漢文)로 기입하고 이름은 한글로 기입하여도 무방하며 기입순서는 계급순, 거실순, 연령순 등 차례의 기준을 정하여 누락이나 중복됨이 없도록 한다.

(나) 국방부 특별조사구의 조사에 있어서는 영외에 거주하는 군인에 대하여는 계급 여하를 불문하고 해당 행번호에 ○표를 하여야 한다.

(2) 성 별

남녀를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해당 번호난에 ○표한다. 남자는 ①, 여자는 ②

(3) 생년월일

나이는 호적과는 관계없이 사실상의 나이를 기입하여야 한다.

출생 월일은 음력이나 양력에 관계없이 기입하되 음력, 양력을 구분하여 해당난에 ○표를 하여야 한다.

(4) 혼인상태

혼인상태는 호적(혼인신고여부)과는 관계없이 사실상의 혼인상태를 해당번호난에 ○표한다.

여기서 유배우란 현재 남편이나 처가 있는자를 말하고, 사별은 배우자중 어느 한편(남편이나 처)이 사망하여 현재 독신으로 있는 자이며 이혼은 현재 이혼을 하였거나 사실상 배우자와 별거하고 있는 사람을 말하며 미혼은 아직 혼인한 사실이 한번도 없는 사람을 말한다.

(5) 취학여부

군인에 있어서는 현재 또는 입대전의 학력, 기타에 있어서는 수용전, 유치 또는 보호되기 전의 취학 여부를 물어서 재학, 졸업, 중퇴, 안다녔음 중 해당 번호난에 ○표를 한다.

단, 사관학교의 사관생도만은 재학으로 하되 기타 군인계 특수학교는 입대전 또는 특수학교에의 입교전 취학상태를 기입한다.

(6) 학 력

⑤란 취학여부에서 ①재학 ②졸업 ③중퇴에 해당되는 사람은

부 록

(비)

지정통계제1호
1970년 인구센서스

특별조사구조사표

조사구명 (기관명)		구분		매 중 一 매

	① 인적사항			④	⑤ 교육		⑥ 정도	⑦	⑧ 현주지		
	이름	② 성별	③ 생년월일	혼인상대	취학여부	학력	문맹여부	자기본가의 특별시, 도, 직할시,	구, 시, 군	동, 읍, 면
	여기있는 분들의 성명은 무엇입니까?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에) ①남	사실상의 나이와생년월일을 말씀하여 주십시요.	사실상의 배우관계를말씀하여주십시요.	학교에 다니십니까? 아니면 중퇴 또는 졸업하셨읍니까?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됩니까?	글을읽고 쓸수있읍니까?	가족들이 살고 있는 집의 소재지를 기입하시요.		
1		[1] 남 [2] 여	나이 세 년 월 일 음 양	[1]유배우 [2]사별 [3]이혼 [4]미혼	[1]재학 [2]졸업 [3]중퇴 [4]안다녔음 →	[1]국민학교 [2]중학교 [3]고등학교 [4]초대전문 [5]대학이상 →	[1]안다 [2]모른다	시 도	구 시 군	동 읍 면 가
2										
조사담당자직성명										
15										

(인)

경제기획원조사통계국

(비)

지정통계 제1호
1970년 인구센서스

국방부
법무부
내무부

특별조사구요계표

(매중 매)

특별조사구단위명칭 (통 상 명 칭)	단 위 소 재 지 (행정구역부호)	조사표 매 수	인 원 계	남	여	비 고
계						

1970년 월 일

작성기관장 인

관 계 법 령

통 계 법

법률 제980호 1962년 1월 15일 공포
개정 법률 제1215호 1962년 12월 12일 공포

제 1 조 (목적) 본법은 통계조사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조정하고 통계의 체계를 정비함으로써 통계의 진실성과 통계제도의 효율성의 확립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정의) ①본법에서 지정통계라 함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하는 통계 또는 기타의 기관에 위임하여 작성하는 통계로서 경제기획원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통계를 말한다.

② 본법에서 일반통계라 함은 지정통계이의의 각령으로 정하는 통계를 말한다.

제 3 조 (지정통계조사) ① 지정통계를 작성하기 위한 조사(이하 지정통계조사라 한다)는 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지정통계조사에 관하여 본법에 규정한 것 의에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4 조 (일반통계조사) ① 일반통계조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조사실시 기관은 그 조사에 관하여 제 6 조제 1 항제 1 호의 사항을 미리 경제기획원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타기관(공법인에 한한다) 이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경제기획원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사의 변경 또는 중지를 요구하거나 명할 수 있다.

제 5 조 (신고의무) ①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타기관의 장은 지정통계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개인 법인 기타의 단체에 대하여 통계자료의 신고를 명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의 명령을 받은자가 미성년자나 금치산자인 경우에는 법인, 기타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 이사, 기타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기타의 단체를 대표하는 자가 본인을 대리하거나 대표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제 6 조 (지정통계조사의 승인과 실시) ① 지정통계조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조사실시기관은 그 조사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미리 경제기획원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제12조 단서의 규정에 해당할 때에는 제 3 호의 사항을

제외한다.

1. 조사목적, 사항, 범위, 기일 및 방법
2. 집계사항과 집계방법
3. 조사결과의 공표방법과 기일
4. 조사관계서류의 보존기간과 보존책임자
5. 조사경비의 개산액
6. 기타 경제기획원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받은 후 조사를 중지하거나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시 경제기획원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경제기획원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타 기관의 장에 대하여 지정통계조사의 실시변경 또는 중지를 요구하거나 명할 수 있다.

제 7 조 (사무개선의 요구) 경제기획원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타의 기관이 실시하는 통계조사의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제 8 조 (통계조사원) ① 지정통계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일선에서 조사하는 통계조사원을 둘 수 있다.

② 본통계조사비는 본법에 특히 규정한 것 이외에는 국가공무원법을 적용한다.

제 9 조 (실지조사) ① 통계조사공무원은 지정통계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 들어가서 미리 경제기획원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항에 관하여 검사 또는 검사자료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관계자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다.

② 통계조사공무원이 전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할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미리 관계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10조 (비밀의 보호) 통계조사의 결과 알려진 개인, 법인, 기타의 단체의 비밀은 보호되어야 한다.

제11조 (통계목적 이외의 사용금지) 누구든지 지정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통계자료를 통계상의 목적 이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 (결과의 공표) 지정통계조사의 결과는 지체없이 그 원본을 경제기획원장관에게 제출하여 협의한 후 공표하여야 한다.

단, 경제기획원장관의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공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3조 (보고의 조정)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타기관이 민간에 대하여 정기적

으로 일반 통계조사를 하기 위하여 사용할 조사표 또는 보고서식은 미리 경제기획원장관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4조 (통계간행물의 조정) 지정통계조사의 실시기관이 아닌자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표된 결과를 복제하여 간행물로 발행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경제기획원장관에게 협의하여야 한다.

제15조 (자료등의 제출과 설명의 요구) 경제기획원장관은 본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각 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기타의 기관의 장에 대하여 자료와 보고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16조 (지정통계조사의 실시에 대한 협력) 지정통계조사의 실시자가 그 통계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기타의 기관의장에 대하여 조사보고 기타의 협력을 요구할 수 있다.

제17조 (지정통계조사에 관한 사무위임) 정부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통계조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8조 (삭제)

제19조 (통계위원회) ①정부의 통계조사에 관한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며 건의하게 하기 위하여 경제기획원에 통계위원회를 둔다.

② 통계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령으로 정한다.

제20조 (벌칙) 다음 각 1호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이하의 징역이나 5천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자.
2.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방해한 자.
3.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허위조사자료를 제공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한자.
4. 지정통계조사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기타의 자로서 통계조사의 결과를 진실과 상반된 것으로 만드는 행위를 한 자.

제21조 (벌칙) 통계조사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관하여 지득한 개인 법인 기타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도용한 때에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1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통계조사공무원이의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전항의 행위를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부 칙

① (시행일) 본법은 공포한날로 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법령) 인구조사법 서기 1939년 11월 칙령 제327호 자원조사법을 조선등에 시행하는 건과 서기 1947년 6월 21일 군정법령 제143호 농업통계보고령은 이를 폐지한다.

③ (경과규정) 본법 시행후 3개월 이내에 행하는 지정통계조사는 경제기획원장관이 승인하는 것에 한하여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받지않고 이를 실시할 수 있다.

부 칙

본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인구 및 주택센서스시행규칙 초

경제기획원령제37호 1964년 9월 29일 공포
개정 경제기획원령제52호 1970년 6월 13일 공포

제10조 (특별조사구) 국군의 부대와 선박, 교도소, 소년원, 경찰서의 유치장 등은 특별조사구로 한다.

제17조 (특별조사구의 조사) ① 특별조사구의 조사대상자는 국군에 있어서는 부대와 선박에 상시 거주하는 자, 교도소와 소년원에 있어서는 수감된 자, 경찰서에 있어서는 유치장에 유치된 자로 한다.

다만, 일반조사구에서 조사될 자는 예외로 한다.

② 특별 조사구의 조사는 국군에 있어서는 국방부장관이, 교도소와 소년원에 있어서는 법무부장관이, 경찰서에 있어서는 내무부장관이 행한다.

③ 특별조사구의 조사단위는 국군에 있어서는 단위부대 또는 단위함선을 교도소 소년원과 경찰서에 있어서는 단위교도소, 단위소년원, 단위경찰서를 각각 1조사구로 한다.

④ 특별 조사구의 책임자는 그 소속직원중에서 1조사구마다 조사담당자를 선정하여 조사에 종사케 한다.

⑤ 조사 담당자는 조사가 완료된 조사서류를 정리하여 특별조사구의 책임자에게, 특별조사구의 책임자는 경제기획원장관에게 소정기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1970년 총인구 및 주택조사

조 사 요 령 서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1970년 총인구 및 주택조사

조 사 요 령 서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머 릿 말

1970년 총인구 및 주택조사는 우리정부가 수립된 후 다섯번째로 맞이하는 기본통계조사입니다.

더욱이 이번 조사는 국내적으로는 지난 10년간 변모된 한국의 발전상을 파악하고 조사결과에 입각한 통계적 사실에 의하여 정부활동을 분석평가하여 70년대의 번영을 위한 보다나은 한국의 미래상을 구축하는데 그 기본목적이 있으며 국제적으로는 국제연합의 권고에 의한 매 10년마다의 세계총인구 및 주택조사 계획의 일환으로서 국제통계에 기여하게 되는 매우 뜻 깊은 조사인 것입니다.

이번조사에서 수집되는 우리나라의 인구 및 주택의 규모, 분포 및 구성 그리고 국민의 경제활동, 주생활실태등 여러가지 긴요한 통계 자료를 생산하게 되어 국민 복지를 궁극목표로 하는 정부의 경제, 사회, 문화, 보건, 후생등 제분야에 있어서의 정책 수립과 그 평가를 위한 기본자료로 이용될 것입니다.

국민의 생활수준향상을 바탕으로 하는 70년대의 번영을 성취시키기 위하여 정부는 성공적인 1,2차 경제개발계획에 이어 1972년을 착수연도로 하는 제3차 경제개발 계획을 준비하고 있읍니다. 국가를 구성하는 국민과 그들의 생활기반인 주택에 관한 상태를 파악하는 이번 조사는 이러한 경제개발 계획의 초석이 될 것이며 조사의 성공여부는 바로 한국의 장래 계획을 보다 촉진 또는 지연시키는 근본적 요소가 될 것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중대한 국가적 사업을 위하여 지난 몇년간 치

밀하고 합리적인 제반계획을 수립하여 이번 조사에 임하게되었읍니다.

그러나 이번 조사를 성공적으로 이끄는 열쇠는 결국 현지조사활동을 담당하고 있는 조사원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음은 조금도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조사계획일지라도 조사원의 주의깊고 열성적인 조사활동에 의하지 않고는 결코 좋은 결과를 기대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조사원 여러분은 이번70년 인구 및 주택조사가 국민복지 향상을 위한 정부의 모든 활동방향을 제시하여 주는 기본 통계조사임을 더욱 깊이 인식하고 성과 열을 다하여 이번 조사를 성공리에 완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기를 바라는 바 입니다.

1970년 9월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장 최 선 래

목 차

조사 일정표 1

제1. 조사와 조사원의 직무 3

1. 1970년 조사 3

2. 조사는 왜 하는가? 3

3. 조사에서 얻은자료는 어떻게 이용되나? 4

4. 1970년조사는 어떤방법으로 실시하나? 5

5. 조사원의 직무와 책임 6

제2. 조사구와 조사대상 7

1. 조사구 7

2. 조사대상 9

인구에 관한 사항의 조사대상 9

주택에 관한 사항의 조사대상 15

제3. 실지조사 17

1. 실사절차 및 요령 17

2. 조사구경계의 확인 및 요도작성 18

3. 가구방문 및 종합표작성 27

4. 표본선정 37

5. 조사표와 그 기입 40

제4. 조사사항의 질문요령과 기입방법 44

제5. 조사표류의 정리 및 제출 95

(부록)

조 사 일 정 표

1. 조사원훈련……전체조사구조사원 9.23~9.25(3일간)
   표본조사구조사원 9.23~9.26(4일간)
2. 조사표류 및 조사용품의 수령……9.26까지
3. 조사구요도 작성, 종합표작성 및 가구번호표의 첨부……9.27~9.30(4일간)
4. 실 사……전수조사구조사원 10.1~10.7(7일간)
   표본조사구조사원은 10.1~10.9(9일간)
5. 기입된조사표의 내용검사……전체조사구조사원 10.8~10.9까지
   표본조사구조사원 10.10~10.11(2일간)
6. 조사표제출……10.10~10.12

달 력

9 월						
日	月	火	水	木	金	土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10 월						
日	月	火	水	木	金	土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조사원 메모

1. 조사구소재지 및 이름

시도	구 시 군	동읍 면

조사원 이름 _____

지도원 이름 _____

주소 _____

전화(　　)

2. 담당조사구 및 사용할 조사표

조사구번호	조사구의 종류	사용할 조사표의 종류

(주의)

본란은 조사원이 지도원에게 확인하여 반드시 기입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의문이 있을때에는 지도원에게 협의 할것.

제 1. 조사와 조사원의 직무

1. 1970년 조사

우리나라에서는 1925년 이래로 5년마다 조사를 실시하여 왔고 이번에 실시하게 되는 1970년 조사는 열번째를 맞는 제10회 조사이다. 국제연합에서도 각국이 적어도 10년 마다 이와 같은 조사를 실시하여 인구와 주택의 규모 및 구조 등 사회발전에 근본이 되는 통계자료를 수집하도록 적극 권장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번 1970년 조사는 범세계적인 조사이며 전국적으로 조사원 약 80,000명과 지도원 그리고 행정요원 등 도합 90,000여명이 동원되고 막대한 국가예산을 드려서 실시하게 될 것이며 우리 통계사상 가장 큰 규모의 통계조사이다.

2. 조사는 왜 실시하는가?

우리는 발전하고 성장하는 사회에 살고 있다. 특히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이며 기본이 되는 우리나라 인구는 급진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뒷받침 할수 있도록 계획과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계획과 정책은 오로지 통계자료를 기초로 하여 이루어 진다.

조사는 각종 통계조사중에서 근본이며 기둥이 되는 가장 중요한 조사이다.

이번 1970년 조사에서는 제3차 5개년계획과 지역사회개발계획을 비롯한 장기 종합계획의 수립과 이를 뒷받침하는 정책의 기초자료를 얻기 위하여 도시와 농촌 그리고 최하 면단위에 이르기까지의 소행정구역별 인구 및 주택의 수와 그 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도록 하고 있어 그 자료의 이용도는 종전의 어느 조사 보다 더욱 크다고 할수 있다.

3. 조사에서 수집된 자료는 어떻게 이용되나?

조사에서 수집한 자료는 다음과 같은 곳에 이용된다.

(1) 각종선거를 위한 선거구 설정과 정족수를 결정하는데 사용된다.

(2) 자녀 교육을 위한 학교의 건설과 도로 및 주택이 얼마나 부족하며 어느곳에 이것들을 건설하여야 되겠는가?

(3) 국민을 잘살게 하기 위하여는 일터는 어떻게 마련되어야 하며 일할수 있는 능력은 어떠한가?

(4) 전기시설과 문화시설의 수준의 측정

(5) 그 밖에 식량수급문제 및 국가와 지방의 발전을 위한 시책과 계획의 방향을 가르켜 준다.

4. 1970년 조사는 어떤 방법으로 실시하는가?

(1) 조사시점

1970년 인구 및 주택조사 실시일은 10월 1일 이다. 그러므로 10월 1일 이후에 예를 들어 10월 3일에 어떤 가구에 가서 조사표를 기입하게 된다 하더라도 조사는 10월 1일 영시(즉 밤 12시)를 기준으로 한다.

(2) 조사방법

1970년 조사는 조사원이 직접가구를 방문하여 조사표의 내용을 질문하여 일일이 기입하는 (타계식) 방법으로 크게 나누어 ① 전수조사와 ② 표본조사로 되어 있다.

1) 전수조사

전수조사구내의 전조사 대상을 하나하나 빠짐없이 전수조사표에 기입하는 방법을 말한다.

2) 표본조사

표본조사는 담당조사구내의 가구의 절반(1/2)은 표본조사표(큰조사표)에 의하여 조사하고 남어지 절반(1/2)은 전수조사표(적은것)에 의하여 조사하는 방법을 말하는데 표본조사는 본부에서 표본조사구로 이미 지정해준 표본조사구 담당조사원에게만 해당된다 그리고 전수조사구 담당조사원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표본조사구를 담당하는 조사원은 자기조사구내의 표본조사대상과 전수조사대상을 분류하여야 함으로 제 3의 4 표본선정을 잘 이해하여야 한다.

5. 조사원의 직무와 책임

센서스의 성공여부는 조사원 여러분의 활약여하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으리만치 각 조사원의 직무와 책임은 크고 무겁다.

센서스본부에서 아무리 치밀하고 완전하게 모든 계획을 수립하였다 하더라도 제일선에서 실제로 조사를 담당하는 조사원들이 조사의 내용과 요령에 따라 정확히 임무를 수행하치 않는한 그 조사는 결국 실패로 돌아가고 말게된다.

그러므로 각 조사원은 **무엇**을(조사대상) **어떤방법**(조사방법)으로 조사할 것인가를 자세히 파악하여 각자의 직무와 책임을 완수 하여야한다. 조사원이 수행하여야 할 직무와 책임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1) 제 2 장에 언급한 조사대상의 개념을 명확히 인식할 것.

(2) 담당조사구의 경계를 찾아 그 조사구의요도를 작성할것.

(3) 담당조사구내를 일일이 순방하면서 제 2 에서 정의한 거처 (사람이 살고 있는곳)를 빠짐없이 종합표에 기입할 것.

(4) 제 2, 제 3 및 제 4 에 설명한 요령과 방법에 따라 직접 가구를 방문하여 조사 사항을 질문하고 조사표를 기입할 것.

(5) 기입이완료된 조사표에 오기나 누락의 유무를 검사할것.

(6) 조사가 완료되면 제 5 의 요령에 따라 조사표를 잘 정리하여 지도원에게 인계할 것.

제 2. 조사구와 조사대상

1. 조 사 구

이번 센서스에서는 조사구를 다음과 같이 나누고 있다.

- 조사구
  - 특별조사구
  - 일반조사구
    - 전수조사구
    - 표본본조사구
    - 육지한지조사구
    - 낙도한지조사구
    - 기숙사조사구
    - 특수사회시설조사구

(1) **특별조사구**란 사람이 누구나 자유롭게 출입을 할수 없으며 출입이 통제되어 있는 국군의 병사나 교도소, 보호실등을 말하는데 이 특별조사구내의 인구는 별도로 조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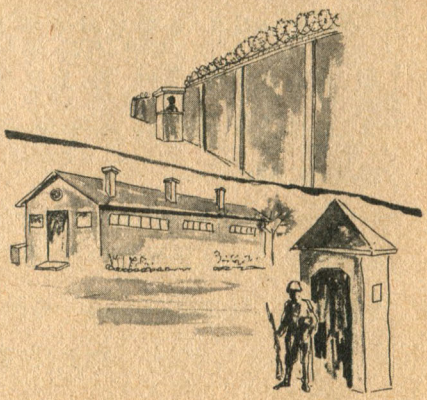

(2) 일반조사구란 특별조사구를 제외한 지역에 있는 모든 조사구를 말하며 여러분들은 일반조사구를 담당하는 조사원이므로 국군의 병사나 교도소 보호실등이 담당 조사구내에 위치하고 있다 하더라도 조사할 필요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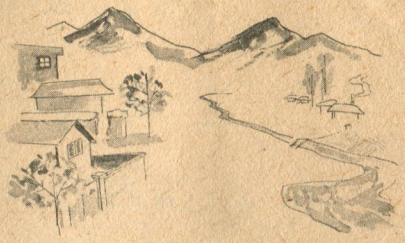

(3) 일반조사구는 다시 전수조사구, 표본조사구, 육지한지조사구, 낙도한지조사구, 기숙사조사구 및 특수사회시설조사구로 나누어 지며 조사구의 종류에 따라 조사방법과 사용할 조사표가 각각 다르다. 그러므로 각조사원은 자기가 담당하고 있는 조사구가 위의 어떤 종류에 해당하는가를 명확히 파악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 내용은 조사본부에서 미리 정하여 담당지도원에게 전달하였다.

각 조사원은 담당조사구가 위의 어떤 종류에 해당하는 가를 지도원에게 물어 본 요령서 첫장에 있는 "조사원 메모"란에 조사구의 종류와 사용할 조사표의 종류를 확인하여 기입하여야 한다.

2. 조 사 대 상

이번 센서스는 **인구와 주택**에 관하여 조사하도록 되어있다. 그리고 인구와 주택에 대하여 조사할 조사대상은 서로 다르며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1) 인구 주택에 관한사항 의 조사대상

> 인구에 관한 조사대상은 각조사원이 담당하는 조사구내에 **상주하는 사람**이며 이들이 살고 있는 **가구**를 한단위로 하여 한조사표상에 기입한다. 외국인도 반드시 조사되어야 한다. 그러나 외국군인 및 군속과 그들의 가족, 외국의 외교관과 그의 수행원 및 그들의 가족은 조사하지 않는다.

1) 상주하는 사람이란 { 인구에 관한 조사대상을 알려면 상주하는 사람과 가구의 뜻을 명확히 알아야 한다. 다음을 잘읽고 완전히 이해하기 바란다. }

(가) 여기에서 **상주**하는 사람이란 조사기일(10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하여 그 곳에 3개월이상을 살았거나 현재까지 3개월을 살지는 않았으나 조사일의 전후를 합하여 앞으로 3개월이상을 살려고 하는 사람을 말한다.

그러므로 상주하는 사람이란 비록 다리밑에서 살거나 방공호와 같은 토굴에서 산다하더라도 사는 장소나 형태에 관계없이 정의하는 바에 따라 전부조사대상이 된다.

(나) **일시적으로 집을 떠나 여행중에 있는** 사람이나 사업을 위하여 얼마동안 집을 떠나서 다른곳에 살고 있는 일시부재자는 부재기간이 3개월에 미달할 경우에는 자기집에서 조사되며 그 조사구내에서는 조사하지 않는다. 그러나 부재기간이 3개월이 넘을 경우에는 현재살고 있는 그곳에서 조사되며 자기집에서는 조사되지 않는다.

(다) 현재 살고있는 곳에서 산기간이 3개월이 못되었고 앞으로 살 기간을 통산하여 3개월이 안된다 하더라도 식구가 전부 이사하여 가구를 구성하고 있을 때에는 현재 살고 있는 곳에서 조사한다. 예를들어 어부나 목축을 업으로 하고있는 가구가 계절적으로 이동하였을때 그 가구는 현재 살고 있는 곳에서 조사한다.

(라) **일정한 상주지가 없고 현재 3개월이상 산곳과 앞으로 3개월 이상을 살려고 하는곳이 없는자** 예를들어 유랑자(떠돌이) 행상인이나 걸인등은 조사일 현재에 발견되는 곳에서 조사하여야 한다.

(마) 다음 경우는 지정하는 곳에서 조사한다.

ㄱ. **기숙사 하숙등에서 통학하고 있는 학생**은 기숙사 하숙등에서 조사된다. 그러므로 기숙사나 하숙에 있는 학생이 방학, 일시적인 병 혹은 볼일로 그 곳을 떠나 자기집에 귀향했을 때에도 자기집에서는 조사하지 않고 하숙, 기숙사등에서 조사되어야 한다.

ㄴ. **병원, 요양소등에 입원하고 있는 환자**중에서 지금까지 3개월이상 입원해 있는 환자는 그 곳에서 입원기간이 3개월에 미달되었을 경우에는 자기집에서 조사한다.

ㄷ. **선박(배)을 타는 선원이나 항공기 탑승원**은 기간에 관계없이 모두 자기집에서 조사된다. 그러나 선박을 상주거처로 하는 가족 또는 단신자에 대하여는 그 정박지에서 조사한다.

단, 선박회사나 항공회사의 소속직원으로 외국에 체류중에 있는 사람은 조사하지 않는다.

ㄹ. **국군**(육·해·공군·해병대)에 입영하여 병사나 군함내에 살고 있는 사람은 소속된 군대에서, 그러나 군인이라 하더라도 **영외에 거주하는 자**는 현재 살고 있는 곳에서 조사한다.

(마) **외국인**은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조사일 현재에 살고 있는 곳에서 조사한다.

(바) **병원에서 출생한 신생아와 산모**는 자택에서 조사한다.

(주의) : 조사기일은 10월 1일이므로 10월 1일 영시(밤12시) 이전에 출생한 자는 조사되나 이후에 낳은 어린애는 조사해서는 안된다. 그리고 영시 이후에 죽은 사람은 조사하여야 한다.

(2) 가구란

(가) 본조사에서 가구라함은 1인 혹은 2인 이상이 한데 모여 취사 취침 및 생계를 같이 하는 모임을 말한다.

(나) 그러므로 혼자서 독립적인 생계를 하고 있을 경우에도 한 가구가 된다(단독가구) 예를 들어 혼자서 집을 완전히 차지하거나 방을 빌려서 자취를 하고 있을 경우에는 그 자체가 한 가구가 된다 그러나 단신으로 남의 집에 하숙을 하고 있을 때에는 주인가구에 포함된다.

단 부부나 가족과 함께 하숙을 하고 있을 경우에는 독립된 한 가구로 본다.

(다) 고용주와 같이 살면서 숙식을 같이 하는 가사사용인은 주인가구에 포함하여 조사한다(예 4).

(라) 기숙사, 양노원, 병원, 요양원, 여관등에 살고 있는 사람은 그들을 통틀어서 한가구로 본다(준가구).

예 1 : 보통살림집에 하숙을 하고 있는 사람은 주인가구에 포함한다. 그러나 방을 빌려서(셋방) 취사 및 생계를 따로 하고 있을 때에는 그 자체를 하나의 독립가구로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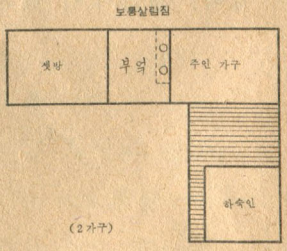

예 2 : 독신 또는 형제가 아파트에 살고 있을 경우에는 취사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단위로 각각 가구로 보아야 한다.

아파트에도 셋방을 들어 있을 경우에 독립적인 한 가구로 보아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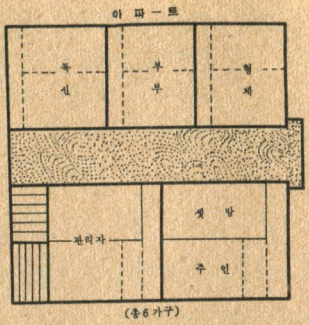

예 3 : 기숙사에 사감이나 관리인이 기숙생들과 같이 생활을 하고 있을 때에는 그 기숙사를 통틀어서 한가구로 보나 사감이나 관리인이 독립적으로 취사나 생계를 하고 있을 때에는 별개의 가구로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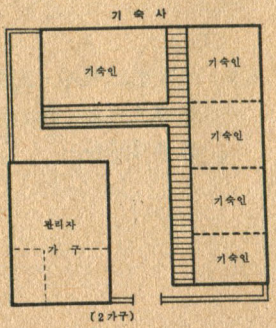

예 4 : 상점이나 식당 같은 곳에서 주인과 같이 살면서 숙식을 같이하는 영업사용인 혹은 가사사용인(식모, 유모)은 주인가구에 포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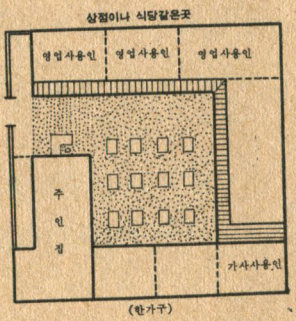

예 5 : 주인과는 침식을 따로 하면서 살고 있는 영업사용인은 주인 가구에는 포함되지 않으며 영업사용인들만이 한가구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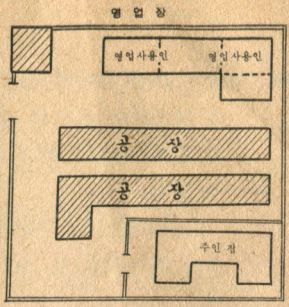

예 6 : 숙박업소(여관, 호텔등)에 들어 있는 숙박인은 주인가구와 별개가구로 취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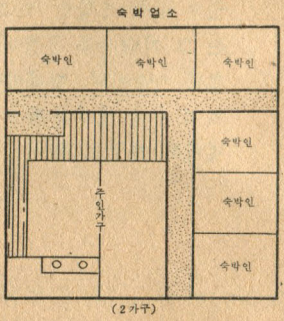

(2) 인구에 관한사항 의 조사대상

주택의 조사대상은 담당조사구내의 모든 **거처**이다. 이것도 인구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외국인이 살고 있는 거처도 조사되어야 한다. 단 외국군인 및 군속, 외교관들이 살고 있는 거처나 국군의 병사, 교도소, 소년원등은 조사대상에서 제외한다.

1) 거처의 정의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모든 장소를 통칭하는 말로서 구조적으로 독립된 하나의 단위를 말한다. 거처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거처 { 주택
       주택이외의 거처

이번 70년 인구 및 주택센서스에서 사용하는 "거처", "주택" 및 "주택 이외의 거처"란 일반사회에서 흔히 쓰고 있는 말의 뜻과 개념상 약간 다른 점이 있다.

그러므로 조사원은 주택센서스를 위하여 사용되는 이러한 용어의 정의를 충분히 이해하여 조사에 임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주택의 정의

센서스에서 주택이라 함은 보통 독채로 된 살림집 또는 아파트와 같이 완전히 구획(區劃)된 건물의 일부로서, 한 가구가 가정생활을 영위(營爲)할 수 있도록 건축되었거나 개조(改造)된 것을 말한다.

"완전히 구획된"이라는 말은 동일건물의 타 부분과 벽으로 완전히 차단되어 있는 경우를 말한다.

"한 가구가 독립하여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고 하는 말은 다음 3가지 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뜻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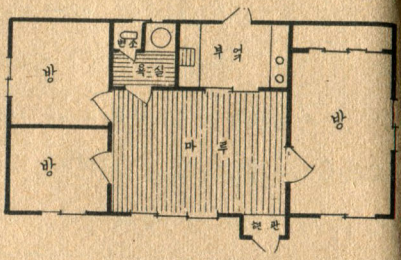

첫째 : 한개 이상의 방
둘째 : 부 엌
셋째 : 독립된 출입구(옥외(屋外)에 직접 접하고 있는 출입구이거나 공용복도는 낭하 또는 현관으로 통하는 출입구)

3) 주택이외의 거처

(가) 주택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기타 모든 거처를 통칭하는 말이며 다음과 같은 곳에 한사람 또는 두사람 이상의 집단이 생활하고 있는 경우이다.

(1) 호텔, 여관등 숙박업소

(2) 병원, 기숙사, 수녀원, 영아육원, 양노원등 공공목적을 위한 집

3) 토목공사 현장등 사업목적을 위하여 임시로 세운 집.

4) 기타(천막, 선박, 토굴, 다리밑 판자집등)

제 3. 실 지 조 사

실사에 필요한 용품을 전부 받았는지 확인한다. 여러분들이 받아야 할 용품은 다음과 같다.

1. 조사요령서
2. 조사표(전수조사표, 표본조사표)
3. 조사표 표지
4. 종합표
5. 보조표(시부에 한함)
6. 조사구요도
7. 가구번호표
8. 가구전단(군부에 한함)
9. 어가구 식별 일람표(해당 연안지역에 한함)
10. 볼펜 한개
11. 연필 한자루
12. 인주 한통
13. 풀 한갑

1. 실사절차 및 요령

각 조사원은 다음 실사절차와 요령에 따라 순서대로 수행하여야 한다.

(1) 조사구 경계의 확인 및 요도작성
(2) 가구방문 및 종합표 작성
(3) 표본가구의 결정(표본조사구 담당조사원에 한함)
(4) 가구를 방문하여 조사사항을 질문하고 조사표를 기입

2. 조사구 경계의 확인 및 요도 작성

조사구의 요도에는 조사구의 경계가 주로 자연물(하천, 산, 바위, 도로, 초원 등)과 구축물(다리, 건물, 전주, 상점 등)을 표식으로 하여 그려져 있다. 그러나 이것은 아직 실지조사에서 사용하기에는 완전한 것이 못된다.

그러므로 각 조사원은 이 요도를 중심으로 담당조사구의 경계를 확인하고 익혀야 하며 다음과 같은 지시사항을 준수하여 요도를 작성하는 것이 선결 문제이다.

제1단계 경계가 그려진 요도를 가지고 그 경계선을 따라 다니면서 경계의 식별이 명확치 않은 곳에는 (예 1)과 같이 지형지물의 표시를 보충기입하면서 경계선을 확인한다.

담당조사구의 경계를 확인하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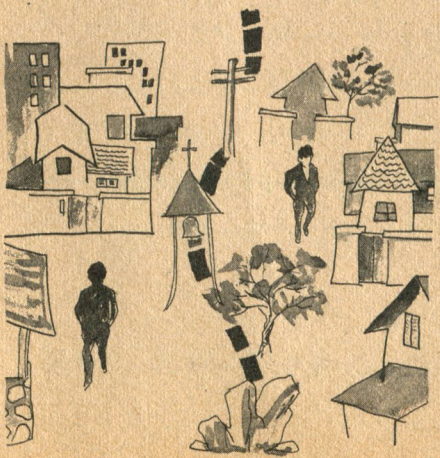

만약 경계선을 명확히 알 수 없을 경우에는 담당지도원에게 문의하여야 한다. 도, 군, 면 등 행정구역이 경계선으로 표시되어 잘 알 수 없을 때에는 지방민이나 지도원에게 물어

명확히 자연물로 보충 표시하여야 한다.

제2단계 건물을 그려 넣어 요도를 스케치하는 일

자기 조사구의 경계선을 잘 알 수 있도록 확인한 다음에는 (예 2)와 같이 조사구경계선 안쪽에 있는 도로와 건물을 하나 하나 빠짐없이 □로 그려 넣고 큰 건물의 이름이나 지명을 써 넣어 위치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표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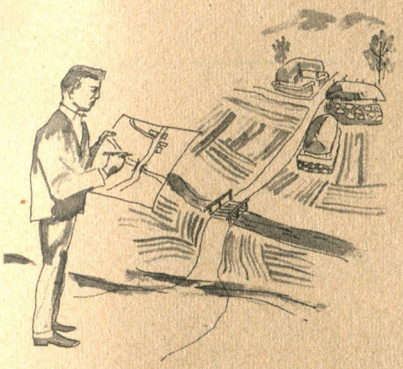

제3단계 거처와 가구를 파악하는 일

건물을 완전히 그려 넣은 다음에 사람이 살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사람이 살고 있지 않는 건물에는 ⊠로 표시하고 사람이 살고 있는 건물에는 먼저 거처의 일련번호를 □ 안에 기입하고 그 속에 몇 가구가 살고 있는지를 확인하여 종합표를 동시에 작성한다. (예 3 참조)

예와 같이 제 3 단계 요도기입을 시작하는 출발점을 요도상에 O →으로 표시하고 자기가 조사하면서 걸어가는 방향을 →로 표시하여 담당조사구내의 거처와 가구를 빠짐없이 조사했는지의 여부를 재확인 하여야 한다.

단 기숙사, 요양원, 병원등 특수사회시설, 그 자체만으로 한 조사구가 되어 있을 경우에는 요도작성을 생략해도 무방하다.

요도상의 지형지물 표시기호 요도상에 표시하는 지형지물을 표시할 때에는 반드시 다음과 같은 기호를 사용하여야 한다. 표시 기호에 없는 특수물을 표시하고자 할 때에는 조사원이 임의대로 표시하되 그 이름을 써 넣는다.

지정기호 및 규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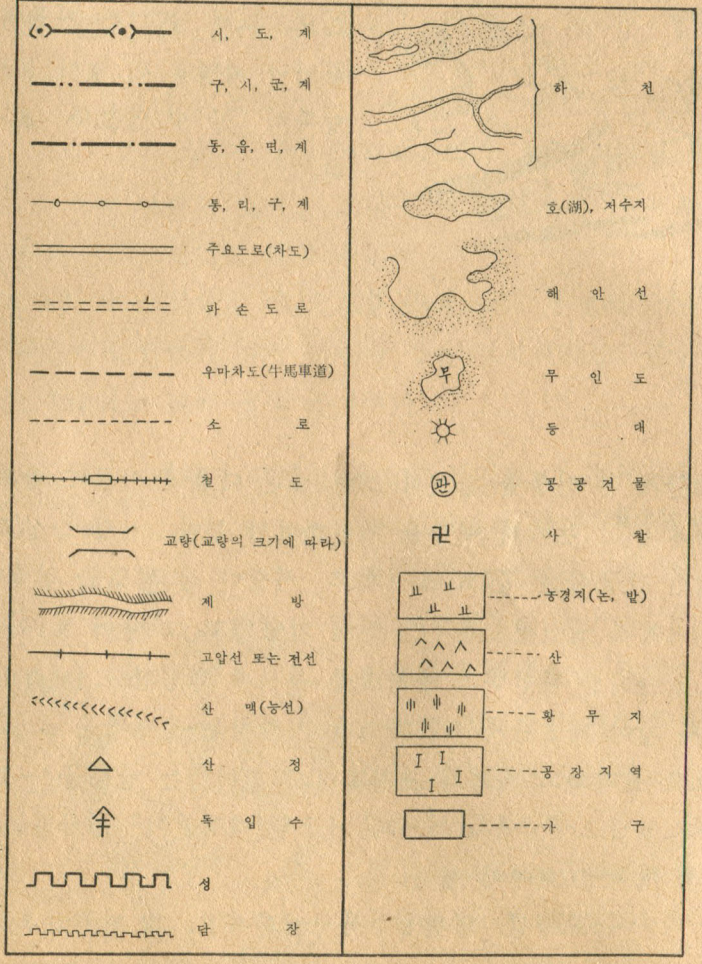

요도작성 시부
(1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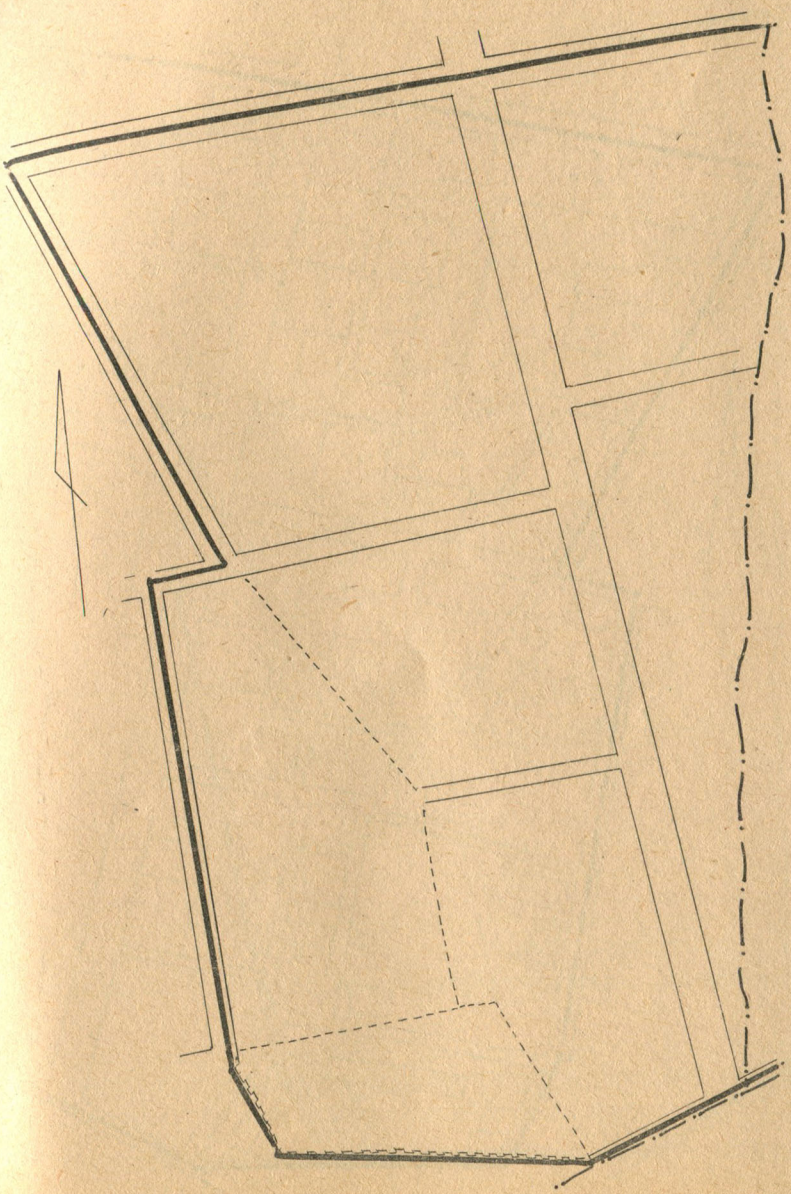

요도작성 시부
(2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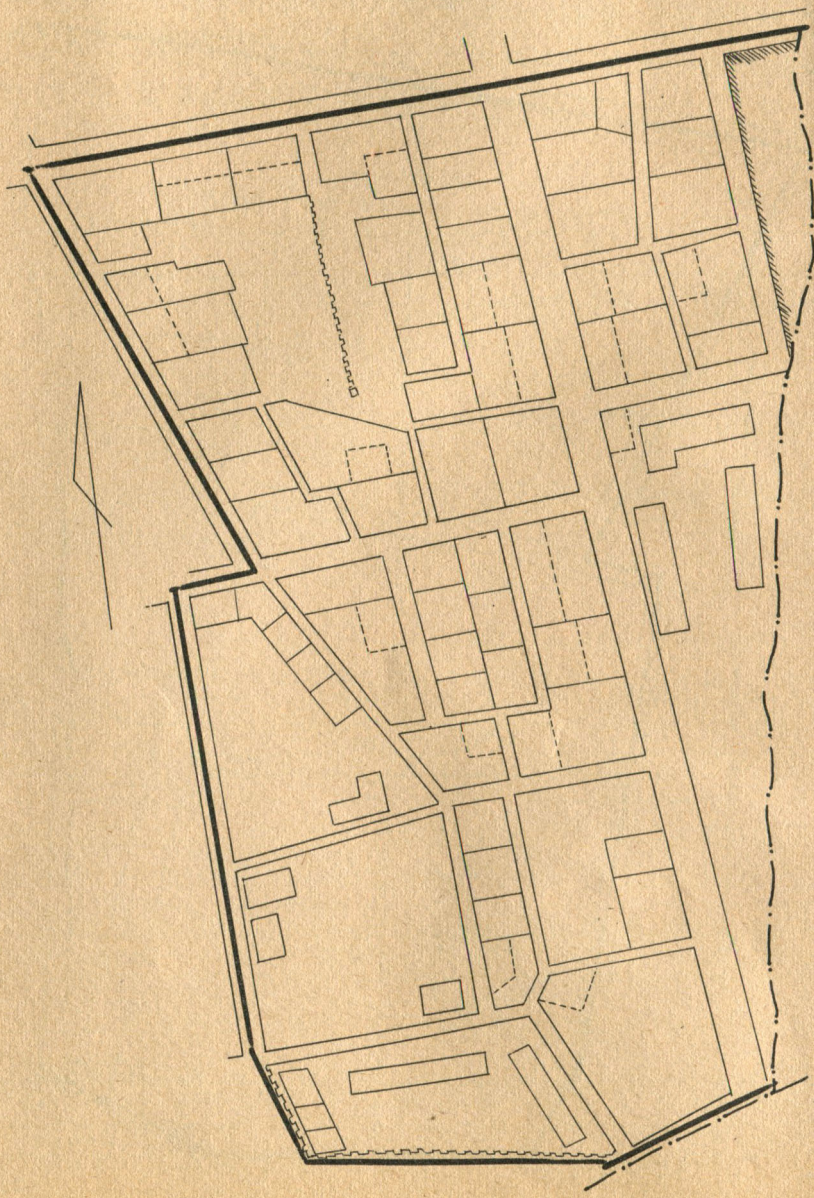

요도작성 시부
(3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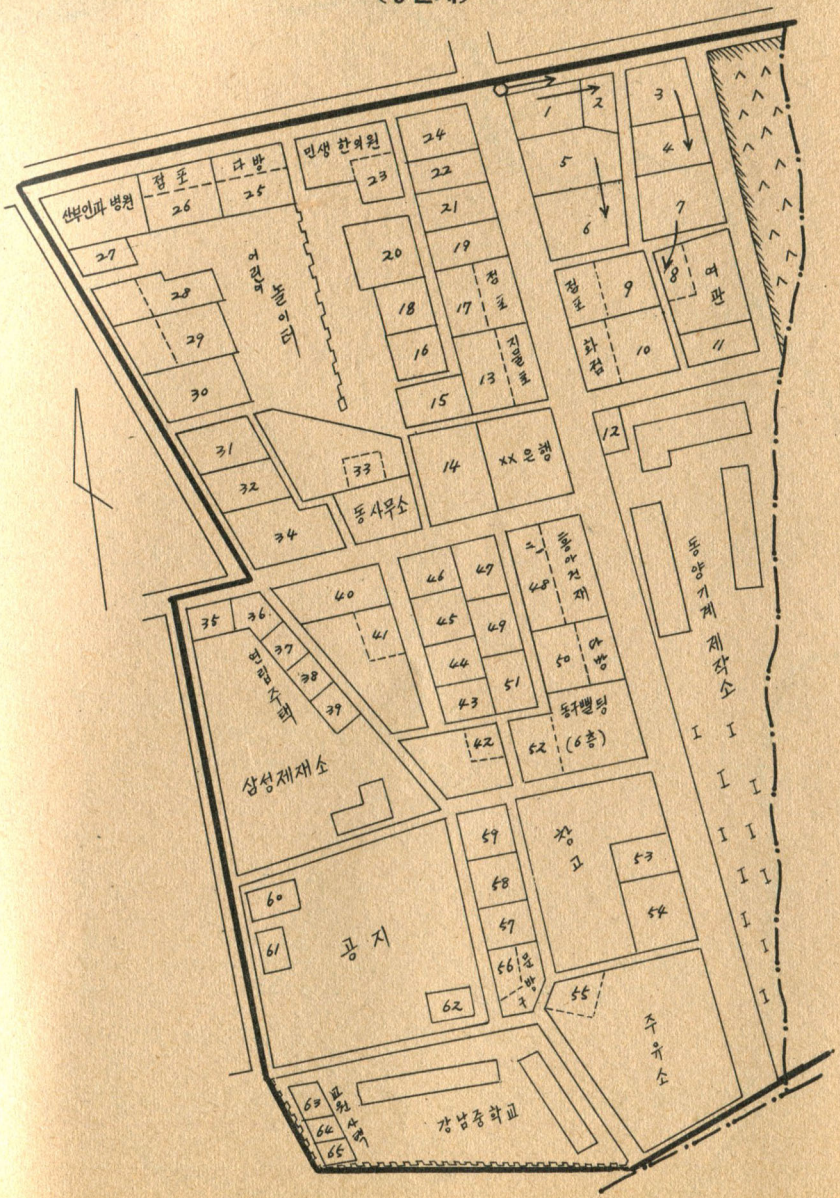

산부인과 병원
점포
다방
민생 한의원
어린이 놀이터
점포
지물포
점포
화점
여관
XX은행
동사무소
홍아전재
다방
동양기계 제작소
연립주택
삼성제재소
동구빨팅 (6층)
창고
공지
문방구
주유소
교원사택
강남중학교

요도작성 군부
(1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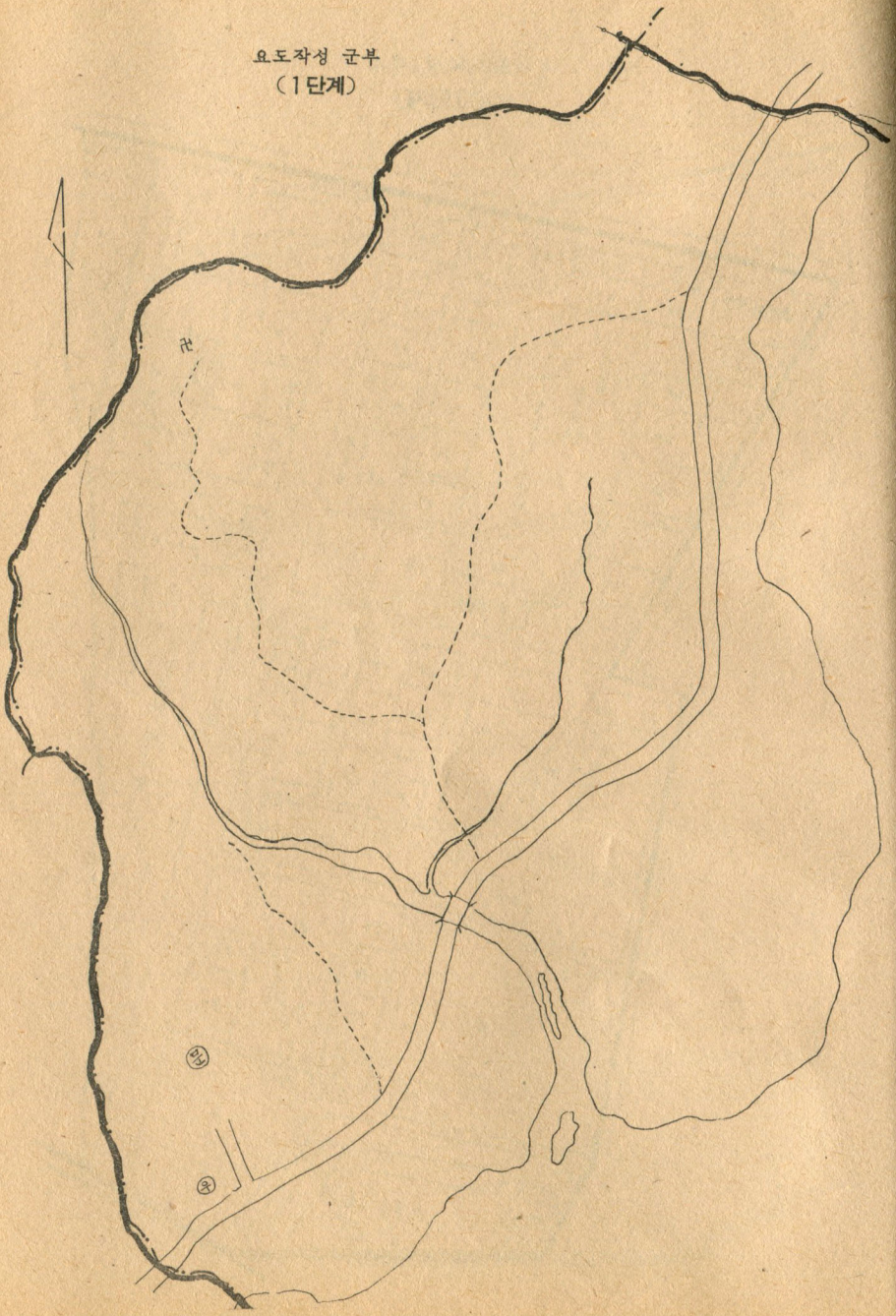

요도작성 군부
(2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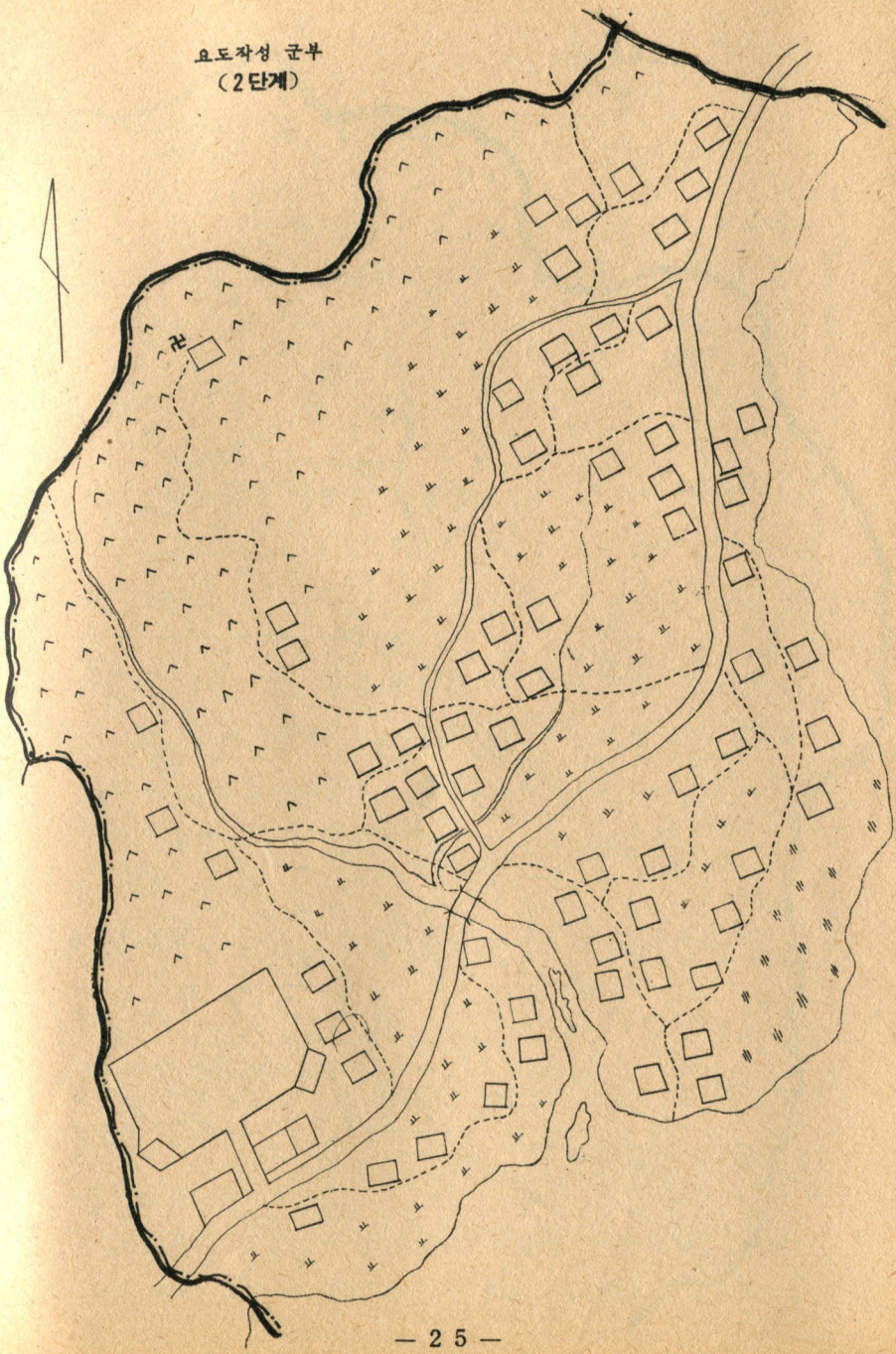

요도작성 군부
(3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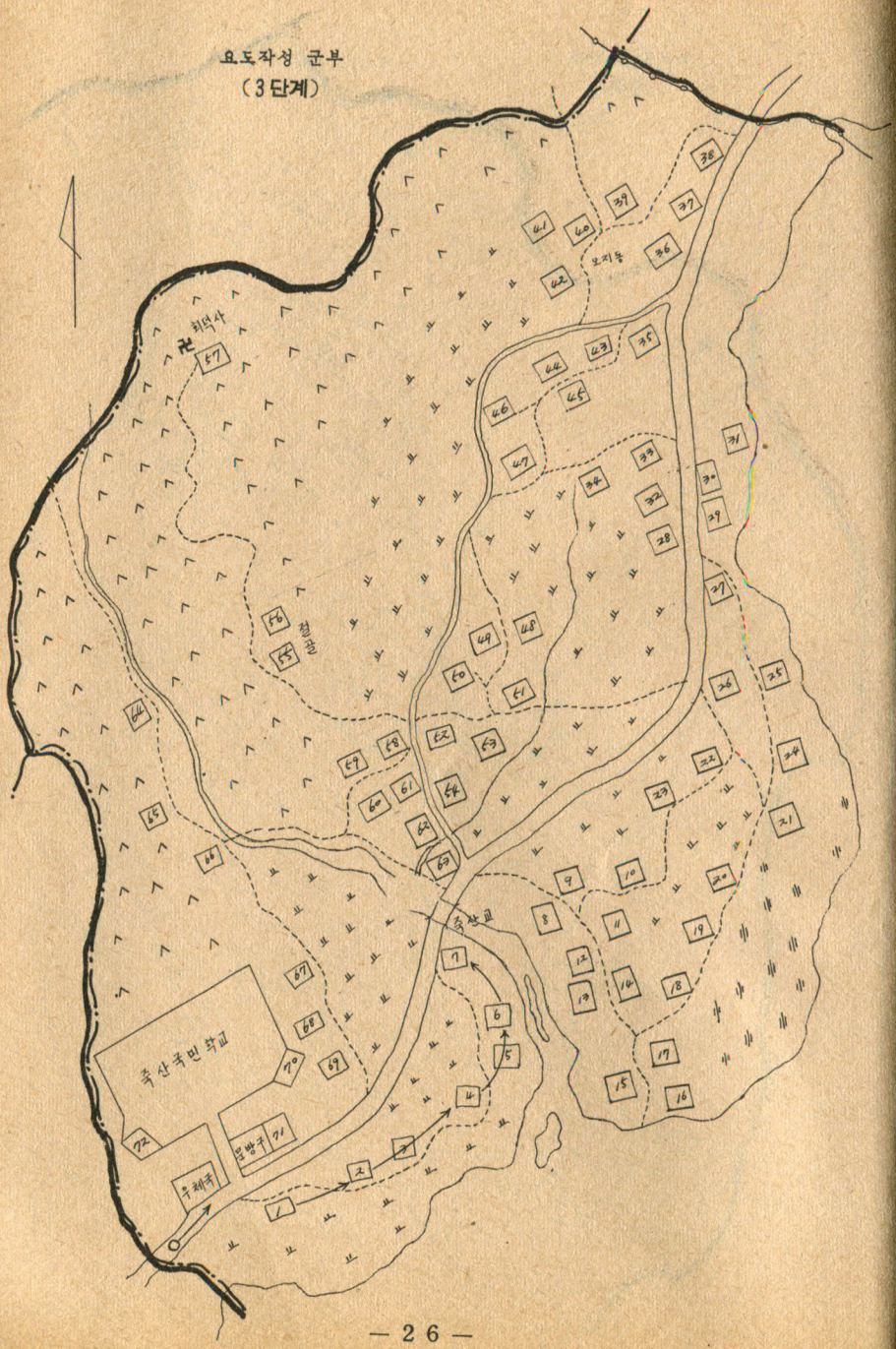

3. 가구방문 및 종합표 작성

조사원은 자기가 작성한 조사구 요도의 거처일련번호 순서에 따라 거처와 가구를 일일이 방문하면서 다음 요령에 의하여 종합표를 작성한다.

(1)

조사구 번호	

지정된 담당조사구 번호를 기입한다.

(2)

조사표매수	

이란은 준비조사가 끝난후에 실지조사에서 필요한 조사표의 총 매수를 기입한다(조사표 한장에 10명의 가구원을 기입할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하여 11명의 식구가 있으면 2매, 21명이 될 경우에는 조사표는 3매가 필요하다)

(3) 조사구 소재지

자기가 담당하고 있는 소재지명을 동, 읍, 면 단위까지 기입한다.

(4)

※ 농업조사구번호	

기입하지 않는다.

1) 거처번호

조사구 요도상에 표시되어 있는 거처번호를 종합표의 거처번호란에 다음 예와 같이 일련번호를 기입해 나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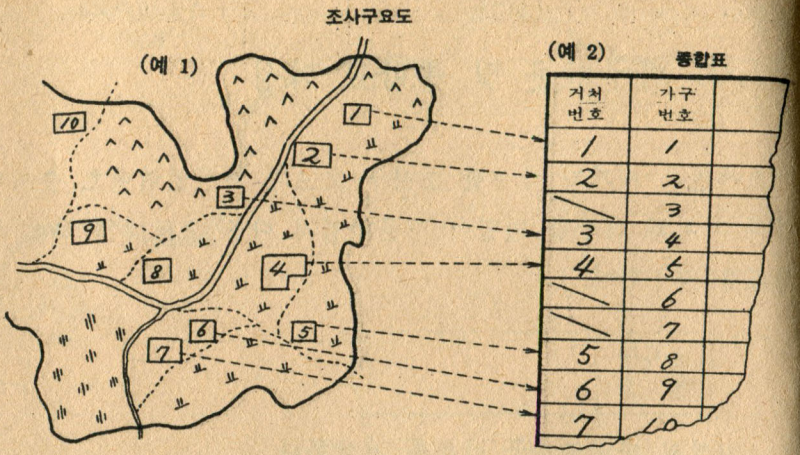

2) 가구번호

한 거처내에 몇 가구가 살고 있는가를 확인하여 가구번호란에 기입한다.

가구번호는 거처번호에 구애됨이 없이 조사구내의 모든 가구에 일련번호로 기입한다. (예 2)

(※ 거처번호 공백란에는 사선「＼」으로 메꾼다)

모든 가구(p12, "가구란" 참조할것)에는 가구번호가 부여되나 특히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해야 한다.

(가) 거처 안에는 몇가구가 살고 있는가를 먼저 파악한다.

(나) 사람이 살고 있지 않는 빈집과 신축중에 있는 집은 그 속에 가구가 없더라도 그것이 주택일 경우에는 거처번호를 기입하고 **공가**로 처리한다.

(다) 공가의 경우는 거처번호는 부여하되 가구번호는 없으므로 사선「＼」을 한다.

3) 가구주 또는 대표자

가구주나 대표자의 이름을 기입한다.

가. 가구주란 그 가구의 생계를 사실상 주관하고 가구원이 대표로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나. 대표자란 고아원, 양노원, 기숙사, 요양원 등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 중의 대표로 되는 한사람을 말한다.

다. 가구주나 대표자의 성(姓)은 한자(漢字)로 기입한다.

4) 주 소

거처가 위치하고 있는 곳의 주소를 말하며 동리명(洞里名)및 번지 호수(號數)를 상세히 기입한다. 특히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한다.

(가) 공가와 신축중의 공가(空家)도 현재 거주가구가 없더라도 주소를 기입해야 하며(이의 주소를 확실히 모를 경우에는 그 곳에서 제일 가까운 주택의 주소를 기입한다)

여기에서 공가라함은 사람이 살고 있었으나 조사일 현재에 비어있는 집과 신축중이여서 아직 사람이 입주하지 않은 집을 말한다. 그런데 공가라하더라도 사람이 살 수 있는 형태를 유지하고 있거나 간단한 수리를 하여 사람이 살수 있는 것을 말하며 집이 낡아서 새로 개축을 하지 않는한 사람이 생활할 수 없을 정도의 집은 공가로 취급치 않는다. 신축중의 공가는 신축의 형태가 2/3 이상을 완성하였을 때에 한하여 공가로 취급한다.

(나) 하나의 "거처"내에 여러가구가 살고 있어 주소가 같을 경우에는 주가구(모두가 셋방일 때에는 그중 한가구 만을 주가구로 본다)의 주소만을 기입하고 남어지 동거가구의 주소는 사

선「＼」을 하며 일일이 같은 주소를 기입하지 않는다.

5) 가 구 원

조사가구의 식구수를 물은 다음 그 식구중에서 상주여부를 확인하여 (p. 9 "상주하는 사람" 참조) 조사에 포함되어서는 안될 사람과 현재는 부재중이지만 반드시 조사되어야 할사람, 예를들어 일시 부재자가 없는가를 자세히 물은 다음에 확인된 가구원수를 해당란에 기입한다.

예,

가 구 원		
계	남	여
6	2	4

단, 외국인가구에 같이 살고 있는 한국인은 별도가구로 취급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외국인가구의 식모나 하인 또는 영업사용인은 외국인과 같은 조사표상에 기입해서는 안되며 본국인용 조사표를 사용하여 조사한다.

6) 거처의 종류

(가) 주 택

주택이란 보통 독채로된 살림집 또는 아파트(연립주택포함)와 같이 완전히 구획(區劃)된 건물 혹은 건물의 일부로서 한가구가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축되었거나 개조(改造)된 것을 말한다(p. 15 "거처의정의" 2) 주택정의를 참조할 것)

예,

거 처 의 종 류	
주 택	주택이외의거처
○	

종합표 기입 방법은 위와 같은 주택일 경우에는 "주택"란에 다음 예와 같이 "○"표시를 하고 "주택이외의 거처"에는 사선「＼」을 긋는다.

(나) 주택이외의 거처

사람이 현재 살고 있으나 앞에서 정의한 "주택"이 아닌 거처를 말한다.

주택이외의 거처는 다음과 같은 것을 말한다.

(p. 69 거처의 종류참조)

① 호텔, 여관등 숙박업소

② 병원, 기술사, 수녀원, 영육아원, 양노원 또는 공공목적을 위한 집

③ 토목공사현장등 사업목적을 위하여 임시로 세운집

④ 기타(천막, 선박, 토굴, 다리 밑, 판자집 등)

이 경우 종합표 기입방법은 다음 예와 같이 "주택"란에는 사선「＼」을 하고 "주택이외의거처"에 "○"표를 한다.

단, 동거가구인 경우에는 "주택"과 "주택이외의 거처"란 모두 사선「＼」을 한다.

7) 입주여부(入住與否)

한 주택(주택이외의 거처는 모두 사선「＼」)에 사람이 살고 있는가, 살고 있지 않는가의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사람이 살고 있을 경우에는「현주」, 사람이 살고 있지 않을 때에는「공가」로 취급한다.

예,

	입 주 여 부	
	현 주	공 가
주가구→	○	
동거가구→		

조사대상 가구를 방문하였을 때 조사원은 직접 가구원에게 묻

지 않더라도 「현주」「공가」의 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있다. 기입방법은 아래와 같이 해당란에 "○"표시를 한다.

8) 가구구분

이란은 주택에 사는 가구에 한하여 기입하고 주택이외의 거처에 사는 가구는 모두 사선「＼」을 한다.

주가구란 (1) 집주인 가구

(2) 집주인은 아니라 하더라도 집을 "독채"로 빌려 쓰고 있는 가구

(3) 한집을 두가구 혹은 그 이상의 가구가 세를 들어 있을때 그중 대표되는 한 가구.

동거가구란

한 주택에 두가구 이상이 살고 있을 때 위의 "주가구"가 아닌 가구 즉 주가구와 같이 사는 가구를 말한다.

예,

가 구 구 분	
주가구	동거가구
＼	○

그러므로 "이 주택에 몇가구가 같이 살고 있읍니까?"라고 물어 여러 가구가 같이 살고 있을 경우에는 어느 것이 주가구인가를 확인하여 주가구란에 ○표를 하고 나머지 가구는 동거가구로 취급하여 처리한다.

9) 농 가

다음의 농가정의에 해당하는 가구는 종합표의 농가란에 "○" 표시를 하고 해당되지 않는 가구에 대하여는 사선「＼」으로 표시한다.

"농가의 정의"

농가라 함은 다음 사항중 어느 하나만이라도 해당되는 가구를 말한다.

첫째 : 소유여하를 불문하고 경지(논, 밭, 수원지) 300평이상을 직접 경작하는 가구

둘째 : 고등원예 특용작물 및 채소등을 100평이상 재배하는 가구

셋째 : 과수묘포등을 200평이상 재배하는 가구

넷째 : 소나 말을 사육하는 가구 (단, 운반용, 경주용, 완상용등은 제외)

다섯째 : 돼지, 산양, 면양을 도합 3마리 이상을 사육하는 가구

여섯째 : 토끼 40마리 이상 또는 닭, 오리, 거위, 칠면조등을 30마리이상을 사육하는 가구

일곱째 : 5군 이상의 양봉을 하는 가구

여덟째 : 잠종 12g이상을 소잠하는 가구

아홉째 : 복합경영한 조수입이 1만원이 되는 가구

열째 : 가구원중에서 연간 누계일수가 90일 이상, 같은 사람이 계속 30일이상 임금 농업노동에 종사한 사람이 있는 가구

10) ※농가일련번호

※표시의 농가일련번호는 기입하지 않는다.

11) 어 가

다음의 어가의 정의에 의하여 어가에 해당하는 가구는 "○" 표시를 하고 해당되지 않는 가구에 대해서는 사선「＼」을 한다.

"어가의 정의"

1) 가구주 또는 가구원중에서 지난 1년간에 있어서 판매를 목적으로 수산동식물의 채포(採捕)또는 양식(養殖)업에 종사한 자가 있거나 또는 타인이 경영하는 수산동식물의 채포 및 양식업을 하는 사업체에 어업노동자로서 고용된자가 있는 가구

여기서 수산동식물의 채포라 함은 천연의 수산동식물을 채포함을 말한다. 또 수산동식물의 양식이라 함은 인공적 설비를 갖추어 수산동식물을 생육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단, 자가소모(오락포함)를 주목적으로 어업에 종사한 가구는 조사대상에서 제외한다.

2) 본란에 ○표시된 가구에 대하여는 별도 배부된 어업센서스를 위한 "어가구 조사대상식별일람표"의 이면(뒷면)기입요령을 참조하여 작성해야 한다.

12) 비 · 고

1) 이 비고란에는 종합표를 작성할때 있었던 가구가 실지 조사때는 전출하였다던가 실지 조사에서 빠졌던 가구가 발결되었을때에는 추가 또는 삭제한 이유를 기입한다.

2) 공가 또는 신축중의 공가는 비고란에 "공가" 또는 "신축

중의 공가"라 기입한다.

3) 다음 가구에 대하여는 비고란에 기재한다.

「기숙사」「여관」「요양소」「영육아원」「합숙소」 그리고 「외국인」 가구.

4)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이라고 표시한다.

5) 종합표작성을 할때에 있었던 가구가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였거나 반대로 종합표 작성시에는 없었던 가구가 조사구내에 이사하여 왔을 경우등 요도작성시와 실사시에 변동이 생겼을때에는 그 변동 사항을 종합표에 기입하여 수정한다. (예 p85, 참조)

6) 종합표 작성이 완료된 이후 실지 조사때에 거처내에서 누락, 전입가구가 발견되면 종합표의 마지막 거처번호 다음에 발견된 가구가 속해 있는 거처번호를 기입하고 가구번호는 마지막 가구번호의 연속으로 해야한다. 또 비고 난에는 "추가"라 기입해야 한다.

7) 새로운 가구의 「전입」과 「전출」시는 지우개를 사용치 말고 복선 「=」으로 말소해야 한다.

8) 이밖에 조사원의 참고 사항을 기재할 수 있다.

(1) 보조표의 기입의뢰

1) 보조표의 기입은 도시에 있는 가구에 한하여 기입하는 조사표이다.

2) 보조표를 배부할 때는 가구주 또는 가구의 대표자에게 기입방법을 자세히 설명하여 배부토록 하여야 하며 기입이 불가

능하다고 생각될때에는 배부를 생략하여도 무방하다.

3) 기입의뢰한 보조표는 실지조사때 각란에 기입의 참고로 활용하고 조사가 끝난후에는 그 가구에 남겨둔다.

(2) 가구번호표 첨부

1) 가구주와의 대면이 끝나면 가구표를 보이면서 조사가 끝날때까지 (12월말까지) 잘 붙여두라는 양해를 구한 다음 밖에서 잘 보이는 적당한 장소(대문)에 붙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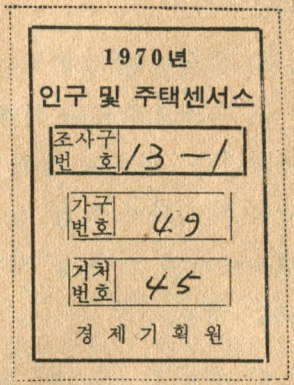

2) 가구번호표는 한 가구에 한 장씩 붙이도록 하며 하나의 주택이나 거처에 여러가구가 함께 살고 있으면 매 가구마다의 가구표를 붙여야 한다.

3) 공가와 건축중의 공가에도 붙여야하며 선박내의 거주가구는 가구표시기를 (깃발) 달도록 부탁한다.

(3) 조사표 인수

종합표작성이 완료되면 작성된 종합표 1부및 조사구요도 1부를 관할 동, 읍, 면 지도원에게 9월 30일까지 제출하여 검사를 받은후 실지조사에 소요되는 다음의 표류를 받도록 한다.

1) 종합표

2) 조사구요도

3) 조사표(본국, 외국인용)

4) 조사표 표지

4. 표본선정

각지도원과 표본조사구 담당 조사원에게만 해당되며 기타 조사구 담당조사원은이에 대하여 알 필요가 없다.

(1) 표본가구는 다음과 같은 요령에 따라 동, 읍, 면 지도원이 선정하게 된다.

(2) 각지도원은 담당구역내의 표본조사구를 확인하고 그 조사구의 종합표를 기준으로하여 표본가구를 선정하게되는데 표본가구의 선정요령은 다음과 같다.

표본선정요령

① 해당표본조사구번호의 끝자리가 0, 2, 4, 6, 8과 같이 짝수이면 종합표상의 거처번호도 0, 2, 4, 6, 8, 과 같은 짝수인 거처안에 속해 있는 모든가구에 "V"표를 하고,

② 해당표본 조사구번호의 끝자리가 1, 3, 5, 7, 9와 같이 홀수인 경우에는 위와 반대로 거처번호가 1, 3, 5, 7, 9인 모든 거처안에 속해 있는 가구를 표본가구로 선정하여 "V"를 한다.

(3) 각표본조사구담당조사원은 "V"로 표시된 표본가구에 대하여는 표본조사표(큰조사표) 그리고 표본가구 이외의 다른 가구에 대하여는 전수조사표(작은조사표)를 사용하여 조사하게 된다.

(4) 조사표 작성시에도 항상 종합표에 기입된 가구외에 누락된 가구및 거처가 없는가 주의하여야 하며 가구의 누락및 거처의 누락을 발견하면 종합표작성요령에따라 추가 기입하되 비고란(12란)에는 "추가"라 기입하여야 하며 지도원

이 큰 조사표를 작성할 가구에 "V"표시한 방법과 같이 해당 거처내의 모든 가구에 대하여 "V"표시를 하고 "V"표시된 가구에 대하여는 큰 조사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즉

1) 종합표에 기입된 거처내에서 새로운 가구를 발견하였을 때 종합표에 추가 기입하되 비고란에 "추가"라 기입하고 이 가구가 V 표시된 거처내에 있는 가구라면 이 가구에 대해서도 V표시를 하고 (예), 이가구에 대하여는 큰 조사표를 사용하여야 하며 추가 기입된 가구가 V 표시된 거처내의 가구가 아니라면 작은 조사표를 사용해야 한다.

발견된 가구	처 리 내 용
"V"로 표시된 거처내의 가구	종합표 작성 요령에 따라 추가 기입하되 비고란에는 "추가"라 기입하고 표시를 한다. 조사표는 큰 조사표를 사용한다.
"V"로 표시 되지않은 거처내의 가구	종합표 작성요령에 따라 추가 기입하되 비고란에는 "추가"라 기입하고 조사표는 작은 조사표를 사용한다.

② 종합표에 기입되지않은 새로운 거처를 발견하였을때.

새로 발견한 거처내의 모든 가구를 종합표에 추가 기입하되 비고란에는 "추가"라 기입하여야 하며 지도원이 "V"표시한 거처번호가 짝수일때 추가 기입한 거처번호가 짝수이면 이 거처내의 모든 가구에 대하여도 "V"표시를 하고,(예) 이들 가구에 대하여는 큰 조사표를 사용해야 한다. 그리고 추가기입한 거처번호가 홀수이면 그 거처내의 모든 가구에 대하여는 작은 조사표를 사용하여

야 한다.

또한 지도원이 "V"표시한 거처 번호가 홀수일때 추가 기입한 거처 번호가 홀수이면 이 거처내의 모든 가구에 대하여도 "V"표시를 하고 이들 가구에 대하여는 큰 조사표를 사용하여야 한다. 그리고 추가 기입한 번호가 짝수이면 이 거처내의 모든 가구에 대하여는 작은 조사표를 사용해야 한다.

V표시된 거처번호	추가기입된 거처번호	거처내의 가구에 대한 처리내용
홀 수	홀 수	종합표 작성 요령에 따라 추가 기입하되 비고란에는 "추가"라 기입하고 이들 가구에 대하여 V표시를 한 후 조사표는 큰조사표를 사용한다.
	짝 수	종합표 작성요령에 따라 추가기입하되 비고란에는 "추가"라 기입하고 조사표는 작은 조사표를 사용한다.
짝 수	짝 수	종합표 작성요령에 따라 추가기입하되 비고란에는 "추가"라 기입하고 이들 가구에 대하여 V표시를 한후 조사표는 큰 조사표를 사용한다.
	홀 수	종합표 작성요령에 따라 추가기입하되 비고란에는 "추가"라 기입하고 조사표는 작은 조사표를 사용한다.

특히 조사원은 이러한 "추가" 발견 사실을 지도원에게 즉시 보고 하여 검토 및 지시를 받아야 한다.

5. 조사표와 그 기입

조사에 관한 사항을 질문하여 기입을 하기 전에 다음과 같은 요령을 엄수하여야 한다.

(1) 조사원의 태도

1) 센서스 조사원증을 반드시 제시할 것.
2) 가구원중에 책임을 지고 응답을 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할 것.
3) 친절하게 자기 소개를 하고 난 뒤에 센서스의 취지를 설명하고 정확한 답변을 해 줄 것을 부탁할 것.

(2) 조사표의 선택

실사과정에서 조사원이 기입할 조사표에는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다.

1) 전수조사표(작은 조사표)
2) 표본조사표(큰 조사표)
3) 외국인 조사표(영어와 중국어)

그런데 이들 조사표의 용도는 다음과 같이 조사구에 따라 다르다. 그러므로 조사원은 자기가 담당하고 있는 조사구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하는가를 확인하고 올바른 조사표를 선택하여 기입하지 않으면 안된다.

담 당 조 사 구	기 입 할 조 사 표
전수조사구	전수조사표
표본조사구	전수조사표 및 표본조사표
육지한지조사구	표본조사표
낙도 한지 조사구	표본조사표
기숙사조사구	표본조사표
특수사회시설조사구	표본조사표
조사구내의외국인	외국인조사표

(3) 조사표의 기입

1) 조사표의 기입은 청색이나 흑색잉크 혹은 볼펜으로 기입한다.

2) 조사표의 기입은 한 가구를 단위로 하여 한 조사표상에 기입한다.

한 조사표에는 열 사람씩 기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어떤 가구의 가구원(식구)이 10인을 초과할 경우에는 조사표 상단에 있는 [매중 호] 란에 내용을 적고 두장 이상을 사용할 수 있다.

3) 조사표의 상단에 있는

조사구 번호	거처 번호	가구 번호	매중 호

을 기입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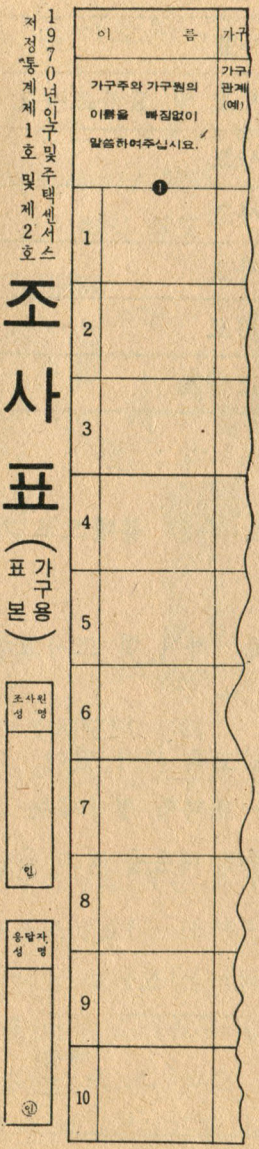

(특별)시 도	구 시 군	(로)동 읍 면

가리	번지 호 (전화)

에 응답가구의 주소를 적는다.

4) 그 다음에는 제4의 질문요령과 기입방법을 따라 이름부터 시작하여 순서대로 기입한다.

5) 부재중—조사원이 가구를 방문하였으나 사람이 없어서 조사를 할수가 없을 경우 종합표의 해당 가구 번호앞에 (부재)라고 표식을 해 놓고 기입이 완료될 때까지 재방문한다. 집을 비운지 3개월이 안되었고 2~3일내에 귀가할 가망이 없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옆집이나 동거가구에게 물어서 기입해도 무방하다.

6) 조사표 기입을 할 때에 같은 사항, 예를들어 직업이나 산업이 같을 경우에 "상동" 혹은 「〃 〃」으로 기입하지 말 것

이며 반복하여 기입하되 해당 사항이 없는 란에는 「＼」을 긋는다.

(4) 응답거부

조사원이 아무리 부탁을 하고 설복을 하였으나 끝내 응답을 거부할 경우에는 담당지도원에게 즉시 연락하여 조치를 한다.

(5)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 조사표에는 직접 응답자가 기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므로 응답자가 외국인이여서 언어가 서로 통하지 않을 때에는 외국인 조사표 뒷면에 적혀있는 인사장을 보여 주고 조사표를 응답자에게 주면서 기입을 부탁한다(능력것 친절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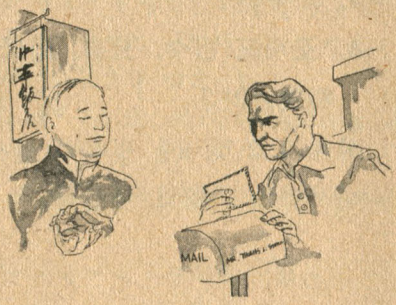

상대방(응답자)이 한국 말을 잘할 경우에는 조사원이 직접 기입하여도 무방하다.

(6) 인구에 관한 기입이 끝나면 주택에 관한 사항의 질문 요령과 기입방법의 내용에 따라 주택에 관한 사항을 기입한다.

제 4 · 조사사항의 질문요령 과 기입방법

인 구

인구의 조사대상은 상주하는 사람이며 조사는 가구를 한단위로 하여 조사한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리라고 믿는다. 만일 이것을 명확히 이해 못한 조사원은 제2의 조사대상을 다시 한번 읽어주기 바란다.

조사표 기입에 들어가기 전에 다음을 먼저 확인하여야 한다.

1. 상주하는 사람이란? (9 · 페이지)
2. 가구란? (12 페이지)
3. 조사표(전수, 표본, 외국인 조사표중)는 올바른 것을 선택하였는가? (40 페이지)

위의 1.2 및 3을 명확히 인식하고 난 다음에는 다음과 같이 순서데로 기입해 나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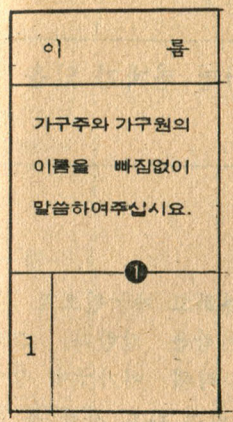

묻는 법

"가구주와 가구원의 이름을 빠짐 없이 말씀하여 주십시요."하여 응답자가 답변하는 대로 일단 이름을 전부 기입한 후 또 이집에 살고 있는 사람은 없읍니까? 등으로 누락과 상주여부를 확인한다.

요 점

1. 그집에서 상주하는 사람을 한사람도 빠뜨려서는 안된다. 이것이 센서스를 실시하는 가장 기본목적인 요건이다.
2. 상주하는 사람이란 제2의 조사대상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3개월 이상 이집에서 생활하여 오거나 생활할 예정인 것을 뜻한다.
3. 잠시 여행중인 사람, 갖난 애(특히 산모와 함께 병원에 있는 아이 노인 등은 빠뜨리는 경우가 많다.)
4. 자기가 사는 집을 따로 가지고 있으며 잠시 다니러온 사람은 기입하지 않는다.
5. 이름을 아직 안지었기 때문에 정식 이름이 없을 경우에는 김(미정)이라고 써 넣는다.
6. 이름을 기입하는 순서는 제일먼저 가구주를 기입하고 가구주의처, 미혼자녀, 기혼자녀, 부모, 가구주의 형제 자매, 친척, 동거인을 순서대로 기입한다. 그런데 특히 주의하여야 할 것은 가구주를 제일먼저 기입할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빠지기 쉬운 사람	잘못 포함되기 쉬운 사람
식모, 점원, 하숙인, 갖난 애, 노인, 여행중인 가족등.	① 친정에 잠시 다니러 온 딸 ① 타지에서 학교에 다니는 자녀 ③ 군에 있는 아들이 잠시 휴가로 귀가했을 때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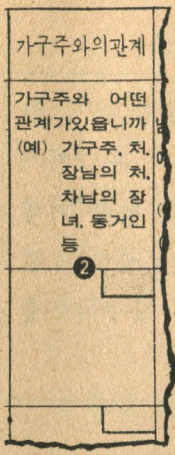

묻는 법

"……(이분)은 가구주와 어떤 관계가 있읍니까?"

요 점

가구주란?

가구의 생계(生計)를 사실상 주관하고 가구원으로 부터 가구의 대표로 인정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그러나 이러한 가구주가 어떤 사유에 의해 이가구에 상주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신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을 가구주로 한다.

1. 가족관계가 없이 두사람 이상이 함께 사는 경우나 기숙사 양노원등의 특수사회시설에서는 그 중에서 한 사람이 가구주가 될 수 있다. 그외의 사람은 기숙생, 환자, 합숙인, 사무원, 간호원, 사감등으로 그 직책 및 위치를 기입한다.
2. 간혹 본부인이외에도 부인을 가진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가구주의 "처"가 2인 혹은 2인이상이 될 수도 있다.
3. 이난을 기입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은 자세히 구체적으로 기입하는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틀린 기입 예	올바른 기입 예
아 들	장남, 차남등
며 느 리	장남의 처, 삼남의 처
손 자	삼남의 삼남, 외손자
친 척	조카, 사촌
기 타	식모, 점원, 하숙인, 동거인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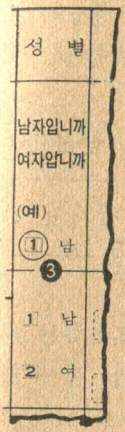

묻는 법

"……씨는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요 점 "이름"이나 "가구주와의 관계"에서 성별(性別)을 추측할 수는 있으나 이것은 가장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한번 더 물어 확인 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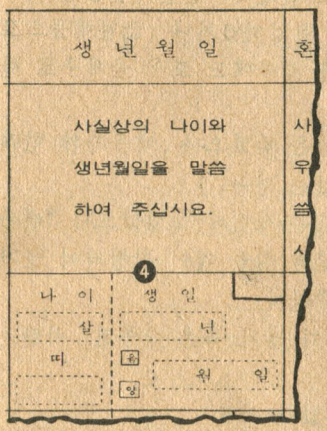

묻는 법

"……의 사실상의 생년월일(혹은 생일)은 언제입니까?"

하고 묻는다. 그러나 가족의 생년(生年)을 모르는 응답자도 많을 것이다. 이런 경우 "……의 연령과 띠는 무엇입니까?" 라고 문의하고 연령 조견표의 도움을 받는다.

요 점 1. 66년 센서스에서는 나이와 생년 혹은 띠가 일치하지 않아 막대한 지장이 있었다, 반드시 이것을 재확인 해주기 바란다.

2. 우리나라에는 연령을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다, 그러나 만

일 모르는 경우가 있으면 추정연령만 기입한다. 사실상의 연령과 호적상의 연령이 다른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사실상의 연령을 기입하며 호적을 따를 필요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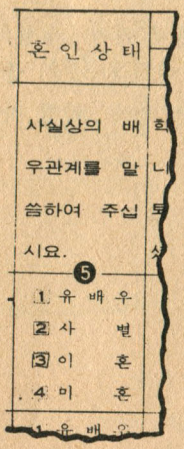

묻는 법(15세이상의 사람에게 한하여 묻는다)

"사실상의 배우관계를 말씀하여 주십시요"

요 점

1. "사실상의 배우관계"라 함은 "호적과는 관계없이 내연의 관계도 유배우자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2. 한 사람이 한명 이상의 처를 거느리고 있을 때(一夫多妻)→모두 유배우
3. 배우자의 어느 한편이 일정기간동안 외국에 유학 혹은 취업하였거나 군관계등으로 함께 살지 않을 경우에도 모두 유배우로 한다.
4. 사별이란 혼인은 하였으나 배우자의 한편이 사망하고 없는 경우
5. 법적으로 이혼은 성립되지 않았으나 "배우자와 영원히 살지 않을 것이 확정되어 별거하고 있는 분"은 이혼으로 간주한다.
(2차대전 혹은 6.25당시 배우자가 납치 혹은 실종된 사람은 이혼으로 취급한다)
6. 미혼은 한번도 혼인한 경험이 없는 사람
7. 두번이상 혼인한 경우 최종상태를 배우관계로 한다. 초혼에 실패(이혼)하고 재혼하였으나 사별하여 현재 홀로 있으면 사별에 해당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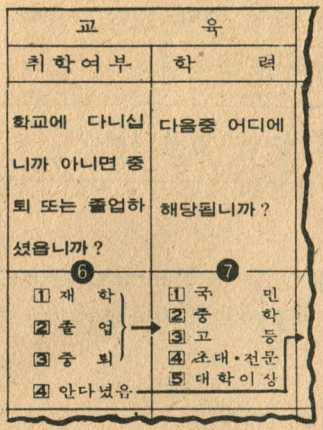

묻는 법 (5세 이상의 인구에 한하여 묻는다.)

> "……는 현재 학교에 다니고 있읍니까?"
> 다니는 경우에는 "무슨 학교에 다닙니까?"

안다니는 경우 혹은 취학 연령이 훨씬 지난 경우는 바로 "이분의 학력은?"

"이 학교를 졸업하셨읍니까? 혹은 중퇴하셨읍니까?"라고 물어 확인한 후에 해당란에 기입한다.

요 점

1. 재학이라 함은 현재 학교에 다니고 있거나, 방학, 또는 특수사정으로 잠시 쉬고 있는 것을 포함하며 1학기 이상의 휴학은 포함하지 않는다.
2. 학교라 함은 정규학교에 한한다. 정규학교는 주 야간을 막론하고 국민(공민)학교, 중(고등공민)학교, 고등(구제중학교 포함)학교 혹은 초대(구대학 예과 포함) 대학이상(각급 사관학교, 신학교 포함) 등을 말하며 이와 다른 양재, 미(이)용, 요리, 자동차, 타이프등의 학원, 유치원, 공무원교육원, 경찰전문학교, 교도관학교, 수험을 위한 학원등은 이에 포함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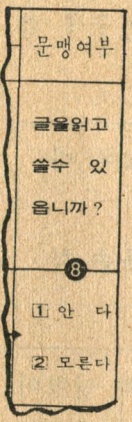

묻는 법 (학교를 전혀 다닌 적이 없는 10세 이상 인구에 한하여 묻는다)

> "이분은 글을 읽고 쓸 수 있읍니까?"

라고 묻는다.

요 점 1. 간단한 글을 읽을 수 있고 또한 쓸수도 있는 사람만이 "1 안다"에 해당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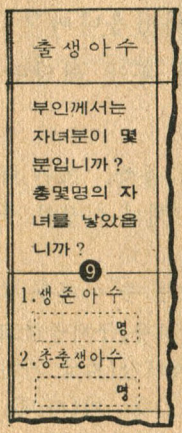

묻는 법

> (15세이상의 기혼부인(유배우·사별 및 이혼)에 한하여 묻는다)

제일 먼저 "이 부인은 몇분의 자녀를 갖고 계십니까?"라고 물어 생존아수를 기입하고 이 부인께서는 사망한 자녀가 있읍니까?

죽은 자녀까지 합하면 몇명의 자녀를 낳았읍니까? 등 자세히 물어 총출생아수를 기입한다.

요 점 1. 양자·수양아들등 이 부인이 실제로 낳지 않은 자녀는 포함하지 않는다.

2. 유산·사산의 경우는 포함하지 않고 출생후 사망한 아이는 포함한다.

3. 45세 이상의 부인으로서 출생아수가 5명 미만일 경우 일단 누락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고 다음 사항을 재확인한다.

① "지금 현재 부인과 함께 살지 않고 다른 곳에서 사는 자녀가 포함되었읍니까?"

② 출생후 곧 사망한 아이가 빠진 것은 없읍니까?

3. 재혼부인의 경우

"초혼시의 자녀중 빠진 사람은 없읍니까?"라고 물어 누락된 출생아가 없는가를 재확인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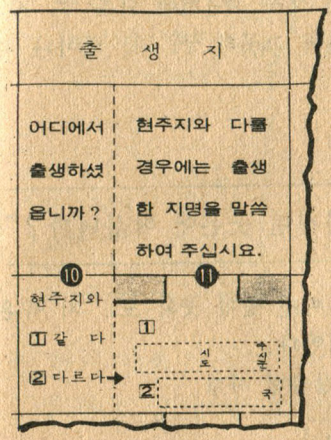

묻는 법 (전가구원에 대하여 묻는다)

"이분은 어디에서 출생하셨읍니까?"

라고 질문하여 출생지가 현재 살고 있는구, 시, 군과 같은가의 여부를 파악한다. "2 다르다"의 경우는 다시 출생도와 시, 군을 물어 ⑪란에 기입한다.

요 점

1. 본적지와는 관련없이 그 사람이 실제 태어난 곳을 도, 구, 시, 군까지 기입한다.
2. 외국에서 출생한 사람 ⟶ 2 국에 출생국명을 기입한다.
3. 출생한 도는 알지만 군은 모르는 경우에는 도만이라도 기입한다.
4. 같은 집에서 출생하지 않은 경우라도 같은 구, 시, 군에서 출생한 경우 "1 같다"에 해당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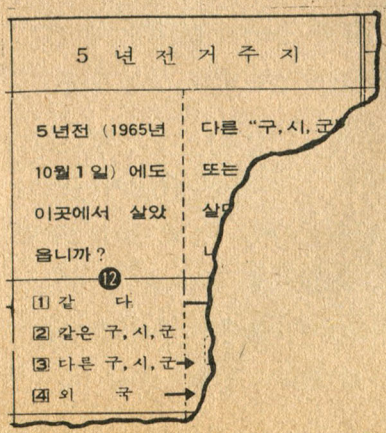

묻는 법 (5세이상 전인구에 대하여)

"5년전에도 이곳에 살았읍니까?"

5년전이라 함은 1965년 10. 1 이전을 말한다

1. 1 같다의 경우 : 1965년 10. 1 이전에도 이곳(이집)에서 살았다는 것을 말한다.

2. ②같은구, 시, 군의 경우 같은집은 아니지만 같은구, 시. 군에서 살았다는 것을 말한다.
3. ①과②에 해당될 때 ⑬란은 사선「＼」을 한다.
4. ③다른구, 시, 군 및 ④외국인 경우 5년전에 다른 구, 시, 군이나 외국에서 살았다면 ⑬란에 그곳의 구, 시, 군이나 외국명을 기입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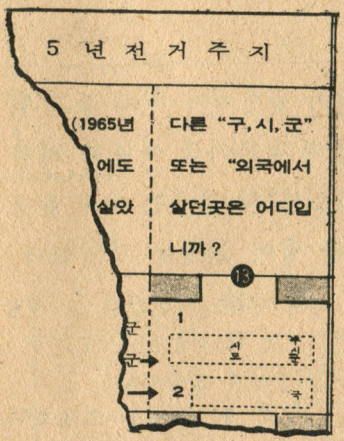

묻는 법

"이전에 사시던 곳은어 디십니까?"

요 점 1. 이전 살던 곳의 도, 시 혹은 군명을 기입한다.

2. 외국에서 살았던 사람

2. 미 국

3. 이전거주지라함은 최소한 3개월이상 살았던 곳.
4. 이전거주지가 많을 경우 현거주지로 이사오기 직전의 거주지만 기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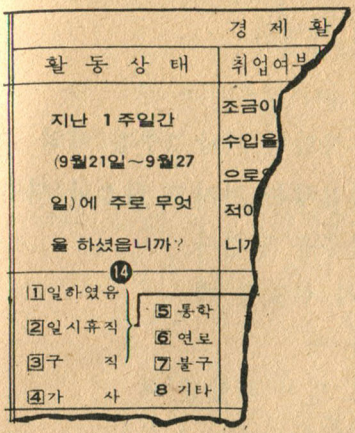

경제활동사황

14란부터 19란까지는 그 사람의 경제적 특성치를 알아보는데 목적이 있다. 앞의 ④생년월일 란에서 나이가 만 14세미만(1956. {양 10. 1 / 음 9. 2}이후 출생자)인 사람에게는 경제활동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지 않으므로 모두 사선「＼」을 긋고 만 14세 이상인 사람에 한 하여 다음과 같이 조사한다.

이 란은 만 14세 이상인 사람은 빠짐없이 "1 일하였음"으로부터 "8 기타"까지 어느 한곳에 반드시 해당되어야 한다.

지난 1주간에 주로한 행위란 평상시에 했던 활동과는 관계없이 9월 21일 (월요일)부터 9월 27일(일요일) 사이에 활동한 행위를 말하며 그 행위가 적어도 3일이상 또는 18시간 이상 활동한 행위를 말한다.

1. 일하였음

(1) 자기가 경영하는 농장, 사업체, 상점, 병원, 법률사무소 등에서 소득, 사업수익 이윤등을 얻기 위하여 한 활동.

(2) 남에게 고용되어 임금, 봉급, 현물, 봉사료 등을 받기 위하여 한 활동.

(3) 가족 또는 친척이 경영하는 농장, 사업체, 상점등의 이익 및 소득을 올리는데 도운 활동.

(4) 영외에 거주하는 군인이 군에 복무한 활동. 군인이라함은 육군, 해군, 공군 및 해병대를 말하며 국방부나 기타

부대에 근무하는 군속은 군인이 아니다.

2. 일시휴직

평소에는 "1 일하였음"에 해당될 사람이 지난 1주간(이하 조사주간이라 부른다)에 직업 또는 사업체는 가지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잠시 일을 중지하였음을 말한다.

(1) 자기 또는 가족의 병으로 일시 쉬었을 때

(2) 일기가 불순하여 일시 쉬었을 때

(3) 휴가, 연가, 근무소집 등으로 일시 쉬었을 때

(4) 노동쟁의 및 파업으로 일시 중단하였을 때

주의 : (가) 가족이나 친척이 경영하는 농장, 사업체, 상점등에서 보수없이 일한 사람은(가족 종사자) 누구에게 고용된 것도 아니고 또한 자기 사업체도 없으므로 조사주간 중 어떤 사정으로 일을 일시 쉬었다 하더라도 일시 휴직에 분류해서는 안되며 그 상태에 따라 다른 곳에 분류하여야 한다.

(나)취업자, 예를 들면 미장이, 목수, 얼음장사등이 계절관계로 일을 쉬고 있을 때도 일시 휴직으로 분류해서는 안되며 그 상태에 따라 다른 곳에 분류하여야 한다.

3. 구 직

조사주간 중 실제로 일은 못하였으나

(1) 구직광고, 직업소개소, 친구 및 친지를 통하여 실제로 일거리를 구하여 본 사람.

(2) 구직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였거나 취직이 확정된 통보를 받고 대기중에 있는 사람

(3) (1)과 같이 구직활동을 했어야 했는데 일시적 병, 일기

불순등의 이유로 실제 구직활동을 하지 못한 사람

(4) 자기에게는 구직할만한 일거리가 없다고 생각하여 구직을 아예 포기하였거나 일거리를 구하다 구하다 지쳐 구직을 단념한 사람.

주의 : (가) 이상 4가지중 (1)과 (2)는 쉽게 파악할 수 있으나 (3)과 (4)에 해당되는 사람은 (8) 기타 및 딴곳에 분류되기 쉬우므로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나) 학교를 갓 졸업한 사람, 군대에서 바로 제대한 사람이나 혼인연령에 달한 여자의 상태에 유의하여야 한다.

(다) 현재 일을 하면서 보다 많이 또는 보다 좋은 직업을 갖기 위하여 구직활동을 했을 때는 "1 일하였음"에 해당된다.

4. 가 사

조사주간 중에 주로 가정(집안)에서 다음과 같은 활동(행위)을 한 사람을 말한다.

(1) 밥 짓고, 빨래하고, 아기를 보았거나

(2) 자기집에 땔 나무를 하였거나

(3) 자기집의 울타리를 고치고 페인트칠, 아궁이 수리등을 했을 때

주의 : (가) 식모, 보모, 유모, 머슴과 같이 보수를 받는 사람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을 때

"① 일 하였음"에 그들을 분류하여야 한다.

(나) 가정주부가 집안에서 봉투를 부치거나 재봉틀로

옷을 만들어 품삯을 받았을 때 "[1] 일 하였음"에 해당한다.

5. 통 학

조사주간에 주로 학교에 다닌 것을 말한다. 여기서 학교라함은 정규학교 뿐만 아니라 양재, 미용, 이용, 타이프, 라디오, T V, 자동차 운전학원 등 비정규학교에 다닌것도 포함한다.

주의 : 정규 또는 비정규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조사주간중 주로 신문을 팔았으면 "[1] 일하였음"에 가정교사직을 구하러 하였다면 "[3] 구직"에 해당한다.

6. 연 로

나이가 너무 많아 일이나 구직활동을 하지 못하고 놀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그러나 아무리 나이가 많더라도 실제 일을 하였거나 구직활동을 한 사람은 "[1] 일하였음"이나 "[3] 구직"에 해당된다.

7 불 구

선천적으로 불구였거나 장기간 동안 질환으로 정신적 및 육체적으로 도저히 일할 수 없는 사람을 말한다.

그러나 육체적 결함이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실제 일을 했을 때, 즉 앉은뱅이가 시계를 수리하고 도장을 팠을 때 "[1] 일하였음"에 해당한다.

8. 기 타

보수없이 자발적으로 종교단체 자선사업체 등에서 일하였거나 이상 [1]에서 [7]까지에 분류할 수 없는 사람은 여기에 속한다.

[7]과 [8]에 해당된 사람은 ⑮란부터 ⑱란은 사선을 긋고 ⑲란을 질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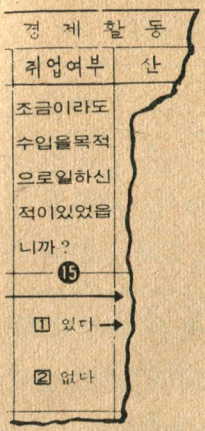

묻는 법

이 란은 ⑭란에서 4부터 6까지에 해당되는 사람 가운데 조사주간 중 조금이라도 일한(1시간 이상) 사람을 조사할 목적으로 설정한 항목이다.

1. 있다

(1) 조사주간중 주로 가사에 종사하던 가정주부가 들에나가 농사일을 조금 도운 경우

(2) 조사주간 중 주로 통학하던 학생이 자기집에서 경영하는 상점이나 농장에 나가 일을 도운 경우

(3) 연로자가 조금이라도 일하였을 때

주의 : 이러한 일을 한 사람이 3일 또는 18시간이상 일하였을 때는 ⑭란 "1. 일하였음"에 해당된다.

2. 없다

조사주간 중 그의 활동이 전적으로 가사, 통학이거나 연로상태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여기에 속한 사람은⑯란부터 ⑱란까지 사선을 긋고 ⑲란을 묻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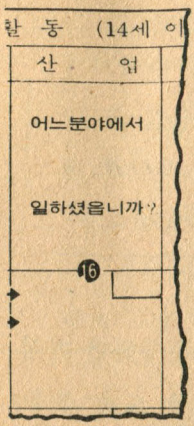

묻는 법

> 이 란은 조사주간 중에 그 사람이 일한회사, 기관, 상점, 사무소 사업체 등의 장소, 이름, 종류, 일의 내용등을 구체적으로 명확히 기입하여야 한다.

이 란에 기입하여야 할 사람은 ⑭란의 "① 일 하였음" "②일시휴직" "③구직"과 ⑮란의 "① 있다"에 해당될 때 질문을하여야 하며 일시휴직인 경우는 휴직 이전의 산업을, 구직인 경우는 실업하기 이전의 산업을 기재하고 아직 일한 경험이 한번도 없는 사람은 "없음"으로 기재한다.

이때 연령, 교육정도등을 고려하여 구직자의 이전 산업에 누락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 명확히기 입하여야 한다 함은

(1) 행정기관 및 산하단체, 연구소등에서 일하였을 때

행정기관명은 흔히 통칭이나 개괄적으로 기업하는 예가 많으므로 아래와 같이 기입한다.

가. 중앙, 도, 시, 군등의 지명을 표시한다.

나. 적어도 국(局) 단위의 기구명을 표시한다.

예 : 서울시 공무원교육원, 체신청 우체국, 철도청 공작창, 전매청 연초제조창, 경남도청 건설국, 보령군청

(2) 사업체, 회사, 공장, 상점등에서 일하였을 때

가. 사업체, 회사, 공장상점 등의 이름이 그 사업체, 회사 공장, 상점등의 종류, 기능, 내용 등을 나타낼 때는 그

이름을 기입한다.

예 : 한국전력회사 영업부, 대한중석 경리부, ○○모직 제조부, ○○○양복점 판매부, ○○양화점 제조부, ○○미장원

나. 사업체, 회사, 공장, 상점등의 이름이 그 사업체 회사 공장, 상점등의 종류, 기능, 내용등을 나타내지 않을 때는 그 이름을 쓰고 ( )내에 사업체, 회사, 공장, 상점 등이 실제하고 있는 내용, 기능, 종류등을 기입하고 만약 자기가 일을 하는 곳이 이름이 없을 때도 실제하고 있는 내용, 기능, 종류 등을 기입한다.

예 : 동방양행(잡화 도매) 한일기업사(목재 가구 제조) 태평양 산업사(건축, 토목업) 곡물 도매, 화장품 소매, 알미늄 식기제조, 식료품 소매

다. 사업체, 공장, 회사 등에서 한가지 이상의 물건을 제조하거나 판매할 때 또는 여러 종류의 기능을 가질때 그 중에서 주된 것으로 기입한다.

(3) 자기 또는 남의 집에서 일하였을 때

가. 자기스스로 경영하거나 남이 경영하는 집에서 일하였을 때 "자기집" 또는 "남의 집"으로 표시하고.

나. 일한 내용, 종류를 기입한다.

예 : 내가 (우리 집에서) 경영하는 논, 남의 밭, 남의 책방, 나의 세탁소, 남의 병원, 나의 조산원

(4) 군 복무를 할 때

영외 거주 군인이 군에 복무하였을때 "군복무"라 기입하고 ⑰, ⑱, 란은 사선을 긋고 군에서 제대하여 ⑭란 "③구직"에 해당된 사람의 전 산업도 역시 "군 복무"라 기입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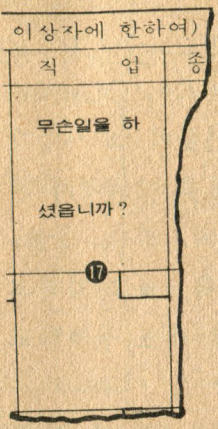

묻는 법

이 란은 그 사람이 실제로 한 일의 종류(직업)를 구체적으로 기입하여야 한다.

산업이나 직업을 기재할 때는 약어(略語)를 사용해서는 안되며 학술용어, 전문용어는 사용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주의 가. 젊은 사람을 조사할 때에는 전문적 기술적 그리고 관리적인 직업을 갖는 경우가 드물다. 그러므로 이같이 오랜 경험과 교육을 필요로 하는 직업은 젊은 사람에게는 흔히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나. 기술자에게 질문할 때

기술자란 말은 흔히 사용하지만 "기술자" 자체로서는 직업을 분류하기 힘드므로 "어떤 일을 하는 기술자" "어떤 기계를 조작하는 기술자"인가를 확인하고 기계를 조작할 때는 기계 이름을 기입할 것

예 : 인쇄기계 조작, 방적기계 조작, 전자계산기 조작, 자동차 엔진 제조.

다. 직위표시

자기가 일하고 있는 사업체, 공장, 회사, 상점등에서 그의 직위(職位)를 표시하여야 한다.

예 : 경리부장, 회계사원, 직물공장 공장장, 판매(사)원, 내무국장, 토목공사 현장감독, 어업조합대표이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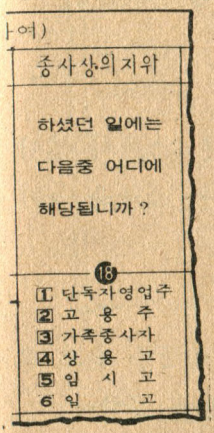

묻는 법

이 란은 앞의 산업등에서 이미 응답자가 대답하는 예가 많다.

산업, 직업, 종사상의 지위는 서로 밀접한 관련성과 일관성이 있으므로 따로 따로 질문하여 한 가지씩 기입하기 보다는 응답자의 연령, 성, 교육정도 등을 참작하여 한질문으로서 모두 유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앞에서 "어떤 종류의 사업체"에서 "어떤 종류의 일"을 하였나를 조사하였으며, 이 난은 "어떤 상태"로 있었나를 알아 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구분하였다.

1. 단독 자영업주

단독자영업주라 함은 고용인을 두지 않고 자기스스로 사업을 경영하거나 농장을 경영하는 사람 또는 상점이나 전문적인 사업을 독립적으로 경영하는 사람을 말한다.

"예" 자기 단독으로 경영하는 상점, 농장, 법률사무소 등

단, 가족의 일원이 무보수로 상점, 농장등의 일을 도울때 이들을 고용인으로 보지 않는다.

2. 고 용 주

고용주란 한사람이상 고용인을 두고 사업을 경영하거나 농장을 경영하는 사람 또는 상점이나 전문적인 사업을 독립적으로 경영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가족종사자

가족 종사자란 자기에게 직접적으로 이익이나 소득이 없이 가족이 경영하는 농장, 사업체, 상점의 이익이나 소득을 높이는데 도운 사람을 말한다.

4. 상 용 고

상용고란 관청에나 개인사업주에게 임금 및 봉급을 받고 고용되어 있으며, 고용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예 : 중앙, 지방의 정규직 공무원, 회사, 공장, 사업체 등의 정규 직원

5. 임 시 고

임시고란 관청이나 개인사업주로 부터 임금 및 봉급을 받고 고용되어 있으며 고용계약 기간이 1년미만 1개월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6. 일 고

일고란 관청에나 개인사업주로부터 임금, 수당, 보수를 받고 고용되어 있으며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사람 또는 전문적인 기술이나 일정한 사업장이 없이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

예 : 날품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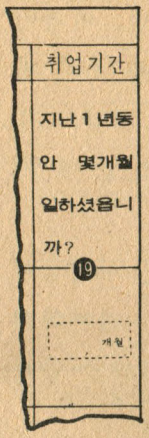

묻는 법

이 란은 조사주간과는 관계 없이 14세이상의 모든 사람의 지난 1년(1969. 1. 1~12. 31) 동안에 대하여 취업 여부를 알아보고 취업한 사람에게는 취업기간(월수)을 조사하는 항목으로 응답자의 기억을 되살리는 방향으로 질문하여 가능한 한 기억오차를 적게하여야 한다.

즉 지난 1년동안(작년)에 일하신 적이 있었읍니까? 하고 질문하여 "없다"하고 응답하면 ○개월이라 기입하고 "있다"하고 대답하면 몇개월 일 하셨읍니까? 하고 질문한다. 조사주간의 산업, 직업, 종사상의 지위를 참작하면서 다음과 같이 조사한다.

1. 일정한 직업을 가진 상용고, 임시고와 자기 사업체를 가진 고용주, 단독자영업주의
   (1) 일시휴직은 일한 것으로 간주한다.
   (2) 학교선생이 방학동안에 쉰 것도 일한 것으로 간주한다
2. 계속하여 일하지 않고 간헐적(띄엄 띄엄)으로 일했거나 불규칙적으로 일한 사람의 취업기간은 달수(月數)로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주별(週別) 또는 일수로 조사하여 달수로 환산하여야 한다.
   연중 매월 20일 이상(2/3) 일한 것은 1년 내내 일한 것으로 보며 몇개월은 10일미만 일하였을 때는 다른 달의 일한

일수를 합쳐서 달수를 계산한다. 가령 예를 들면, 미장이가 지난 1년동안 즉 12월, 1월, 2월은 전연 일을 하지 않았고 3월, 8월, 11월은 각각 10일, 5일, 10일간, 4월, 5월, 6월, 7월, 9월, 10월은 모두 20일 이상 일했다고 할 때 이 사람의 취업월수는 7개 월로 기입한다.

3. 변호사, 의사 등 전문적기술이나 자유업을 가진 사람들이 법률사무소나 병원을 개업하고 있을 때는 비록 사건의뢰 소송 청탁을 하러 오지 않거나 환자가 없는 날이라도 일한 일수로 간주한다.

이상 경제활동에 관한 항목을 도표를 그려 묻는 방법과 기입 요령을 다음과 같이 표시한다.

조사주간〔9월 21일(월요일)~9월 27일(일요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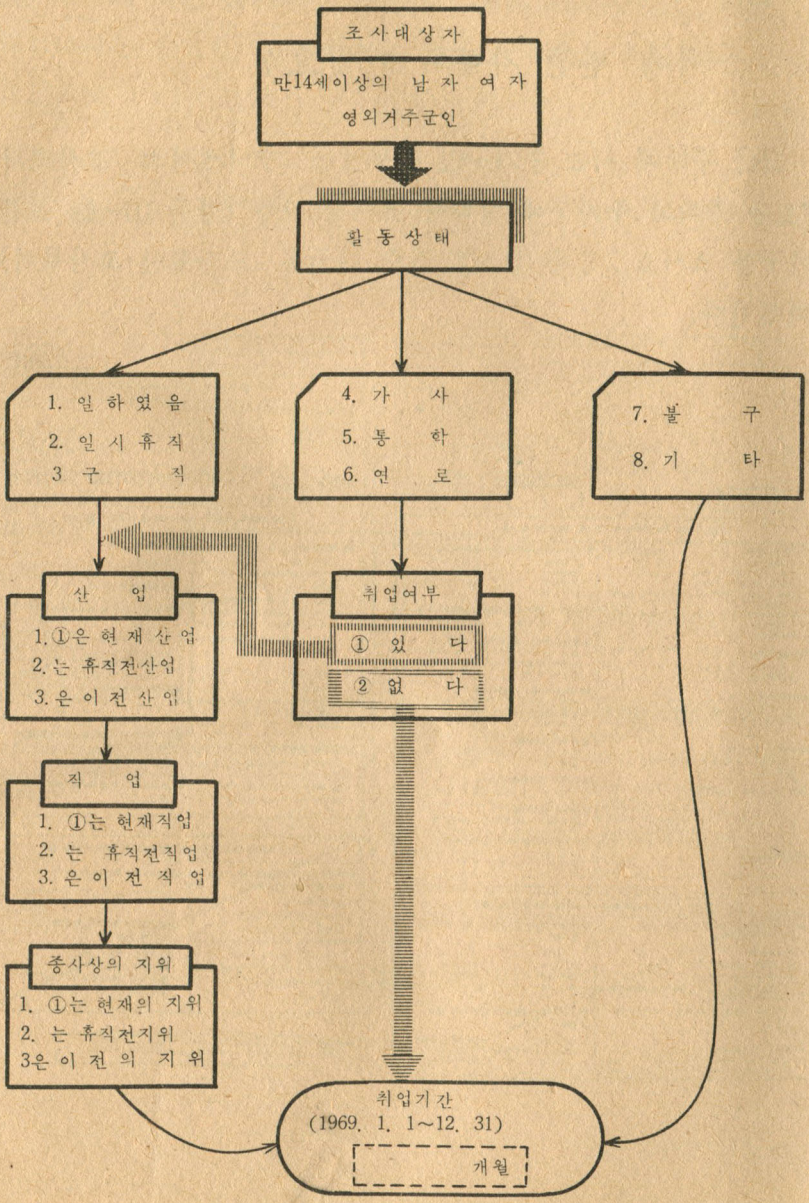

주택에 관한 사항의 기입요령

모든 주택에 사는 주가구인 경우에는 주택센서스 조사표의 "모든 주택의 주가구에 대하여 조사할 사항"(항목 ①—⑭ 표본 가구용 조사표 : 항목 ①—⑦ 전수 가구용 조사표만 조사하여) 기입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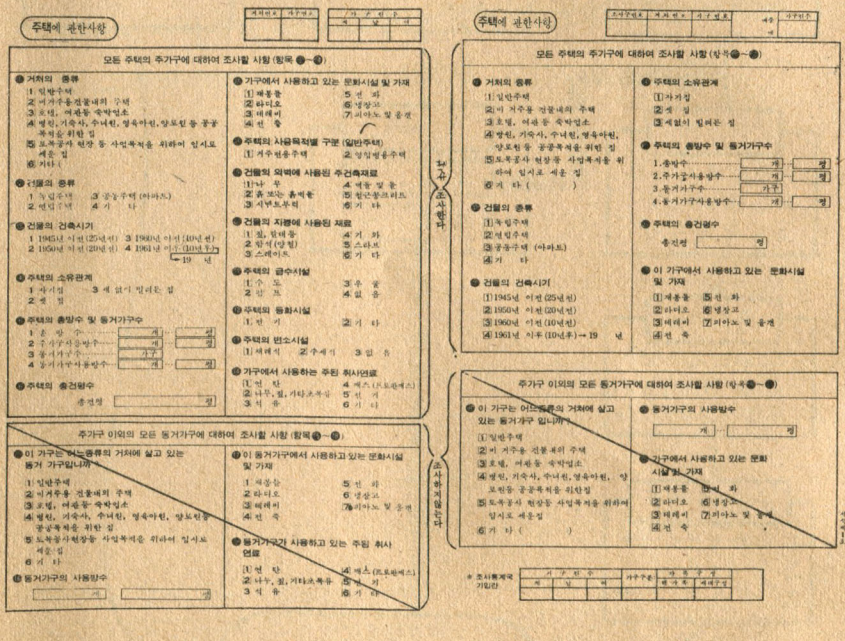

모든 주택에 사는 동거가구 및 주택이외의 거처에사는 가구에 대하여서는 주택센서스조사표의 다음 사항만을 조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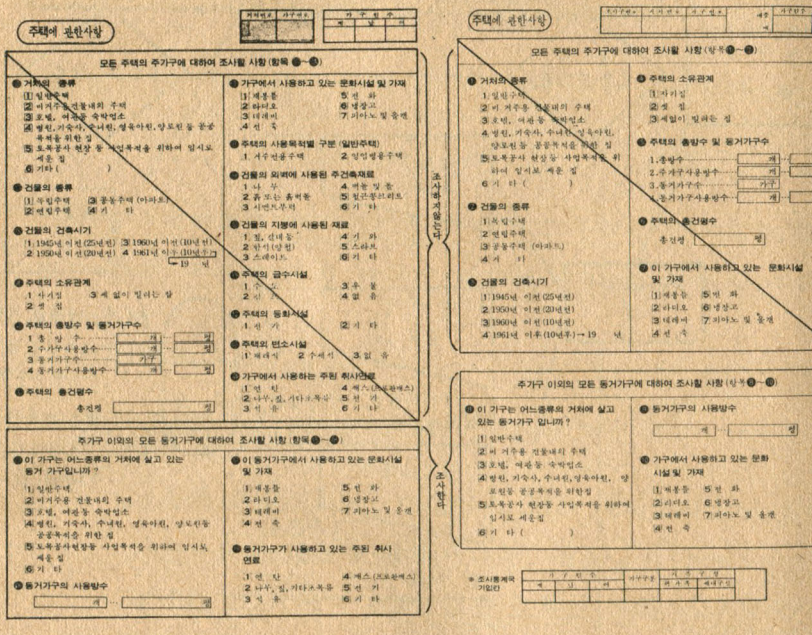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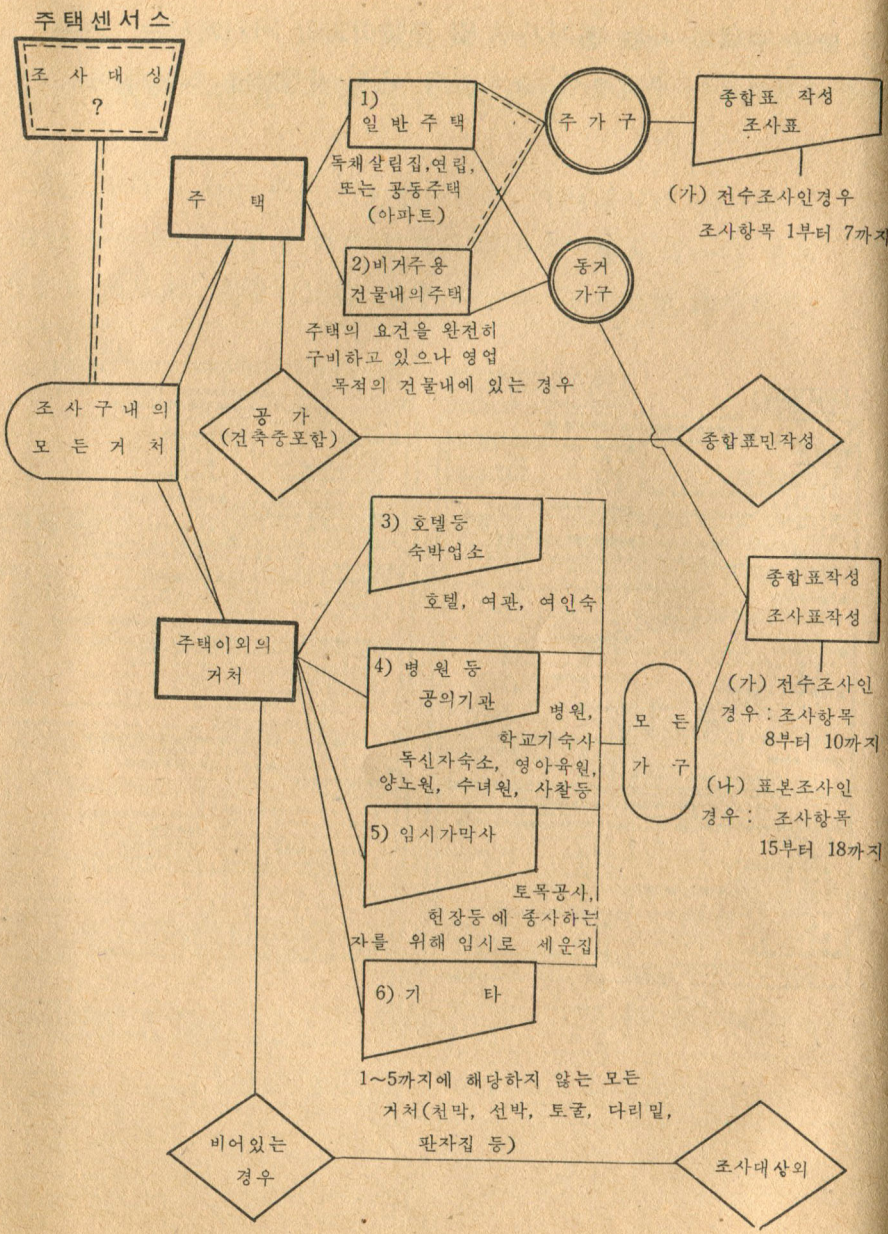
주택센서스
조사대상?
주택
1) 일반주택
독채살림집, 연립, 또는 공동주택 (아파트)
2) 비거주용 건물내의 주택
주택의 요건을 완전히 구비하고 있으나 영업 목적의 건물내에 있는 경우
주가구
동거가구
종합표 작성 조사표
(가) 전수조사인 경우 조사항목 1부터 7까지
조사구내의 모든 거처
공가 (건축중포함)
종합표만작성
주택이외의 거처
3) 호텔등 숙박업소
호텔, 여관, 여인숙
4) 병원등 공의기관
병원, 학교기숙사, 독신자숙소, 영아육원, 양노원, 수녀원, 사찰등
5) 임시가막사
토목공사, 현장등에 종사하는 자를 위해 임시로 세운집
6) 기타
1~5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거처(천막, 선박, 토굴, 다리밑, 판자집 등)
모든가구
종합표작성 조사표작성
(가) 전수조사인 경우 : 조사항목 8부터 10까지
(나) 표본조사인 경우 : 조사항목 15부터 18까지
비어있는 경우
조사대상외

❶ 거처의 종류

1 일반주택
2 비거주용건물내의 주택
3 호텔, 여관등 숙박업소
4 병원, 기숙사, 수녀원, 영육아원, 양로원 등 공공목적을 위한 집
5 토목공사 현장 등 사업목적을 위하여 임시로 세운 집
6 기타 ( )

묻는 법

이 항목은 조사원이 먼저 해당 가구가 살고있는 거처가 주택인가 주택이외의 거처인가를 확인하고 주택인 경우에는 1 또는 2에, 주택 이외의 거처인 경우에는 3 4 5 6의 해당사항에 "○"표를 할것

가) 주택인 경우 : (1 과 2)

ㄱ. 독채 살림집이나 연립주택 또는 아파트건물과 같이 거주목적의 건물안에 여러개의 살림집이 들어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이 속해 있는 건물이 주택 으로서의 목적만으로 건축되었거나 개조된 건물이면 1 일반주택에 해당된다.

ㄴ. 그러나 조사대상 가구가 살고있는 건물이 영업 및 기타 비거주 목적인 건물로서 그 건물안에 주택이 들어있는 경우는 2 비거주용 건물내의 주택에 해당된다.

ㄷ. 예시 2의 경우 주인가구가 살고 있는 건물이 주택인가 여관인가를 구별하는 기준은 주인가구의 거주부분이 건물의 총건평수의 $\frac{1}{5}$을 초과하는 경우 이 건물은 일반주택으로 보고 $\frac{1}{5}$미만인 경우에는 이 건물을 영업용(여관) 건물로 보고 거주부분이 주택의 요건을 구비하고 있으면 ②로 보고 주택의 요건을 구비하고 있지 않으면 주택 이외의 거처 즉 ③호텔 여관등 숙박업소에 사는 가구로 간주 한다.

(예 1)

(예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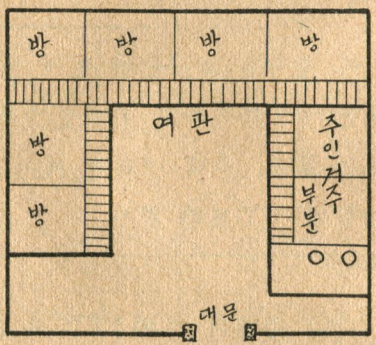

(예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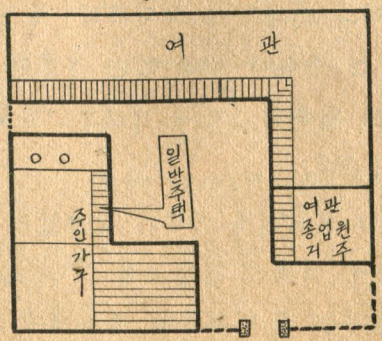

❷ 건물의 종류

1 독립주택　　3 공동주택 (아파트)
2 연립주택　　4 기　　타

묻는 법

조사원이 직접 확인하여 해당사항에 "○"표를 할것.

1 **독립주택** : 한가구만이 살도록 건축 또는 개조된 별동건물(別棟建物)로서 흔히 말하는 "독채살림집"을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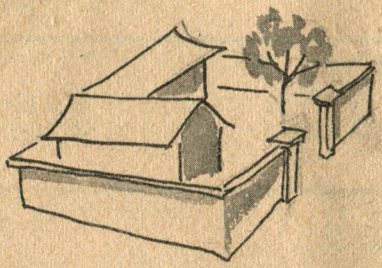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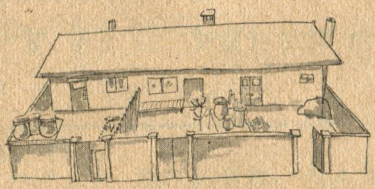

2 **연립주택** : 한개의 단층(單層)건물로서 주택의 요건을 갖춘 단위가 둘 이상 있어 그 출입구가 옥외(屋外)로 직접 접하여 있는 주택을 말한다.

3 **공동주택** : 아파트와 같이 한개의 건물안에 여러개의 주택이 있으며 그 출입구가 공용의 복도나 층계를 통하여 있는 것을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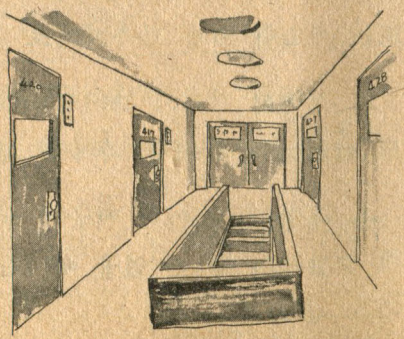

④ 기 타 : ① 거처의 종류에서 : ⑪ 비거주용 건물내의 주택을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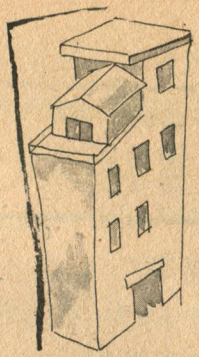

❸ 건물의 건축시기

1 1945년 이전(25년전) 3 1960년 이전(10년전)
2 1950년 이전(20년전) 4 1961년 이후(10년후)
→19 년

묻는 법

이 주택은 지은지가 얼마나 됩니까? 그리고 가구주 또는 그 주택의 내용에 대하여 잘 아는 건물의 관리인 (아파트 등 공동주택 건물인 경우)에게 물어 해당사항에 "○"표를 한다.

1. 증축 또는 개조한 경우에는 최초의 건축시기를 기입하여야 한다. 단, 증축 또는 개조한 부분이 더 많은 경우에는 증축 또는 개조한 때를 건축시기로 간주한다.

2. 건축한 시기가 1961년(5.16 나던 해) 이후인 경우에는 해당 번호 ④에 ○표를 하며 그 건축년도를 물어 기입하여야한다

3. 고옥(古屋)이기 때문에 신축후 증축 또는 개축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알 수 없을 때에는 그 주택의 신축시기를 건축시기로 간주한다.

주 의

1. 대규모적인 개조 :

건물을 거의 해체하여 다시 지은 경우라던가 주택이 아닌 건물을 주택으로 개조한 경우에는 개수(改修) 또는 개조한 시기를 그 건물의 건축시기로 본다. 기타 개조 또는 개수의 경우는 최초의 신축시기로 간주한다.

2. 신축이래 수차에 걸쳐 증축하였을 경우 :

(예 : 최초 8평→ 일차증축후 12평→ 2차증축후 18평→ 3차증축후 22평으로 현재 22평인 경우) 최초의 신축당시를 건축시기로 간주한다.

3. 건축의 시기가 서로 다른 2동(棟)의 건물이 주택인 경우 그 건축시기는 총건평이 더 큰 건물의 건축시기를 그 주택의 건축시기로 간주한다.

❹ 주택의 소유관계

1 자기집　　3 세 없이 빌려든 집

2 셋 집

묻는 법

"이 집(주택)은 댁의 소유입니까?" 아니면 "세든집"입니까? 라고 물어 해당사항에 "○"표를 한다.

1 ㉠ 법적등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을 경우

㉡ 분할불등으로서 그 금액이 완불되지 않았을 경우에도 자기집으로 간주한다.

2 자기집이 아닌 주택에서 현금 또는 기타 방법으로 집세를 물고 있는 가구를 말한다.

③ 세없이 빌려든 집이란 관공서·회사·공공기관등에서 소유 또는 관리를 하면서 그 직원 및 노무자에게 직무의 편의상 무상(無償)으로 대여한 주택 또는 친척이나 친구 집에서 세 없이 빌려 살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❺ 주택의 총방수 및 동거가구수

1 총 방 수		개	…	평
2 주가구사용방수		개	…	평
3 동거가구수		가구		
4 동거가구사용방수		개	…	평

묻는 법

"이 주택의 방은 전부몇개나 됩니까? 이 때 방에 넣어서는 안될 부엌. 목욕탕 등을 설명할 것.

1. 방이라 함은 침실, 서재, 식당방, 응접실, 식모방, 한옥의 대청마루, 개량문화 주택의 마루와 같이 사방이 벽으로 차단되어 있고 천정이 있으며 어른 한사람이 마음대로 기동할 수 있을 정도의 천정높이 (6尺 이상)와 방넓이 (반평이상)를 갖춘 거주용 공간을 말한다.

2. 부엌, 통로로 사용되는 복도, 또는 낭하, 현관, 베란다, 로비, 목욕실, 변소, 그리고 점포, 사무실등은 방수에서 제외된다.

3. 총방수라 함은 주택 또는 주택 이외의 거처 에서 방의 요건을 구비한 방의 총개수를 말하며 방의 총평수는 각방평수의 총 합계평수를 말한다.

4. 주가구 사용방수 및 방평수에는 주택내에 세 또는 기타조건으로 살고 있는 동거가구가 있을 경우 그 동거가구의 사용방

수를 제외하고 주가구가 실제로 사용하는 방수 및 방평수를 기입한다.

5. 주택에 한가구만이 거주하고있을 경우에는 ③ 동거가구수 및 ④ 동거가구 사용방수 및 방평수에는 와 같이 사선을 긋고 조사할 필요가 없다.

6. 동거가구가 있을 경우에는 주가구를 제외한 동거가구수를 확인하여 "② 동거가구수"에 기입하고 그들이 사용하고 있는 총방수 및 해당 방평수를 조사하여 기입한다.

7. 조사원은 심사시 다음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가) 동거가구가 있는 경우 ② 주 가구의 사용방수 및 방평수와 ④ 동거가구의 사용방수 및 사용방 평수의 합계가 ①의 총방수 및 방평수와 일치하는가를 확인하고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시 재 조사하여 수정하여야 한다.

(나) 영업병용주택의 경우 영업에 사용되고 있는 공간이 방수 및 방평수에 포함되지 않았는가 주의 하여야 한다.

(다) 방평수는 소수점 1위까지 기입하도록 주의한다.

19.5평	15.0평

8. 고급주택 또는 개량주택의 "부엌시설과 식당"이 겸해 있는 방(Dining-Kitchen)은 방으로 간주하여 방수에 포함시켜야 한다.

9. 베란다 또는 선룸(Sun room)은 천정과 벽으로 칸이 막혀 있으면 방으로 간주한다.

10. 방으로서 주간에는 영업에 야간에는 취침하는 방으로 사용되고 있으면 방수에 계산한다.

11. 농가의 잠실(蠶室)은 잠실 만으로 사용되고 있을 경우에는 방수에서 제외하되 양잠시기가 지나고난 후에는 거주용 방

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방수로 계산한다.

12. 떠러져 있는 건물(別棟) 즉 사랑채 등과 같은 건물에 있는 거주용방도 포함한다.

❻ 주택의 총건평수

총건평 [ ] 평

묻는 법

"이 집의 총건평은 얼마나 됩니까?" 라고 가구주에게 물어 기입하되 조사원은 반드시 가구주의 대답이 옳은가를 확인할것.

1. 총건평수는 각층(各層)의 건평의 합계를 기입한다.

2. 주택에 속해 있는 거주용 부속건물은 주택의 건평수에 포함시키되 상품창고, 작업소, 영업용차고 등 영업목적의 부속건물은 제외하여야 한다.

3. 영업병용주택의 경우에는 영업에 사용되고 있는 부분을 포함하는 주택, 전체의 건평을 기입하여야 한다.

4. 거주용 부속건물로서 자가용 차고는 총건평에 포함시킨다. 그러나 기초가 안되어 있거나 사방이 벽으로싸여 있지 않으면 총건평에 포함시켜서는안된다.

5. 지하실도 총건평에 포함시킨다.

6. 아파트건물의 공용취사장, 변소, 복도, 계단등 공동부분은 안배하여 각 주택의 총건평에 포함시켜야 한다.

7. 가구주로 부터 주택의 총건평에 관한 대답을 얻지 못할때는 조사원이 직접 계측하여 기입하여야한다.

❼ 가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문화시설 및 가재

1 재봉틀
2 라디오
3 테레비
4 전 축
5 전 화
6 냉장고
7 피아노 및 올갠

묻는 법

가구주에게 1 부터 7 까지를 하나 하나 순서대로 물어 확인 후 해당 사항에 ○표를 할것.

1. 가구가 센서스 현재 소유하고 있는 문화시설 및 가재가 두가지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해당사항에 ○표를 하여야 한다.

2. 일시 다른 사람에 빌려준 경우에는 있는 것으로 본다.

3. 월부, 일부; 년부등 분활불 구입인 경우에는 자기 소유로 보고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4. 라디오의 경우에는 유선 앰프도 포함한다.

5. 전축의 경우 라디오가 부착된 경우면 2 라디오와 4 전축이 다 있는것으로 보며 라디오가 부착되어있지 않으면 4 전축만 있는 것으로 한다.

6. 전화의 경우 교환을 통하는 경우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7. 냉장고는 전기냉장고 및 얼음을 넣어 사용하는 얼음냉장고도 포함한다.

8. 피아노 및 올갠에는 전자올갠도 포함한다.

❽ 주택의 사용목적별 구분 (일반주택)

[1] 거주전용주택　　[2] 영업병용주택

묻는 법

조사원이 직접 확인하여 해당 사항에 ○표를 할것.

1. [1] 거주전용주택이란 거주목적 만으로 세워진 주택으로서 점포, 작업소, 사무실 등의 영업 또는 업무용으로 설비된 부분이 없는 것을 말한다.

2. 영업병용주택이란 거주목적으로 세워진 주택으로서 도소매업, 음식점, 복덕방, 전당포, 세탁소, 공작소, 수리공장 등 농림, 수산업을 제외한 모든 영업목적으로 설비된 부분이 거주용 부분과 함께 있는 경우를 말한다.

4. 한 울타리 또는 담안에 주택과 작업장이 있을때는 그작업장이 독립된 별동건물(別棟建物)이면 작업장을 제외한 주택만을 전용주택으로 한다.

❾ 건물의 외벽에 사용된 주건축재료

[1] 나 무　　[4] 벽돌 및 돌
[2] 흙 또는 흙벽돌　　[5] 철근콩크리트
[3] 시멘트부럭　　[6] 기 타

묻는 법

조사원이 직접 확인하여 기입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 질문을 하여 정확을 기할것.

1. 아파트인 경우에는 아파트 건물의 외벽에 사용된 주된 건축재료를 말한다. 벽재가 두가지 이상인 경우에는 많이 사용된 것을 말한다.

2. ① 나무라 함은 주로 과거의 일본식 주택과 같이 집의 기둥이 나무이며 외벽의 표면에 판자를 입힌것 또는 판자쪽으로 엮은 위에 유지(油紙)를 입히고 그 위에 철사망을 치고 그 위에 시멘트를 입혀 바른 것을 말한다.

3. ② 흙 또는 흙벽돌이라 함은 한식주택과 같이 수수대, 대(竹)등으로 엮어 그 위에 흙 또는 회(灰)를 바르거나 흙벽돌을 쌓고 그 위에 세멘트 또는 양회(洋灰)등을 입힌것을 말한다.

4. ③ 시멘트부럭이라 함은 최근의 개량주택과 같이 세멘트부럭으로 벽을 쌓은것 또는 세멘트부럭으로 벽을 쌓은 다음 타일 또는 세멘트를 바르고 그위에 도료를 칠한 경우를 말한다.

5. ④ 벽돌 및 돌이라 함은 벽돌 또는 돌로 벽을 쌓은 경우이며 세멘트부럭과 섞어 쌓되 벽돌이나 돌을 바깥쪽으로 쌓거나 입힌 경우는 여기에 포함시킨다. 인조석도 돌로 간주한다.

6. ⑤ 철근콩크리트라 함은 건물의 골조(骨造)가 철근콩크리트 기둥으로 된 건물로서 기둥과 기둥사이의 벽칸막이는 보통 벽돌, 세멘트부럭 등 여러가지를 사용한 주택의 경우를 말한다.

⑩ 건물의 지붕에 사용된 재료	
1 짚, 갈대등	4 기 와
2 함석(양철)	5 스라브
3 스레이트	6 기 타

묻는 법

조사원이 직접 확인하여 기입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 질문을 하여 정확을 기할것.

1. 지붕에 사용된 재료가 두가지 이상인 때는 사용된 재료의 지붕면적이 큰것을 주된 재료로 보고 그 주된 재료를 그 주택의 지붕재로 기입한다.

2. 주택에 부속된건물(사랑채 등)이 있어 주건물의 지붕재와 서로 다를 때에는 주건물의 지붕재를 그 주택의 지붕재로 기입한다.

3. 1 짚, 갈대등이라 함은 농촌지역에 많은 초가집의 지붕재와 같이 짚, 갈대 및 기타 초목류의 지붕재가 해당된다.

4. 2 함석(양철)이라 함은 지붕의 재료가 함석판, 동판, 알미늄판 또는 기타 금속판으로 된 주택의 지붕을 말한다.

5. 3 스레이트라 함은 지붕재료를 「천연스레이트 및 인공스레이트」를 다 포함하며 원형스레이트, 파형스레이트, 판석, 석금판을 말한다.

6. 4 기와라 함은 세멘트기와, 조선기와 (흙기와)등을 말한다.

7. [5] 스라브라 함은 일반적으로 철근콩크리트나 벽돌 또는 석조로 지어진 건물의 평평한 지붕으로서 철근콩크리트 지붕을 말한다.

⑪ 주택의 급수시설	
[1] 수 도	[3] 우 물
[2] 펌 프	[4] 없 음

묻는 법

"이 주택에는 수도가 있읍니까?" 없다면 "그러면 펌푸나 우물은 있읍니까?" 없다면 "그러면 식수는 어떻게 얻고 있읍니까?"라고 순서대로 물어 해당사항에 ○표를 할것.

1. 수도 및 펌프 또는 수도및 우물등 주택에서 두가지 이상의 급수 시설이 있을 때는 둘을 모두 기입하여야 한다.

2. 수도가 있으나 고장이거나 수도사정이 나빠 잘 나오지 않는 경우에도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야 한다.

3. 수도에는 시영(공영) 수도 및 사설수도를 전부 포함한다.

4. 펌프라 함은 동력펌프, 수동펌프를 다 포함한다.

5. 식수공급을 위하여 주택내에 설치한 우물을 말한다.

6. 없음이란 주택내에 급수시설이 되어 있지 않아 수도이건 우물이건 자연수이건 어떤 종류의 것이든 주택외로 부터 얻어 오는 경우는 전부 여기에 해당된다.

⑫ 주택의 등화시설
[1] 전 기 [2] 기 타

묻는 법

"이 주택에는 전기가 들어와 있읍니까?"라고 가구 주에게 전기시설의 유무를 물어 기입할것.

1. 전기시설이 되어 있으면 [1] 전기에, 전기시설이 없는 경우에는 어떠한 종류의 등화시설을 가지고 있든 전부 [2] 기타에 해당한다.

2. 자기집에 자가발전시설을하여 전적으로 이것에 의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전기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⑬ 주택의 변소시설
[1] 재래식 [2] 수세식 [3] 없 음

묻는 법

"이 주택에는 변소가 있읍니까?" 있다면→ "재래식 입니까 수세식 입니까?" 라고물어 해당사항에 ○표를 할것.

1. 주택내에 설치된 변소가 수세식이 아닌 경우에는 모두 재래식으로 간주한다.

2. 없음이란 공동변소 또는 남의 변소를 공용하는 경우로서 그 주택안에 변소시설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3. 아파트 혹은 연립주택에 있어서 몇 주택이 나누어 쓰도록 설계된 공동변소는 그 주택에 변소가 있는것으로 간주하고 수세식인가 재래식인가를 구분하여 기입한다.

⑭ 가구에서 사용하는 주된 취사연료

1 연 탄	4 깨스 (프로판깨스)
2 나무, 짚, 기타초목류	5 전 기
3 석 유	6 기 타

묻는 법

"취사용으로 어떤연료를 주로 사용하고 계십니까?"라고 물어 해당 사항에 ○표를할것.

1. 식사준비를 위한 취사용 연료를 두가지 이상 사용하고 있을 때에는 비용에 관계없이 주로 많이쓰는 취사연료를 말하며 보조적역활을 하는 취사연료는 기입할 필요가 없다.

2. 난방용에는 연탄을 사용하나 취사용에는 깨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취사연료인 깨스를 기입한다.

1970년
인구 및 주택센서스

종 합 표

조사구번호 11~1 | 조사표매수 79 매 | 시도 강원 | 구시군 춘성 | 읍면 신동 | 농가 | 농업조사구번호 | ※

❶ 거처번호	❷ 가구번호	❸ 가구주또는 대표자성명	❹ 주소	❺ 가구원 계	남	여	❻ 거처의종류 주택	주택이외거처	❼ 입주여부 현주	공가	❽ 가구구분 주가구	동거가구	❾ 농가	❿ ※농가일연번호	⓫ 어가	⓬ 비고
1	1	張경환	태성리 23	4	2	2	0		0		0		0			
2	2	趙고련	태성리 23	7	3	4	0		0		0		0			
3	3	朴희순	태성리 23	5	2	3	0		0		0		0			
	4	尹세환		6	4	2						0				
4	5	金백두	태성리 23	7	3	4	0		0		0		0			
5	6	韓득길	태성리 23	3	2	1	0		0		0		0			
6	7	崔학준	태성리 23	7	5	2	0		0		0		0			
7	8	皇길영	태성리 23	4	1	3	0		0		0		0			
	9	權창희		2	1	1						0				
8	10	鄭종만	태성리 38	4	2	2	0		0		0		0			
9	11	金학성	태성리 38	6	2	4	0		0		0		0			
10	12	權창국	태성리 38	2	1	1	0		0		0		0			
11	13	宋기태	태성리 38	4	1	3	0		0		0		0			
12	14	吉영배	태성리 38	6	4	2	0		0		0		0			
13	15	金형근	태성리 37	6	2	4	0		0		0		0			
14	16	馬위관	태성리 37	7	3	4	0		0		0		0			
15	17	柳길상	태성리 34	4	1	3	0		0		0		0			
16	18	李교선	태성리 29	4	2	2	0		0		0					
17	19	朴태준	태성리 36	7	5	2	0		0		0		0			
18	20	洪금표	태성리 36	9	3	6	0		0		0		0			
19	21	申장욱	태성리 35	3	1	2	0		0		0		0			
20	22	尹주책	태성리 336	7	4	3	0		0		0		0			
21	23	金영준	태성리 40	8	4	4	0		0		0		0			
22	24	金희순	태성리 41	7	3	4	0		0		0		0			
23	25	高순욱	태성리 40	6	4	2	0		0		0		0			
24	26	金명환	태성리 43	8	3	5	0		0		0		0			
25	27	是광식	태성리 44	4	2	2	0		0		0		0			
26			태성리				0			0						공가
27	28	全홍복	태성리 44	7	2	5	0		0		0		0			
28	29	曺규학	태성리 45	6	3	3	0		0		0		0			
29	30	崔희용	태성리 45	8	4	4	0		0		0		0			
30	31	梁재건	태성리 46	6	4	2	0		0		0					
	32	梁재학		2	1	1						0				
31	33	金석환	태성리 47	5	2	3	0		0		0		0			
32	34	徐진호	태성리 47	4	1	3	0		0		0		0			
33	35	梁종천	태성리 48	7	4	3	0		0		0		0			
34	36	南영덕	태성리 49	8	3	5	0		0		0		0			
35	37	申봉순	태성리 51	4	2	2	0		0		0		0			
36	38	李인선	태성리 51	6	2	4	0		0		0		0			
	39	鄭수근		3	2	1						0				
37	40	康영봉	태성리 54	5	3	2	0		0		0		0			
38	41	金재운	태성리 55	7	2	5	0		0		0		0			
39	42	李순숙	태성리 56	8	5	3	0		0		0		0			
40	43	李춘덕	태성리 58	6	2	4	0		0		0		0			
41	44	李인운	태성리 59	9	5	4	0		0		0		0			
42	45	金석강	태성리 61	7	5	2	0		0		0		0			
	46	金불란		4	3	1						0				
43	47	朴문강	태성리 62	10	5	5	0		0		0		0			
44	48	潘장우	태성리 63	5	2	3	0		0		0		0			
45	49	林순방	태성리 65	7	6	1	0		0		0		0			
		소 계		281	138	143	45	0	44	1	44	5	4		0	

❶ 거처 번호	❷ 가구 번호	❸ 가구주또는 대표자성명	❹ 주소	❺ 가구원 계	남	여	❻ 거처의종류 주택	주택이외의거처	❼ 입주여부 현주	공가	❽ 가구구분 주가구	동거가구	❾ 농가	❿ ※농가일연번호	⓫ 어가	⓬ 비고
46	50	金기원	태성리 64	7	3	4	0		0		0		0			
47	51	李광우	태성리 65	4	2	2	0		0		0		0			
48	52	金창조	태성리 67	9	5	4	0		0		0					
49	53	崔文植	태성리 67	8	4	4	0		0		0					
	54	尹종모		8	3	5						0				
50	55	田원청	태성리 68	3	1	2	0		0		0					
51	56	金조숙현	태성리 68	4	1	3	0		0		0					
52	57	金영현	태성리 68	7	4	3	0		0		0					
53	58	崔금하	태성리 68-4	5	2	3	0		0		0		0			
	59	朴동명		3	1	2						0				
54	60	鄕근영	태성리 69-1	5	3	2	0		0		0		0			
55			태성리				0			0						신축중의 공가
56	61	朴승린	태성리	7	5	2	0		0		0		0			
57	62	劉찬세	태성리	8	4	4	0		0		0		0			
58	63	鄭월명	태성리	14	14	0		0								회덕사
59	64	李두찬	태성리 68-9	6	2	4	0		0		0		0			
60	65	方성천	태성리 68-10	7	5	2	0		0		0		0			
61	66	金희운	태성리 68-11	4	1	3	0		0		0		0			
62	67	李봉선	태성리 68-12	5	3	2	0		0		0		0			
63	68	文경식	태성리 68-13	9	5	4	0		0		0		0			
64	69	陳열호	태성리 68-14	6	3	3		0								외국인
65	70	남담주	태성리	6	4	2	0		0		0		0			
66	71	吉영각	태성리	7	2	5	0		0		0		0			
67	72	홍익삽	태성리	8	3	5	0		0		0		0			
68	73	卜제홍	태성리 18	3	1	2	0		0		0		0			
69	74	朴춘삽	태성리 18	4	1	3	0		0		0		0			
70	75	韓덕신	태성리 18	7	4	3	0		0		0		0			
71	76	姜상화	태성리 12	5	2	3	0		0		0					
72	77	윤상민	태성리 12	4	2	2	0		0		0					
	78	庾복삽	태성리 12	2	1	1						0				전출
73	79	秋길복	태성리 12	4	1	3		0								
51	80	金재선	태성리 68	2	1	1						0				추가
72	81	朱덕호	태성리 12	6	2	4						0				전입
		소계		185	94	91	25	3	24	1	24	4	22		0	
		합계		466	232	234	70	3	68	2	68	9	64		0	

지도원 박광수 인

조사원 양석삼 인

신동 동읍면장 인

1970년
인구 및 주택센서스

종 합 표

경제기획원

조사구번호 43 ~ 1 | 조사표매수 66매 | 시도 전북 | 구시군 옥구 | 동읍면 옥구 | 가 | 농업조사구번호 | ※

※ 농업조사원이 기입한다

① 거처번호	② 가구번호	③ 가구주또는 대표자성명	④ 주소	⑤ 가구원 계	남	여	⑥ 거처의종류 주택	주택이외의거처	⑦ 입주여부 현주	공가	⑧ 가구구분 주가구	동거가구	⑨ 농가	⑩ ※농가일련번호	⑪ 어가	⑫ 비고
✓ 1	1	張 찬 경	해면리 55	5	2	3	○		○		○		○			
✓	2	尹 현 수		2	0	2						○			○	
2	3	金 고 성	해면리 58	3	3	0	○		○		○		○		○	
✓ 3	4	金 철 명	해면리 57	3	2	1	○		○		○				○	
4	5	朴 길 생	해면리 60	3	2	1		○					○		○	
✓ 5	6	崔 성 민	해면리 60	6	2	4	○		○		○		○			
✓	7	李 의 성		4	1	3						○			○	
	8	尹 갑 수		3	2	1						○			○	전 출
6	9	金 화 수	해면리 59	2	1	1	○		○		○					
✓ 7	10	李 병 일	해면리 59	5	3	2	○		○		○		○			
✓	11	朱 대 기		4	2	2						○			○	
8	12	金 두 백	해면리 59	3	1	2	○		○		○		○		○	
✓ 9	13	朴 광 수	해면리 59	6	3	3	○		○		○		○			
10	14	金 기 병	해면리 61	4	2	2	○		○		○				○	
11			해면리 61				○			○						신축금의공가
12	15	全 수 길	해면리 61	5	0	5	○		○		○		○		○	
	16	鄭 병 진		3	0	3						○			○	
	17	金 일 수		2	1	1						○			○	
✓ 13	18	吳 수 자	해면리 62	3	0	3	○		○		○		○		○	
14	19	林 건 국	해면리 62	2	1	1	○		○		○					
15			해면리 62				○			○						공 가
16	20	申 수 인	해면리 63	3	2	1		○							○	
✓ 17	21	金 인 경	해면리 63	1	0	1		○							○	
18	22	洪 성 표	해면리 63	5	4	1	○		○		○		○			
	23	南 상 진		6	2	4						○	○		○	
	24	朴 희 덕		2	1	1						○			○	
✓ 19	25	高 재 희	해면리 63	4	2	2	○		○		○					
✓	26	柳 상 길		3	1	2						○			○	
20	27	吳 성 운	해면리 63	6	3	3	○		○		○		○			전 출
✓ 21	28	金 인 봉	해면리 64	3	1	2		○								
22	29	成 길 자	해면리 64	5	1	4	○		○		○					여 인 숙
	30	朴 성 봉		3	3	0						○				
✓ 23	31	李 호 길	해면리 64	4	2	2	○		○		○		○			
24	32	李 경 수	해면리 64	5	3	2	○		○		○		○		○	
✓ 25	33	張 경 용	해면리 64	4	1	3	○		○		○		○			
26	34	金 사 구	해면리 65	5	2	3	○		○		○				○	
✓ 27	35	朱 명 길	해면리 65	4	2	2	○		○		○		○			
28	36	申 성 병	해면리 65	3	1	2		○								영 육 아 원
✓ 29	37	孟 수 경	해면리 65	3	2	1	○		○		○		○			
✓	38	李 병		2	1	1						○				
30	39	朴 경 자	해면리 66	4	2	2	○		○		○					
	40	成 호		3	2	1						○				
✓ 31	41	金 수 상	해면리 66	5	2	3	○		○		○					
32	42	尹 복 수	해면리 66	4	2	2	○		○		○				○	
✓ 33	43	朴 세 환	해면리 67	2	1	1	○		○		○					
34	44	金 선 인	해면리 67	3	2	1	○		○		○		○			
✓ 35	45	朱 인 영	해면리 67	5	3	2	○		○		○					
36	46	張 덕 영	해면리 68	4	1	3	○		○		○				○	
✓ 37	47	林 수 길	해면리 69	8	5	3	○		○		○		○			
38	48	高 광 덕	해면리 69	6	4	2	○		○		○		○			
		소 계		174	81	93	32	5	30	2	30	11	18		22	

- 87 -

거처번호	가구번호	가구주또는 대표자성명	주소	가구원 계	남	여	거처의종류 주택	주택이외의거처	입주여부 현주	공가	가구구분 주가구	동거가구	농가	※농가일연번호	어가	비고
✓ 39	49	金 강 문	해 면 리 70	6	3	3	0		0		0				0	
✓	50	동 경 자		3	1	2						0				
40	51	동 명 수	해 면 리 71	5	3	2	0		0		0					
✓ 41	52	朴 관 명	해 면 리 71	4	2	2	0		0		0				0	
42	53	金 성 일	해 면 리 72	5	2	3	0		0		0					
✓ 43	54	崔 방 서	해 면 리 72	8	5	3	0		0		0					
✓	55	崔 수 성		3	1	2						0				
44	56	金 광 구	해 면 리 73	6	4	2	0		0		0					
✓ 45	57	朴 길 자	해 면 리 73	3	0	3	0		0		0					
46	58	田 강 석	해 면 리 73	5	2	3	0		0		0		0		0	
	59	高 호 석		3	2	1						0			0	
✓ 47	60	朴 무 찬	해 면 리 74	2	1	1	0		0		0					
48			해 면 리 75				0			0						신축중의 공가
✓ 49	61	崔 만 참	해 면 리 75	5	3	2	0		0		0		0			
✓	62	朴 찬 결		3	1	2						0				
50	63	新 왕 웅	해 면 리 76	9	6	3	0		0		0					외국인
✓ 51	64	木下三浪	해 면 리 77	3	1	2	0		0		0					외국인
✓ 5	8	金 명 금	해 면 리 60	4	2	2						0			0	건업
✓ 9	65	朴 희 자	해 면 리 59	2	1	1						0				추가
20	27	동 명 장	해 면 리 63	4	2	2	0		0		0		0		0	건입
24	66	林 학 분	해 면 리 64	4	2	2						0			0	추가
		소 계		87	44	43	14		13	1	13	7	6		8	
		합 계		261	125	136	46	5	43	3	43	18	25		30	

[redacted]

지도원	홍 길 동 인
조사원	강 상 구 인

전북 옥구군 옥구 동읍면장 김 상 철 인

조사표 (가구용 전수)

1970년인구및주택센서스 지정통계제1호 및 제2호

인구에 관한사항	서울 (특별)시도	종로 구시군	경운 동로읍면	가리	120 번지 3 호 (전화 ㉒ 1576)

주택에 관한사항	조사구번호	거처번호	가구번호	1 매중 1 매	가구원수
	10-1	3	5	1	10

	이름	가구주와의관계	성별	생년월일	혼인상태	교육 취학여부	교육 학력	문맹여부
	가구주와 가구원의 이름을 빠짐없이 말씀하여주십시요.	가구주와 어떤 관계가있읍니까 (예) 가구주, 처, 장남의 처, 차남의 장녀, 동거인 등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예) ① 남	사실상의 나이와 생년월일을 말씀하여 주십시요.	사실상의 배우관계를 말씀하여 주십시요.	학교에 다니십니까 아니면 중퇴 또는 졸업하셨읍니까?	다음중 어디에 해당됩니까?	글을읽고 쓸수 있읍니까?
1	이창수	가구주	① 남 ② 여	나이 50 살 띠 닭 / 생일 1921 년 ㉮ 5 월 8 일	① 유배우 ② 사별 ③ 이혼 ④ 미혼	① 재학 ② 졸업 ③ 중퇴 ④ 안다녔음	① 국민 ② 중학 ③ 고등 ④ 초대·전문 ⑤ 대학이상	① 안다 ② 모른다
2	김정숙	가구주의 처	① 남 ② 여	나이 47 살 띠 쥐 / 생일 1924 년 ㉮ 7 월 19 일	① 유배우 ② 사별 ③ 이혼 ④ 미혼	① 재학 ② 졸업 ③ 중퇴 ④ 안다녔음	① 국민 ② 중학 ③ 고등 ④ 초대·전문 ⑤ 대학이상	① 안다 ② 모른다
3	이성규	차남	① 남 ② 여	나이 25 살 띠 개 / 생일 1946 년 ㉮ 11 월 21 일	① 유배우 ② 사별 ③ 이혼 ④ 미혼	① 재학 ② 졸업 ③ 중퇴 ④ 안다녔음	① 국민 ② 중학 ③ 고등 ④ 초대·전문 ⑤ 대학이상	① 안다 ② 모른다
4	이성완	삼남	① 남 ② 여	나이 21 살 띠 범 / 생일 1950 년 ㉮ 1 월 3 일	① 유배우 ② 사별 ③ 이혼 ④ 미혼	① 재학 ② 졸업 ③ 중퇴 ④ 안다녔음	① 국민 ② 중학 ③ 고등 ④ 초대·전문 ⑤ 대학이상	① 안다 ② 모른다
5	이성주	장남	① 남 ② 여	나이 27 살 띠 잔나비 / 생일 1944 년 ㉮ 9 월 3 일	① 유배우 ② 사별 ③ 이혼 ④ 미혼	① 재학 ② 졸업 ③ 중퇴 ④ 안다녔음	① 국민 ② 중학 ③ 고등 ④ 초대·전문 ⑤ 대학이상	① 안다 ② 모른다
6	안경숙	장남의 처	① 남 ② 여	나이 26 살 띠 닭 / 생일 1945 년 ㉮ 2 월 27 일	① 유배우 ② 사별 ③ 이혼 ④ 미혼	① 재학 ② 졸업 ③ 중퇴 ④ 안다녔음	① 국민 ② 중학 ③ 고등 ④ 초대·전문 ⑤ 대학이상	① 안다 ② 모른다
7	이미정	장남의 장남	① 남 ② 여	나이 1 살 띠 개 / 생일 1970 년 ㉮ 9 월 28 일	① 유배우 ② 사별 ③ 이혼 ④ 미혼	① 재학 ② 졸업 ③ 중퇴 ④ 안다녔음	① 국민 ② 중학 ③ 고등 ④ 초대·전문 ⑤ 대학이상	① 안다 ② 모른다
8	박순이	모	① 남 ② 여	나이 71 살 띠 쥐 / 생일 1900 년 ㉮ 12 월 19 일	① 유배우 ② 사별 ③ 이혼 ④ 미혼	① 재학 ② 졸업 ③ 중퇴 ④ 안다녔음	① 국민 ② 중학 ③ 고등 ④ 초대·전문 ⑤ 대학이상	① 안다 ② 모른다
9	최갑순	하숙인	① 남 ② 여	나이 22 살 띠 소 / 생일 1949 년 ㉮ 7 월 23 일	① 유배우 ② 사별 ③ 이혼 ④ 미혼	① 재학 ② 졸업 ③ 중퇴 ④ 안다녔음	① 국민 ② 중학 ③ 고등 ④ 초대·전문 ⑤ 대학이상	① 안다 ② 모른다
10	정순자	식모	① 남 ② 여	나이 45 살 띠 범 / 생일 1926 년 ㉮ 3 월 2 일	① 유배우 ② 사별 ③ 이혼 ④ 미혼	① 재학 ② 졸업 ③ 중퇴 ④ 안다녔음	① 국민 ② 중학 ③ 고등 ④ 초대·전문 ⑤ 대학이상	① 안다 ② 모른다

조사원 성명: 최정길 (인)

응답자 성명: 이창수 (인)

모든 주택의 주가구에 대하여 조사할 사항 (항목 ❶~❼)

❶ 거처의 종류
- ① 일반주택
- 2 비 거주용 건물내의 주택
- 3 호텔, 여관등 숙박업소
- 4 병원, 기숙사, 수녀원, 영육아원, 양로원등 공공목적을 위한
- 5 토목공사 현장등 사업목적을 위하여 임시로 세운 집
- 6 기 타 ( )

❷ 건물의 종류
- ① 독립주택
- 2 연립주택
- 3 공동주택 (아파트)
- 4 기 타

❸ 건물의 건축시기
- 1 1945년 이전 (25년전)
- 2 1950년 이전 (20년전)
- 3 1960년 이전 (10년전)
- ④ 1961년 이후 (10년후) → 1965년

❹ 주택의 소유관계
- [illegible] 자기집
- [illegible] 셋 집
- [illegible] 없이 빌려든 집

[illegible] 총방수 및 동거가구수
- 1. 총방수 ····· 3 개 ··· 17.5 평
- 2. 주가구사용방수 ····· 2 개 ··· 12.0 평
- 3. 동거가구수 ····· 1 가구
- 4. 동거가구사용방수 ··· 1 개 ··· 5.5 평

❻ 주택의 총건평수
총건평 28.5 평

❼ 이 가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문화시설 및 가재
- ① 재봉틀
- ② 라디오
- ③ 테레비
- ④ 전 축
- ⑤ 전 화
- 6 냉장고
- 7 피아노 및 올갠

주가구 이외의 모든 동거가구에 대하여 조사할 사항 (항목 ❽~❿)

❽ 이 가구는 어느종류의 거처에 살고 있는 동거가구 입니까?
- 1 일반주택
- 2 비 거주용 건물내의 주택
- 3 호텔, 여관등 숙박업소
- 4 병원, 기숙사, 수녀원, 영육아원, 양로원등 공공목적을 위한집
- 5 토목공사 현장등 사업목적을 위하여 임시로 세운집
- 6 기 타 ( )

❾ 동거가구의 사용방수
개 ··· 평

❿ 가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문화시설 및 가재
- 1 재봉틀
- 2 라디오
- 3 테레비
- 4 전 축
- 5 전 화
- 6 냉장고
- 7 피아노 및 올갠

서식제1호

※ 조사통계국 기입란

가구원수 계	가구원수 남	가구원수 여	가구구분	가족구성 핵가족	가족구성 세대구성	

인구에 관한사항

(특별)시 도	구 시 군	동 로 읍 면	가 리	번지	호	조사구번호	거처번호	가구번호	매중	가구원수
경상북	대구	대방		50	3	15-1	5	7	1 / 1	10

※ 조사통계국 기입란

가구원수			가구구분	가족구성	
계	남	여		핵가족	세대구성

1970년인구및주택센서스 지정통계제1호 및 제2호

조사표 (가구용 표본)

조사원 성명: 이경식 (인)

응답자 성명: 김정식 (인)

	이름	가구주와의관계	성별	생년월일	혼인상태	교육 취학여부	교육 학력	문맹여부	출생아수	출생지	5년전거주지	경제활동 (14세 이상자에 한하여) 활동상태	취업여부	산업	직업	종사상의지위	취업기간
	가구주와 가구원의 이름을 빠짐없이 말씀하여주십시요.	가구주와 어떤 관계가있읍니까 (예) 가구주, 처, 장남의 처, 차남의 장녀, 동거인 등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예) ① 남	사실상의 나이와 생년월일을 말씀하여 주십시요.	사실상의 배우관계를 말씀하여 주십시요.	학교에 다니십니까 아니면 중퇴 또는 졸업하셨읍니까?	다음중 어디에 해당됩니까?	글을읽고 쓸수 있읍니까?	부인께서는 자녀분이 몇분입니까? 총몇명의 자녀를 낳았읍니까?	어디에서 출생하셨읍니까? / 현주지와 다른 경우에는 출생한 지명을 말씀하여 주십시요.	5년전 (1965년 10월1일) 에도 이곳에서 살[illegible]읍니까? / 다른 "구, 시, 군" 또는 "외국에서 [illegible]디입	지난 1주일간 (9월21일~9월27일)에 주로 무엇을 하셨읍니까?	조금이라도 수입을목적으로일하신적이있었읍니까?	어느분야에서 일하셨읍니까?	무슨일을 하셨읍니까?	하셨던 일에는 다음중 어디에 해당됩니까?	지난 1년동안 몇개월 일하셨읍니까?
1	김정식	가구주	① 남 / 2 여	나이 58살 / 생일 1913년 / 띠 소 / 12월 3일	① 유배우 / 2 사별 / 3 이혼 / 4 미혼	① 재학 / ② 졸업 / ③ 중퇴 / ④ 안다녔음	① 국민 / 2 중학 / 3 고등 / ④ 초대·전문 / 5 대학이상	① 안다 / 2 모른다	1. 생존아수 명 / 2. 총출생아수 명	현주지와 ① 같다 / ② 다르다 / 1 경기 평택 / 2 국	① 같다 / 2 같은 구 / 3 다른 구 / 4 외국	① 일하였음 / 2 일시휴직 / 3 구직 / 4 가사 / 5 통학 / 6 연로 / 7 불구 / 8 기타	① 있다 / 2 없다	우리집 밭	채소를 가꾸었음	① 단독자영업주 / 2 고용주 / 3 가족종사자 / 4 상용고 / 5 임시고 / 6 일고	8 개월
2	홍순자	가구주의 처	1 남 / ② 여	나이 57살 / 생일 1914년 / 띠 범 / 7월 9일	① 유배우 / 2 사별 / 3 이혼 / 4 미혼	① 재학 / ② 졸업 / ③ 중퇴 / ④ 안다녔음	① 국민 / ② 중학 / 3 고등 / 4 초대·전문 / 5 대학이상	① 안다 / 2 모른다	1. 생존아수 2명 / 2. 총출생아수 2명	현주지와 ① 같다 / ② 다르다 / 1 경기 수원 / 2 국	① 같다 / 2 같은 구, 시, 군 / 3 다른 구, 시, 군 / 4 외국	1 / 2	1 일하였음 / 2 일시휴직 / 3 구직 / ④ 가사 / 5 통학 / 6 연로 / 7 불구 / 8 기타	① 있다 / ② 없다			① 단독자영업주 / 2 고용주 / 3 가족종사자 / 4 상용고 / 5 임시고 / 6 일고	개월
3	김준섭	차남	① 남 / 2 여	나이 30살 / 생일 1941년 / 띠 뱀 / 4월 5일	1 유배우 / 2 사별 / 3 이혼 / ④ 미혼	1 재학 / ② 졸업 / ③ 중퇴 / ④ 안다녔음	1 국민 / 2 중학 / 3 고등 / 4 초대·전문 / ⑤ 대학이상	① 안다 / 2 모른다	1. 생존아수 명 / 2. 총출생아수 명	현주지와 ① 같다 / 2 다르다 / 1 / 2	① 같다 / 2 같은 구, 시, 군 / 3 다른 구, 시, 군 / 4 외국	1 / 2	1 일하였음 / ② 일시휴직 / 3 구직 / 4 가사 / 5 통학 / 6 연로 / 7 불구 / 8 기타	① 있다 / 2 없다	태평양 산업사 (출판업)	경리사원	① 단독자영업주 / 2 고용주 / 3 가족종사자 / ④ 상용고 / 5 임시고 / 6 일고	12 개월
4	김준달	장남	① 남 / 2 여	나이 32살 / 생일 1939년 / 띠 토끼 / 1월 2일	① 유배우 / 2 사별 / 3 이혼 / 4 미혼	1 재학 / ② 졸업 / ③ 중퇴 / ④ 안다녔음	1 국민 / 2 중학 / 3 고등 / 4 초대·전문 / ⑤ 대학이상	① 안다 / 2 모른다	1. 생존아수 명 / 2. 총출생아수 명	현주지와 ① 같다 / 2 다르다 / 1 / 2	① 같다 / 2 같은 구, 시, 군 / 3 다른 구, 시, 군 / ④ 외국	1 / 2 미 국	① 일하였음 / 2 일시휴직 / 3 구직 / 4 가사 / 5 통학 / 6 연로 / 7 불구 / 8 기타	① 있다 / 2 없다	경북 도청	총무과 직원	① 단독자영업주 / 2 고용주 / 3 가족종사자 / ④ 상용고 / 5 임시고 / 6 일고	12 개월
5	박옥자	장남의 처	1 남 / ② 여	나이 29살 / 생일 1942년 / 띠 말 / 10월 5일	① 유배우 / 2 사별 / 3 이혼 / 4 미혼	1 재학 / ② 졸업 / ③ 중퇴 / ④ 안다녔음	1 국민 / 2 중학 / ③ 고등 / 4 초대·전문 / 5 대학이상	① 안다 / 2 모른다	1. 생존아수 1명 / 2. 총출생아수 1명	현주지와 ① 같다 / ② 다르다 / 1 경남 김해 / 2 국	① 같다 / 2 같은 구, 시, 군 / ③ 다른 구, 시, 군 / 4 외국	1 경남 밀양 / 2 국	1 일하였음 / 2 일시휴직 / 3 구직 / ④ 가사 / 5 통학 / 6 연로 / 7 불구 / 8 기타	① 있다 / 2 없다	남의 논	추수를 했음	① 단독자영업주 / 2 고용주 / 3 가족종사자 / 4 상용고 / 5 임시고 / ⑥ 일고	2 개월
6	김경숙	장남의 장녀	1 남 / ② 여	나이 4살 / 생일 1967년 / 띠 양 / 4월 15일	1 유배우 / 2 사별 / 3 이혼 / 4 미혼	1 재학 / 2 졸업 / 3 중퇴 / 4 안다녔음	1 국민 / 2 중학 / 3 고등 / 4 초대·전문 / 5 대학이상	① 안다 / 2 모른다	1. 생존아수 명 / 2. 총출생아수 명	현주지와 ① 같다 / 2 다르다 / 1 / 2	① 같다 / 2 같은 구, 시, 군 / 3 다른 구, 시, 군 / 4 외국	1 / 2	1 일하였음 / 2 일시휴직 / 3 구직 / 4 가사 / 5 통학 / 6 연로 / 7 불구 / 8 기타	① 있다 / 2 없다			① 단독자영업주 / 2 고용주 / 3 가족종사자 / 4 상용고 / 5 임시고 / 6 일고	개월
7	최순자	모	1 남 / ② 여	나이 78살 / 생일 1893년 / 띠 뱀 / 5월 7일	① 유배우 / ② 사별 / 3 이혼 / 4 미혼	1 재학 / 2 졸업 / ③ 중퇴 / ④ 안다녔음	① 국민 / ② 중학 / 3 고등 / 4 초대·전문 / 5 대학이상	① 안다 / 2 모른다	1. 생존아수 2명 / 2. 총출생아수 3명	현주지와 ① 같다 / ② 다르다 / 1 경북 상주 / 2 국	① 같다 / 2 같은 구, 시, 군 / 3 다른 구, 시, 군 / 4 외국	1 / 2	1 일하였음 / 2 일시휴직 / 3 구직 / 4 가사 / 5 통학 / ⑥ 연로 / 7 불구 / 8 기타	① 있다 / ② 없다			① 단독자영업주 / 2 고용주 / 3 가족종사자 / 4 상용고 / 5 임시고 / 6 일고	개월
8	김종길	조카	① 남 / 2 여	나이 10살 / 생일 1961년 / 띠 소 / 11월 11일	1 유배우 / 2 사별 / 3 이혼 / 4 미혼	① 재학 / 2 졸업 / 3 중퇴 / 4 안다녔음	① 국민 / 2 중학 / 3 고등 / 4 초대·전문 / 5 대학이상	① 안다 / 2 모른다	1. 생존아수 명 / 2. 총출생아수 명	현주지와 ① 같다 / ② 다르다 / 1 경북 경산 / 2 국	① 같다 / 2 같은 구, 시, 군 / ③ 다른 구, 시, 군 / 4 외국	1 경북 경산 / 2 국	1 일하였음 / 2 일시휴직 / 3 구직 / 4 가사 / 5 통학 / 6 연로 / 7 불구 / 8 기타	① 있다 / 2 없다			① 단독자영업주 / 2 고용주 / 3 가족종사자 / 4 상용고 / 5 임시고 / 6 일고	개월
9	김만식	동거인	① 남 / 2 여	나이 37살 / 생일 1934년 / 띠 개 / 9월 5일	1 유배우 / 2 사별 / ③ 이혼 / 4 미혼	1 재학 / ② 졸업 / 3 중퇴 / 4 안다녔음	1 국민 / 2 중학 / ③ 고등 / 4 초대·전문 / 5 대학이상	① 안다 / 2 모른다	1. 생존아수 명 / 2. 총출생아수 명	현주지와 ① 같다 / ② 다르다 / 1 부산 중 / 2 국	① 같다 / 2 같은 구, 시, 군 / ③ 다른 구, 시, 군 / 4 외국	1 서울 용산 / 2 국	1 일하였음 / 2 일시휴직 / ③ 구직 / 4 가사 / 5 통학 / 6 연로 / 7 불구 / 8 기타	① 있다 / 2 없다	곡물 도매상	판매원	① 단독자영업주 / 2 고용주 / 3 가족종사자 / 4 상용고 / ⑤ 임시고 / 6 일고	5 개월
10	이복순	식모	1 남 / ② 여	나이 19살 / 생일 1952년 / 띠 용 / 8월 10일	1 유배우 / 2 사별 / 3 이혼 / ④ 미혼	1 재학 / 2 졸업 / 3 중퇴 / ④ 안다녔음	1 국민 / 2 중학 / 3 고등 / 4 초대·전문 / 5 대학이상	① 안다 / 2 모른다	1. 생존아수 명 / 2. 총출생아수 명	현주지와 ① 같다 / ② 다르다 / 1 경북 영일 / 2 국	① 같다 / 2 같은 구, 시, 군 / ③ 다른 구, 시, 군 / 4 외국	1 경북 영덕 / 2 국	① 일하였음 / 2 일시휴직 / 3 구직 / 4 가사 / 5 통학 / 6 연로 / 7 불구 / 8 기타	① 있다 / 2 없다	주인집	식모일을 했음	① 단독자영업주 / 2 고용주 / 3 가족종사자 / ④ 상용고 / 5 임시고 / 6 일고	12 개월

경제기획원

주택에 관한사항

거처번호	가구번호

가구원수		
계	남	여
10	5	5

모든 주택의 주가구에 대하여 조사할 사항 (항목 ❶~⓮)

❶ 거처의 종류
(1) 일반주택
[2] 비거주용건물내의 주택
[3] 호텔, 여관등 숙박업소
[4] 병원, 기숙사, 수녀원, 영육아원, 양로원 등 공공목적을 위한 집
[5] 토목공사현장 등 사업목적을 위하여 임시로 세운 집
[6] 기타 (　　)

❷ 건물의 종류
(1) 독립주택　[3] 공동주택 (아파트)
[2] 연립주택　[4] 기　타

❸ 건물의 건축시기
[1] 1945년 이전 (25년전)　[3] 1960년 이전 (10년전)
[2] 1950년 이전 (20년전)　(4) 1961년 이후 (10년후)
→ 1963년

❹ 주택의 소유관계
(1) 자기집　[3] 세 없이 빌려든 집
[2] 셋 집

❺ 주택의 총방수 및 동거가구수

1 총 방 수	6 개	…	19.5 평
2 주가구사용방수	5 개	…	17.0 평
3 동거가구수	1 가구		
4 동거가구사용방수	1 개	…	2.5 평

❻ 주택의 총건평수
총건평 35.0 평

❼ 가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문화시설 및 가재
(1) 재봉틀　(5) 전　화
(2) 라디오
[3] 테레비　　올갠
(4) 전　축

❽ 주택의 사용목적별 구
(1) 거주전용주택　　택

❾ 건물의 외벽에 사용된
[1] 나　무　[4] 벽[illegible]돌
(2) 흙 또는 흙벽돌　[5] 철근콩크리트
[3] 시멘트부럭　[6] 기　타

❿ 건물의 지붕에 사용된 재료
[1] 짚, 갈대 등　(4) 기　와
[2] 함석 (양철)　[5] 스라브
[3] 스레이트　[6] 기　타

⓫ 주택의 급수시설
(1) 수　도　[3] 우　물
[2] 펌　프　[4] 없　음

⓬ 주택의 ~~동화~~시설
(1) 전　기　[2] 기　타

⓭ 주택의 변소시설
(1) 재래식　[2] 수세식　[3] 없　음

⓮ 가구에서 사용하는 주된 취사연료
(1) 연　탄　[4] 까스 (프로판까스)
[2] 나무, 짚, 기타초목류　[5] 전　기
[3] 석　유　[6] 기　타

주가구 이외의 모든 동거가구에 대하여 조사할 사항 (항목⓯~⓲)

⓯ 이 가구는 어느종류의 거처에 살고 있는 동거 가구입니까 ?
[1] 일반주택
[2] 비거주용 건물내의 주택
[3] 호텔, 여관 등 숙박업소
[4] 병원, 기숙사, 수녀원, 영육아원, 양로원등 공공목적을 위한 집
[5] 토목공사현장등 사업목적을 위하여 임시로 세운 집
[6] 기　타

⓰ 동거가구의 사용방수
　　개 … 　　평

⓱ 이 동거가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문화시설 및 가재
[1] 재봉틀　[5] 전　화
[2] 라디오　[6] 냉장고
[3] 테레비　[7] 피아노 및 올갠
[4] 전　축

⓲ 동거가구가 사용하고 있는 주된 취사연료
[1] 연　탄　[4] 까스 (프로판까스)
[2] 나무, 짚, 기타초목류　[5] 전　기
[3] 석　유　[6] 기　타

인구 및 주택조사 조사구번호
28—1

제 1 차
어업조사 조사대상어가구 식별일람표

시 구 동
경기도 부천·시 군 영흥·읍 면

인구및주택조사		주소 (리 번지)	가구주의 성명	동력선사용		무동력선사용				어선을 사용하지 않고 자영했다(채조, 포패, 해녀등)		고용살이만 했다 (자기어업에는 종사한일 없다)	
						5톤 이상		5 톤미만					
거처번호	가구번호				일련번호		일련번호		일련번호		일련번호		일련번호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1	1	영흥 선재리 8번지	엄 인 종	○									
2	2	영흥 선재리 72번지	임 봉 춘			○							
	3	영흥 선재리 46번지	이 승 철					○					
3	4	영흥 선재리 48번지	김 진 흥							○			
	5	영흥 선재리 49번지	채 석 봉									○	
4	6	영흥 선재리 50번지	김 선 호				○						
5	7	영흥 선재리 54번지	백 수 천	○									
	8	영흥 선재리 57번지	장 경 난			○							
6	9	영흥 선재리 56번지	김 무 수			○							
7	10	영흥 선재리 59번지	오 세 웅			○							

주 : 1. 반드시 번호순서대로 질문하여야 하며 번호 순서가 우선 순위이므로 ⑤⑥⑦⑧⑨번에 모두 해당되더라도 우선순위 하나에만 ○표 한다.
2. 일련번호는 시도에서 수산청의 지시를 받아 기재한다.

인구 및 주택센서스 조사원
성 명 임 화 성 ㊞
동·읍·면장
양 광 수 ㊞

어업조사 조사대상 어가구 식별요령

1. 인구 및 주택조사 종합표상의 어가 식별요령

70년 인구 및 주택조사 조사원은 가구를 방문할 때마다 다음의 어가(漁家) 정의에 해당하는 가구는 "종합표" ⑪번 어가(漁家)란에 ○표시를 하고 해당되지 않는 가구에 대해서는 사선「 」으로 표시한다.

다 음

어가(漁家)란 :

가구주나 또는 가구원중에서 지난 1년간에 판매를 목적으로 수산동식물의 채포(採捕) 및 양식(養殖) 업에 종사한자가 있거나 또는 자기의 어업을 하지 않고 타인이 경영하는 수산동식물의 채포 및 양식업을 하는 사업체에 어업 종사자로써 고용된 자가 있는 가구

(단 : 자가소모 (오락포함)를 목적으로 어업에 종사한 가구는 조사대상에서 제외한다)

주 : 여기서 수산동식물의 채포라 함은 천연의 수산동식물을 채포함을 말한다. 또 수산동식물의 양식이라 함은 인공적 설비를 갖추어 수산동식물을 생육관리 하는 것을 말한다.

2. 종합표 ⑪번 어가(漁家)란에 ○표시된 가구중

어업센서스 조사대상 78개 연안 구, 시, 군에 소재하는 가구는 본조사표인 어업조사 조사대상 어가구 식별일람표를 다음 "3항"의 식별일람표 작성요령에 의하여 식별한다.

3. 어업조사조사대상 어가구 식별일람표 작성요령

가. 난외사항 기입요령

(1) 인구 및 주택조사 조사구 번호

인구 및 주택조사 조사원의 조사구 번호를 직접 기입한다.

(2)

시	구	동
	시	읍
도	군	면

해당가구의 소재지명을 기입한다.

나. 난내사항 기입요령

(1) 일람표의 ①②③④번란은 인구 및 주택조사 종합표에서 어가(漁家)에 한하여 이 일람표에 그대로 옮겨쓴다.

(2) ⑤번은 지난 1년간에 동력선(발동선)을 사용하여 어업이나 양식업을 경영한 가구(공동경영 포함)에 대하여 ○표를 한다.

이때 동력선외에 ⑥⑦⑧⑨번과 겸한 사항이 있어도 ⑥⑦⑧⑨번에는 ○표를 하지 않는다.

(3) ⑥번 ⑦번은— 지난 1년간에 동력선을 사용치 않고 무동력선을 사용했을 때 5톤이상 사용가구는 ⑥번에 5톤미만 사용은 ⑦번에 ○표 한다.

주 의 : 이때 1척을 사용했는지 2척이상을 동시에 사용 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2척이상을 동시에 사용 했으면 합계톤수를 물어서 합계톤수가 5톤이상 이면 ⑥번에 5톤미만이면 ⑦번에 ○표 한다.

(4) ⑧번은 지난 1년간에 전연 어선을 사용하지 않고 직접 자기어업이나 양식업의 작업에 종사한자가 있는 가구에 대하여 ○표 한다. 주로 미역 등 해초류를 따는 작업(채조) 조개류를 캐는 작업(포패) 해녀의 작업과 어선을 사용하지 않은 양식업이 이에 해당된다. 또한 가구원중에는 어선을 사용하지 않고 직접하는 어업이나 양식업에 일할뿐만 아니라 계절적으로 또는 년간을 통하여 일부의 가족이 타인의 어업이나 양식업에 고용살이 한자가 있다 하더라도 ⑧번에 해당된다.

(5) ⑨번은 가구원중에서 직접 자기어업이나 양식업을 한자가 한사람도 없고 다른 사람의 어업이나 양식업사업체에 어업종사자로써 고용살이한 사람이 있는 가구이 대하여 ○표 한다.

주 : (1) 어업종사자란

일반적으로 바다, 강, 호수 등에서 어선을 타고 일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나,

다음에 해당되는 사람도 포함한다.

(가) 조개류를 캐는 사람(포패)

(나) 미역등 해초류를 따는 사람(채조)

(다) 해녀등 잠수의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

(라) 어선 어업에 참가한

선장, 어로장, 항해사, 기관사, 선상가공원등 선원전부.

(마) 양식업의 시설설치, 철거, 채묘, 어장감시에 종사하는 사람.

(바) 강이나 호소 하천등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낚시업을 하는 사람등.

단,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지난 1년간에 바다, 강, 호소 등에서는 종사하지 않고 육상에서만 종사한 다음 사람.

(가) 어획물의 운반 작업에만 종사한 사람.

(나) 멸치, 오징어, 미역, 김 등 어류 및 해초류의 제조업인 건조작업에만 종사한 사람.

(다) 어선, 어구 등 수리 작업에만 종사한 사람.

(라) 자가소모나 오락을 목적으로 종사한 사람.

제5. 조사표류의 정리 및 제출

실사가 끝나면 우선 작성된 조사구요도, 종합표, 조사표의 거처번호 및 가구번호가 서로 부합하는가를 확인하여정리하고 다음 순서에 의하여 처리해야 한다.

1. 조사구요도 정리

요도상의 거처표시와 실지 조사상의 거처수가 일치한가를 확인하고 누구나 그 요도만 가지고도 조사구내의 어느 가구라도 용이하게 찾을 수 있도록 충분한 지형을 보완한 다음 1통을 더 작성한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북방표시와 난외사항기입 또는 서명 날인을 잊어서는 안된다.

2. 종합표의 정리

종합표작성시의 사항이 실지조사시에 변동으로 인하여 수정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재차 검토하여야 하며 비고난 기입사항의 누락여부와 가구원수의 남녀계를 가구별로 확인한 다음 총계를 검산하고, 1통을 더 작성하여야 한다.

3. 조사표 정리

조사표는 중앙에서 수집한 후 집계과정에서 오류, 또는 의문

점이 발견되면 해당 동, 읍, 면에 질의조회를 하게되는 복잡성과 낭비를 초래하게 되므로 조사표 제출전에 조사원은 철저한 내부검토를 하되 특히 상호 연관성이 있는 항목은 그 내용이 서로 부합되도록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

4. 조사표류의 편철

가. 조사구요도 및 종합표는 표지편철이 필요 없으나 오손해서는 안된다.

나. 조사표는 거처 및 가구일련순으로 정리하여 외국인 조사표만은 제일 상단에 놓고 편철한 다음 배부된 소정 표지의 기재사항을 내용과 어긋나지 않도록 정자로 기입한 후 서명 날인한다.

5. 조사표류의 제출

이상과 같이 각 조사표의 내용검토 및 편철이 끝나면 다시한번 표지로 부터 끝까지 총체적인 확인을 한 후 조사완료일 다음날 까지 담당 지도원(동, 읍, 면)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종 합 표 2부
2. 조사구요도 2부
3. 조사표(조사구당) 1권

독 립 주 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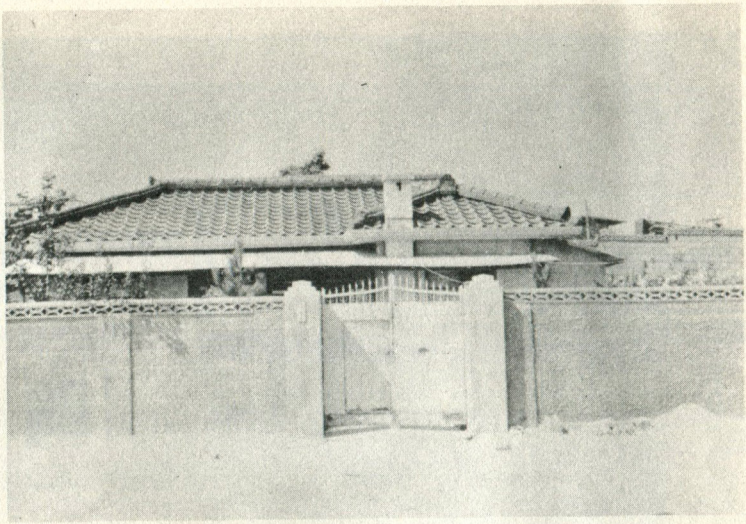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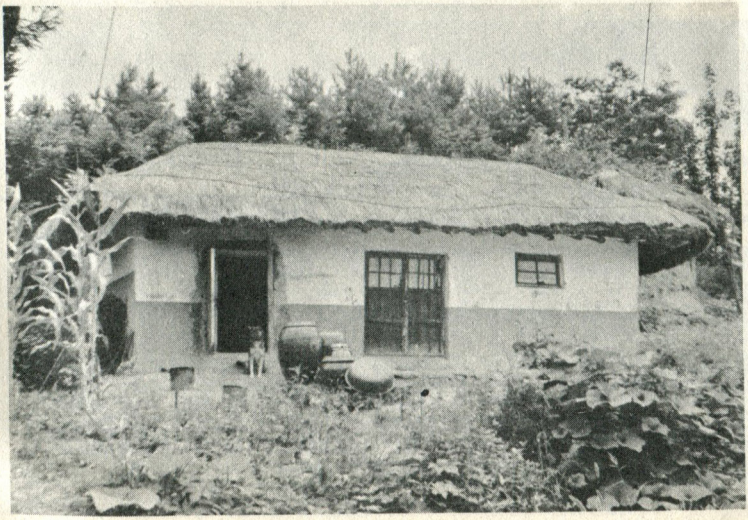

숙 박 업 소

공 가 (건축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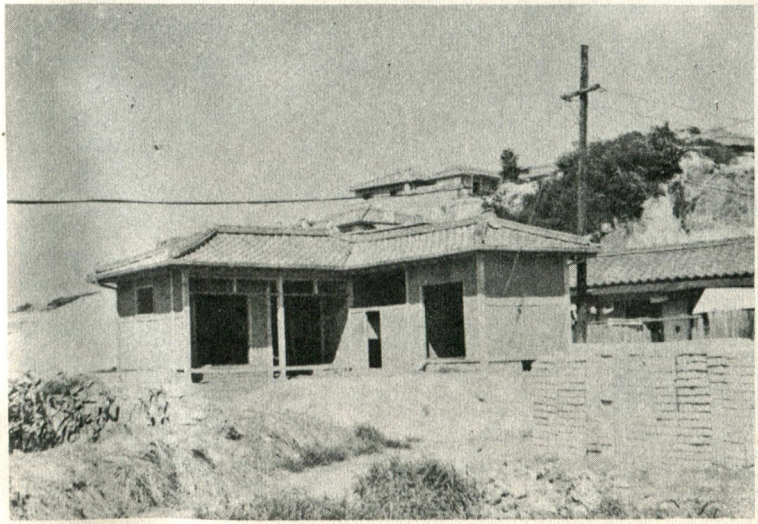

부 록

1. 연령 대조표

2. 평수 환산표

연 령 대 조 표

1970년 기준

연 령	간 지	띠 명	단 기	서 기	일본연호
1	경 술	개	4303	1970	昭和 45
2	기 유	닭	4302	1969	44
3	무 신	잔 나 비	4301	1968	43
4	정 미	양	4300	1967	42
5	병 오	말	4299	1966	41
6	을 사	뱀	4298	1965	40
7	갑 진	용	4297	1964	39
8	계 묘	토 끼	4296	1963	38
9	임 인	범	4295	1962	37
10	신 축	소	4294	1961	36
11	정 자	쥐	4293	1960	35
12	기 해	돼 지	4292	1959	34
13	무 술	개	4291	1958	33
14	정 유	닭	4290	1957	32
15	병 신	잔 나 비	4289	1956	31
16	을 미	양	4288	1955	30
17	갑 오	말	4287	1954	29
18	계 사	뱀	4286	1953	28
19	임 진	용	4285	1952	27
20	계 묘	토 끼	4284	1951	26
21	경 인	뱀	4283	1950	25
22	기 축	소	4282	1949	24
23	무 자	쥐	4281	1948	23
24	정 해	돼 지	4280	1947	22
25	병 술	개	4279	1946	21
26	을 유	닭	4278	1945	20
27	갑 신	잔 나 비	4277	1944	19
28	계 미	양	4276	1943	18
29	임 오	말	4275	1942	17

연령	간지	띠명	단기	서기	일본연호
30	신사	뱀	4274	1941	16
31	경진	용	4273	1940	15
32	기묘	토끼	4272	1939	14
33	무인	범	4271	1938	13
34	정을	소	4270	1937	12
35	병자	쥐	4269	1936	11
36	을해	돼지	4268	1935	10
37	갑술	개	4267	1934	9
38	계유	닭	4266	1933	8
39	임신	잔나비	4265	1932	7
40	신미	양	4264	1931	6
41	경오	말	4263	1930	5
42	기사	뱀	4262	1929	4
43	무진	용	4261	1928	3
44	정묘	토끼	4260	1927	2
45	병인	범	4259	1926	1
46	을축	소	4258	1925	大正14
47	갑자	쥐	4257	1924	13
48	계해	돼지	4256	1923	12
49	임술	개	4255	1922	11
50	신유	닭	4254	1921	10
51	경신	잔나비	4253	1920	9
52	기미	양	4252	1919	8
53	무오	말	4251	1918	7
54	정사	뱀	4250	1917	6
55	병진	용	4249	1916	5
56	을묘	토끼	4248	1915	4
57	갑인	범	4247	1914	3
58	계축	소	4246	1913	2
59	임자	쥐	4425	1912	大正 1
60	신해	돼지	4244	1911	明治44
61	경술	개	4243	1910	43

연령	간지	띠명	단기	서기	일본연호
62	기유	닭	4242	1909	42
63	무신	잔나비	4241	1908	41
64	정미	양	4240	1907	40
65	병오	말	4239	1906	39
66	을사	뱀	4238	1901	38
67	갑진	용	4237	1904	37
68	계묘	토끼	4236	1905	36
69	임인	범	4235	1902	35
70	신축	소	4234	1903	34
71	경자	쥐	4233	1900	33
72	기해	돼지	4232	1899	32
73	무술	개	4231	1898	31
74	정유	닭	4230	1897	30
75	병신	잔나비	4229	1896	29
76	을미	양	4228	1895	28
77	갑오	말	4227	1894	27
78	계사	뱀	4226	1893	26
79	임진	용	4225	1892	25
80	신묘	토끼	4224	1891	24
81	경인	범	4223	1890	23
82	을축	소	4222	1889	22
83	무자	쥐	4221	1888	21
84	정해	돼지	4220	1887	20
85	병술	개	4219	1886	19
86	을유	닭	4218	1885	18
87	갑신	잔나비	4217	1884	17
88	계미	양	4216	1883	16
89	임오	말	1215	1882	15
90	신사	뱀	4214	1881	14
91	경진	용	4213	1880	12
92	기묘	토끼	4212	1879	12
93	무인	범	4211	1878	11

연령	간지	띠명	단기	서기	일본연호
94	정축	소	4210	1877	10
95	병자	쥐	4209	1876	9
96	을해	돼지	4208	1875	8
97	갑술	개	4207	1874	7
98	계유	닭	4206	1873	6
99	임신	잔나비	4205	1872	5
100	신미	양	4204	1871	4
101	경오	말	4203	1870	3

척 별 평 수 조 견 표

척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1	0.0	0.1	0.1	0.1	0.1	0.2	0.2	0.2	0.3	0.3	0.3	0.3	0.4	0.4	0.4	0.4	0.5	0.5	0.5	0.6
2	0.1	0.1	0.2	0.2	0.3	0.3	0.4	0.4	0.5	0.6	0.6	0.7	0.7	0.8	0.8	0.9	0.9	1.0	1.1	1.1
3	0.1	0.2	0.3	0.3	0.4	0.5	0.6	0.7	0.8	0.8	0.9	1.0	1.1	1.2	1.3	1.3	1.4	1.5	1.6	1.7
4	0.1	0.2	0.3	0.4	0.6	0.7	0.8	0.9	1.0	1.1	1.2	1.3	1.4	1.6	1.7	1.8	1.9	2.0	2.1	2.2
5	0.1	0.3	0.4	0.6	0.7	0.8	1.0	1.1	1.3	1.4	1.5	1.7	1.8	1.9	2.1	2.2	2.4	2.5	2.6	2.8
6	0.2	0.3	0.5	0.7	0.8	1.0	1.2	1.3	1.5	1.7	1.8	2.0	2.2	2.3	2.5	2.7	2.3	3.0	3.2	3.3
7	0.2	0.4	0.6	0.8	1.0	1.2	1.4	1.6	1.8	1.9	2.1	2.3	2.5	2.7	2.9	3.1	3.3	3.5	3.7	3.9
8	0.2	0.4	0.7	0.9	1.1	1.3	1.6	1.8	2.0	2.2	2.4	2.7	2.9	3.1	3.3	3.6	3.8	4.0	4.2	4.4
9	0.3	0.5	0.8	1.0	1.3	1.5	1.8	2.0	2.3	2.5	2.8	3.0	3.3	3.5	3.8	4.0	4.3	4.5	4.8	5.0
10	0.3	0.6	0.8	1.1	1.4	1.7	1.9	2.2	2.5	2.8	3.1	3.3	3.6	3.9	4.2	4.4	4.7	5.0	5.3	5.6
11	0.3	0.6	0.9	1.2	1.5	1.8	2.1	2.4	2.8	3.1	3.4	3.7	4.0	4.3	4.6	4.9	5.2	5.5	5.8	6.1
12	0.3	0.7	1.0	1.3	1.7	2.0	2.3	2.7	3.0	3.3	3.7	4.0	4.3	4.7	5.0	5.3	5.7	6.0	6.3	6.7
13	0.4	0.7	1.1	1.4	1.8	2.2	2.5	2.9	3.3	3.6	4.0	4.3	4.7	5.1	5.4	5.8	6.1	6.5	6.9	7.2
14	0.4	0.8	1.2	1.6	1.9	2.3	2.7	3.1	3.5	3.9	4.3	4.7	5.1	5.4	5.8	6.2	6.6	7.0	7.4	7.8
15	0.4	0.8	1.3	1.7	2.3	2.5	2.9	3.3	3.8	4.2	4.6	5.0	5.4	5.8	6.3	6.7	7.1	7.5	7.9	8.3
16	0.4	0.9	1.3	1.8	2.2	2.7	3.1	3.6	4.0	4.4	4.9	5.3	5.8	6.2	6.7	7.1	7.6	8.0	8.4	8.9
17	0.5	0.9	1.4	1.9	2.4	2.8	3.3	3.8	4.3	4.7	5.2	5.7	6.1	6.6	7.1	7.6	8.0	8.5	9.0	9.4
18	0.5	1.0	15.	2.0	2.5	3.0	3.5	4.0	4.5	5.0	5.5	6.0	6.5	7.0	7.5	8.0	8.5	9.0	9.5	10.0
19	0.5	1.1	1.6	2.1	2.6	3.2	3.7	4.2	4.8	5.3	5.8	6.3	6.9	7.4	7.9	8.4	9.0	9.5	10.0	10.6
20	0.6	1.1	1.7	2.2	2.8	3.3	3.9	4.4	5.0	5.6	6.1	6.7	7.2	7.8	8.3	8.9	9.4	10.0	10.6	11.1

시.도 조사구수일람표

1970년 인구 및 주택센서스

시
도

행정구역명	조사구수							지도매수	비고
	총수	보조사무소	준조사구						
		①	계(2-5)	②	③	④	⑤		

시.도 조사구수일람표

1970년 인구 및 주택센서스

시
도

행정구역명	조사구수								지도매수	비고
	총수	보통조사구	준조사구							
		①	계(2-5)		②	③	④	⑤		

구.시.군 조사구수일람표

1970년 인구및 주택센서스

시
도

행정구역명	조사구수 총수	보통조사구 ①	군조사구 계(2-5)	②	③	④	⑤	지도매수	비고
총계									

(서식제15호)

1970년 월 일

구청장
시장
군수 인

구.시.군 조사구수일람표

시
도

1970년 인구및 주택센서스

행정구역명	조사구수							지도매수	비고
	총수	보통조사구 ①	준조사구 계(2-5)	②	③	④	⑤		
총계									

조사구일람표 (갑)

1970년 인구및 주택센서스

시
도

조사구수							가구수	지도매수
총수	보통조사구	준조사구						
	①	계 (2-5)	②	③	④	⑤		

조사구번호	가구수	소재지	비고

조사구일람표 (갑)

1970년 인구및 주택센세스

시
도

조사구수							가구수	지도매수
총수	보통조사구	준조사구						
	①	계 (2-5)	②	③	④	⑤		

조사구번호	가구수	소재지	비고

조사구수정보고서

서
도

1970년 인구및 주택센서스

구 조사구번호	신 조사구번호	수 정 사 유 및 내 용	비 고

1970년
인구 및 주택센서스

종 합 표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조사구번호		조사표매수	매	시도 구시군 동읍면	농업조사구번호	※

❶	❷	❸	❹	❺			❻		❼		❽		❾	❿	⓫	⓬
거처번호	가구번호	가구주또는대표자성명	주 소	가구원			거처의종류		임시주거부		가구구분		농가	※농가일연번호	어가	비 고
				계	남	여	주택	주택이외의거처	현주	공가	주가구	동거가구				

행정구역	

1970년인구및주택센서스

요 계 표

(매중 매)

행정구역 또는 조사구 번호	조사구수 (시, 도및구, 시, 군, 에만 해당)	본국인					외국인					거처		입주여부		가구구분		농가	어가	비고
		가구수	가구원수			조사표매수	가구수	가구원수			조사표매수	주택	주택이외의 거처	현주	공가	주가구	동거가구			
			계	남	여			계	남	여										

행정구역	

1970년인구및주택센서스

요 계 표

(매중 매)

행정구역 또는 조사구 번호	조사구수 (시, 도및구, 시, 군, 에만 해당)	본국인					외국인					거처		입주여부		가구구분		농가	어가	비고
		가구수	가구원수			조사표매수	가구수	가구원수			조사표매수	주택	주택이외의거처	현주	공가	주가구	동거가구			
			계	남	여			계	남	여										

국방부
법무부
내무부

특별조사구요계표

(매중 매)

특별조사구 단위·명칭 (통상명칭)	단위소재지 (행정구역부호)	조사표 매수	인원 계	남	여	비고
계						

1970 년 월 일

작성기관장 ㊞

만 세 연 령 조 견 표

만 세		세는			
양 10.1 이전 음 9.2 출생자	양 10.1 이후 음 9.2 출생자	나이	서기	간지	띠
0		1	1970	경술	개
1	0	2	1969	기유	닭
2	1	3	1968	무신	잔나비
3	2	4	1967	정미	양
4	3	5	1966	병오	말
⑤	4	6	1965	을사	뱀
6	⑤	7	1964	갑진	용
7	6	8	1963	계묘	토끼
8	7	9	1962	임인	범
9	8	10	1961	신축	소
⑩	9	11	1960	경자	쥐
11	⑩	12	1959	기해	돼지
12	11	13	1958	무술	개
13	12	14	1957	정유	닭
⑭	13	15	1956	병신	잔나비
⑮	⑭	16	1955	을미	양
16	⑮	17	1954	갑오	말
17	16	18	1953	계사	뱀
18	17	19	1952	임진	용
19	18	20	1951	신묘	토끼
20	19	21	1950	경인	범
21	20	22	1949	기축	소
22	21	23	1948	무자	쥐
23	22	24	1947	정해	돼지
24	23	25	1946	병술	개
25	24	26	1945	을유	닭
26	25	27	1944	갑신	잔나비
27	26	28	1943	계미	양
28	27	29	1942	임오	말
29	28	30	1941	신사	뱀
30	29	31	1940	경진	용
31	30	32	1939	기묘	토끼
32	31	33	1938	무인	범
33	32	34	1937	정축	소
34	33	35	1936	병자	쥐
35	34	36	1935	을해	돼지
36	35	37	1934	갑술	개
37	36	38	1933	계유	닭
38	37	39	1932	임신	잔나비
39	38	40	1931	신미	양
40	39	41	1930	경오	말
41	40	42	1929	기사	뱀
42	41	43	1928	무진	용
43	42	44	1927	정묘	토끼
44	43	45	1926	병인	범
45	44	46	1925	을축	소
46	45	47	1924	갑자	쥐
47	46	48	1923	계해	돼지
48	47	49	1922	임술	개
49	48	50	1921	신유	닭
50	49	51	1920	경신	잔나비

만 세		세는			
양 10.1 이전 음 9.2 출생자	양 10.1 이후 음 9.2 출생자	나이	서기	간지	띠
51	50	52	1919	기미	양
52	51	53	1918	무오	말
53	52	54	1917	정사	뱀
54	53	55	1916	병진	용
55	54	56	1915	을묘	토끼
56	55	57	1914	갑인	범
57	56	58	1913	계축	소
58	57	59	1912	임자	쥐
59	58	60	1911	신해	돼지
60	59	61	1910	경술	개
61	60	62	1909	기유	닭
62	61	63	1908	무신	잔나비
63	62	64	1907	정미	양
64	63	65	1906	병오	말
65	64	66	1905	을사	뱀
66	65	67	1904	갑진	용
67	66	68	1903	계묘	토끼
68	67	69	1902	임인	범
69	68	70	1901	신축	소
70	69	71	1900	경자	쥐
71	70	72	1899	기해	돼지
72	71	73	1898	무술	개
73	72	74	1897	정유	닭
74	73	75	1896	병신	잔나비
75	74	76	1895	을미	양
76	75	77	1894	갑오	말
77	76	78	1893	계사	뱀
78	77	79	1892	임진	용
79	78	80	1891	신묘	토끼
80	79	81	1890	경인	범
81	80	82	1889	기축	소
82	81	83	1888	무자	쥐
83	82	84	1887	정해	돼지
84	83	85	1886	병술	개
85	84	86	1885	을유	닭
86	85	87	1884	갑신	잔나비
87	86	88	1883	계미	양
88	87	89	1882	임오	말
89	88	90	1881	신사	뱀
90	89	91	1880	경진	용
91	90	92	1879	기묘	토끼
92	91	93	1878	무인	범
93	92	94	1877	정축	소
94	93	95	1876	병자	쥐
95	94	96	1875	을해	돼지
96	95	97	1874	갑술	개
97	96	98	1873	계유	닭
98	97	99	1872	임신	잔나비
99	98	100	1871	신미	양
100	99	101	1870	경오	말
101	100	102	1869	기사	뱀

주 : 서기 = 단기 − 2333년

척 별 평 수 조 견 표

(단위 : 평)

척(尺)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1	0.0	0.1	0.1	0.1	0.1	0.2	0.2	0.2	0.3	0.3	0.3	0.3	0.4	0.4	0.4	0.4	0.5	0.5	0.5	0.6
2	0.1	0.1	0.2	0.2	0.3	0.3	0.4	0.4	0.5	0.6	0.6	0.7	0.7	0.8	0.8	0.9	0.9	1.0	1.1	1.1
3	0.1	0.2	0.3	0.3	0.4	0.5	0.6	0.7	0.8	0.8	0.9	1.0	1.1	1.2	1.3	1.3	1.4	1.5	1.6	1.7
4	0.1	0.2	0.3	0.4	0.6	0.7	0.8	0.9	1.0	1.1	1.2	1.3	1.4	1.6	1.7	1.8	1.9	2.0	2.1	2.2
5	0.1	0.3	0.4	0.6	0.7	0.8	1.0	1.1	1.3	1.4	1.5	1.7	1.8	1.9	2.1	2.2	2.4	2.5	2.6	2.8
6	0.2	0.3	0.5	0.7	0.8	1.0	1.2	1.3	1.5	1.7	1.8	2.0	2.2	2.3	2.5	2.7	2.8	3.0	3.2	3.3
7	0.2	0.4	0.6	0.8	1.0	1.2	1.4	1.6	1.8	1.9	2.1	2.3	2.5	2.7	2.9	3.1	3.3	3.5	3.7	3.9
8	0.2	0.4	0.7	0.9	1.1	1.3	1.6	1.8	2.0	2.2	2.4	2.7	2.9	3.1	3.3	3.6	3.8	4.0	4.2	4.4
9	0.3	0.5	0.8	1.0	1.3	1.5	1.8	2.0	2.3	2.5	2.8	3.0	3.3	3.5	3.8	4.0	4.3	4.5	4.8	5.0
10	0.3	0.6	0.8	1.1	1.4	1.7	1.9	2.2	2.5	2.8	3.1	3.3	3.6	3.9	4.2	4.4	4.7	5.0	5.3	5.6
11	0.3	0.6	0.9	1.2	1.5	1.8	2.1	2.4	2.8	3.1	3.4	3.7	4.0	4.3	4.6	4.9	5.2	5.5	5.8	6.1
12	0.3	0.7	1.0	1.3	1.7	2.0	2.3	2.7	3.0	3.3	3.7	4.0	4.3	4.7	5.0	5.3	5.7	6.0	6.3	6.7
13	0.4	0.7	1.1	1.4	1.8	2.2	2.5	2.9	3.3	3.6	4.0	4.3	4.7	5.1	5.4	5.8	6.1	6.5	6.9	7.2
14	0.4	0.8	1.2	1.6	1.9	2.3	2.7	3.1	3.5	3.9	4.3	4.7	5.1	5.4	5.8	6.2	6.6	7.0	7.4	7.8
15	0.4	0.8	1.3	1.7	2.2	2.5	2.9	3.3	3.8	4.2	4.6	5.0	5.4	5.8	6.3	6.7	7.1	7.5	7.9	8.3
16	0.4	0.9	1.3	1.8	2.3	2.7	3.1	3.6	4.0	4.4	4.9	5.3	5.8	6.2	6.7	7.1	7.6	8.0	8.4	8.9
17	0.5	0.9	1.4	1.9	2.4	2.8	3.3	3.8	4.3	4.7	5.2	5.7	6.1	6.6	7.1	7.6	8.0	8.5	9.0	9.4
18	0.5	1.0	1.5	2.0	2.5	3.0	3.5	4.0	4.5	5.0	5.5	6.0	6.5	7.0	7.5	8.0	8.5	9.0	9.5	10.0
19	0.5	1.1	1.6	2.1	2.6	3.2	3.7	4.2	4.8	5.3	5.8	6.3	6.9	7.4	7.9	8.4	9.0	9.5	10.0	10.6
20	0.6	1.1	1.7	2.2	2.8	3.3	3.9	4.4	5.0	5.6	6.1	6.7	7.2	7.8	8.3	8.9	9.4	10.0	10.6	11.1

만 세 연 령 조 견 표

만 세		세는	서기	간지	띠	만 세		세는	서기	간지	띠
양 10.1 이전 음 9.2 출생자	양 10.1 이후 음 9.2 출생자	나이				양 10.1 이전 음 9.2 출생자	양 10.1 이후 음 9.2 출생자	나이			
0		1	1970	경술	개	51	50	52	1919	기미	양
1	0	2	1969	기유	닭	52	51	53	1918	무오	말
2	1	3	1968	무신	잔나비	53	52	54	1917	정사	뱀
3	2	4	1967	정미	양	54	53	55	1916	병진	용
4	3	5	1966	병오	말	55	54	56	1915	을묘	토끼
⑤	4	6	1965	을사	뱀	56	55	57	1914	갑인	범
6	⑤	7	1964	갑진	용	57	56	58	1913	계축	소
7	6	8	1963	계묘	토끼	58	57	59	1912	임자	쥐
8	7	9	1962	임인	범	59	58	60	1911	신해	돼지
9	8	10	1961	신축	소	60	59	61	1910	경술	개
⑩	9	11	1960	경자	쥐	61	60	62	1909	기유	닭
11	⑩	12	1959	기해	돼지	62	61	63	1908	무신	잔나비
12	11	13	1958	무술	개	63	62	64	1907	정미	양
13	12	14	1957	정유	닭	64	63	65	1906	병오	말
⑭	13	15	1956	병신	잔나비	65	64	66	1905	을사	뱀
⑮	⑭	16	1955	을미	양	66	65	67	1904	갑진	용
16	⑮	17	1954	갑오	말	67	66	68	1903	계묘	토끼
17	16	18	1953	계사	뱀	68	67	69	1902	임인	범
18	17	19	1952	임진	용	69	68	70	1901	신축	소
19	18	20	1951	신묘	토끼	70	69	71	1900	경자	쥐
20	19	21	1950	경인	범	71	70	72	1899	기해	돼지
21	20	22	1949	기축	소	72	71	73	1898	무술	개
22	21	23	1948	무자	쥐	73	72	74	1897	정유	닭
23	22	24	1947	정해	돼지	74	73	75	1896	병신	잔나비
24	23	25	1946	병술	개	75	74	76	1895	을미	양
25	24	26	1945	을유	닭	76	75	77	1894	갑오	말
26	25	27	1944	갑신	잔나비	77	76	78	1893	계사	뱀
27	26	28	1943	계미	양	78	77	79	1892	임진	용
28	27	29	1942	임오	말	79	78	80	1891	신묘	토끼
29	28	30	1941	신사	뱀	80	79	81	1890	경인	범
30	29	31	1940	경진	용	81	80	82	1889	기축	소
31	30	32	1939	기묘	토끼	82	81	83	1888	무자	쥐
32	31	33	1938	무인	범	83	82	84	1887	정해	돼지
33	32	34	1937	정축	소	84	83	85	1886	병술	개
34	33	35	1936	병자	쥐	85	84	86	1885	을유	닭
35	34	36	1935	을해	돼지	86	85	87	1884	갑신	잔나비
36	35	37	1934	갑술	개	87	86	88	1883	계미	양
37	36	38	1933	계유	닭	88	87	89	1882	임오	말
38	37	39	1932	임신	잔나비	89	88	90	1881	신사	뱀
39	38	40	1931	신미	양	90	89	91	1880	경진	용
40	39	41	1930	경오	말	91	90	92	1879	기묘	토끼
41	40	42	1929	기사	뱀	92	91	93	1878	무인	범
42	41	43	1928	무진	용	93	92	94	1877	정축	소
43	42	44	1927	정묘	토끼	94	93	95	1876	병자	쥐
44	43	45	1926	병인	범	95	94	96	1875	을해	돼지
45	44	46	1925	을축	소	96	95	97	1874	갑술	개
46	45	47	1924	갑자	쥐	97	96	98	1873	계유	닭
47	46	48	1923	계해	돼지	98	97	99	1872	임신	잔나비
48	47	49	1922	임술	개	99	98	100	1871	신미	양
49	48	50	1921	신유	닭	100	99	101	1870	경오	말
50	49	51	1920	경신	잔나비	101	100	102	1869	기사	뱀

주 : 서기 - 단기 = 2333년

척 별 평 수 조 견 표

(단위 : 평)

척(尺)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1	0.0	0.1	0.1	0.1	0.1	0.2	0.2	0.2	0.3	0.3	0.3	0.3	0.4	0.4	0.4	0.4	0.5	0.5	0.5	0.6
2	0.1	0.1	0.2	0.2	0.3	0.3	0.4	0.4	0.5	0.6	0.6	0.7	0.7	0.8	0.8	0.9	0.9	1.0	1.1	1.1
3	0.1	0.2	0.3	0.3	0.4	0.5	0.6	0.7	0.8	0.8	0.9	1.0	1.1	1.2	1.3	1.3	1.4	1.5	1.6	1.7
4	0.1	0.2	0.3	0.4	0.6	0.7	0.8	0.9	1.0	1.1	1.2	1.3	1.4	1.6	1.7	1.8	1.9	2.0	2.1	2.2
5	0.1	0.3	0.4	0.6	0.7	0.8	1.0	1.1	1.3	1.4	1.5	1.7	1.8	1.9	2.1	2.2	2.4	2.5	2.6	2.8
6	0.2	0.3	0.5	0.7	0.8	1.0	1.2	1.3	1.5	1.7	1.8	2.0	2.2	2.3	2.5	2.7	2.8	3.0	3.2	3.3
7	0.2	0.4	0.6	0.8	1.0	1.2	1.4	1.6	1.8	1.9	2.1	2.3	2.5	2.7	2.9	3.1	3.3	3.5	3.7	3.9
8	0.2	0.4	0.7	0.9	1.1	1.3	1.6	1.8	2.0	2.2	2.4	2.7	2.9	3.1	3.3	3.6	3.8	4.0	4.2	4.4
9	0.3	0.5	0.8	1.0	1.3	1.5	1.8	2.0	2.3	2.5	2.8	3.0	3.3	3.5	3.8	4.0	4.3	4.5	4.8	5.0
10	0.3	0.6	0.8	1.1	1.4	1.7	1.9	2.2	2.5	2.8	3.1	3.3	3.6	3.9	4.2	4.4	4.7	5.0	5.3	5.6
11	0.3	0.6	0.9	1.2	1.5	1.8	2.1	2.4	2.8	3.1	3.4	3.7	4.0	4.3	4.6	4.9	5.2	5.5	5.8	6.1
12	0.3	0.7	1.0	1.3	1.7	2.0	2.3	2.7	3.0	3.3	3.7	4.0	4.3	4.7	5.0	5.3	5.7	6.0	6.3	6.7
13	0.4	0.7	1.1	1.4	1.8	2.2	2.5	2.9	3.3	3.6	4.0	4.3	4.7	5.1	5.4	5.8	6.1	6.5	6.9	7.2
14	0.4	0.8	1.2	1.6	1.9	2.3	2.7	3.1	3.5	3.9	4.3	4.7	5.1	5.4	5.8	6.2	6.6	7.0	7.4	7.8
15	0.4	0.8	1.3	1.7	2.2	2.5	2.9	3.3	3.8	4.2	4.6	5.0	5.4	5.8	6.3	6.7	7.1	7.5	7.9	8.3
16	0.4	0.9	1.3	1.8	2.3	2.7	3.1	3.6	4.0	4.4	4.9	5.3	5.8	6.2	6.7	7.1	7.6	8.0	8.4	8.9
17	0.5	0.9	1.4	1.9	2.4	2.8	3.3	3.8	4.3	4.7	5.2	5.7	6.1	6.6	7.1	7.6	8.0	8.5	9.0	9.4
18	0.5	1.0	1.5	2.0	2.5	3.0	3.5	4.0	4.5	5.0	5.5	6.0	6.5	7.0	7.5	8.0	8.5	9.0	9.5	10.0
19	0.5	1.1	1.6	2.1	2.6	3.2	3.7	4.2	4.8	5.3	5.8	6.3	6.9	7.4	7.9	8.4	9.0	9.5	10.0	10.6
20	0.6	1.1	1.7	2.2	2.8	3.3	3.9	4.4	5.0	5.6	6.1	6.7	7.2	7.8	8.3	8.9	9.4	10.0	10.6	11.1

만 세 연 령 조 견 표

만 세		세는 나이	서기	간지	띠	만 세		세는 나이	서기	간지	띠
양 10.1 이전 음 9.2 출생자	양 10.1 이후 음 9.2 출생자					양 10.1 이전 음 9.2 출생자	양 10.1 이후 음 9.2 출생자				
0		1	1970	경술	개	51	50	52	1919	기미	양
1	0	2	1969	기유	닭	52	51	53	1918	무오	말
2	1	3	1968	무신	잔나비	53	52	54	1917	정사	뱀
3	2	4	1967	정미	양	54	53	55	1916	병진	용
4	3	5	1966	병오	말	55	54	56	1915	을묘	토끼
⑤	4	6	1965	을사	뱀	56	55	57	1914	갑인	범
6	⑤	7	1964	갑진	용	57	56	58	1913	계축	소
7	6	8	1963	계묘	토끼	58	57	59	1912	임자	쥐
8	7	9	1962	임인	범	59	58	60	1911	신해	돼지
9	8	10	1961	신축	소	60	59	61	1910	경술	개
⑩	9	11	1960	경자	쥐	61	60	62	1909	기유	닭
11	⑩	12	1959	기해	돼지	62	61	63	1908	무신	잔나비
12	11	13	1958	무술	개	63	62	64	1907	정미	양
13	12	14	1957	정유	닭	64	63	65	1906	병오	말
⑭	13	15	1956	병신	잔나비	65	64	66	1905	을사	뱀
⑮	⑭	16	1955	을미	양	66	65	67	1904	갑진	용
16	⑮	17	1954	갑오	말	67	66	68	1903	계묘	토끼
17	16	18	1953	계사	뱀	68	67	69	1902	임인	범
18	17	19	1952	임진	용	69	68	70	1901	신축	소
19	18	20	1951	신묘	토끼	70	69	71	1900	경자	쥐
20	19	21	1950	경인	범	71	70	72	1899	기해	돼지
21	20	22	1949	기축	소	72	71	73	1898	무술	개
22	21	23	1948	무자	쥐	73	72	74	1897	정유	닭
23	22	24	1947	정해	돼지	74	73	75	1896	병신	잔나비
24	23	25	1946	병술	개	75	74	76	1895	을미	양
25	24	26	1945	을유	닭	76	75	77	1894	갑오	말
26	25	27	1944	갑신	잔나비	77	76	78	1893	계사	뱀
27	26	28	1943	계미	양	78	77	79	1892	임진	용
28	27	29	1942	임오	말	79	78	80	1891	신묘	토끼
29	28	30	1941	신사	뱀	80	79	81	1890	경인	범
30	29	31	1940	경진	용	81	80	82	1889	기축	소
31	30	32	1939	기묘	토끼	82	81	83	1888	무자	쥐
32	31	33	1938	무인	범	83	82	84	1887	정해	돼지
33	32	34	1937	정축	소	84	83	85	1886	병술	개
34	33	35	1936	병자	쥐	85	84	86	1885	을유	닭
35	34	36	1935	을해	돼지	86	85	87	1884	갑신	잔나비
36	35	37	1934	갑술	개	87	86	88	1883	계미	양
37	36	38	1933	계유	닭	88	87	89	1882	임오	말
38	37	39	1932	임신	잔나비	89	88	90	1881	신사	뱀
39	38	40	1931	신미	양	90	89	91	1880	경진	용
40	39	41	1930	경오	말	91	90	92	1879	기묘	토끼
41	40	42	1929	기사	뱀	92	91	93	1878	무인	범
42	41	43	1928	무진	용	93	92	94	1877	정축	소
43	42	44	1927	정묘	토끼	94	93	95	1876	병자	쥐
44	43	45	1926	병인	범	95	94	96	1875	을해	돼지
45	44	46	1925	을축	소	96	95	97	1874	갑술	개
46	45	47	1924	갑자	쥐	97	96	98	1873	계유	닭
47	46	48	1923	계해	돼지	98	97	99	1872	임신	잔나비
48	47	49	1922	임술	개	99	98	100	1871	신미	양
49	48	50	1921	신유	닭	100	99	101	1870	경오	말
50	49	51	1920	경신	잔나비	101	100	102	1869	기사	뱀

주 : 서기 = 단기 − 2333년

척 별 평 수 조 견 표

(단위 : 평)

척(尺)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1	0.0	0.1	0.1	0.1	0.1	0.2	0.2	0.2	0.3	0.3	0.3	0.3	0.4	0.4	0.4	0.4	0.5	0.5	0.5	0.6
2	0.1	0.1	0.2	0.2	0.3	0.3	0.4	0.4	0.5	0.6	0.6	0.7	0.7	0.8	0.8	0.9	0.9	1.0	1.1	1.1
3	0.1	0.2	0.3	0.3	0.4	0.5	0.6	0.7	0.8	0.8	0.9	1.0	1.1	1.2	1.3	1.3	1.4	1.5	1.6	1.7
4	0.1	0.2	0.3	0.4	0.6	0.7	0.8	0.9	1.0	1.1	1.2	1.3	1.4	1.6	1.7	1.8	1.9	2.0	2.1	2.2
5	0.1	0.3	0.4	0.6	0.7	0.8	1.0	1.1	1.3	1.4	1.5	1.7	1.8	1.9	2.1	2.2	2.4	2.5	2.6	2.8
6	0.2	0.3	0.5	0.7	0.8	1.0	1.2	1.3	1.5	1.7	1.8	2.0	2.2	2.3	2.5	2.7	2.8	3.0	3.2	3.3
7	0.2	0.4	0.6	0.8	1.0	1.2	1.4	1.6	1.8	1.9	2.1	2.3	2.5	2.7	2.9	3.1	3.3	3.5	3.7	3.9
8	0.2	0.4	0.7	0.9	1.1	1.3	1.6	1.8	2.0	2.2	2.4	2.7	2.9	3.1	3.3	3.6	3.8	4.0	4.2	4.4
9	0.3	0.5	0.8	1.0	1.3	1.5	1.8	2.0	2.3	2.5	2.8	3.0	3.3	3.5	3.8	4.0	4.3	4.5	4.8	5.0
10	0.3	0.6	0.8	1.1	1.4	1.7	1.9	2.2	2.5	2.8	3.1	3.3	3.6	3.9	4.2	4.4	4.7	5.0	5.3	5.6
11	0.3	0.6	0.9	1.2	1.5	1.8	2.1	2.4	2.8	3.1	3.4	3.7	4.0	4.3	4.6	4.9	5.2	5.5	5.8	6.1
12	0.3	0.7	1.0	1.3	1.7	2.0	2.3	2.7	3.0	3.3	3.7	4.0	4.3	4.7	5.0	5.3	5.7	6.0	6.3	6.7
13	0.4	0.7	1.1	1.4	1.8	2.2	2.5	2.9	3.3	3.6	4.0	4.3	4.7	5.1	5.4	5.8	6.1	6.5	6.9	7.2
14	0.4	0.8	1.2	1.6	1.9	2.3	2.7	3.1	3.5	3.9	4.3	4.7	5.1	5.4	5.8	6.2	6.6	7.0	7.4	7.8
15	0.4	0.8	1.3	1.7	2.2	2.5	2.9	3.3	3.8	4.2	4.6	5.0	5.4	5.8	6.3	6.7	7.1	7.5	7.9	8.3
16	0.4	0.9	1.3	1.8	2.3	2.7	3.1	3.6	4.0	4.4	4.9	5.3	5.8	6.2	6.7	7.1	7.6	8.0	8.4	8.9
17	0.5	0.9	1.4	1.9	2.4	2.8	3.3	3.8	4.3	4.7	5.2	5.7	6.1	6.6	7.1	7.6	8.0	8.5	9.0	9.4
18	0.5	1.0	1.5	2.0	2.5	3.0	3.5	4.0	4.5	5.0	5.5	6.0	6.5	7.0	7.5	8.0	8.5	9.0	9.5	10.0
19	0.5	1.1	1.6	2.1	2.6	3.2	3.7	4.2	4.8	5.3	5.8	6.3	6.9	7.4	7.9	8.4	9.0	9.5	10.0	10.6
20	0.6	1.1	1.7	2.2	2.8	3.3	3.9	4.4	5.0	5.6	6.1	6.7	7.2	7.8	8.3	8.9	9.4	10.0	10.6	11.1

1970년인구및주택센서스 지정통계제1호 및 제2호

조사표 (가구용 전수)

인구에 관한사항

(특별)시 도 / 구 시 군 / 동읍면 / 가 리 (전화) / 번지 호

이 름 ❶	가구주와의관계 ❷	성 별 ❸	생 년 월 일 ❹	혼인상태 ❺	교육 취학여부 ❻	교육 학 력 ❼	문맹여부 ❽
가구주와 가구원의 이름을 빠짐없이 말씀하여주십시요.	가구주와 어떤 관계가있읍니까 (예) 가구주, 처, 장남의 처, 차남의 장녀, 동거인 등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예) ⑪ 남	사실상의 나이와 생년월일을 말씀하여 주십시요.	사실상의 배우관계를 말씀하여 주십시요.	학교에 다니십니까 아니면 중퇴 또는 졸업하셨읍니까?	다음중 어디에 해당됩니까?	글을읽고 쓸수 있읍니까?
1		① 남 ② 여	나이 살 / 생일 월 일	① 유배우 ② 사별 ③ 이혼 ④ 미혼	① 재학 ② 졸업 ③ 중퇴 ④ 안다녔음	① 국민학교 ② 중학교 ③ 고등학교 ④ 초대·전문 ⑤ 대학이상	① 안다 ② 모른다
2		① 남 ② 여	나이 살 / 생일 월 일	① 유배우 ② 사별 ③ 이혼 ④ 미혼	① 재학 ② 졸업 ③ 중퇴 ④ 안다녔음	① 국민학교 ② 중학교 ③ 고등학교 ④ 초대·전문 ⑤ 대학이상	① 안다 ② 모른다
3		① 남 ② 여	나이 살 / 생일 월 일	① 유배우 ② 사별 ③ 이혼 ④ 미혼	① 재학 ② 졸업 ③ 중퇴 ④ 안다녔음	① 국민학교 ② 중학교 ③ 고등학교 ④ 초대·전문 ⑤ 대학이상	① 안다 ② 모른다
4		① 남 ② 여	나이 살 / 생일 월 일	① 유배우 ② 사별 ③ 이혼 ④ 미혼	① 재학 ② 졸업 ③ 중퇴 ④ 안다녔음	① 국민학교 ② 중학교 ③ 고등학교 ④ 초대·전문 ⑤ 대학이상	① 안다 ② 모른다
5		① 남 ② 여	나이 살 / 생일 월 일	① 유배우 ② 사별 ③ 이혼 ④ 미혼	① 재학 ② 졸업 ③ 중퇴 ④ 안다녔음	① 국민학교 ② 중학교 ③ 고등학교 ④ 초대·전문 ⑤ 대학이상	① 안다 ② 모른다
6		① 남 ② 여	나이 살 / 생일 월 일	① 유배우 ② 사별 ③ 이혼 ④ 미혼	① 재학 ② 졸업 ③ 중퇴 ④ 안다녔음	① 국민학교 ② 중학교 ③ 고등학교 ④ 초대·전문 ⑤ 대학이상	① 안다 ② 모른다
7		① 남 ② 여	나이 살 / 생일 월 일	① 유배우 ② 사별 ③ 이혼 ④ 미혼	① 재학 ② 졸업 ③ 중퇴 ④ 안다녔음	① 국민학교 ② 중학교 ③ 고등학교 ④ 초대·전문 ⑤ 대학이상	① 안다 ② 모른다
8		① 남 ② 여	나이 살 / 생일 월 일	① 유배우 ② 사별 ③ 이혼 ④ 미혼	① 재학 ② 졸업 ③ 중퇴 ④ 안다녔음	① 국민학교 ② 중학교 ③ 고등학교 ④ 초대·전문 ⑤ 대학이상	① 안다 ② 모른다
9		① 남 ② 여	나이 살 / 생일 월 일	① 유배우 ② 사별 ③ 이혼 ④ 미혼	① 재학 ② 졸업 ③ 중퇴 ④ 안다녔음	① 국민학교 ② 중학교 ③ 고등학교 ④ 초대·전문 ⑤ 대학이상	① 안다 ② 모른다
10		① 남 ② 여	나이 살 / 생일 월 일	① 유배우 ② 사별 ③ 이혼 ④ 미혼	① 재학 ② 졸업 ③ 중퇴 ④ 안다녔음	① 국민학교 ② 중학교 ③ 고등학교 ④ 초대·전문 ⑤ 대학이상	① 안다 ② 모른다

조사원 성명 ㊞

응답자 성명 ㊞

주택에 관한사항

조사구번호	거처번호	가구번호	매중 매	가구원수

모든 주택의 주가구에 대하여 조사할 사항 (항목❶~❼)

❶ 거처의 종류
1 일반주택
2 비 거주용 건물내의 주택
3 호텔, 여관등 숙박업소
4 병원, 기숙사, 수녀원, 영육아원, 양로원등 공공목적을 위한 집
5 토목공사 현장등 사업목적을 위하여 임시로 세운 집
6 기 타 ( )

❷ 건물의 종류
1 독립주택
2 연립주택
3 공동주택 (아파트)
4 기 타

❸ 건물의 건축시기
1 1945년 이전(25년전)
2 1950년 이전(20년전)
3 1960년 이전(10년전)
4 1961년 이후 → 19 년

❹ 주택의 소유관계
1 자기집
2 셋 집
3 세없이 빌려든 집

❺ 주택의 총방수 및 동거가구수
1. 총방수 …… 개 … 평
2. 주가구사용방수 …… 개 … 평
3. 동거가구수 …… 가구
4. 동거가구사용방수 … 개 … 평

❻ 주택의 총건평수
총건평 평

❼ 이 가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문화시설 및 가재
1 재봉틀 5 전 화
2 라디오 6 냉장고
3 테레비 7 피아노 및 올갠
4 전 축

주가구 이외의 모든 동거가구에 대하여 조사할 사항 (항목❽~❿)

❽ 이 가구는 어느종류의 거처에 살고 있는 동거가구 입니까?
1 일반주택
2 비 거수용 건물내의 주택
3 호텔, 여관등 숙박업소
4 병원, 기숙사, 수녀원, 영육아원, 양로원등 공공목적을 위한집
5 토목공사 현장등 사업목적을 위하여 임시로 세운집
6 기 타 ( )

❾ 동거가구의 사용방수
개 … 평

❿ 가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문화시설 및 가재
1 재봉틀 5 전 화
2 라디오 6 냉장고
3 테레비 7 피아노 및 올갠
4 전 축

※ 조사통계국 기입란

가구원수			가구구분	가족구성	
계	남	여		핵가족	세대구성

경 제 기 획 원

지정통계제1호 및 제2호

1970년 인구 및 주택센서스 조사표 (전수용)

인구에 관한사항

(특별)시 도	구 시 군	동 또는 읍 면	가 리	번지 호 (전화)

이름 ❶	가구주와의 관계 ❷	성별 ❸	생년월일 ❹	혼인상태 ❺	교육 취학여부 ❻	교육 학력 ❼	문맹여부 ❽
가구주와 가구원의 이름을 빠짐없이 말씀하여주십시요.	가구주와 어떤 관계가있읍니까 (예) 가구주, 처, 장남의 처, 차남의 장녀, 동거인 등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예) ① 남	사실상의 나이와 생년월일을 말씀하여 주십시요.	사실상의 배우관계를 말씀하여 주십시요.	학교에 다니십니까 아니면 중퇴 또는 졸업하셨읍니까?	다음중 어디에 해당됩니까?	글을읽고 쓸수 있읍니까?
1		① 남 ② 여	나이 살 생일 년 월 일	① 유배우 ② 사별 ③ 이혼 ④ 미혼	① 재학 ② 졸업 ③ 중퇴 ④ 안다녔음	① 국민학교 ② 중학교 ③ 고등학교 ④ 초대·전문 ⑤ 대학이상	① 안다 ② 모른다
2		① 남 ② 여	나이 살 생일 년 월 일	① 유배우 ② 사별 ③ 이혼 ④ 미혼	① 재학 ② 졸업 ③ 중퇴 ④ 안다녔음	① 국민학교 ② 중학교 ③ 고등학교 ④ 초대·전문 ⑤ 대학이상	① 안다 ② 모른다
3		① 남 ② 여	나이 살 생일 년 월 일	① 유배우 ② 사별 ③ 이혼 ④ 미혼	① 재학 ② 졸업 ③ 중퇴 ④ 안다녔음	① 국민학교 ② 중학교 ③ 고등학교 ④ 초대·전문 ⑤ 대학이상	① 안다 ② 모른다
4		① 남 ② 여	나이 살 생일 년 월 일	① 유배우 ② 사별 ③ 이혼 ④ 미혼	① 재학 ② 졸업 ③ 중퇴 ④ 안다녔음	① 국민학교 ② 중학교 ③ 고등학교 ④ 초대·전문 ⑤ 대학이상	① 안다 ② 모른다
5		① 남 ② 여	나이 살 생일 년 월 일	① 유배우 ② 사별 ③ 이혼 ④ 미혼	① 재학 ② 졸업 ③ 중퇴 ④ 안다녔음	① 국민학교 ② 중학교 ③ 고등학교 ④ 초대·전문 ⑤ 대학이상	① 안다 ② 모른다
6		① 남 ② 여	나이 살 생일 년 월 일	① 유배우 ② 사별 ③ 이혼 ④ 미혼	① 재학 ② 졸업 ③ 중퇴 ④ 안다녔음	① 국민학교 ② 중학교 ③ 고등학교 ④ 초대·전문 ⑤ 대학이상	① 안다 ② 모른다
7		① 남 ② 여	나이 살 생일 년 월 일	① 유배우 ② 사별 ③ 이혼 ④ 미혼	① 재학 ② 졸업 ③ 중퇴 ④ 안다녔음	① 국민학교 ② 중학교 ③ 고등학교 ④ 초대·전문 ⑤ 대학이상	① 안다 ② 모른다
8		① 남 ② 여	나이 살 생일 년 월 일	① 유배우 ② 사별 ③ 이혼 ④ 미혼	① 재학 ② 졸업 ③ 중퇴 ④ 안다녔음	① 국민학교 ② 중학교 ③ 고등학교 ④ 초대·전문 ⑤ 대학이상	① 안다 ② 모른다
9		① 남 ② 여	나이 살 생일 년 월 일	① 유배우 ② 사별 ③ 이혼 ④ 미혼	① 재학 ② 졸업 ③ 중퇴 ④ 안다녔음	① 국민학교 ② 중학교 ③ 고등학교 ④ 초대·전문 ⑤ 대학이상	① 안다 ② 모른다
10		① 남 ② 여	나이 살 생일 년 월 일	① 유배우 ② 사별 ③ 이혼 ④ 미혼	① 재학 ② 졸업 ③ 중퇴 ④ 안다녔음	① 국민학교 ② 중학교 ③ 고등학교 ④ 초대·전문 ⑤ 대학이상	① 안다 ② 모른다

조사원 성명 ㊞

응답자 성명 ㊞

주택에 관한사항

조사구번호	거처번호	가구번호	대주 매	가구원수

모든 주택의 주가구에 대하여 조사할 사항 (항목❶~❼)

❶ 거처의 종류
- [1] 일반주택
- [2] 비 거주용 건물내의 주택
- [3] 호텔, 여관등 숙박업소
- [4] 병원, 기숙사, 수녀원, 영육아원, 양로원등 공공목적을 위한 집
- [5] 토목공사 현장등 사업목적을 위하여 임시로 세운 집
- [6] 기 타 ( )

❷ 건물의 종류
- [1] 독립주택
- [2] 연립주택
- [3] 공동주택 (아파트)
- [4] 기 타

❸ 건물의 건축시기
- [1] 1945년 이전(25년전)
- [2] 1950년 이전(20년전)
- [3] 1960년 이전(10년전)
- [4] 1961년 이후 → 19 년

❹ 주택의 소유관계
- [1] 자기집
- [2] 셋 집
- [3] 세없이 빌려든 집

❺ 주택의 총방수 및 동거가구수
- 1. 총방수 ····· 개 ··· 평
- 2. 주가구사용방수 ····· 개 ··· 평
- 3. 동거가구수 ····· 가구
- 4. 동거가구사용방수 ··· 개 ··· 평

❻ 주택의 총건평수
- 총건평 평

❼ 이 가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문화시설 및 가재
- [1] 재봉틀 [5] 전 화
- [2] 라디오 [6] 냉장고
- [3] 테레비 [7] 피아노 및 올갠
- [4] 전 축

주가구 이외의 모든 동거가구에 대하여 조사할 사항 (항목❽~❿)

❽ 이 가구는 어느종류의 거처에 살고 있는 동거가구 입니까?
- [1] 일반주택
- [2] 비 거수용 건물내의 주택
- [3] 호텔, 여관등 숙박업소
- [4] 병원, 기숙사, 수녀원, 영육아원, 양로원등 공공목적을 위한집
- [5] 토목공사 현장등 사업목적을 위하여 임시로 세운집
- [6] 기 타 ( )

❾ 동거가구의 사용방수
- 개 ··· 평

❿ 가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문화시설 및 가재
- [1] 재봉틀 [5] 전 화
- [2] 라디오 [6] 냉장고
- [3] 테레비 [7] 피아노 및 올갠
- [4] 전 축

※ 조사통계국 기입란

가구원수			가구구분	가족구성	
계	남	여		핵가족	세대구성

경 제 기 획 원

조사표 (가구용 전수)

1970년인구및주택센서스 지정통계제1호 및 제2호

인구에 관한사항

(특별)시 도	구 시 군	동 로 읍 면	가 리	번지 호 (전화)

	이 름	가구주와의관계	성 별	생 년 월 일	혼 인 상 태	교 육 취학여부	교 육 학 력	문맹여부
	가구주와 가구원의 이름을 빠짐없이 말씀하여주십시요.	가구주와 어떤 관계가있읍니까 (예) 가구주, 처, 장남의 처, 차남의 장녀, 동거인 등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예) ① 남	사실상의 나이와 생년월일을 말씀하여 주십시요.	사실상의 배우관계를 말씀하여 주십시요.	학교에 다니십니까 아니면 중퇴 또는 졸업하셨읍니까?	다음중 어디에 해당됩니까?	글을읽고 쓸수 있읍니까?
	❶	❷	❸	❹	❺	❻	❼	❽
1			① 남 ② 여	나이 살 띠 / 생일 년 ㉮ ㉯ 월 일	① 유배우 ② 사별 ③ 이혼 ④ 미혼	① 재학 ② 졸업 ③ 중퇴 ④ 안다녔음	① 국민 ② 중학 ③ 고등 ④ 초대·전문 ⑤ 대학이상	① 안다 ② 모른다
2			① 남 ② 여	나이 살 띠 / 생일 년 ㉮ ㉯ 월 일	① 유배우 ② 사별 ③ 이혼 ④ 미혼	① 재학 ② 졸업 ③ 중퇴 ④ 안다녔음	① 국민 ② 중학 ③ 고등 ④ 초대·전문 ⑤ 대학이상	① 안다 ② 모른다
3			① 남 ② 여	나이 살 띠 / 생일 년 ㉮ ㉯ 월 일	① 유배우 ② 사별 ③ 이혼 ④ 미혼	① 재학 ② 졸업 ③ 중퇴 ④ 안다녔음	① 국민 ② 중학 ③ 고등 ④ 초대·전문 ⑤ 대학이상	① 안다 ② 모른다
4			① 남 ② 여	나이 살 띠 / 생일 년 ㉮ ㉯ 월 일	① 유배우 ② 사별 ③ 이혼 ④ 미혼	① 재학 ② 졸업 ③ 중퇴 ④ 안다녔음	① 국민 ② 중학 ③ 고등 ④ 초대·전문 ⑤ 대학이상	① 안다 ② 모른다
5			① 남 ② 여	나이 살 띠 / 생일 년 ㉮ ㉯ 월 일	① 유배우 ② 사별 ③ 이혼 ④ 미혼	① 재학 ② 졸업 ③ 중퇴 ④ 안다녔음	① 국민 ② 중학 ③ 고등 ④ 초대·전문 ⑤ 대학이상	① 안다 ② 모른다
6			① 남 ② 여	나이 살 띠 / 생일 년 ㉮ ㉯ 월 일	① 유배우 ② 사별 ③ 이혼 ④ 미혼	① 재학 ② 졸업 ③ 중퇴 ④ 안다녔음	① 국민 ② 중학 ③ 고등 ④ 초대·전문 ⑤ 대학이상	① 안다 ② 모른다
7			① 남 ② 여	나이 살 띠 / 생일 년 ㉮ ㉯ 월 일	① 유배우 ② 사별 ③ 이혼 ④ 미혼	① 재학 ② 졸업 ③ 중퇴 ④ 안다녔음	① 국민 ② 중학 ③ 고등 ④ 초대·전문 ⑤ 대학이상	① 안다 ② 모른다
8			① 남 ② 여	나이 살 띠 / 생일 년 ㉮ ㉯ 월 일	① 유배우 ② 사별 ③ 이혼 ④ 미혼	① 재학 ② 졸업 ③ 중퇴 ④ 안다녔음	① 국민 ② 중학 ③ 고등 ④ 초대·전문 ⑤ 대학이상	① 안다 ② 모른다
9			① 남 ② 여	나이 살 띠 / 생일 년 ㉮ ㉯ 월 일	① 유배우 ② 사별 ③ 이혼 ④ 미혼	① 재학 ② 졸업 ③ 중퇴 ④ 안다녔음	① 국민 ② 중학 ③ 고등 ④ 초대·전문 ⑤ 대학이상	① 안다 ② 모른다
10			① 남 ② 여	나이 살 띠 / 생일 년 ㉮ ㉯ 월 일	① 유배우 ② 사별 ③ 이혼 ④ 미혼	① 재학 ② 졸업 ③ 중퇴 ④ 안다녔음	① 국민 ② 중학 ③ 고등 ④ 초대·전문 ⑤ 대학이상	① 안다 ② 모른다

조사원 성명 ㉰

응답자 성명 ㉰

주택에 관한사항

조사구번호	거처번호	가구번호	매중 매	가구원수

모든 주택의 주가구에 대하여 조사할 사항 (항목❶~❼)

❶ 거처의 종류
1 일반주택
2 비 거주용 건물내의 주택
3 호텔, 여관 등 숙박업소
4 병원, 기숙사, 수녀원, 영육아원, 양로원 등 공공목적을 위한 집
5 토목공사 현장 등 사업목적을 위하여 임시로 세운 집
6 기 타 ( )

❷ 건물의 종류
1 독립주택
2 연립주택
3 공동주택 (아파트)
4 기 타

❸ 건물의 건축시기
1 1945년 이전 (25년전)
2 1950년 이전 (20년전)
3 1960년 이전 (10년전)
4 1961년 이후 → 19 년

❹ 주택의 소유관계
1 자기집
2 셋 집
3 세없이 빌려든 집

❺ 주택의 총방수 및 동거가구수
1. 총방수 ····· 개 ··· 평
2. 주가구사용방수 ····· 개 ··· 평
3. 동거가구수 ····· 가구
4. 동거가구사용방수 ··· 개 ··· 평

❻ 주택의 총건평수
총건평 평

❼ 이 가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문화시설 및 가재
1 재봉틀 5 전 화
2 라디오 6 냉장고
3 테레비 7 피아노 및 올갠
4 전 축

주가구 이외의 모든 동거가구에 대하여 조사할 사항 (항목❽~❿)

❽ 이 가구는 어느종류의 거처에 살고 있는 동거가구 입니까?
1 일반주택
2 비 거주용 건물내의 주택
3 호텔, 여관 등 숙박업소
4 병원, 기숙사, 수녀원, 영육아원, 양로원등 공공목적을 위한집
5 토목공사 현장등 사업목적을 위하여 임시로 세운집
6 기 타 ( )

❾ 동거가구의 사용방수
개 ··· 평

❿ 가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문화 시설 및 가재
1 재봉틀 5 전 화
2 라디오 6 냉장고
3 테레비 7 피아노 및 올갠
4 전 축

※ 조사통계국 기입란

가구원수 계	가구원수 남	가구원수 여	가구구분	가족구성 핵가족	가족구성 세대구성	

서식제1호

경 제 기 획 원

1970년인구및주택센서스 지정통계 제1호 및 제2호

보조표

인구에 관한 사항

(특별)시 도 | 구 시 군 | 동 읍 면 | 가 리 | 번지 호 (전화)

이름	가구주와의관계	성별	생년월일	혼인상태	교육 취학여부	교육 학력	문맹여부
가구주와 가구원의 이름을 빠짐없이 기입하여 주십시요. ❶	가구주와 어떤 관계가있읍니까 (예) 가구주.처. 장남의 처. 차남의 장녀.동거인 등 ❷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예) ① 남 ❸	사실상의 나이와 생년월일을 기입하여 주십시요. ❹	사실상의 배우관계를 기입하여 주십시요. ❺	학교에 다니십니까 아니면 중퇴 또는 졸업하셨읍니까? ❻	다음중 어디에 해당됩니까? ❼	글을읽고 쓸수 있읍니까? ❽
1		① 남 ② 여	나이 살 띠 / 생일 ㉮ 년 ㉯ 월 일	① 유배우 ② 사별 ③ 이혼 ④ 미혼	① 재학 ② 졸업 ③ 중퇴 ④ 안다녔음	① 국민학교 ② 중학교 ③ 고등학교 ④ 초대·전문대 ⑤ 대학이상	① 안다 ② 모른다
2		① 남 ② 여	나이 살 띠 / 생일 ㉮ 년 ㉯ 월 일	① 유배우 ② 사별 ③ 이혼 ④ 미혼	① 재학 ② 졸업 ③ 중퇴 ④ 안다녔음	① 국민학교 ② 중학교 ③ 고등학교 ④ 초대·전문대 ⑤ 대학이상	① 안다 ② 모른다
3		① 남 ② 여	나이 살 띠 / 생일 ㉮ 년 ㉯ 월 일	① 유배우 ② 사별 ③ 이혼 ④ 미혼	① 재학 ② 졸업 ③ 중퇴 ④ 안다녔음	① 국민학교 ② 중학교 ③ 고등학교 ④ 초대·전문대 ⑤ 대학이상	① 안다 ② 모른다
4		① 남 ② 여	나이 살 띠 / 생일 ㉮ 년 ㉯ 월 일	① 유배우 ② 사별 ③ 이혼 ④ 미혼	① 재학 ② 졸업 ③ 중퇴 ④ 안다녔음	① 국민학교 ② 중학교 ③ 고등학교 ④ 초대·전문대 ⑤ 대학이상	① 안다 ② 모른다
5		① 남 ② 여	나이 살 띠 / 생일 ㉮ 년 ㉯ 월 일	① 유배우 ② 사별 ③ 이혼 ④ 미혼	① 재학 ② 졸업 ③ 중퇴 ④ 안다녔음	① 국민학교 ② 중학교 ③ 고등학교 ④ 초대·전문대 ⑤ 대학이상	① 안다 ② 모른다
6		① 남 ② 여	나이 살 띠 / 생일 ㉮ 년 ㉯ 월 일	① 유배우 ② 사별 ③ 이혼 ④ 미혼	① 재학 ② 졸업 ③ 중퇴 ④ 안다녔음	① 국민학교 ② 중학교 ③ 고등학교 ④ 초대·전문대 ⑤ 대학이상	① 안다 ② 모른다
7		① 남 ② 여	나이 살 띠 / 생일 ㉮ 년 ㉯ 월 일	① 유배우 ② 사별 ③ 이혼 ④ 미혼	① 재학 ② 졸업 ③ 중퇴 ④ 안다녔음	① 국민학교 ② 중학교 ③ 고등학교 ④ 초대·전문대 ⑤ 대학이상	① 안다 ② 모른다
8		① 남 ② 여	나이 살 띠 / 생일 ㉮ 년 ㉯ 월 일	① 유배우 ② 사별 ③ 이혼 ④ 미혼	① 재학 ② 졸업 ③ 중퇴 ④ 안다녔음	① 국민학교 ② 중학교 ③ 고등학교 ④ 초대·전문대 ⑤ 대학이상	① 안다 ② 모른다
9		① 남 ② 여	나이 살 띠 / 생일 ㉮ 년 ㉯ 월 일	① 유배우 ② 사별 ③ 이혼 ④ 미혼	① 재학 ② 졸업 ③ 중퇴 ④ 안다녔음	① 국민학교 ② 중학교 ③ 고등학교 ④ 초대·전문대 ⑤ 대학이상	① 안다 ② 모른다
10		① 남 ② 여	나이 살 띠 / 생일 ㉮ 년 ㉯ 월 일	① 유배우 ② 사별 ③ 이혼 ④ 미혼	① 재학 ② 졸업 ③ 중퇴 ④ 안다녔음	① 국민학교 ② 중학교 ③ 고등학교 ④ 초대·전문대 ⑤ 대학이상	① 안다 ② 모른다

주택에 관한사항

모든주택의 주가구가 기입하여야할 사항 (항목❶~❺)

❶ 건물의 건축시기
- [1] 1945년 이전 (25년전)
- [2] 1950년 이전 (20년전)
- [3] 1960년 이전 (10년전)
- [4] 1961년 이후 → 19 년

❷ 주택의 소유관계
- [1] 자기집
- [2] 셋 집
- [3] 세없이 빌려든 집

❸ 주택의 총방수 및 동거가구수
- 1.총방수 …… 개 … 평
- 2.주가구사용방수 …… 개 … 평
- 3.동거가구수 …… 가구
- 4.동거가구사용방수 … 개 … 평

❹ 주택의 총건평수
- 총건평 평

❺ 이 가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문화시설 및 가재
- [1] 재봉틀
- [2] 라디오
- [3] 테레비
- [4] 전 축
- [5] 전 화
- [6] 냉장고
- [7] 피아노 및 올갠

주가구 이외의 모든 동거가구가 기입하여야 할 사항 (항목❻~❼)

❻ 동거가구의 사용방수
- 개 … 평

❼ 가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문화시설 및 가재
- [1] 재봉틀
- [2] 라디오
- [3] 테레비
- [4] 전 축
- [5] 전 화
- [6] 냉장고
- [7] 피아노 및 올갠

경 제 기 획 원

서식제24호

— 1970년 인구및 주택센서스 —

국민여러분!

오는 10월 1 일은 인구 및 주택센서스(총인구 및 주택조사)의 날입니다.

정부는 금년10월 1 일을 기하여 전국 일제히 총인구 및 주택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읍니다. 이조사는 매10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범 국가적인 사업입니다.

※인구및 주택센서스는 왜하나?

국가의 인구나 주택에 관한 조사는 국가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보건후생등 제분야에 있어서의 정책수립과 그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를 얻는 중요한 기본통계 조사입니다.

이번 조사를 통하여 우리는 과거10년간의 인구및 주택의 변동추세를 파악하게 될것이며 번영의 70년대를 향한 경제개발및 지역개발등 각종 종합계획수립의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게 될것입니다.

※이번 조사를 보다 잘 하려면!

이번 조사를 보다잘하려면 무엇보다도 국민여러분의 적극적이며 능동적인 협조가 절실히 요망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조사원이 앞으로 귀댁을 방문하게되면, 질문사항에 대하여는 하나도 빠짐없이 사실대로 진실한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조사되는 조사사항은 통계이외의 다른목적에는 절대로 사용되지 않으며 개인의 비밀은 누설되지 않도록 통계법이 엄격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안심하시고 정확한 기본통계 자료를 얻도록 적극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귀댁에 행운이 있기를 비는바입니다.

1970년 9월 일

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

기 입 요 령

보조표는 시간의 절약과 조사의 정확을 기하기 위하여 조사전에 배부하여 드리는 것이오니 가구주 (응답의무자) 되시는 분은 본보조표의 기입사항을 빠짐없이 기입하여 두었다가 조사당일 조사원이 방문하면 이 보조표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가구에 관한 사항

1970. 10. 1. O시현재 현거주지에 거주하는 가족은 물론 가사사용인 친척, 하숙생, 동거인, 영업사용인등 거주자 전원이 기입대상이 됩니다.

1970. 10. 1. O시현재 여행, 행상등 기타의 사유로 부재중이라 할지라도 부재기간이 3개월이상이 되지 않을때에는 기입되어야 합니다.

※단 다음과 같은 예외가 있읍니다.

① 자택을 떠나 기숙사 또는 하숙집에서 통학하는 학생은 그 기숙사 또는 하숙집에서 기입하여야 합니다.

② 병원 또는 요양소등에 입원한 환자로서 3개월이상이 경과한 환자는 입원한곳에서 기입하고 3개월미만인자는 평소거주한 곳에서 기입하여야합니다.(일정한 주거가없는 환자는 병원에서기입합니다.)

③ 선박 및 항공기의 승무원은 전부자택에서 기입합니다.

④ 군인인 경우에는 영외거주자에 한하여는 전부자택에서 기입합니다. (영내 거주자는 전부 군또는 부대에서 조사합니다)

⑤ 교도소 수감자는 기입하지 않으며 경찰관서 유치인중 형이 미확정된 자는 수감되기전에 평소거주한 곳에서 기입합니다.

2. 주택에 관한 사항

1970. 10. 1. O시현재의 주택및 가구는 전부해당됩니다.

(주가구는 물론 셋집, 셋방에 거주하는 가구도 기입대상이 됩니다)

1970년 인구 및 주택센서스 지정통계 제1호 및 제2호

조 사 표 (가구용) (표본)

인구에 관한사항

(특별)시 도	시 군	읍면동	가 리	번지 호 (전화)

조사구번호	지처번호	가구번호	예중 매	가구원수

※ 조사통계국 기입란

가구원수 계	남	여	가구구분	가족구성 핵가족	비핵가족

	❶ 이름	❷ 가구주와의관계	❸ 성별	❹ 생년월일	❺ 혼인상태	❻ 교육 취학여부	❼ 교육 학력	❽ 문맹여부	❾ 출생아수	❿ 출생지 어디에서 출생하셨읍니까?	⓫ 출생지 현주지와 다를 경우에는 출생한 지명을 말씀하여 주십시요.	⓬ 5년전 거주지	⓭ 5년전 거주지 다른 "구, 시, 군" 또는 "외국에서 살던곳은 어디입니까?	⓮ 경제활동 활동상태	⓯ 취업여부	⓰ 산업	⓱ 직업	⓲ 종사상의지위	⓳ 취업기간
	가구주와 가구원의 이름을 빠짐없이 말씀하여주십시요.	가구주와 어떤 관계가있읍니까 (예) 가구주, 처, 장남의 처, 차남의 장녀, 동거인 등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예) ① 남	사실상의 나이와 생년월일을 말씀하여 주십시요.	사실상의 배우관계를 말씀하여 주십시요.	학교에 다니십니까 아니면 중퇴 또는 졸업하셨읍니까?	다음중 어디에 해당됩니까?	글을읽고 쓸수 있읍니까?	부인께서는 자녀분이 몇분입니까? 출생명의 자녀를 낳았읍니까?	어디에서 출생하셨읍니까?	현주지와 다를 경우에는 출생한 지명을 말씀하여 주십시요.	5년전 (1965년 10월1일) 에도 이곳에서 살았읍니까?	다른 "구, 시, 군" 또는 "외국에서 살던곳은 어디입니까?	지난 1주일간 (9월21일~9월27일) 에 주로 무엇을 하셨읍니까?	조금이라도 수입을목적으로일하신적이있었읍니까?	어느분야에서 일하셨읍니까?	무슨일을 하셨읍니까?	하셨던 일에는 다음중 어디에 해당됩니까?	지난1년동안 몇개월 일하셨읍니까?
1			1 남 2 여	나이 생일 년 월 일	1 유배우 2 사별 3 이혼 4 미혼	1 재학 2 졸업 3 중퇴 4 안다녔음	1 국민 2 중학 3 고등 4 초대·전문 5 대학이상	1 안다 2 모른다	1.생존아수 명 2.총출생아수 명	현주지와 1 같다 2 다르다	시 군 국	1 같다 2 같은 구, 시, 군 3 다른 구, 시, 군 4 외국	시 군 국	1 일하였음 2 일시휴직 3 구직 4 가사 5 통학 6 연로 7 불구 8 기타	1 있다 2 없다			1 단독자영업주 2 고용주 3 가족종사자 4 상용고 5 임시고 6 일고	개월
2			1 남 2 여	나이 생일 년 월 일	1 유배우 2 사별 3 이혼 4 미혼	1 재학 2 졸업 3 중퇴 4 안다녔음	1 국민 2 중학 3 고등 4 초대·전문 5 대학이상	1 안다 2 모른다	1.생존아수 명 2.총출생아수 명	현주지와 1 같다 2 다르다	시 군 국	1 같다 2 같은 구, 시, 군 3 다른 구, 시, 군 4 외국	시 군 국	1 일하였음 2 일시휴직 3 구직 4 가사 5 통학 6 연로 7 불구 8 기타	1 있다 2 없다			1 단독자영업주 2 고용주 3 가족종사자 4 상용고 5 임시고 6 일고	개월
3			1 남 2 여	나이 생일 년 월 일	1 유배우 2 사별 3 이혼 4 미혼	1 재학 2 졸업 3 중퇴 4 안다녔음	1 국민 2 중학 3 고등 4 초대·전문 5 대학이상	1 안다 2 모른다	1.생존아수 명 2.총출생아수 명	현주지와 1 같다 2 다르다	시 군 국	1 같다 2 같은 구, 시, 군 3 다른 구, 시, 군 4 외국	시 군 국	1 일하였음 2 일시휴직 3 구직 4 가사 5 통학 6 연로 7 불구 8 기타	1 있다 2 없다			1 단독자영업주 2 고용주 3 가족종사자 4 상용고 5 임시고 6 일고	개월
4			1 남 2 여	나이 생일 년 월 일	1 유배우 2 사별 3 이혼 4 미혼	1 재학 2 졸업 3 중퇴 4 안다녔음	1 국민 2 중학 3 고등 4 초대·전문 5 대학이상	1 안다 2 모른다	1.생존아수 명 2.총출생아수 명	현주지와 1 같다 2 다르다	시 군 국	1 같다 2 같은 구, 시, 군 3 다른 구, 시, 군 4 외국	시 군 국	1 일하였음 2 일시휴직 3 구직 4 가사 5 통학 6 연로 7 불구 8 기타	1 있다 2 없다			1 단독자영업주 2 고용주 3 가족종사자 4 상용고 5 임시고 6 일고	개월
5			1 남 2 여	나이 생일 년 월 일	1 유배우 2 사별 3 이혼 4 미혼	1 재학 2 졸업 3 중퇴 4 안다녔음	1 국민 2 중학 3 고등 4 초대·전문 5 대학이상	1 안다 2 모른다	1.생존아수 명 2.총출생아수 명	현주지와 1 같다 2 다르다	시 군 국	1 같다 2 같은 구, 시, 군 3 다른 구, 시, 군 4 외국	시 군 국	1 일하였음 2 일시휴직 3 구직 4 가사 5 통학 6 연로 7 불구 8 기타	1 있다 2 없다			1 단독자영업주 2 고용주 3 가족종사자 4 상용고 5 임시고 6 일고	개월
6			1 남 2 여	나이 생일 년 월 일	1 유배우 2 사별 3 이혼 4 미혼	1 재학 2 졸업 3 중퇴 4 안다녔음	1 국민 2 중학 3 고등 4 초대·전문 5 대학이상	1 안다 2 모른다	1.생존아수 명 2.총출생아수 명	현주지와 1 같다 2 다르다	시 군 국	1 같다 2 같은 구, 시, 군 3 다른 구, 시, 군 4 외국	시 군 국	1 일하였음 2 일시휴직 3 구직 4 가사 5 통학 6 연로 7 불구 8 기타	1 있다 2 없다			1 단독자영업주 2 고용주 3 가족종사자 4 상용고 5 임시고 6 일고	개월
7			1 남 2 여	나이 생일 년 월 일	1 유배우 2 사별 3 이혼 4 미혼	1 재학 2 졸업 3 중퇴 4 안다녔음	1 국민 2 중학 3 고등 4 초대·전문 5 대학이상	1 안다 2 모른다	1.생존아수 명 2.총출생아수 명	현주지와 1 같다 2 다르다	시 군 국	1 같다 2 같은 구, 시, 군 3 다른 구, 시, 군 4 외국	시 군 국	1 일하였음 2 일시휴직 3 구직 4 가사 5 통학 6 연로 7 불구 8 기타	1 있다 2 없다			1 단독자영업주 2 고용주 3 가족종사자 4 상용고 5 임시고 6 일고	개월
8			1 남 2 여	나이 생일 년 월 일	1 유배우 2 사별 3 이혼 4 미혼	1 재학 2 졸업 3 중퇴 4 안다녔음	1 국민 2 중학 3 고등 4 초대·전문 5 대학이상	1 안다 2 모른다	1.생존아수 명 2.총출생아수 명	현주지와 1 같다 2 다르다	시 군 국	1 같다 2 같은 구, 시, 군 3 다른 구, 시, 군 4 외국	시 군 국	1 일하였음 2 일시휴직 3 구직 4 가사 5 통학 6 연로 7 불구 8 기타	1 있다 2 없다			1 단독자영업주 2 고용주 3 가족종사자 4 상용고 5 임시고 6 일고	개월
9			1 남 2 여	나이 생일 년 월 일	1 유배우 2 사별 3 이혼 4 미혼	1 재학 2 졸업 3 중퇴 4 안다녔음	1 국민 2 중학 3 고등 4 초대·전문 5 대학이상	1 안다 2 모른다	1.생존아수 명 2.총출생아수 명	현주지와 1 같다 2 다르다	시 군 국	1 같다 2 같은 구, 시, 군 3 다른 구, 시, 군 4 외국	시 군 국	1 일하였음 2 일시휴직 3 구직 4 가사 5 통학 6 연로 7 불구 8 기타	1 있다 2 없다			1 단독자영업주 2 고용주 3 가족종사자 4 상용고 5 임시고 6 일고	개월
10			1 남 2 여	나이 생일 년 월 일	1 유배우 2 사별 3 이혼 4 미혼	1 재학 2 졸업 3 중퇴 4 안다녔음	1 국민 2 중학 3 고등 4 초대·전문 5 대학이상	1 안다 2 모른다	1.생존아수 명 2.총출생아수 명	현주지와 1 같다 2 다르다	시 군 국	1 같다 2 같은 구, 시, 군 3 다른 구, 시, 군 4 외국	시 군 국	1 일하였음 2 일시휴직 3 구직 4 가사 5 통학 6 연로 7 불구 8 기타	1 있다 2 없다			1 단독자영업주 2 고용주 3 가족종사자 4 상용고 5 임시고 6 일고	개월

조사원 성명 ㉑

응답자 성명 ㉒

경제기획원

서식 제2호

주택에 관한사항

거처번호	가구번호

가구원수		
계	남	여

모든 주택의 주가구에 대하여 조사할 사항 (항목 ❶~⓮)

❶ 거처의 종류

[1] 일반주택
[2] 비거주용건물내의 주택
[3] 호텔, 여관등 숙박업소
[4] 병원, 기숙사, 수녀원, 영육아원, 양로원 등 공공목적을 위한 집
[5] 토목공사 현장 등 사업목적을 위하여 임시로 세운 집
[6] 기타 (　　)

❷ 건물의 종류

[1] 독립주택　[3] 공동주택 (아파트)
[2] 연립주택　[4] 기　타

❸ 건물의 건축시기

[1] 1945년 이전 (25년전)　[3] 1960년 이전 (10년전)
[2] 1950년 이전 (20년전)　[4] 1961년 이후 → 19 년

❹ 주택의 소유관계

[1] 자기집　[3] 세 없이 빌려든 집
[2] 셋 집

❺ 주택의 총방수 및 동거가구수

1 총 방 수 …… 개 … 평
2 주가구사용방수 …… 개 … 평
3 동거가구수 …… 가구
4 동거가구사용방수 … 개 … 평

❻ 주택의 총건평수

총건평 　　평

❼ 가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문화시설 및 가재

[1] 재봉틀　[5] 전 화
[2] 라디오　[6] 냉장고
[3] 테레비　[7] 피아노 및 올갠
[4] 전 축

❽ 주택의 사용목적별 구분 (일반주택)

[1] 거주전용주택　[2] 영업병용주택

❾ 건물의 외벽에 사용된 주건축재료

[1] 나 무　[4] 벽돌 및 돌
[2] 흙 또는 흙벽돌　[5] 철근콩크리트
[3] 시멘트부럭　[6] 기 타

❿ 건물의 지붕에 사용된 재료

[1] 짚, 갈대등　[4] 기 와
[2] 함석 (양철)　[5] 스라브
[3] 스레이트　[6] 기 타

⓫ 주택의 급수시설

[1] 수 도　[3] 우 물
[2] 펌 프　[4] 없 음

⓬ 주택의 등화시설

[1] 전 기　[2] 기 타

⓭ 주택의 변소시설

[1] 재래식　[2] 수세식　[3] 없 음

⓮ 가구에서 사용하는 주된 취사연료

[1] 연 탄　[4] 까스 (프로판까스)
[2] 나무, 짚, 기타초목류　[5] 전 기
[3] 석 유　[6] 기 타

주가구 이외의 모든 동거가구에 대하여 조사할 사항 (항목⓯~⓲)

⓯ 이 가구는 어느종류의 거처에 살고 있는 동거 가구입니까 ?

[1] 일반주택
[2] 비거주용 건물내의 주택
[3] 호텔, 여관등 숙박업소
[4] 병원, 기숙사, 수녀원, 영육아원, 양로원등 공공목적을 위한 집
[5] 토목공사현장등 사업목적을 위하여 임시로 세운 집
[6] 기 타

⓰ 동거가구의 사용방수

　　개 … 　　평

⓱ 이 동거가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문화시설 및 가재

[1] 재봉틀　[5] 전 화
[2] 라디오　[6] 냉장고
[3] 테레비　[7] 피아노 및 올갠
[4] 전 축

⓲ 동거가구가 사용하고 있는 주된 취사연료

[1] 연 탄　[4] 까스 (프로판까스)
[2] 나무, 짚, 기타초목류　[5] 전 기
[3] 석 유　[6] 기 타

인구에 관한사항

(특별)시도	구시군	동로읍면	가리	번지호 (전화)

조사구번호	거처번호	가구번호	배중매	가구원수

※ 조사통계국 기입란

가구원수			가구구분	가족구성	
계	남	여		핵가족	세대구성

1970년인구및주택센서스 지정통계제1호 및 제2호

조사표 (가구용 표본)

이름	가구주와의관계	성별	생년월일	혼인상태	교육 취학여부	교육 학력	문맹여부	출생아수	출생지	5년전거주지	경제활동 (14세 이상자에 한하여) 활동상태	취업여부	산업	직업	종사상의지위	취업기간
가구주와 가구원의 이름을 빠짐없이 말씀하여주십시요.	가구주와 어떤 관계가있읍니까 (예) 가구주, 처, 장남의 처, 차남의 장녀, 동거인 등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예) ① 남	사실상의 나이와 생년월일을 말씀하여 주십시요.	사실상의 배우관계를 말씀하여 주십시요.	학교에 다니십니까 아니면 중퇴 또는 졸업하셨읍니까?	다음중 어디에 해당됩니까?	글을읽고 쓸수 있읍니까?	부인께서는 자녀분이 몇분입니까? 총몇명의 자녀를 낳았읍니까?	어디에서 출생하셨읍니까? 현주지와 다를 경우에는 출생한 지명을 말씀하여 주십시요.	5년전 (1965년 10월 1일) 에도 이곳에서 살았읍니까? 다른 "구, 시, 군" 또는 "외국에서 살던곳은 어디입니까?	지난 1주일간 (9월21일~9월27일)에 주로 무엇을 하셨읍니까?	조금이라도 수입을목적으로일하신적이있었읍니까?	어느분야에서 일하셨읍니까?	무슨일을 하셨읍니까?	하셨던 일에는 다음중 어디에 해당됩니까?	지난 1년동안 몇개월 일하셨읍니까?
❶	❷	❸	❹	❺	❻	❼	❽	❾	❿ ⓫	⓬ ⓭	⓮	⓯	⓰	⓱	⓲	⓳
1		1 남 2 여	나이 생일 살 년 띠 ㉮ 월 일 ㉯	1 유배우 2 사별 3 이혼 4 미혼	1 재학 2 졸업 3 중퇴 4 안다녔음	1 국민 2 중학 3 고등 4 초대·전문 5 대학이상	1 안다 2 모른다	1.생존아수 명 2.총출생아수 명	현주지와 1 같다 2 다르다 1 시도 주시군 2 국	1 같다 2 같은 구, 시, 군 3 다른 구, 시, 군 4 외국 1 시도 주시군 2 국	1 일하였음 2 일시휴직 3 구직 4 가사 5 통학 6 연로 7 불구 8 기타	1 있다 2 없다			1 단독자영업주 2 고용주 3 가족종사자 4 상용고 5 임시고 6 일고	개월
2		1 남 2 여	나이 생일 살 년 띠 ㉮ 월 일 ㉯	1 유배우 2 사별 3 이혼 4 미혼	1 재학 2 졸업 3 중퇴 4 안다녔음	1 국민 2 중학 3 고등 4 초대·전문 5 대학이상	1 안다 2 모른다	1.생존아수 명 2.총출생아수 명	현주지와 1 같다 2 다르다 1 시도 주시군 2 국	1 같다 2 같은 구, 시, 군 3 다른 구, 시, 군 4 외국 1 시도 주시군 2 국	1 일하였음 2 일시휴직 3 구직 4 가사 5 통학 6 연로 7 불구 8 기타	1 있다 2 없다			1 단독자영업주 2 고용주 3 가족종사자 4 상용고 5 임시고 6 일고	개월
3		1 남 2 여	나이 생일 살 년 띠 ㉮ 월 일 ㉯	1 유배우 2 사별 3 이혼 4 미혼	1 재학 2 졸업 3 중퇴 4 안다녔음	1 국민 2 중학 3 고등 4 초대·전문 5 대학이상	1 안다 2 모른다	1.생존아수 명 2.총출생아수 명	현주지와 1 같다 2 다르다 1 시도 주시군 2 국	1 같다 2 같은 구, 시, 군 3 다른 구, 시, 군 4 외국 1 시도 주시군 2 국	1 일하였음 2 일시휴직 3 구직 4 가사 5 통학 6 연로 7 불구 8 기타	1 있다 2 없다			1 단독자영업주 2 고용주 3 가족종사자 4 상용고 5 임시고 6 일고	개월
4		1 남 2 여	나이 생일 살 년 띠 ㉮ 월 일 ㉯	1 유배우 2 사별 3 이혼 4 미혼	1 재학 2 졸업 3 중퇴 4 안다녔음	1 국민 2 중학 3 고등 4 초대·전문 5 대학이상	1 안다 2 모른다	1.생존아수 명 2.총출생아수 명	현주지와 1 같다 2 다르다 1 시도 주시군 2 국	1 같다 2 같은 구, 시, 군 3 다른 구, 시, 군 4 외국 1 시도 주시군 2 국	1 일하였음 2 일시휴직 3 구직 4 가사 5 통학 6 연로 7 불구 8 기타	1 있다 2 없다			1 단독자영업주 2 고용주 3 가족종사자 4 상용고 5 임시고 6 일고	개월
5		1 남 2 여	나이 생일 살 년 띠 ㉮ 월 일 ㉯	1 유배우 2 사별 3 이혼 4 미혼	1 재학 2 졸업 3 중퇴 4 안다녔음	1 국민 2 중학 3 고등 4 초대·전문 5 대학이상	1 안다 2 모른다	1.생존아수 명 2.총출생아수 명	현주지와 1 같다 2 다르다 1 시도 주시군 2 국	1 같다 2 같은 구, 시, 군 3 다른 구, 시, 군 4 외국 1 시도 주시군 2 국	1 일하였음 2 일시휴직 3 구직 4 가사 5 통학 6 연로 7 불구 8 기타	1 있다 2 없다			1 단독자영업주 2 고용주 3 가족종사자 4 상용고 5 임시고 6 일고	개월
6		1 남 2 여	나이 생일 살 년 띠 ㉮ 월 일 ㉯	1 유배우 2 사별 3 이혼 4 미혼	1 재학 2 졸업 3 중퇴 4 안다녔음	1 국민 2 중학 3 고등 4 초대·전문 5 대학이상	1 안다 2 모른다	1.생존아수 명 2.총출생아수 명	현주지와 1 같다 2 다르다 1 시도 주시군 2 국	1 같다 2 같은 구, 시, 군 3 다른 구, 시, 군 4 외국 1 시도 주시군 2 국	1 일하였음 2 일시휴직 3 구직 4 가사 5 통학 6 연로 7 불구 8 기타	1 있다 2 없다			1 단독자영업주 2 고용주 3 가족종사자 4 상용고 5 임시고 6 일고	개월
7		1 남 2 여	나이 생일 살 년 띠 ㉮ 월 일 ㉯	1 유배우 2 사별 3 이혼 4 미혼	1 재학 2 졸업 3 중퇴 4 안다녔음	1 국민 2 중학 3 고등 4 초대·전문 5 대학이상	1 안다 2 모른다	1.생존아수 명 2.총출생아수 명	현주지와 1 같다 2 다르다 1 시도 주시군 2 국	1 같다 2 같은 구, 시, 군 3 다른 구, 시, 군 4 외국 1 시도 주시군 2 국	1 일하였음 2 일시휴직 3 구직 4 가사 5 통학 6 연로 7 불구 8 기타	1 있다 2 없다			1 단독자영업주 2 고용주 3 가족종사자 4 상용고 5 임시고 6 일고	개월
8		1 남 2 여	나이 생일 살 년 띠 ㉮ 월 일 ㉯	1 유배우 2 사별 3 이혼 4 미혼	1 재학 2 졸업 3 중퇴 4 안다녔음	1 국민 2 중학 3 고등 4 초대·전문 5 대학이상	1 안다 2 모른다	1.생존아수 명 2.총출생아수 명	현주지와 1 같다 2 다르다 1 시도 주시군 2 국	1 같다 2 같은 구, 시, 군 3 다른 구, 시, 군 4 외국 1 시도 주시군 2 국	1 일하였음 2 일시휴직 3 구직 4 가사 5 통학 6 연로 7 불구 8 기타	1 있다 2 없다			1 단독자영업주 2 고용주 3 가족종사자 4 상용고 5 임시고 6 일고	개월
9		1 남 2 여	나이 생일 살 년 띠 ㉮ 월 일 ㉯	1 유배우 2 사별 3 이혼 4 미혼	1 재학 2 졸업 3 중퇴 4 안다녔음	1 국민 2 중학 3 고등 4 초대·전문 5 대학이상	1 안다 2 모른다	1.생존아수 명 2.총출생아수 명	현주지와 1 같다 2 다르다 1 시도 주시군 2 국	1 같다 2 같은 구, 시, 군 3 다른 구, 시, 군 4 외국 1 시도 주시군 2 국	1 일하였음 2 일시휴직 3 구직 4 가사 5 통학 6 연로 7 불구 8 기타	1 있다 2 없다			1 단독자영업주 2 고용주 3 가족종사자 4 상용고 5 임시고 6 일고	개월
10		1 남 2 여	나이 생일 살 년 띠 ㉮ 월 일 ㉯	1 유배우 2 사별 3 이혼 4 미혼	1 재학 2 졸업 3 중퇴 4 안다녔음	1 국민 2 중학 3 고등 4 초대·전문 5 대학이상	1 안다 2 모른다	1.생존아수 명 2.총출생아수 명	현주지와 1 같다 2 다르다 1 시도 주시군 2 국	1 같다 2 같은 구, 시, 군 3 다른 구, 시, 군 4 외국 1 시도 주시군 2 국	1 일하였음 2 일시휴직 3 구직 4 가사 5 통학 6 연로 7 불구 8 기타	1 있다 2 없다			1 단독자영업주 2 고용주 3 가족종사자 4 상용고 5 임시고 6 일고	개월

조사원 성명 ㉮

응답자 성명 ㉯

서식 제2호

경제기획원

주택에 관한사항

거처번호	가구번호

가 구 원 수		
계	남	녀

모든 주택의 주가구에 대하여 조사할 사항 (항목 ❶~⓮)

❶ 거처의 종류
[1] 일반주택
[2] 비거주용건물내의 주택
[3] 호텔, 여관등 숙박업소
[4] 병원, 기숙사, 수녀원, 영육아원, 양로원 등 공공목적을 위한 집
[5] 토목공사 현장 등 사업목적을 위하여 임시로 세운 집
[6] 기타 (　　)

❷ 건물의 종류
[1] 독립주택　[3] 공동주택 (아파트)
[2] 연립주택　[4] 기　타

❸ 건물의 건축시기
[1] 1945년 이전(25년전)　[3] 1960년 이전(10년전)
[2] 1950년 이전(20년전)　[4] 1961년 이후 → 19 년

❹ 주택의 소유관계
[1] 자기집　[3] 세 없이 빌려든 집
[2] 셋 집

❺ 주택의 총방수 및 동거가구수
1 총 방 수 …… 개 … 평
2 주가구사용방수 …… 개 … 평
3 동거가구수 …… 가구
4 동거가구사용방수 … 개 … 평

❻ 주택의 총건평수
총건평 　　평

❼ 가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문화시설 및 가재
[1] 재봉틀　[5] 전 화
[2] 라디오　[6] 냉장고
[3] 테레비　[7] 피아노 및 올갠
[4] 전 축

❽ 주택의 사용목적별 구분 (일반주택)
[1] 거주전용주택　[2] 영업병용주택

❾ 건물의 외벽에 사용된 주건축재료
[1] 나 무　[4] 벽돌 및 돌
[2] 흙 또는 흙벽돌　[5] 철근콩크리트
[3] 시멘트부럭　[6] 기 타

❿ 건물의 지붕에 사용된 재료
[1] 짚, 갈대 등　[4] 기 와
[2] 함석 (양철)　[5] 스라브
[3] 스레이트　[6] 기 타

⓫ 주택의 급수시설
[1] 수 도　[3] 우 물
[2] 펌 프　[4] 없 음

⓬ 주택의 등화시설
[1] 전 기　[2] 기 타

⓭ 주택의 변소시설
[1] 재래식　[2] 수세식　[3] 없 음

⓮ 가구에서 사용하는 주된 취사연료
[1] 연 탄　[4] 까스 (프로판까스)
[2] 나무, 짚, 기타초목류　[5] 전 기
[3] 석 유　[6] 기 타

주가구 이외의 모든 동거가구에 대하여 조사할 사항 (항목⓯~⓲)

⓯ 이 가구는 어느종류의 거처에 살고 있는 동거 가구입니까 ?
[1] 일반주택
[2] 비거주용 건물내의 주택
[3] 호텔, 여관등 숙박업소
[4] 병원, 기숙사, 수녀원, 영육아원, 양로원등 공공목적을 위한 집
[5] 토목공사현장등 사업목적을 위하여 임시로 세운 집
[6] 기 타

⓰ 동거가구의 사용방수
　　개 … 　　평

⓱ 이 동거가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문화시설 및 가재
[1] 재봉틀　[5] 전 화
[2] 라디오　[6] 냉장고
[3] 테레비　[7] 피아노 및 올갠
[4] 전 축

⓲ 동거가구가 사용하고 있는 주된 취사연료
[1] 연 탄　[4] 까스 (프로판까스)
[2] 나무, 짚, 기타초목류　[5] 전 기
[3] 석 유　[6] 기 타

지정통계제1호
1970년 인구센서스

특별조사구 조 사 표

조사구명 (기관명)		구분		매중 ___ 매

경제기획원조사통계국

인적사항					교육정도			자기본가의현주지				출생지	5년전거주지
① 이름	② 성별	③ 생년월일	④ 혼인상태		⑤ 취학여부	⑥ 학력	⑦ 문맹여부	⑧ 특별시·직할시·도	구·시·군	읍·면		⑨	⑩
여기 있는분들의 성명은 무엇입니까?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예) ① 비	사실상의 나이와 생년월일을 말씀하여 주십시요.	사실상의배우관계를말씀하여주십시요.		학교에 다니십니까? 아니면 중퇴 또는 졸업하셨읍니까?	다음중 어디에 해당됩니까?	글을 읽고 쓸수 있읍니까?	가족들이 살고 있는 집의 소재지를 기입하시요.				어디에서출생하셨읍니까?	5년전(1965년 10월 1일전)에 살던곳은어디입니까?
1	①남 ②여	나이 세 년 월 일 음 양	①유배우 ②사별 ③이혼 ④미혼		①재학 ②졸업 ③중퇴 ④안다녔음	①국민 ②중학 ③고등 ④초대전문 ⑤대학이상	①안다 ②모른다		시 도 구 시 군	동 읍 면		①시 도 구 시 군 ②외국(국)	①시 도 구 시 군 ②외국(국)
2	①남 ②여	나이 세 년 월 일 음 양	①유배우 ②사별 ③이혼 ④미혼		①재학 ②졸업 ③중퇴 ④안다녔음	①국민 ②중학 ③고등 ④초대전문 ⑤대학이상	①안다 ②모른다		시 도 구 시 군	동 읍 면		①시 도 구 시 군 ②외국(국)	①시 도 구 시 군 ②외국(국)
3	①남 ②여	나이 세 년 월 일 음 양	①유배우 ②사별 ③이혼 ④미혼		①재학 ②졸업 ③중퇴 ④안다녔음	①국민 ②중학 ③고등 ④초대전문 ⑤대학이상	①안다 ②모른다		시 도 구 시 군	동 읍 면		①시 도 구 시 군 ②외국(국)	①시 도 구 시 군 ②외국(국)
4	①남 ②여	나이 세 년 월 일 음 양	①유배우 ②사별 ③이혼 ④미혼		①재학 ②졸업 ③중퇴 ④안다녔음	①국민 ②중학 ③고등 ④초대전문 ⑤대학이상	①안다 ②모른다		시 도 구 시 군	동 읍 면		①시 도 구 시 군 ②외국(국)	①시 도 구 시 군 ②외국(국)
5	①남 ②여	나이 세 년 월 일 음 양	①유배우 ②사별 ③이혼 ④미혼		①재학 ②졸업 ③중퇴 ④안다녔음	①국민 ②중학 ③고등 ④초대전문 ⑤대학이상	①안다 ②모른다		시 도 구 시 군	동 읍 면		①시 도 구 시 군 ②외국(국)	①시 도 구 시 군 ②외국(국)
6	①남 ②여	나이 세 년 월 일 음 양	①유배우 ②사별 ③이혼 ④미혼		①재학 ②졸업 ③중퇴 ④안다녔음	①국민 ②중학 ③고등 ④초대전문 ⑤대학이상	①안다 ②모른다		시 도 구 시 군	동 읍 면		①시 도 구 시 군 ②외국(국)	①시 도 구 시 군 ②외국(국)
7	①남 ②여	나이 세 년 월 일 음 양	①유배우 ②사별 ③이혼 ④미혼		①재학 ②졸업 ③중퇴 ④안다녔음	①국민 ②중학 ③고등 ④초대전문 ⑤대학이상	①안다 ②모른다		시 도 구 시 군	동 읍 면		①시 도 구 시 군 ②외국(국)	①시 도 구 시 군 ②외국(국)
8	①남 ②여	나이 세 년 월 일 음 양	①유배우 ②사별 ③이혼 ④미혼		①재학 ②졸업 ③중퇴 ④안다녔음	①국민 ②중학 ③고등 ④초대전문 ⑤대학이상	①안다 ②모른다		시 도 구 시 군	동 읍 면		①시 도 구 시 군 ②외국(국)	①시 도 구 시 군 ②외국(국)
9	①남 ②여	나이 세 년 월 일 음 양	①유배우 ②사별 ③이혼 ④미혼		①재학 ②졸업 ③중퇴 ④안다녔음	①국민 ②중학 ③고등 ④초대전문 ⑤대학이상	①안다 ②모른다		시 도 구 시 군	동 읍 면		①시 도 구 시 군 ②외국(국)	①시 도 구 시 군 ②외국(국)
10	①남 ②여	나이 세 년 월 일 음 양	①유배우 ②사별 ③이혼 ④미혼		①재학 ②졸업 ③중퇴 ④안다녔음	①국민 ②중학 ③고등 ④초대전문 ⑤대학이상	①안다 ②모른다		시 도 구 시 군	동 읍 면		①시 도 구 시 군 ②외국(국)	①시 도 구 시 군 ②외국(국)
11	①남 ②여	나이 세 년 월 일 음 양	①유배우 ②사별 ③이혼 ④미혼		①재학 ②졸업 ③중퇴 ④안다녔음	①국민 ②중학 ③고등 ④초대전문 ⑤대학이상	①안다 ②모른다		시 도 구 시 군	동 읍 면		①시 도 구 시 군 ②외국(국)	①시 도 구 시 군 ②외국(국)
12	①남 ②여	나이 세 년 월 일 음 양	①유배우 ②사별 ③이혼 ④미혼		①재학 ②졸업 ③중퇴 ④안다녔음	①국민 ②중학 ③고등 ④초대전문 ⑤대학이상	①안다 ②모른다		시 도 구 시 군	동 읍 면		①시 도 구 시 군 ②외국(국)	①시 도 구 시 군 ②외국(국)
13	①남 ②여	나이 세 년 월 일 음 양	①유배우 ②사별 ③이혼 ④미혼		①재학 ②졸업 ③중퇴 ④안다녔음	①국민 ②중학 ③고등 ④초대전문 ⑤대학이상	①안다 ②모른다		시 도 구 시 군	동 읍 면		①시 도 구 시 군 ②외국(국)	①시 도 구 시 군 ②외국(국)
14	①남 ②여	나이 세 년 월 일 음 양	①유배우 ②사별 ③이혼 ④미혼		①재학 ②졸업 ③중퇴 ④안다녔음	①국민 ②중학 ③고등 ④초대전문 ⑤대학이상	①안다 ②모른다		시 도 구 시 군	동 읍 면		①시 도 구 시 군 ②외국(국)	①시 도 구 시 군 ②외국(국)
15	①남 ②여	나이 세 년 월 일 음 양	①유배우 ②사별 ③이혼 ④미혼		①재학 ②졸업 ③중퇴 ④안다녔음	①국민 ②중학 ③고등 ④초대전문 ⑤대학이상	①안다 ②모른다		시 도 구 시 군	동 읍 면		①시 도 구 시 군 ②외국(국)	①시 도 구 시 군 ②외국(국)

조사원 담당자 성명

지정통계제1호
1970년 인구센서스

특별조사구 조 사 표

조사구명 (기관명)		구분		매중	매

경제기획원조사통계국

인적사항				교육정도			자기본가의현주지			⑨ 출생지	⑩ 5년전거주지
① 이름	② 성별	③ 생년월일	④ 혼인상태	⑤ 취학여부	⑥ 학력	⑦ 문맹여부	특별시·직할시	⑧ 구·시·군	읍·면		
여기 있는분들의 성명은 무엇입니까?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예) ① 남	사실상의 나이와 생년월일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사실상의배우관계를말씀하여주십시오.	학교에 다니십니까? 아니면 중퇴 또는 졸업 하셨읍니까?	다음중 어디에 해당 됩니까?	글을 읽고 쓸수 있읍니까?	가족들이 살고 있는 집의 소재지를 기입하시오.			어디에서출생 하셨읍니까?	5년전(1965년 10월 1일전)에 살던곳은어디 입니까?
1	①남 ②여	나이 세 / 년 월 일 / 음 양	①유배우 ②사 별 ③이 혼 ④미 혼	①재 학 ②졸 업 ③중 퇴 ④안다녔음	①국 민 ②중 학 ③고 등 ④초대전문 ⑤대학이상	①안 다 ②모른다	시 도	구 시 군	동 읍 면	①시 도 구 시 군 ②외국(국)	①시 도 구 시 군 ②외국(국)
2	①남 ②여	나이 세 / 년 월 일 / 음 양	①유배우 ②사 별 ③이 혼 ④미 혼	①재 학 ②졸 업 ③중 퇴 ④안다녔음	①국 민 ②중 학 ③고 등 ④초대전문 ⑤대학이상	①안 다 ②모른다	시 도	구 시 군	동 읍 면	①시 도 구 시 군 ②외국(국)	①시 도 구 시 군 ②외국(국)
3	①남 ②여	나이 세 / 년 월 일 / 음 양	①유배우 ②사 별 ③이 혼 ④미 혼	①재 학 ②졸 업 ③중 퇴 ④안다녔음	①국 민 ②중 학 ③고 등 ④초대전문 ⑤대학이상	①안 다 ②모른다	시 도	구 시 군	동 읍 면	①시 도 구 시 군 ②외국(국)	①시 도 구 시 군 ②외국(국)
4	①남 ②여	나이 세 / 년 월 일 / 음 양	①유배우 ②사 별 ③이 혼 ④미 혼	①재 학 ②졸 업 ③중 퇴 ④안다녔음	①국 민 ②중 학 ③고 등 ④초대전문 ⑤대학이상	①안 다 ②모른다	시 도	구 사 군	동 읍 면	①시 도 구 시 군 ②외국(국)	①시 도 구 시 군 ②외국(국)
5	①남 ②여	나이 세 / 년 월 일 / 음 양	①유배우 ②사 별 ③이 혼 ④미 혼	①재 학 ②졸 업 ③중 퇴 ④안다녔음	①국 민 ②중 학 ③고 등 ④초대전문 ⑤대학이상	①안 다 ②모른다	시 도	구 시 군	동 읍 면	①시 도 구 시 군 ②외국(국)	①시 도 구 시 군 ②외국(국)
6	①남 ②여	나이 세 / 년 월 일 / 음 양	①유배우 ②사 별 ③이 혼 ④미 혼	①재 학 ②졸 업 ③중 퇴 ④안다녔음	①국 민 ②중 학 ③고 등 ④초대전문 ⑤대학이상	①안 다 ②모른다	시 도	구 시 군	동 읍 면	①시 도 구 시 군 ②외국(국)	①시 도 구 시 군 ②외국(국)
7	①남 ②여	나이 세 / 년 월 일 / 음 양	①유배우 ②사 별 ③이 혼 ④미 혼	①재 학 ②졸 업 ③중 퇴 ④안다녔음	①국 민 ②중 학 ③고 등 ④초대전문 ⑤대학이상	①안 다 ②모른다	시 도	구 시 군	동 읍 면	①시 도 구 시 군 ②외국(국)	①시 도 구 시 군 ②외국(국)
8	①남 ②여	나이 세 / 년 월 일 / 음 양	①유배우 ②사 별 ③이 혼 ④미 혼	①재 학 ②졸 업 ③중 퇴 ④안다녔음	①국 민 ②중 학 ③고 등 ④초대전문 ⑤대학이상	①안 다 ②모른다	시 도	구 시 군	동 읍 면	①시 도 구 시 군 ②외국(국)	①시 도 구 시 군 ②외국(국)
9	①남 ②여	나이 세 / 년 월 일 / 음 양	①유배우 ②사 별 ③이 혼 ④미 혼	①재 학 ②졸 업 ③중 퇴 ④안다녔음	①국 민 ②중 학 ③고 등 ④초대전문 ⑤대학이상	①안 다 ②모른다	시 도	구 시 군	동 읍 면	①시 도 구 시 군 ②외국(국)	①시 도 구 시 군 ②외국(국)
10	①남 ②여	나이 세 / 년 월 일 / 음 양	①유배우 ②사 별 ③이 혼 ④미 혼	①재 학 ②졸 업 ③중 퇴 ④안다녔음	①국 민 ②중 학 ③고 등 ④초대전문 ⑤대학이상	①안 다 ②모른다	시 도	구 시 군	동 읍 면	①시 도 구 시 군 ②외국(국)	①시 도 구 시 군 ②외국(국)
11	①남 ②여	나이 세 / 년 월 일 / 음 양	①유배우 ②사 별 ③이 혼 ④미 혼	①재 학 ②졸 업 ③중 퇴 ④안다녔음	①국 민 ②중 학 ③고 등 ④초대전문 ⑤대학이상	①안 다 ②모른다	시 도	구 시 군	동 읍 면	①시 도 구 시 군 ②외국(국)	①시 도 구 시 군 ②외국(국)
12	①남 ②여	나이 세 / 년 월 일 / 음 양	①유배우 ②사 별 ③이 혼 ④미 혼	①재 학 ②졸 업 ③중 퇴 ④안다녔음	①국 민 ②중 학 ③고 등 ④초대전문 ⑤대학이상	①안 다 ②모른다	시 도	구 시 군	동 읍 면	①시 도 구 시 군 ②외국(국)	①시 도 구 시 군 ②외국(국)
13	①남 ②여	나이 세 / 년 월 일 / 음 양	①유배우 ②사 별 ③이 혼 ④미 혼	①재 학 ②졸 업 ③중 퇴 ④안다녔음	①국 민 ②중 학 ③고 등 ④초대전문 ⑤대학이상	①안 다 ②모른다	시 도	구 시 군	동 읍 면	①시 도 구 시 군 ②외국(국)	①시 도 구 시 군 ②외국(국)
14	①남 ②여	나이 세 / 년 월 일 / 음 양	①유배우 ②사 별 ③이 혼 ④미 혼	①재 학 ②졸 업 ③중 퇴 ④안다녔음	①국 민 ②중 학 ③고 등 ④초대전문 ⑤대학이상	①안 다 ②모른다	시 도	구 시 군	동 읍 면	①시 도 구 시 군 ②외국(국)	①시 도 구 시 군 ②외국(국)
15	①남 ②여	나이 세 / 년 월 일 / 음 양	①유배우 ②사 별 ③이 혼 ④미 혼	①재 학 ②졸 업 ③중 퇴 ④안다녔음	①국 민 ②중 학 ③고 등 ④초대전문 ⑤대학이상	①안 다 ②모른다	시 도	구 시 군	동 읍 면	①시 도 구 시 군 ②외국(국)	①시 도 구 시 군 ②외국(국)

조사담당자직성명	

주택에 관한 사항

① 거처의 종류

가. [1] 일반주택은
독채살림 집, 연립주택 및 아파트를 말한다.
한건물에 두가구이상 살경우 연립주택형으로 완전히 독립된 거처는 그 하나 하나를 별개의 주택으로 본다.

기준 : 1) 건물출입구가 완전독립
2) 독립부엌을 사용
3) 거주부분이 완전히 벽으로 차단되어 인접가구와의 내부왕래가 불가능.

나. [4], [5], [6]에 해당되는 거처는 무조건 동거가구용 조사 사항만을 조사한다.

다. [6] 기타는 천막, 다리밑, 토굴, 선박 등이다

② 건물의 종류

가. 일반주택은
[1] 독립주택 [2] 연립주택 [3] 공공주택으로 구분한다.
①의 [2]에 해당되는 비거주용 건물내의 주택은 전부 [4] 기타에 ○표를한다.

③ 건물의 건축시기
안채와 사랑채의 건축시기가 각각 다른 경우에는 안채의 건축시기를 기입한다.

④ 주택의 소유관계
부자(父子) 또는 형제지간의 주택소유는 그 소유권에 관계없이 제각기 자기소유로 한다.

⑤ 주택의 총방수 및 동거가구수

가. 문으로 밖을 막지 아니한 대청마루는 방수에 넣지 않는다.

나. 부엌, 목욕탕, 변소, 다락, 점포등은 방수에 포함시키지않는다.

다. 방이 낮에는 영업에 밤에는 침실로 사용되면 방수에 넣는다.

⑥ 주택의 총건평

가. 주택의 거주용 부속건물 (사랑채, 행랑채 등) 은 총건평수에 꼭 넣는다.

나. 지하실은 포함된다.

다. 아파트의 공유건평은 각 주택에 활당배분한다.

⑦ 가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문화시설 및 가재

가. 2가지이상 있을 경우 모두 ○표를 한다.

나. 유선앰프는 라디오로 간주한다.

다. 어름냉장고도 냉장고로 본다.

라. 교환전화도 전화가 있는것으로 본다.

마. 전축, 라디오가 붙어있는 것은 둘 다 있는것으로 본다.

⑧ 주택의 사용목적별 구분

가. 주택에 조금이라도 영업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이 있으면 모두 영업 병용 주택이다.

나. 일반주택에만 해당된다.

⑨ 건물의 외벽에 사용된 자료

가. 아파트인 경우에는 주택과 주택간의 칸막이 벽이 아닌 건물외벽을 말한다.

나. 철근콩크리트 건물은 콩크리트 건물의 기둥사이 재료에 관계없이 철근콩크리트로 본다.

다. 두가지이상의 벽재가 사용되었으면 주된것에 ○표를한다.

⑩ 건물의 지붕에 사용된 자료

가. 철근콩크리트 건물의 지붕은 스라브로 본다.

나. 2가지 이상의 지붕재료가 사용되었으면 많이 사용된것을 말 한다.

다. 아파트의 주택지붕은 그 아파트 건물의 지붕으로한다.

⑪ 주택의 급수시설

가. 두 주택사이에 우물 또는 펌프가 있어 공용하는 경우 두 주택이 모두 있는것으로 본다.

나. 공동수도, 공동우물 및 기타 급수방법은 [4]없다로 본다.

⑫ 주택의 등화시설
요령서 참조

⑬ 주택의 변소시설
요령서 참조

⑭ 가구에서 사용하는 주된 취사연료
두가지 이상의 취사연료를 병용할 때는 비용에 관계없이 주로 사용하는 연료를 기입한다.

⑮ 란은 ① 란
⑯ 란은 ⑤ 란의 [4]
⑰ 란은 ⑦ 란
⑱ 란은 ⑭란을 각각 참조할것.

조 사 표 기 입 요 령

일 반 적 사 항

1. 준비조사 및 실사 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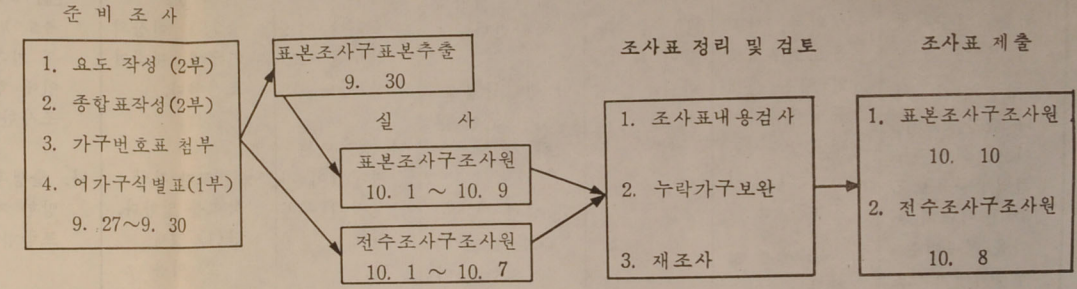

2. 요 도 작 성

가. 조사구요도를 작성할 때에는 인접 시, 도, 구, 시, 군, 읍, 면, 동, 리의 경계선상에 있는 모든 가구를 확인하여 누락, 중복이 없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인접조사원과 긴밀한 유대)

나. 조사구내의 모든 건물을 순방하고 건물내의 거처를 확인한 다음 거처의 일련번호를 표시한다.

3. 종 합 표 작 성

가. 종합표 ①란 거처번호 및 ② 란 가구번호는 일련번호로 표시한다.

나. 누락 또는 중복된 거처 및 가구를 발견했을 때.

(1) 사후에 누락된 거처 및 가구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거처는 최종일련번호의 다음 번호로 계속하고 가구의 경우는 그 가구가 속하는 거처번호를 기입하고 가구는 최종 일련번호의 다음번호로 계속 기입한다.

(2) 사후에 인접구와 중복된 거처 및 가구를 발견하였을 때는 중복된 부분은 삭제하고 나머지 거처 및 가구의 일련번호는 당겨 올려 일련번호를 기입한다.
(특히 표본조사구 담당조사원은 표본 추출이전에 이러한 처리를 하여야 한다)

다. 종합표 ⑤란 가구원수가 실사시에 변동이 있을 때는 종합표의 가구원수를 조사표와 같이 그 인원수를 수정하여야 한다.

라. 농가와 어가는 둘다 해당될 수 있다.

4. 조사시 일반적인 주의사항

가. 인구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각 개인을 상대로 조사하여야 하나 일시 집을 떠나 10월 1일을 기점으로 3개월내에 돌아올사람, 어린애나 문맹인등의 조사가 어려우므로 그의 내용을 가장 잘 알수 있는 사람을 응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나. 조사표 기입시 같은 사항이라 한지라도 「상동」「 〃 」등으로 표시해서는 안된다.

다. 조사내용이 확정되기 전에는 연필로 기입하였다가 확정된후 볼펜이나 만년필을 사용하여야 한다.

인구에 관한 사항

① 이름

가. 3개월 이상 계속 살아온 사람 (이사온 가구단위는 현주지에서 포착)

나. 집을 일시 떠나 출장, 사업, 여행, 해상근무 친척방문등으로 3개월 이내에 돌아올 경우에는 상주지에서 조사한다.

다. 일정한 거처가 없는자는 현지에서 조사한다.

라. 외국에 가있는 민간인은 제외된다.

아. 병원 출생아는 어머니 거주지에서 조사한다.

② 가구주와의관계

가. 가구주가 군에 입대하여 영내거주, 재외국, 전직등으로부재중일 때는 생계를 책임지며 대표할 사람의 순서로 가구주가 된다.

나. 내가족을 형성하고 있을 때에는 가구주와의 관계로 부터 가까운 순서로 조사한다.

예 : 가구주의 장남
장남의 처
장남의 장녀 등.

③ 성별

남여구별을 ○표로 표시하되 ⑪ 남 과 같이 해야 한다.

④ 생년월일

가. 호적과는 관계 없이 사실상의 나이를 조사한다.

나. 생년월일을 먼저 물어 본다.

다. 생년월일을 모를때는 띠와 세는 나이를 물어 생년을 기입한다.

라. 생월을 모를 때는 사절중 어느때 낳았는가를 물어봄 ——— 4월 여름 ——— 7월 가을 ——— 10월 겨울 ——— 1월 등으로 기입한다.

마. 생년월일을 기입 할 때는 음 양 을 확인하여 ○표 해야 한다.

바. 출생년월일을 확인 기입한후 조견표에 따라 만세 나이를 기입한다.

⑤ 혼인상태

가. 15세 (1955 양 10.1 음 9.2 이전 출생자) 이상 인구를 조사 한다.

나. 호적과는 관계없이 사실상의 부부관계를 말한다.

⑥⑦⑧ 교육관계

가. 5세 (1965 양 10.1 음 9.2 이전 출생자) 이상의 인구에 대하여 조사한다.

나. 학교란 정규 학교를 말한다. 단(1) 양재
(2) 이용
(3) 요리학원
(4) 자동차
(5) 타이프학원
(6) 교도관학교 등은 제외된다.

다. 구제중학은 고등학교 구제 고등전문, 예과는 전문학교 로본다.

라. ⑥란 안다 녔음의 경우는 10세 (1960 양 10.1 음 9.2 이전 출생자) 이상자에게 묻고 ⑦란은 사선(＼)을 긋는다.

⑨ 출생아수

가. 15세 (1955 양 10.1 음 9.2 이전 출생자) 이상의 기혼 부인에 한하여 조사한다.

나. 출생후 사망한 자녀도 포함한다.

다. 자기몸에서 태어난 총아이를 조사한다. (현거주지에 없드라도 조사한다)

라. 유산 및 사산은 포함되지 않는다.

마. 나이가 많은 부인에게 대하여는 누락의 경우가 많을 것이므로 주의를 하여야 한다.

바. 기혼여자로서 아직 아이를 하나도 낳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으로 표시한다.

⑩⑪ 출생지

가. 본적지와는 관계없이 사실상의 출생지를 기입한다.

나. 병원, 선박, 기차, 친가에서 출생한 아이는 어머니 상주지가 출생지가된다.

⑫⑬ 5년전거주지

가. 1965년 10월1일의 상주지를 말한다.

나. 행정구역의 변경은 현행정구역에 따른다.

경제활동상태 (14세이상 인구에 대하여 조사)

⑭ 활동상태

가. 주로란 3일이상 또는 18시간이상 계속활동한 상태를 말한다.

나. 일시휴직이란
(1) 일시적 병
(2) 일기불순
(3) 휴가, 년가, 근무소집, 노동쟁의, 파업으로 일을 일시중지한 것을 말한다.
단 : (1) 가족 종사자는 일시 휴직이 될수없다.
(2) 장기간 계절적으로 쉰것은 일시 휴직이 아니다.

다. 3구직이란 주로와 관계없이 조금이라도 취업하지 않고 구직활동상태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라. 4~8에 해당 되면 ⑮란을 묻는다.

마. 식모, 보모, 머슴등 보수를 받는 사람은 1일 하였음에 해당한다.

바. 영외거주군인의 군복무는 일한것으로 본다.

⑮ 취업여부

가. 조금이라도 수입을 목적으로 한일에 해당하면 1 있다 없으면 2 없다 에 ○표를 한다.

⑯ 산업

나의 논에서
남의 밭에서
남의 과수원에서
바다에서
석탄광산에서
방적회사
○○건설회사에서
○○면사무소에서
○○대학에서
○○시장에서
남의 잡화도매상에서
등 가능한한 구체적으로 명확히 기입하여야 한다.

⑰ 직업

벼를 베었음
퇴비를 주었음
사과를 땄음
미역을 땄음
채굴을 하였음
상임이사
건축설계를 하였음
주민등록업무를 담당했음
강의를 하였음
지게를 졌음
물건을 팔았음
등 가능한한 구체적으로 명확히 기입하여야 한다.

종사상의지위 ⑱

조사요령서를 참조 할것.

주 : 경제활동 인구는 14세 (1956 양 10.1 음 9.2 이전 출생자) 이상의 인구에 대하여 조사한다.
이상자

⑲ 취업기간

가. 지난 1년동안 이란 1969년 1월 1일~12월31일 동안을 말한다.

나. 상용고, 임시고, 자영업주의 일시휴직, 일요일, 공휴일로 쉰것은 일한것으로 본다.

다. 방학동안 학교 선생이 쉰것도 일한것으로 본다.

라. 계속일하지 않은 사람은
(1) 1년중 매월 20일 (2/3)이상 일한 것은 1년 내내 일한 것으로 본다.

(2) 20일 미만일한 달수는 다른 달수의 일한 날자를 합쳐서 계산한다.

인구에 관한 사항

이름 ①

가. 3개월 이상 계속 살아온 사람 (이사온 가구단위는 현주지에서 포착)

나. 집을 일시 떠나 출장, 사업, 여행, 해상근무 친척방문등으로 3개월 이내에 돌아올 경우에는 상주지에서 조사한다.

다. 일정한 거처가 없는자는 현지에서 조사한다.

라. 외국에 가있는 민간인은 제외된다.

아. 병원 출생아는 어머니 거주지에서 조사한다.

가구주와의관계 ②

가. 가구주가 군에 입대하여 영내거주, 재외국, 전직등으로부재중일 때는 생계를 책임지며 대표할 사람의 순서로 가구주가 된다.

나. 내가족을 형성하고 있을 때에는 가구주와의 관계로 부터 가까운 순서로 조사한다.

예 : 가구주의 장남
장남의 처
장남의 장녀 등.

성별 ③

남여구별을 ○표로 표시하되 ① 남 과 같이 해야 한다.

생년월일 ④

가. 호적과는 관계 없이 사실상의 나이를 조사한다.

나. 생년월일을 먼저 물어 본다.

다. 생년월일을 모를때는 띠와 세는 나이를 물어 생년을 기입한다.

라. 생월을 모를 때는 사절중 어느때 낳았는가를 물어봄 ——4월
여름 ——7월
가을 ——10월
겨울 ——1월
등으로 기입한다.

마. 생년월일을 기입 할 때는 음 양 을 확인하여 ○표 해야 한다.

바. 출생년월일을 확인 기입한후 조견표에 따라 만세 나이를 기입한다.

혼인상태 ⑤

가. 15세 (1955 양 10.1 음 9.2 이전 출생자) 이상 인구를 조사 한다.

나. 호적과는 관계없이 사실상의 부부관계를 말한다.

교육관계 ⑥ ⑦ ⑧

가. 5 세 (1965 양 10.1 음 9.2 이전 출생자) 이상의 인구에 대하여 조사한다.

나. 학교란 정규학교를 말한다. 단(1) 양재
(2) 이용
(3) 요리학원
(4) 자동차
(5)타이프학원
(6)교도관학교
등은 제외된다.

다. 구제중학은 고등학교
구제 고등전문, 예과는 전문학교 로본다.

라. ⑥란 안다 녔음의 경우는 10세 (1960 양 10.1 음 9.2 이전 출생자) 이상자에게 묻고 ⑦란은 사선(＼)을 긋는다.

출생아수 ⑨

가. 15세 (1955 양 10.1 음 9.2 이전 출생자) 이상의 기혼 부인에 한하여 조사한다.

나. 출생후 사망한 자녀도 포함한다.

다. 자기몸에서 태어난 총아이를 조사한다. (현거주지에 없드라도 조사한다)

라. 유산 및 사산은 포함되지 않는다.

마. 나이가 많은 부인에게 대하여는 누락의 경우가 많을 것이므로 주의를 하여야 한다.

바. 기혼여자로서 아직 아이를 하나도 낳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으로 표시한다.

출생지 ⑩ ⑪

가. 본적지와는 관계없이 사실상의 출생지를 기입한다.

나. 병원, 선박, 기차, 친가에서 출생한 아이는 어머니 상주지가 출생지가 된다.

5년전거주지 ⑫ ⑬

가. 1965년 10월1일의 상주지를 말한다.

나. 행정구역의 변경은 현행정 구역에 따른다.

경제활동상태 (14세이상 인구에 대하여 조사)

활동상태 ⑭

가. 주로란 3일이상 또는 18시간이상 계속활동한 상태를 말한다.

나. 일시휴직이란
(1) 일시적 병
(2) 일기불순
(3) 휴가, 년가, 근무소집, 노동쟁의, 파업으로 일을 일시중지한 것을 말한다.
단 : (1) 가족 종사자는 일시 휴직이 될수없다.
(2) 장기간 계절적으로 쉰것은 일시 휴직이 아니다.

다. 3구직이란 주로와 관계없이 조금이라도 취업하지 않고 구직활동상태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라. 4~8에 해당 되면 ⑮란을 묻는다.

마. 식모, 보모, 머슴등 보수를 받는 사람은 1일 하였음에 해당한다.

바. 영외거주군인의 군복무는 일한것으로 본다.

취업여부 ⑮

가. 조금이라도 수입을 목적으로 한일에 해당하면 1 있다 없으면 2 없다 에 ○표를 한다.

산업 ⑯

나의 논에서
남의 밭에서
남의 과수원에서
바다에서
석탄광산에서
방적회사
○○건설회사에서
○○면사무소에서
○○대학에서
○○시장에서
남의 잡화도매상에서
등 가능한한 구체적으로 명확히 기입하여야 한다.

직업 ⑰

벼를 베었음
퇴비를 주었음
사과를 땄음
미역을 땄음
채굴을 하였음
상임이사
건축설계를 하였음
주민등록업무를 담당했음
강의를 하였음
지게를 졌음
물건을 팔았음
등 가능한한 구체적으로 명확히 기입하여야 한다.

종사상의지위 ⑱

조사요령서를 참조 할것.

주 : 경제활동 인구는 14세 (1956 양 10.1 음 9.2 이전 출생자) 이상의 인구에 대하여 조사한다.
이상자

취업기간 ⑲

가. 지난 1년동안 이란 1969년 1월 1일~12월31일 동안을 말한다.

나. 상용고, 임시고, 자영업주의 일시휴직, 일요일, 공휴일로 쉰것은 일한것으로 본다.

다. 방학동안 학교 선생이 쉰것도 일한것으로 본다.

라. 계속일하지 않은 사람은
(1) 1년중 매월 20일 (2/3)이상 일한 것은 1년 내내 일한 것으로 본다.

(2) 20일 미만일한 달수는 다른 달수의 일한 날자를 합쳐서 계산한다.

주택에 관한 사항

① 거처의 종류

가. [1] 일반주택은
독채살림 집, 연립주택 및 아파트를 말한다.
한건물에 두가구이상 살경우 연립주택형으로 완전히 독립된 거처는 그 하나 하나를 별개의 주택으로 본다.

기준 : 1) 건물출입구가 완전독립
2) 독립부엌을 사용
3) 거주부분이 완전히 벽으로 차단되어 인접가구와의 내부왕래가 불가능.

나. [4], [5], [6]에 해당되는 거처는 무조건 동거가구용 조사 사항만을 조사한다.

다. [6] 기타는 천막, 다리밑, 토굴, 선박 등이다

② 건물의 종류

가. 일반주택은
[1] 독립주택 [2] 연립주택 [3] 공공주택으로 구분한다.
①의 [2]에 해당되는 비거주용 건물내의 주택은 전부 [4] 기타에 ○표를한다.

③ 건물의 건축시기
안채와 사랑채의 건축시기가 각각 다른 경우에는 안채의 건축시기를 기입한다.

④ 주택의 소유관계
부자(父子) 또는 형제지간의 주택소유는 그 소유권에 관계없이 제각기 자기소유로 한다.

⑤ 주택의 총방수 및 동거가구수

가. 문으로 밖을 막지 아니한 대청마루는 방수에 넣지 않는다.

나. 부엌, 목욕탕, 변소, 다락, 점포등은 방수에 포함시키지않는다.

다. 방이 낮에는 영업에 밤에는 침실로 사용되면 방수에 넣는다.

⑥ 주택의 총건평

가. 주택의 거주용 부속건물 (사랑채, 행랑채 등) 은 총건평수에 꼭 넣는다.

나. 지하실은 포함된다.

다. 아파트의 공유건평은 각 주택에 할당배분한다.

⑦ 가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문화시설 및 가재

가. 2가지이상 있을 경우 모두 ○표를 한다.

나. 유선앰프는 라디오로 간주한다.

다. 어름냉장고도 냉장고로 본다.

라. 교환전화도 전화가 있는것으로 본다.

마. 전축, 라디오가 붙어있는 것은 둘 다 있는것으로 본다.

⑧ 주택의 사용목적별 구분

가. 주택에 조금이라도 영업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이 있으면 모두 영업 겸용 주택이다.

나. 일반주택에만 해당된다.

⑨ 건물의 외벽에 사용된 자료

가. 아파트인 경우에는 주택과 주택간의 칸막이 벽이 아닌 건물외벽을 말한다.

나. 철근콩크리트 건물은 콩크리트 건물의 기둥사이 재료에 관계없이 철근콩크리트로 본다.

다. 두가지이상의 벽재가 사용되었으면 주된것에 ○표를한다.

⑩ 건물의 지붕에 사용된 자료

가. 철근콩크리트 건물의 지붕은 스라브로 본다.

나. 2가지 이상의 지붕재료가 사용되었으면 많이 사용된것을 말 한다.

다. 아파트의 주택지붕은 그 아파트 건물의 지붕으로한다.

⑪ 주택의 급수시설

가. 두 주택사이에 우물 또는 펌프가 있어 공용하는 경우 두 주택이 모두 있는것으로 본다.

나. 공동수도, 공동우물 및 기타 급수방법은 [4]없다로 본다.

⑫ 주택의 등화시설
요령서 참조

⑬ 주택의 변소시설
요령서 참조

⑭ 가구에서 사용하는 주된 취사연료
두가지 이상의 취사연료를 병용할 때는 비용에 관계없이 주로 사용하는 연료를 기입한다.

⑮ 란은 ① 란
⑯ 란은 ⑤ 란의 [4]
⑰ 란은 ⑦ 란
⑱ 란은 ⑭란을 각각 참조할것.

조 사 표 기 입 요 령

일 반 적 사 항

1. 준비조사 및 실사 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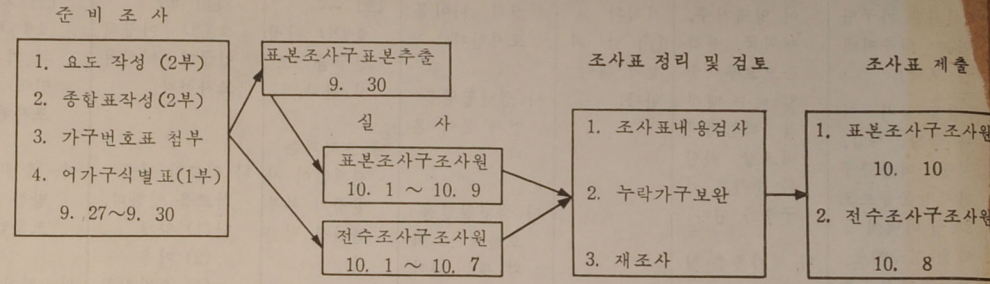

2. 요 도 작 성

가. 조사구요도를 작성할 때에는 인접 시, 도, 구, 시, 군, 읍, 면, 동, 리의 경계선상에 있는 모든 가구를 하여 누락, 중복이 없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인접조사원과 긴밀한 유대)

나. 조사구내의 모든 건물을 순방하고 건물내의 거처를 확인한 다음 거처의 일련번호를 표시한다.

3. 종 합 표 작 성

가. 종합표 ①란 거처번호 및 ② 란 가구번호는 일련번호로 표시한다.

나. 누락 또는 중복된 거처 및 가구를 발견했을 때.

(1) 사후에 누락된 거처 및 가구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거처는 최종일련번호의 다음 번호로 계속하고 가구우는 그 가구가 속하는 거처번호를 기입하고 가구는 최종 일련번호의 다음번호로 계속 기입한다.

(2) 사후에 인접구와 중복된 거처 및 가구를 발견하였을 때는 중복된 부분은 삭제하고 나머지 거처 및 일련번호는 당겨 올려 일련번호를 기입한다.
(특히 표본조사구 담당조사원은 표본 추출이전에 이러한 처리를 하여야 한다)

다. 종합표 ⑤란 가구원수가 실사시에 변동이 있을 때는 종합표의 가구원수를 조사표와 같이 그 인원수를 여야 한다.

라. 농가와 어가는 둘다 해당될 수 있다.

4. 조사시 일반적인 주의사항

가. 인구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각 개인을 상대로 조사하여야 하나 일시 집을 떠나 10월 1일을 기점으로 월내에 돌아올사람, 어린애나 문맹인등의 조사가 어려우므로 그의 내용을 가장 잘 알수 있는 사람을 응답 선정하여야 한다.

나. 조사표 기입시 같은 사항이라 할지라도 「상동」「〃 〃」등으로 표시해서는 안된다.

다. 조사내용이 확정되기 전에는 연필로 기입하였다가 확정된후 볼펜이나 만년필을 사용하여야 한다.

요도작성

(제3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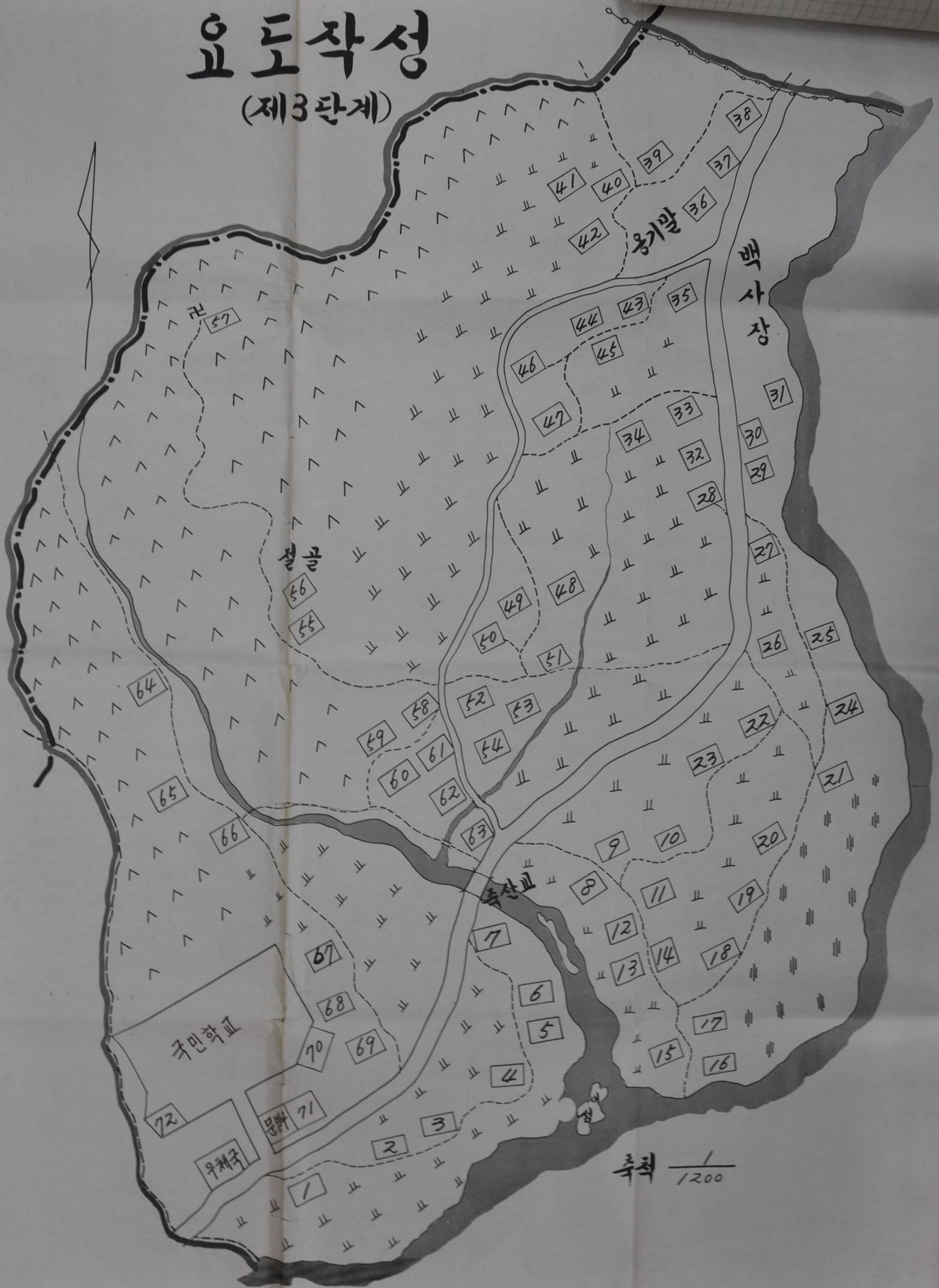

1970년 인구및주택센서스 종합표

조사구번호		조사표수 매		시도	구군	동읍면	가	농업조사구번호	※

1	2	3	4	5			6		7		8		9	10	11	12
거처번호	가구번호	가구주또는대표자성명	주소	가구원			거처의종류		입주여부		가구구분		농가	가구연번호	어가	비고
				계	남	여	주택	주택이외의거처	현주	공가	주가구	동거가구				
소계																
소계																
합계																

조사원 (인)

동.읍.면장 (인)

1970 인구및 주택센서스 지정통계 제1호 및 제2호

조사표 (전가구용)

인구에 관한 사항

(특별)시 도	구시군	동로읍면	가 리	번지 호 (전화)

	이름	가구주와의 관계	성별	생년 월일	혼인상태	교육		문맹 여부
						취학여부	학력	
	❶ 가구주와가구원 의이름을빠짐없이 말씀하여주십시요	❷ 가구주와어떤 관계가있읍니까 (예) 가구주, 처, 자, 장남의처, 차남의장녀, 등 거인	❸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예) ⑪ 남	❹ 사실상의 나이와 생년월일을 말씀 하여 주십시요	❺ 사실상의배 우관계를말 씀하여주십시요	❻ 학교에다니십니 까아니면중퇴또는 졸업하셨읍니까	❼ 다음중어디 에해당 됩니 까?	❽ 글을읽고 쓸수 있 읍니까?
1			1 남 2 여	나이 살 피 / 생일 년 음 양 월 일	1 유배우 2 사별 3 이혼 4 미혼	1 재학 2 학업중 3 퇴 4 안다녔음	1 국민학교 2 중 3 고 4 초대전문 5 대학이상	1 안다 2 모른다
2								
3								
4								
5								
6								
7								
8								
9								
10								

조사원 성명 인

응답자 성명 인

주택에 관한 사항

조사구번호	거처번호	가구번호	매중 괘	가구원수

모든 주택의 주가구에 대하여 조사할 사항 (항목 1~7)

❶ 거처의 종류
1 일반주택
2 비 거주용 건물내의 주택
3 호텔, 여관 등 숙박업소
4 병원, 기숙사, 수녀원, 영육아원, 양로원 등 공공목적을 위한집
5 토목 공사 현장등 사업목적을 위하여 임시로 세운 집
6 기 타 ( )

❷ 건물의 종류
1 독립주택
2 연립주택
3 공동주택 (아파트)
4 기 타

❸ 건물의 건축 시기
1 1945년 이전 (25년전)
2 1950년 이전 (20년전)
3 1960년 이전 (10년전)
4 1961년 이후 → 19 년

❹ 주택의 소유관계
1 자기집
2 셋 집
3 세없이 빌려든 집

❺ 주택의 총 방수 및 동거가구수
1 총방수 ---- 개 평
2 주가구 사용방수 ---- 개 평
3 동거가구수 ---- 가구
4 동거가구사용 방수 ---- 개 평

❻ 주택의 총건평수
총건평 평

❼ 이가구에서사용하고있는 문화시설 및가재
1 재봉틀 2 라디오 3 테레비 4 전축 5 전화 6 광고 7 피아노및 올갠

주가구 이외의 모든 동거가구에 대하여 조사할 사항 (항목 8~10)

❽ 이가구는 어느종류의 거처에 살고 있는 동거가구 입니까?
1 일반주택
2 비거주용 건물내의 주택
3 호텔, 여관등 숙박 업소
4 병원, 기숙사, 수녀원, 영육아원, 양로원 등 공공목적을 위한집
5 토목공사 현장등 사업목적을 위하여 임시로 세운 집
6 기 타 ( )

❾ 동거가구의 사용 방수
개 ---- 평

❿ 가구에서 사용하고있는 문화 시설 및 가재
1 재봉틀 2 라디오 3 테레비 4 전 축 5 전 화 6 광고 7 피아노및올갠

주택에 관한 사항

거처 번호	가구번호

가구 원수		
계	남	여

모든 주택의 주가구에 대하여 조사할 사항 (항목 1-14)

❶ 거처의 종류
[1] 일 반 주 택
[2] 비거주용 건물내의 주택
[3] 호텔, 여관등 숙박업소
[4] 병원, 기숙사, 영육아원, 양로원 공공목적을 위한집
[5] 토목공사 현장등 사업목적을 위하여 임시로세운집
[6] 기 타 ( )

❷ 건물의 종류
[1] 독립주택 [3] 공동주택 (아파트)
[2] 연립주택 [4] 기 타

❸ 건물의 건축시기
[1] 1945년 이전 (25년전) [3] 1960년이전 (10년전)
[2] 1950년 이전 (20년전) [4] 1961년이후 [19] 년

❹ 주택의 소유관계
[1] 자기집 [3] 세없이 빌려든집
[2] 셋 집

❺ 주택의 총 방수 및 동거가구수
1. 총 방 수 [ ] 개 [ ] 평
2. 주 가구 사용방수 [ ] 개 [ ] 평
3. 동거가구 수 [ ] 가구
4. 동거가구 사용방수 [ ] 개 [ ] 평

❻ 주택의 총건평수
총건평 [ ] 평

❼ 가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문화시설 및 가재
[1] 재 봉 틀 [5] 전 화
[2] 라 디 오 [6] 쌩 장 고
[3] 테 레 비 [7] 피아노 및 올갠
[4] 선 축

❽ 주택의 사용목적별 구분 (일반주택)
[1] 거주 전용주택 [2] 영업 병용주택

❾ 건물의 외벽에 사용된 주건축 재료
[1] 나 무 [4] 벽돌 및 돌
[2] 흙 또는 흙벽돌 [5] 철근콩크리트
[3] 시멘트부럭 [6] 기 타

❿ 건물의 지붕에 사용된 재료
[1] 짚, 갈대등 [4] 기 와
[2] 함석 (양철) [5] 스라브
[3] 스레이트 [6] 기 타

⓫ 주택의 급수시설
[1] 수 도 [3] 우 물
[2] 펌 프 [4] 없 음

⓬ 주택의 등화시설
[1] 전 기 [2] 기 타

⓭ 주택의 변소시설
[1] 재래식 [2] 수세식 [3] 없 음

⓮ 가구에서 사용하는 주된 취사연료
[1] 연 탄 [4] 까스(프로판까스)
[2] 나무, 짚, 기타초목류 [5] 전 기
[3] 석 유 [6] 기 타

주가구 이외의 모든 동거가구에 대하여 조사할 사항 (항목 15-18)

⓯ 이 가구는 어느종류의 거처에 살고있는 동거가구 입니까?
[1] 일 반 주 택
[2] 비거주용 건물내의 주택
[3] 호텔, 여관등 숙박업소
[4] 병원, 기숙사, 수녀원, 영육아원, 양로원등 공공목적을 위한 집
[5] 토목공사 현장등 사업목적을위하여임시로세운집
[6] 기 타

⓰ 동거가구의 사용방수
[ ] 개 [ ] 평

⓱ 이 동거가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문화 시설 및 가재
[1] 재 봉 틀 [5] 전 화
[2] 라 디 오 [6] 쌩 장 고
[3] 테 레 비 [7] 피아노, 올갠
[4] 선 축

⓲ 동거가구가 사용하고있는 주된 취사연료
[1] 연 탄 [4] 까스(프로판까스)
[2] 나무, 짚, 기타초목류 [5] 전 기
[3] 석 유 [6] 기 타

출생아수

부인께서는 자녀분이 몇분 입니까?
총 몇명의 자녀를 낳았읍니까? ⑨

1. 생존아수 [ ] 명
2. 출생아수 [ ] 명

1. 생존아수 [ ] 명
2. 출생아수 [ ] 명

출생지

어디에서 출생하셨읍니까? ⑩

현주지와
[1] 같다
[2] 다르다

현주지와
[1] 같 다
[2] 다르다

현주지와 다를 경우에는 출생한 지명을 말씀해주십시요 ⑪

1 시도 구시군 [ ]
2 국 [ ]

1 시도 구시군 [ ]
2 국 [ ]

5년전거주지

5년전(1965년 10월 1일)에도 이곳에서 살았읍니까? ⑫

[1] 같 다
[2] 같은 구.시.군
[3] 다른 구.시.군
[4] 외 국

[1] 같 다
[2] 같은 구.시.군
[3] 다른 구.시.군
[4] 외 국

다른 구.시.군 또는 외국에서 살든 곳은 어디입니까? ⑬

1 시도 구시군 [ ]
2 국 [ ]

1 시도 구시군 [ ]
2 국 [ ]

경제활동 (14세이상자에 한하여)

활동상태

지난 1주일간(9월 21일~9월 27일)에 주로 무엇을 하셨읍니까? ⑭

[1] 일하였음
[2] 일시휴직
[3] 구 직
[4] 가 사
[5] 통 학
[6] 연 로
[7] 불 구
[8] 기 타

[1] 일하였음
[2] 일시휴직
[3] 구 직
[4] 가 사
[5] 통 학
[6] 연 로
[7] 불 구
[8] 기 타

취업여부

조금이라도 수입을목적으로일하신적이있었읍니까? ⑮

[1] 있다
[2] 없다

[1] 있다
[2] 없다

산업

어느분야에서 일하셨읍니까? ⑯

직업

무슨 일을 하셨읍니까? ⑰

종사상의지위

하셨던 일에서 다음중 어디에 해당됩니까? ⑱

[1] 단독자영업주
[2] 고용주
[3] 가족종사자
[4] 상용고용시
[5] 임시고용일
[6]

[1] 단독자영업주
[2] 고용주
[3] 가족종사자
[4] 상용고용시
[5] 임시고용일
[6]

취업기간

지난 1년동안 몇개월 일하셨읍니까? ⑲

[ ] 개월

[ ] 개월

1970년 인구및주택센서스

조 사 표 (전수 가구용)

동 읍 면 기 입 란							
행정구역	시 도			구 시 군	동 읍 면		
	조사표매수	거처수	주택수	가구수	인구수		
					계	남	여
계							
본국인							
외국인							
지도원 성명 ㊞				조사원 성명 ㊞			

※ 행정구역번호	조사구번호

※ 조사통계국 기입란				
	담당자 성명	인	책임자 성명	인
조사표검수				
내용검사				
재검사				
부호기입				
부호재검				
천공				
검공				

경 제 기 획 원

1970년 인구및주택센서스

조 사 표 (표본 가구용)

동 읍 면 기 입 란							
행정구역	시 도			구 시 군	동 읍 면		
	조사표매수	거처수	주택수	가구수	인구수		
					계	남	여
계							
본 국 인							
외 국 인							
지도원 성명 ㊞				조사원 성명 ㊞			

※ 행정구역번호	조사구번호
	-

※ 조사통계국 기입란				
	담당자 성명	인	책임자 성명	인
조사표검수				
내용검사				
재 검 사				
부호기입				
부호재검				
천 공				
검 공				

경 제 기 획 원

1970년 인구 및 주택센서스

특별조사구 조사표

특별조사구 기입란				
특별조사기관				
조사구명		구분		
조사표매수 및 인구수	조사표매수	인구수		
		계	남	여
	매			
조사담당관직. 성명				㊞
조사담당자직. 성명				㊞

※ 조사구 번호	

조사통계국 기입란				
	담당자 성명	인	책임자 성명	인
조사표검수				
내용검사				
재검사				
부호기입				
부호재검				
천공				
검공				

경제기획원